

발 간 등 록 번 호

11-1620000-000442-01

2012년도 인권상황실태조사
연구용역보고서

종교에 의한 차별실태와 개선방안 연구

-중·고등학교를 중심으로-



발 간 등 록 번 호

11-1620000-000442-01

2012년도 인권상황실태조사

연구용역보고서

종교에 의한 차별실태와 개선방안 연구

-중·고등학교를 중심으로-



이 보고서는 연구용역수행기관의 결과물로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종교에 의한 차별실태와 개선방안 연구

-중·고등학교를 중심으로-

2012년도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황실태조사
연구용역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12. 12.

연구수행기관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연구책임자	송기춘(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공동연구원	오동석(이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허진민(변호사)
연구보조원	배병태(종교자유정책연구원 사무국장) 김남수(종교자유정책연구원 팀장)
연구자문	류성민(한신대 종교문화학과 교수) 고병철(한국학중앙연구원 문화외종교연구소 선임연구원) 이준일(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경희(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박수호(덕성여대 사회학과 교수)

[요약문]

연구의 목적과 범위

우리는 다종교사회에 살고 있다. 종교를 가진 국민(2005년 기준)은 전체의 53.1%이며, 종교인구 가운데 불교 43.0%, 개신교 34.5%, 가톨릭(천주교) 20.6%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역사적으로 종교는 사회적 통합의 수단이자 갈등과 긴장의 요소였다. 오늘날 종교적 신앙을 가진다는 이유만으로 차별이나 억압을 받는 경우는 흔한 예는 아니다. 과거의 종교의 자유 논의가 국가권력에 의한 억압의 금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면 오늘날은 종교에 의한 사회적 배제 또는 종교적 차별이 심각한 상황이다. 특정 종교에 기초를 두고 설립된 사립학교에서 교원의 임용조건 또는 지원조건으로 당해 종교의 신자일 것을 요구한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에서 고용유지의 조건으로 종교적 의식참여나 신앙활동을 요구하는 사례도 종종 볼 수 있다. 또한 중립학교에서 입학조건으로 특정 종교를 요구하거나, 교육과정에서 종교 예배 참여와 교과목 수강을 강요하고, 무종교 또는 타 종교 학생을 위한 대체과목을 운영하지 않는 것 등은 여전히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미 이와 관련하여 서울 대광고에서 발생한 강제적인 종교교육과 관련한 손해배상청구사건에 관해 대법원의 판결(대법원 2010.04.22 선고 2008다38288 전원합의체 판결.)이 내려졌지만, 그러한 종교교육을 강요하는 현실은 근본적으로 달라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종교의 자유에 대해 매우 상세하게 규정한 서울시학생인권조례(제16조 제3항)가 공포된 것은 이러한 문제점을 역설적으로 보여준다.

이 연구는 중·고등학교에서의 종교적 차별의 실태조사와 함께 이를 통하여 그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종교적 차별행위 가운데 그 양과 질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의 하나가 학교에서의 차별이기 때문이다. 중·고등학교에서의 종교적 차별은 특히 이 시기의 교육내용이 인격적 성장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더욱 중요한 문제이다. 둘째, 중·고등학교는 학생이 학교를 선택하기도 하지만 상당부분 학생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배정됨으로써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중

립학교에 배정됨으로써 종교적 차별을 초래할 구조적 측면이 더욱 뚜렷하다는 점 때문이다. 셋째, 한국사회의 종교적 차별을 시정하는 첫걸음은 인간이 가장 먼저 종교를 접하게 되는 학교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중·고등학교 영역에서의 종교적 차별의 실태를 조사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 것이야말로 종교적 차별 문제에서 핵심적이기 때문이다.

연구의 방법

이 연구의 방법으로는 문헌연구, 설문조사, 심층면접, 전문가 의견조사와 전문가 자문 등의 방법에 의한다.

각 급 학교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종교적 차별 사례와 종교적 차별에 대한 실태와 의식을 조사하고자, 지역별 학교수, 학생수, 종교인구수, 종교적 차별사례의 보고건수 등을 근거로 표본을 선정하고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아울러 각 학교의 학생, 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심층 면접을 실시하였다. 전문가회의 등을 통하여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종교적 차별에 관한 객관적 기준의 설정을 위해서 전문가의 의견 조사를 실시하였고, 헌법 및 종교 전문가 참여하는 회의를 통하여 실태조사 및 분석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학교에서의 종교적 차별

종교적 차별

종교적 차별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종교를 이유로 특정인 또는 특정 집단을 우대·분리·구별·제한·배제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말한다. 종교적 차별은 종교로 인한 복수의 주체 사이의 차별의 문제라는 점에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가 반드시 종교적 차별행위가 된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러나 학교 안에서의 종교의 자유의 침해 문제는 힘의 우열관계가 뚜렷한 당사자 사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서 성희롱이 직장 내 힘의 불균형 관계에서의 문제라는 점을 근거로 차별행위의 한 예로 보는 것처럼 학교 내에서 힘의 불균형 관계에서의 문제라는 점, 학교 안에서의 종교의 자유의 침해는 대부분 필연적으로 종교적 이유로 인한 불이익 또는 징계 등의 제재를 수반한다는 점에서 대부분 차별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전문가들도 학교

내에서 이뤄지는 종교의 자유 침해 문제가 대부분 차별이라고 보았다. 이러한 근거로 학교 내 종교의 자유의 침해와 관련하여 학교생활의 징계 또는 불이익에 관련되는 제반 행위를 종교적 차별로 분류하여 취급하였다.

종교를 이유로 하는 차별행위에 대한 심사기준은 대체로 엄격한 기준을 따라야 할 것이다. 인간의 삶에서 종교로 인한 차별이 차별의 역사가 가장 뿌리 깊고 종교가 헌법 제11조에 명시된 차별금지의 사유라는 점, 헌법에서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고 있으면서 차별적 취급으로 인하여 관련 기본권(종교의 자유 등)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초래(헌재 1999. 12. 23. 선고, 98헌마363 결정)하고,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상으로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의 차별금지 사유의 하나로 종교를 명시하고 있다는 점 때문이다.

종교교육과 중·고등학교에서의 종교적 차별

종교에 관한 교육은 신학교학적 접근을 강조하는 관점, 인문학적 접근을 강조하는 관점으로 나뉜다. 각 관점은 종교에 관한 지식교육을 강조하는 관점과 가치교육을 강조하는 관점으로 나눌 수 있다. 전체적으로 종교에 관한 교육은 크게 4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①신앙교육으로서 종교적 교리 등에 관한 이해와 함께 종교적 고백을 추구하는 유형, ②종교적 영성을 체득하는데 중점을 두는 것으로 체험 위주의 영성 교육을 하는 유형, ③종교학 교육으로서 종교 자체에 대한 이해, 종교문화 등에 대한 지적 접근의 교육을 하는 유형(이는 특히 다종교사회에서 필요한 종교교육이다.), ④도덕성과 정서 함양의 관점에서 종교교육을 이해하는 유형이다.

강제배정방식에 의하여 입학하는 종립학교에서의 종교교육의 문제

종립학교에서 종교교육(주로 ①의 신앙교육 유형)을 실시하는 근거는 다음과 같이 생각할 수 있다. 첫째, 종립학교의 설립이념과 존재근거라는 점, 둘째, 학생이 학교에 입학하면서 학교의 교육이념과 학칙에 따른 교육을 성실히 받기로 동의하였다는 점, 셋째, 종교교육도 교육의 일부라는 점 등이다. 그러나 종립학교의 종교의식 참여와 교리교육 등 종교교육을 학생의 진지한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실시하는 것은 학생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면서 종교적 차별에 해당한다고 생각한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이 제시될 수 있다.

첫째, 학생의 동의과정을 보면 종교교육에 자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둘째, 종교단체 내부에서의 강제보다 더 강한 강제는 인정될 수 없다. 셋째, 강제적 종교교육은 교육과 종교의 본질에 반한다. 넷째, 이런 방식은 다종교사회에서 종교적 불관용을 교육하는 것이다.

강제 배정된 종립학교에서 학생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종교교육을 하는 것은 학생의 종교의 자유에 대한 침해와 함께 학교생활에서의 불이익 등을 수반하여 차별행위가 된다.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선택권이 보장될 경우의 종교교육의 문제

현재 발생하는 종립학교에서의 종교의 자유 침해문제가 학교평준화 때문이고 이를 폐지하고 종립학교가 그 설립이념에 따라 종교교육을 자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학생이 종립학교를 선택하여 입학하는 방식으로 입시제도가 바뀐다고 하여도 종래의 방식으로 종립학교가 학생에게 종교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헌법상 허용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첫째, 입학 시 모든 걸 제대로 알고 종교교육에 동의한 것은 아니라는 점, 둘째, 신앙은 변할 수 있다는 것, 셋째, 특정 종교가 유일한 종교적 해석과 태도를 가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 넷째, 교육기관은 법적 제약을 받고 있으며 국고에서 학교운영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받고 있다는 점, 다섯째, 실제 학교선택권이 충실히 보장되고 있지 못하다는 점 등이다. 이런 근거에서 학생의 학교선택권 또는 학교의 학생선택권이 보장된 경우라도 학생에게 학생이 원하지 않는 종교의례를 강요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으며, 종교교육의 거부와 관련하여 징계 또는 불이익을 입을 경우 종교적 차별이라 할 수 있다.

고용관계에서의 종교적 차별

근로기준법 제6조는 근로관계에서 신앙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데, 특정한 종교를 가지거나 가지지 않았음을 조건으로 채용·승진조건을 제시하는 경우 이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차별행위인가? 종립학교가 교원임용에 제시할 수 있는 종교적 조건이 임용지원자의 종교의 자유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것이 되기 위해서는 첫째, 종교적 조건의 업무관련성, 둘째, 종교적 조건의 필요성이 그 판단기준이 되어야 한다. 종교적 교육을 담

당하는 교원의 경우는 특정 종교에 대한 믿음과 지식을 갖출 것이 요구되므로 종교적 조건을 요구하는 것은 가능하다. 종교적 조건이 직업수행의 필수적 조건이기 때문이다.

교육내용이 세속적인 것이고, 대학교원이 수행하여야 할 직무 또한 비종교적인 것일지라도 전체 학생에 대한 교육방식이 학교 전체가 종교적 분위기 속에서 일정한 종교생활까지 지도하고자 하는 것이라면 교원에게 나름의 필요한 종교적 조건이 요구될 수 있다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아무리 종교적 교육을 한다고 해도 그러한 교육을 위한 교원의 일반적 자격으로 특정 종교의 특정한 요건을 요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첫째, 그 사립학교가 특정한 종교의 신자를 만들어내기 위한 교육과정을 가진 것이 아니라 일차적으로 학문적 진리탐구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교원 임용에 지원하는 사람은 교원의 임용과정에서 그 선택의 폭이 극히 좁아 학교에 대하여 매우 불리한 지위에 있다는 점이다. 셋째, 설사 요구되는 종교적 기준을 충족하였다 하여도 인간이 가지는 종교의 자유는 자신의 신앙을 선택하고 바꿀 권리도 포함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개종의 자유가 인정되는 것이고 개종이 교원해임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 당초 임용단계에서부터 종교적 조건을 요구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중·고등학교에서의 종교적 차별 실태조사 결과 분석

조사의 개요

중·고등학교 학생 2,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며 소수의 학생에 대해서는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또한 중·고등학교의 교직원을 대상으로 고용관계에서의 종교적 차별과 관련된 설문조사 및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중·고등학교 학생에 대한 설문조사의 표본은 시·도별 인구 분포, 종교별 인구수, 중립학교의 비중, 종교적 차별행위가 보고된 사례의 빈도 등을 중심으로 지역별, 학교별 설문조사대상을 선정하였다. 신뢰도 95% 기준, 오차범위는 학생의 경우 2.6%, 교원의 경우 7.2%이다.

학생 설문지 분석결과

(1) 종교적 분포

응답자들의 종교별 분포는 종교를 갖지 않은 학생이 46.3%로 가장 많았고, 개신교 26.7%, 불교 12.0%, 천주교 9.6% 등 3대 종교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응답자들이 재학 중인 학교의 유형은 종립학교가 50%, 국·공립학교 30%, 비종립학교 20%의 분포를 보였다. 종립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의 51.1%는 개신교계, 20.9%는 불교계, 17.2%는 천주교계, 4.4%는 원불교계 학교에 재학 중이었다. 대순진리회와 천도교, 통일교가 세운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각각 2.1%였다.

(2) 학교선택의 이유

재학 중인 학교를 선택한 이유를 복수로 선택하게 한 질문에서 학교의 평판(25.9%), 학교와의 거리(20.7%), 대학 진학(18.7%) 등을 고려해 학교를 선택했다고 답한 응답자들이 많았다. 이에 비해 학교의 종교적 분위기와 종교 교육(5.0%), 부모 및 자신의 종교(각각 3.9%, 7.4%) 등의 종교적 이유로 학교를 선택한 경우(16.3%)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18.3%)는 응답자들의 분포보다도 적었다.

(3) 종교교육

· 종교교육 선택권, 대체교과 선택권

종교교과가 개설되어 있다고 답한 응답자의 분포를 설립 이념별로 보면 개신교 31.7%, 불교 13.8%, 천주교 8.5%의 순으로 나타났다. 종교교과 수강 선택 시 자유가 없다고 답한 응답자의 분포를 설립 이념별로 보면 개신교 68.4%, 천주교 60.3%, 불교 40.4%의 순으로 나타났다. 대체교과목의 수를 설립 이념별로 보면, 1과목인 경우는 천주교(91.3%)-불교(80.0%)-개신교(64.4%)의 순이었고, 2과목 이상인 경우는 개신교(33.9%)-불교(18.5%)-천주교(0%)의 순이었다.

대체교과목 선택의 자유가 있다고 답한 경우의 설립 이념별 분포는 불교 50.2%, 개신교 48.8%, 천주교 48.1%였고, 자유가 없다는 응답자의 설립 이념별 분포는 개신교 26.8%, 천주교 22.2%, 불교 15.7%였다. 대체교과목 선택이 자유롭지 못한 이유로는 출석이나 수업 태도 등에서 기준이 엄격하다는 경우가 55.8%로 가장 많았고, 과제물이 종교 교과목보다 많다는 응답자가 36.5%, 학교에서 폐강을 유도한다는 응답자가 28.8%로 뒤를 이었다. 종교교육이나 의식 등의 참여에 대한 선택권을 주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59.6%가 찬성하고 있으며, 반대는 10.1%로 나타났다.

· 복수 종교교육

국·공립학교와 비종립학교는 각각 1.2%와 1.3%만이 복수의 종교를 대등하게 배웠다고 답한 반면, 종립학교는 12.5%가 복수의 종교를 대등하게 배웠다고 답하였다. 설립 이념별로는 불교(52.4%), 개신교(17.1%), 천주교(18.9%)의 순으로 복수의 종교에 대해 대등하게 배웠다고 응답하고 있다.

(4)종교의식

설립 이념별로는 천주교(85.1%), 불교(84.8%), 개신교(83.8%) 모두 종교의식을 거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불교와 개신교는 언제나 종교의식을 거행한다는 응답자의 비율이 각각 70.5%, 63.6%였다. 입학식 및 졸업식에서의 종교의식이 학교에 의해 공식화된 경우가 개신교는 91.9%, 불교 97.9%, 천주교 92.6%, 원불교 73.7%, 천도교 100%, 통일교 75% 등으로 대부분의 종립학교에서 졸업식과 입학식 등에서 종교의식을 거행하고 있으며 이는 학교의 방침에 의한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회, 종례, 학교 행사, 일반 수업시간에 종교의식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하였다.

(5) 종교생활 만족도

학교 내에서의 종교적 활동에 대해 만족한다는 응답자는 14.0%였고, 불만이라는 응답자는 34.9%로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반응이 2배 이상 많았다. 종립학교가 국·공립학교나 비종립학교보다 만족한다는 응답자와 불만이라는 응답자의 비율이 모두 높게 나타났다. 국·공립학교는 만족 1.2%, 불만 13.6%, 비종립학교는 만족 0.7%, 불만 6.8%, 종립학교는 만족 12.1%, 불만 14.5%였다. 개신교계 종립학교 재학생은 만족스럽다(23.7%)는 경우보다는 불만(26.4%)이라는 응답이 다소 많았고, 불교계 종립학교 재학생도 역시 만족(16.6%)이란 응답보다는 불만(24.2%)이란 응답이 다소 많았다. 천주교계 종립학교 재학생은 만족(28.7%)이란 응답이 불만(17.2%)이란 응답보다 다소 많았다. 원불교계 종립학교 재학생은 만족스럽다(19.3%)는 경우보다는 불만(22.6%)이라는 응답이 다소 많았다. 대순진리회계 학교의 재학생은 만족스럽다는 답변이 없는 반면 보통 64.3%, 불만은 35.6%이 비율이었다.

학교 내 종교 활동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로는 ‘원하지 않아서’ 66.7%, ‘흥미가 없고 지루해서’ 46.9%, ‘종교가 달라서’ 22.2%, ‘공부할 시간을 빼앗기므로’ 18.2%, ‘기대했던 바와 달라서’ 7.0%로 나타났다. 불교계와 천주교계 종립학교 재학생들은 ‘원하지 않아서’(각각 58.8%, 55.0%)와

‘흥미없고 지루해서’(각각 61.8%, 75.0%)를 주로 꼽고 있고, 개신교계 종립 학교 재학생들은 ‘원하지 않아서’가 가장 많지만(67.0%) ‘흥미없고 지루해서’(54.3%)와 ‘종교가 달라서’(30.9%)도 중요한 이유로 거론되고 있다.

(6) 고교 지원 시 종교교육 고지

개신교계 종립학교의 경우는 사전에 종교교육 실시에 대해 설명을 하는 비율이 40.7%로 불교(29.7%)나 천주교(27.8%)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다. 개신교계 종립학교는 포괄적인 설명을 받은 학생이 33.6%로 가장 많고, 설립 이념만 설명 받은 학생이 25.9%, 상세한 설명을 받은 학생이 22.4%이고, 설명을 받지 않은 경우는 6.9%였다. 불교계 종립학교 재학생들의 경우 설립 이념만 설명을 받았다고 답한 경우가 53.8%로 가장 많았고, 종교교육을 한다는 포괄적인 설명을 받은 경우와 상세하게 설명을 받았다는 응답자는 각각 3.8%에 불과하다. 설명대로 종교교육이 이루어진다는 응답자와 그렇지 않다는 응답자의 분포를 설립 이념별로 살펴보면, 불교계 종립학교 재학생들은 36.8%:12.3%, 개신교계 종립학교 재학생들은 50.4%:11.7%, 천주교계 종립학교 재학생들은 28.9%:18.2%로 나타났다. 입학 전 설명과 실제 종교교육의 내용이 어떻게 다른가를 질문한 결과, 다른 종교를 가진 학생을 배려하지 않는다는 것이 56.5%로 가장 많았고, 입학 전 설명 없이 종교교육을 실시하는 경우가 35.5%, 종교교육의 강제적인 실시가 19.4%로 나타났다.

교사 설문조사 결과분석

(1) 채용 시 종교적 조건

국·공립학교 교사 중에는 특정 종교에 대한 조건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가 없었으며, 비종립학교 교사 중에서는 1명이 특정 종교에 대한 조건이 있다고 답하였다. 이에 비해 종립학교 교사 중에서는 29.3%가 특정 종교에 대한 조건이 있다고 답하고 있다. 특정 종교에 대한 조건이 있다고 답한 경우는 불교계 종립학교 교사 중에서 38.2%, 개신교계 종립학교 교사 중에서 28.6%, 천주교계 종립학교 교사 중에서 10.0%였다.

면접 과정에서 종교와 관련된 질문을 받은 적이 있냐는 질문에 22.4%가 그렇다고 답하였고, 76.5%는 그렇지 않다고 답하였다. 종립학교 교사 중에서 43.5%는 종교 관련 질문을 받았고, 질문을 받지 않은 경우는 54.3%였

다. 불교계 종립학교 교사 중에서 종교 관련 질문을 받은 경우는 47.1%, 개신교계 종립학교 교사 중에서는 46.9%, 천주교계 종립학교 교사 중에서는 20.0%만이 종교 관련 질문을 받았다.

(2) 종교 연수

불교계 종립학교 교사 중 64.7%는 종교 관련 시설에서 연수를 받았다고 답하고 있으며, 개신교계 종립학교 교사 중에서는 24.5%, 천주교계 종립학교 교사 중에서는 10.0%만이 종교 관련 시설에서 연수를 받았다고 답하였다.

(3) 근무평가

종교 활동이 근무평가에 영향을 미쳤다고 답한 응답자 4명은 모두 종립학교 교사였으며, 이들은 각각 불교계 5.9%, 개신교계 4.1%였다.

(4) 학생의 종교교육 선택권에 대한 의견

불교계 종립학교 교사들의 경우 찬성이 67.7%이고 반대는 없었으며, 개신교계 종립학교 교사들은 찬성 69.0%, 반대 4.8%, 천주교계 종립학교 교사들은 80.0%가 찬성하고, 반대 의견을 가진 경우는 없었다. 대체로 종교교육 참여에 대한 선택권이 부여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공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 종교교육 금지에 대한 의견

개신교계 종립학교 교사들의 경우는 11.9%가 종교교육 금지에 찬성하고 있고, 반대 의견은 57.2%로 나타났다. 천주교계 종립학교 교사의 경우는 찬성 의견은 없고 90.0%가 반대하고 있다. 불교계 종립학교 교사의 경우는 찬성 14.7%, 반대 44.1%였다. 천주교의 경우 종교교육 금지에 반대의견이 높은 것은 그 종교교육이 신앙교육보다는 영성교육의 측면이 강조되고 있고 강제적 측면이 약한 것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1) 종교적 사유에 의한 차별행위는 주로 종립학교에서 나타난다. 학교의 공식적인 종교교과와 종교의식 참여 강제와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학칙에 따른 징계와 생활의 불이익에 있다는 점에서 차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2) 종립학교에 입학할 당시 종교적 교육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나 고지가

대부분 이뤄지지 않았고 이뤄지더라도 그 내용을 잘 알 수 없는 추상적인 것에 지나지 않았다.

3) 입학식과 졸업식, 체육대회, 현장학습의 경우 종립학교는 대부분 학교의 공식방침으로 종교의식을 하고 있다. 조회나 종례 등의 경우는 학교의 공식적 방침보다는 교사의 재량에 의하여 종교의식이 이뤄지고 있다.

4) 종교과목의 대체교과가 개설된 경우가 적으며, 개설되더라도 학교에서 수업을 하지 않기를 바라거나 다른 학교에 가서 수강하도록 하여 실질적으로 선택권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5) 대체로 일반적인 종교교육(종교학 교육)에 대해서는 학생과 교사 모두 찬성하는 비율이 높다.

6) 종교교육의 선택권은 학생과 교사 모두 대체로 찬성하고 있다.

7) 종립학교의 교사의 채용 등과 관련하여 종교적 조건을 채용조건으로 하는 경우는 불교와 개신교의 경우 나타나나 면접과정에서는 종교에 관한 질문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학교 내 종교적 차별 폐지를 위한 개선방안

학교 내에서 종교적 차별을 시정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는다. 첫째, 헌법이 보장하는 학생의 종교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한다. 둘째, 학생들의 자유로운 사고와 종교적 다양성을 통하여 학생들의 인격적 성장에 도움이 된다. 셋째, 종교의 자유와 다른 종교에 대한 존중과 관용을 가르치고 배움으로써 다종교사회에서 조화로운 공존과 종교적 갈등의 해소에 기여한다. 이를 위하여 몇 가지 개선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첫째, 학교교육에서의 종교적 차별의 기준을 마련하여 이에 대한 교육과 집행을 하여야 한다. 특히 학교 교육에서 종교의 자유의 문제를 재검토하고 그 판단기준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공감과 동의 그리고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둘째, 학생의 종교교육 선택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종립학교 재학 중 종교교육에 대한 선택권과 대체과목의 개설이 필수적이다. 대체교과의 선택이 실질적으로 보장되기 위해서는 대체교과 선택을 방해하거나 이로 인한 불이익이 없어야 한다.

셋째, 종교의식 등에 참석이 강요되어서는 안 된다. 이는 종교의 자유 침

해이면서 대체로 학교 내 생활에서의 불이익으로 귀결되므로 실질적인 차별이 된다. 이를 위하여 종교상담 등 문제해결을 위한 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다.

넷째, 입학 후 일정 기간 내 전학제도 또는 입학 시 종교적 사유에 의한 특정 학교 회피제도 등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러나 학교가 전학을 강요하는 것은 차별에 해당하므로 금지되어야 한다.

다섯째, 일반적인 차별금지 입법이 필요하다.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입법적·정책적 노력이 있어야 하나 사회 전반에 걸치는 차별해소를 위해 차별금지법의 제정이 필요하다.

< 목 차 >

요약문

제1장 서론	1
1.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1
2. 연구의 방법	7
제2장 학교에서의 종교적 차별	9
1. 종교적 차별의 개념	9
2. 중고등학교에서의 종교적 차별	16
3. 고용관계에서의 종교적 차별	26
4.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 분석	32
제3장 종교차별에 대한 국내외 사례 연구	41
1. 외국에서의 판단기준과 판례 : 미국을 중심으로	41
2. 국내 판례	57
3. 국내외 사례의 비교연구로부터의 시사점	64
제4장 종교적 차별 실태조사	65
1. 설문조사 개요	65
2. 심층면접 개요	75
3. 학생 설문조사 결과분석	85
4. 교사 설문조사 결과분석	195
제5장 결론	236
1. 종교적 차별 폐지의 필요성	236
2. 학교 내 종교적 차별 폐지를 위한 개선방안	238
참고문헌	244
부록	247

〈표 목차〉

〈표 1〉 종교유형별 인구구성	1
〈표 2〉 종교교과에서 특정종교 교리 및 신앙교육 가능 여부	33
〈표 3〉 학교행사에서 특정종교 의식 가능 여부	34
〈표 4〉 조회, 종례 또는 비종교 교과수업에서 특정종교의식 가능 여부	35
〈표 5〉 중등교육과정에서 종교교육의 수준 및 가능 범위	36
〈표 6〉 선지원, 후추첨의 평준화 지역에서 종교교육 가능 여부	36
〈표 7〉 비평준화 지역에서 종교교육 가능여부	37
〈표 8〉 대학교에서 종교교육 가능 여부	37
〈표 9〉 종교교육 고지 방식 차이	38
〈표 10〉 학교의 설립이념과 다른 타종교 또는 무종교 학생의 종교교육 거부 여부	38
〈표 11〉 종교적 차별인지 여부	39
〈표 12〉 교직원 채용 시 특정종교인으로 자격 제한 여부	40
〈표 13〉 미국 교육제도 변천과 주요 내용(20세기 중반 이후)	42
〈표 14〉 미국 공립학교 종교교육 지침 주요 내용	43
〈표 15〉 학생 설문조사 내용	68
〈표 16〉 교원 설문조사 내용	69
〈표 17〉 심층면접 대상자 인적사항_학생	77
〈표 18〉 심층면접 대상자 인적사항_교원	78
〈표 19〉 응답자의 성별 분포_학생	85
〈표 20〉 응답자의 학년별 분포_학생	85
〈표 21〉 응답자의 종교별 분포_학생	86
〈표 22〉 응답자의 학교유형별 분포_학생	87
〈표 23〉 응답자의 학교의 건학이념별 분포_학생	87
〈표 24〉 응답자의 평준화 유무에 따른 분포_학생	88
〈표 25〉 응답자의 학교선택권 유무에 따른 분포_학생	88
〈표 26〉 재학 중인 학교를 선택한 이유_학생	89
〈표 27〉 학교생활의 만족도_학생	89
〈표 28〉 학교유형별 종교시설 설치 유무_학생	90
〈표 29〉 학교의 종교이념에 따른 종교시설 설치 분포_학생	91
〈표 30〉 학교유형별 종교상징물 설치 유무_학생	92

<표 31> 학교의 종교이념에 따른 종교상징물 설치 분포_학생	93
<표 32> 학교유형별 대등한 비율의 복수종교교육 실시 유무_학생	94
<표 33> 학교의 종교이념에 따른 대등한 비율의 복수종교교육 분포_학생	95
<표 34> 학교유형별 교직원의 타종교 비방/편견_학생	96
<표 35> 학교의 종교이념에 따른 타종교 비방/편견 분포_학생	97
<표 36> 학교유형별 종교의식 시행 유무(입학식/졸업식)_학생	98
<표 37> 학교의 종교이념별 종교의식 시행 유무(입학식/졸업식) 분포_학생	99
<표 38> 학교유형별 종교의식 시행 유무(학급조회)_학생	100
<표 39> 학교의 종교이념별 종교의식 시행 유무(학급조회) 분포_학생	101
<표 40> 학교유형별 종교의식 시행 유무(종례)_학생	102
<표 41> 학교의 종교이념별 종교의식 시행 유무(종례) 분포_학생	103
<표 42> 학교유형별 종교의식 시행 유무(종교교과 수업)_학생	104
<표 43> 학교의 종교이념별 종교의식 시행 유무(종교교과 수업) 분포_학생	105
<표 44> 학교유형별 종교의식 시행 유무(일반수업)_학생	106
<표 45> 학교의 종교이념별 종교의식 시행 유무(일반수업) 분포_학생	107
<표 46> 학교유형별 종교의식 시행 유무(체육대회/축제)_학생	108
<표 47> 학교의 종교이념별 종교의식 시행 유무(체육대회/축제) 분포_학생	109
<표 48> 학교유형별 종교의식 시행 유무(현장학습)_학생	110
<표 49> 학교의 종교이념별 종교의식 시행 유무(현장학습) 분포_학생	111
<표 50> 학교유형별 종교의식 시행 유무(명상/경건회)_학생	112
<표 51> 학교의 종교이념별 종교의식 시행 유무(명상/경건회) 분포_학생	113
<표 52> 학교유형별 종교의식 시행 주체(입학식/졸업식)_학생	114
<표 53> 학교의 종교이념별 종교의식 시행 주체(입학식/졸업식) 분포_학생	115
<표 54> 학교유형별 종교의식 시행 주체(학급조회)_학생	116
<표 55> 학교의 종교이념별 종교의식 시행 주체(학급조회) 분포_학생	117
<표 56> 학교유형별 종교의식 시행 주체(종례)_학생	118
<표 57> 학교의 종교이념별 종교의식 시행 주체(종례) 분포_학생	119
<표 58> 학교유형별 종교의식 시행 주체(종교교과 수업)_학생	120
<표 59> 학교의 종교이념별 종교의식 시행 주체(종교교과 수업) 분포_학생	121
<표 60> 학교유형별 종교의식 시행 주체(일반 수업)_학생	122
<표 61> 학교의 종교이념별 종교의식 시행 주체(일반 수업) 분포_학생	123
<표 62> 학교유형별 종교의식 시행 주체(체육대회/축제)_학생	124

<표 63> 학교의 종교이념별 종교의식 시행 주체(체육대회/축제) 분포_학생	125
<표 64> 학교유형별 종교의식 시행 주체(현장학습)_학생	126
<표 65> 학교의 종교이념별 종교의식 시행 주체(현장학습) 분포_학생	127
<표 66> 학교유형별 종교의식 시행 주체(명상/경건회)_학생	128
<표 67> 학교의 종교이념별 종교의식 시행 주체(명상/경건회) 분포_학생	129
<표 68> 학교유형별 학교 내 종교활동에 대한 만족도_학생	130
<표 69> 학교의 종교이념별 학교 내 종교활동에 대한 만족도 분포_학생	131
<표 70> 학교유형별 학교 내 종교활동에 대한 불만족 이유_학생	132
<표 71> 학교의 종교이념별 학교 내 종교활동에 대한 불만족 이유 분포_학생	133
<표 72> 학교와 학생의 종교 일치 여부에 따른 종교활동에 대한 만족도 분포_학생	135
<표 73> 방과 후 종교 행사 의무참여_학생	136
<표 74> 학교의 종교이념별 방과 후 종교 행사 의무참여 분포_학생	137
<표 75> 타종교 신고 후 종교행사 불참 시 불이익 여부_학생	138
<표 76> 학교의 종교이념별 타종교 신고 후 종교행사 불참 시 불이익 분포_학생	139
<표 77> 종교의식 불참 시 불이익 여부_학생	140
<표 78> 학교의 종교이념별 종교의식 불참 시 불이익 분포_학생	141
<표 79> 학교유형별 불이익의 유형_학생	142
<표 80> 학교유형별 종교행사 참여유무 검사_학생	143
<표 81> 학교의 종교이념별 종교행사 참여유무 검사 분포_학생	144
<표 82> 학교유형별 종교경전의 암기 유무_학생	145
<표 83> 학교의 종교이념별 종교행사 종교경전의 암기 유무 분포_학생	146
<표 84> 학교유형별 종교행사시 기부 유무_학생	147
<표 85> 학교의 종교이념별 종교행사시 기부 유무 분포_학생	148
<표 86> 학교유형별 기부금품의 관리자_학생	149
<표 87> 학교의 종교이념별 기부금품의 관리자 분포_학생	150
<표 88> 학교유형별 기부금품의 사용결과 통보 유무_학생	151
<표 89> 학교의 종교이념별 기부금품의 사용결과 통보 분포_학생	152
<표 90> 학교유형별 종교교과 개설 여부_학생	153
<표 91> 학교의 종교이념별 종교교과 개설 분포_학생	154
<표 92> 학교유형별 종교교과 수강선택의 자율성_학생	155
<표 93> 학교의 종교이념별 종교교과 수강선택의 자율성 분포_학생	156
<표 94> 학교유형별 종교교과 대체 교과목의 수_학생	157

<표 95> 학교의 종교이념별 종교교과 대체 교과목의 수_학생	158
<표 96> 학교유형별 종교교과 대체 교과목 선택의 자유_학생	159
<표 97> 학교의 종교이념별 종교교과 대체 교과목 선택의 자유 분포_학생	160
<표 98> 학교유형별 대체교과목 선택이 부자유한 이유_학생	161
<표 99> 학교의 종교이념별 대체교과목 선택이 부자유한 이유_학생	162
<표 100> 학교유형별 대체과목 개설시 학생 의견 반영 유무_학생	163
<표 101> 학교의 종교이념별 대체과목 개설시 학생 의견 반영 분포_학생	164
<표 102> 학교유형별 고교 지원 시 종교교육 실시 고지 유무_학생	165
<표 103> 학교의 종교이념별 고교 지원 시 종교교육 실시 고지 분포_학생	166
<표 104> 학교유형별 종교교육 고지의 수준_학생	167
<표 105> 학교의 종교이념별 고교 지원 시 종교교육 고지의 수준 분포_학생	168
<표 106> 학교유형별 종교교육에 대한 선서/서약 요구_학생	169
<표 107> 학교의 종교이념별 종교교육에 대한 선서/서약 요구 분포_학생	170
<표 108> 학교유형별 고지한 바에 따른 종교교육 실시 유무_학생	171
<표 109> 학교의 종교이념별 고지한 바에 따른 종교교육 실시 분포_학생	172
<표 110> 학교유형별 입학 전 설명과 다른 종교교육의 내용_학생	173
<표 111> 학교의 종교이념별 입학 전 설명과 다른 종교교육의 내용 분포_학생	174
<표 112> 학교유형별 학생회 임원의 자격 제한 유무_학생	175
<표 113> 학교의 종교이념별 학생회 임원의 자격 제한 분포_학생	176
<표 114> 학교유형별 종교에 따른 차별적 동아리 지원 유무_학생	177
<표 115> 학교의 종교이념별 종교에 따른 차별적 동아리 지원 분포_학생	178
<표 116> 학교유형별 학생자치활동에서 특정 종교활동의 특혜 제공 유무_학생	179
<표 117> 학교의 종교이념별 학생자치활동에서 특정 종교활동의 특혜 제공 분포_학생	180
<표 118> 학교유형별 학생자치활동 시 특정 종교활동 금지/불이익 제공 유무_학생	181
<표 119> 학교의 종교이념별 학생자치활동 시 특정종교활동 금지/불이익 분포_학생	182
<표 120> 학교유형별 기숙사/장학금 배정 시 종교차별 유무_학생	183
<표 121> 학교의 종교이념별 기숙사/장학금 배정 시 종교차별 분포_학생	184
<표 122> 학교유형별 학교 내 종교교육의 문제 유무_학생	185
<표 123> 학교의 종교이념별 학교 내 종교교육의 문제 분포_학생	186
<표 124> 학교유형별 종교교육에 대한 선택권 제공_학생	187
<표 125> 학교의 종교이념별 종교교육에 대한 선택권 제공 분포_학생	188
<표 126> 학교유형별 학교 내 종교교육의 금지_학생	189

<표 127> 학교의 종교이념별 학교 내 종교교육의 금지 분포_학생	190
<표 128> 학교유형별 모든 종교에 대한 교육_학생	191
<표 129> 학교의 종교이념별 모든 종교에 대한 교육 분포_학생	192
<표 130> 학교유형별 학교 내 종교활동의 효과_학생	193
<표 131> 학교의 종교이념별 학교 내 종교활동의 효과 분포_학생	194
<표 132> 성별 분포_교원	195
<표 133> 연령별 분포_교원	195
<표 134> 임용기간_교원	196
<표 135> 근무학교_교원	196
<표 136> 학교유형별 근무학교_교원	196
<표 137> 학교의 종교이념에 따른 구분_교원	197
<표 138> 응답자의 개인 종교 분포_교원	197
<표 139> 학교유형별 채용 시 특정 종교에 대한 조건 유무_교원	198
<표 140> 학교의 종교이념별 채용 시 특정 종교에 대한 조건 분포_교원	199
<표 141> 학교유형별 채용면접 시 종교관련 질문 유무_교원	200
<표 142> 학교의 종교이념별 채용면접 시 종교관련 질문 분포_교원	201
<표 143> 학교유형별 종교관련 시설에서의 연수 유무_교원	202
<표 144> 학교의 종교이념별 종교관련 시설에서의 연수 분포_교원	203
<표 145> 학교유형별 연수 중 종교적 프로그램 경험 유무_교원	204
<표 146> 학교의 종교이념별 연수 중 종교적 프로그램 경험 분포_교원	205
<표 147> 학교유형별 학교 내 종교활동 참여 요구 유무_교원	206
<표 148> 학교의 종교이념별 학교 내 종교활동 참여 요구 분포_교원	207
<표 149> 학교유형별 일과시간 외 종교활동 참여 요구 유무_교원	208
<표 150> 학교의 종교이념별 일과시간 외 종교활동 참여 요구 분포_교원	209
<표 151> 학교유형별 종교활동이 근무평가에 영향 유무_교원	210
<표 152> 학교의 종교이념별 종교활동이 근무평가에 영향 분포_교원	211
<표 153> 학교유형별 종교활동 불참으로 인한 불이익 유무_교원	212
<표 154> 학교의 종교이념별 종교활동 불참으로 인한 불이익 분포_교원	213
<표 155> 학교유형별 종교적 이유로 기부요구 유무_교원	214
<표 156> 학교의 종교이념별 종교적 이유로 기부요구 분포_교원	215
<표 157> 학교유형별 다른 종교에 대한 폄하 발언 유무_교원	216
<표 158> 학교의 종교이념별 다른 종교에 대한 폄하 발언 분포_교원	217

<표 159> 학교유형별 상사의 권유로 인한 종교활동 유무_교원	218
<표 160> 학교의 종교이념별 상사의 권유로 인한 종교활동 분포_교원	219
<표 161> 학교유형별 자기종교의 공개 유무_교원	220
<표 162> 학교유형별 근무시간 중 종교행사 주관 여부_교원	221
<표 163> 학교의 종교이념별 근무시간 중 종교행사 주관 여부 분포_교원	222
<표 164> 학교유형별 국공립학교 내의 종교시설 설치 여부_교원	223
<표 165> 학교의 종교이념별 국공립학교 내의 종교시설 설치 여부 분포_교원	224
<표 166> 학교유형별 종교갈등 유발 행위에 대한 금지 여부_교원	225
<표 167> 학교의 종교이념별 종교갈등 유발 행위에 대한 금지 여부 분포_교원	226
<표 168> 학교유형별 학교 내 종교교육의 문제 여부_교원	227
<표 169> 학교의 종교이념별 학교 내 종교교육의 문제 여부 분포_교원	228
<표 170> 학교유형별 종교교육에 대한 선택권 여부_교원	229
<표 171> 학교의 종교이념별 종교교육에 대한 선택권 여부 분포_교원	230
<표 172> 학교유형별 학교 내 종교교육 금지 여부_교원	231
<표 173> 학교의 종교이념별 학교 내 종교교육 금지 여부 분포_교원	232
<표 174> 학교유형별 모든 종교에 대한 교육 여부_교원	233
<표 175> 학교의 종교이념별 모든 종교에 대한 교육 여부 분포_교원	234

[그림목차]

[그림 1] 종교교육의 개념 분류	17
--------------------------	----

제 1 장 서 론

1.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1) 다종교사회에서의 종교적 갈등과 차별의 문제

우리는 다종교사회에 살고 있다. 아래의 표¹⁾에서 보듯이 종교를 가진 국민은 전체의 53.1%이며, 전체 종교인구 가운데 각 종교별 인구분포는 불교 43.0%, 개신교 34.5%, 가톨릭(천주교) 20.6%이다. 지역에 따라 종교별 인구분포의 차이가 나타나지만 한국사회가 다종교사회라는 점을 말하는 데 부족하지 않다.

<표 1 >종교유형별 인구구성

구분	종교 인구	종교유형별 인구구성						종교 없음
		불교	기독교 (개신교)	기독교 (천주교)	유교	원불교	기타	
전국	53.1	43.0	34.5	20.6	0.4	0.5	1.0	46.5
남자	49.7	43.3	34.3	20.3	0.5	0.5	1.0	49.8
여자	56.4	42.6	34.7	20.8	0.4	0.5	1.0	43.1
서울	54.7	30.8	41.7	25.9	0.2	0.4	1.0	44.8
부산	58.2	67.4	17.8	12.8	0.1	0.4	1.4	41.4
대구	54.5	61.4	19.1	18.0	0.2	0.1	1.2	45.4
인천	50.8	27.3	44.1	27.1	0.3	0.2	1.0	48.7
광주	48.1	29.9	41.0	27.0	0.4	0.7	0.9	51.7
대전	53.8	40.6	38.1	19.9	0.2	0.5	0.8	45.8
울산	56.7	70.2	16.8	11.3	0.1	0.2	1.3	43.1
경기	51.9	32.4	42.1	24.0	0.3	0.3	0.9	47.5
강원	48.5	47.5	32.1	18.8	0.6	0.2	0.8	51.2
충북	49.3	48.3	30.7	20.0	0.3	0.2	0.6	50.4
충남	50.1	41.0	39.0	18.2	0.8	0.3	0.6	49.6
전북	53.5	23.9	49.1	21.3	0.5	4.4	0.7	46.3
전남	48.7	33.1	44.8	17.8	2.4	1.3	0.6	51.0
경북	53.6	63.2	21.6	13.2	0.8	0.2	1.1	46.2
경남	55.8	71.9	15.3	10.5	0.5	0.5	1.2	44.0
제주	51.4	63.7	14.0	20.1	0.6	0.4	1.1	47.9

1)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통계청, 2005.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헌법 제20조 제1항). 종교는 이를 믿는 이에게는 모든 것이자 온 세상이다.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추구하는 궁극적 관심(the ultimate concern)²⁾이다. 따라서 종교는 자칫 배타성이나 공격성과 결합할 경우 다른 종교 또는 종교인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으며 집단적 충돌의 가능성도 존재한다. 신의 정의와 진리의 이름으로 추악한 전쟁을 정당화하기도 하였다. 아울러 종교와 권력의 결합에 의한 정치적 행동이 유발될 경우 다종교사회에서의 종교적 갈등은 당연히 정치적 갈등이 되며 공동체의 혼란과 분열을 초래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헌법은 정치와 종교는 분리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0조 제2항).

역사적으로 종교는 사회적 통합의 수단이자 갈등과 긴장의 요소였다. 사회갈등의 요소로서 종교가 언급되는 것은 비단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가깝게는 미군정기와 이승만 정부까지, 멀리는 삼국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이승만 정부에서 제헌국회 개최기도, 이승만대통령의 취임선서, 군목 및 교도소 교회목사, 성탄절 공휴일 지정, 대통령 선거 등 과정에서의 교회의 노골적인 이승만 지지 등³⁾은 종교로 인하여 사회적 갈등을 일으킨 대표적 사례이다. 또한 2007년 대통령선거와 2008년 이명박 정부의 출범을 전후하여 한국 사회에서 종교로 인한 긴장과 갈등이 고조되었다. 2011년 3월 4일 현직 대통령 등이 사단법인 국가조찬기도회가 주최한 ‘국가조찬기도회’⁴⁾에 참석하여 무릎을 꿇고 기도한 것이 크게 문제가 되었다. 특히 이 기도회 관련 인사들이 이슬람자금에 대한 특별법인 소위 ‘수쿠크법’의 입법화를 저지한 뒤라 더 관심을 끌기도 했다.⁵⁾ 국가조찬기도회를 둘러싼 사회적 논쟁⁶⁾이나 2008년 이후 벌어진 개신교

2) D. M. Brown 편, The Ultimate Concern, 이계준 역, 궁극적 관심, 대한기독교서회, 1971, 16-31면. 폴 틸리히는 전통적 신 관념을 “인간의 유한성 속에 내포된 질문에 대한 대답이며 사람이 궁극적으로 관여하는 것에 대한 이름”으로 정의한다. Paul Tillich, Systematic Theology Vol. I(Reason and Revelation, Being and God), Chicago University Press, 1951, 211-235면의 ‘The Meaning of God’ 참조.

3) 이러한 이승만 정부에서의 정치와 종교의 문제에 관해서는 송기춘, “미군정기 및 대한민국 건국 초기의 종교 관련 제도의 정립과 관련한 헌법적 논의,” 법과 사회 제24권, 2003. 6, 175면 이하 참조.

4) 1968년 처음 개최된 이래 제43회 행사였으며, 2012년 3월 8일 제44회 행사가 열렸다.

5) 수쿠크법은 이슬람 자금의 국내 유입을 위한 법적 지원을 규정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법률로서 기독교계가 거세게 반발하였다. 여의도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는 “...‘만일 이슬람 펀드에 정부가 동의를 하면 나는 영원히 대통령과 싸우겠다. 대통령을 당선시키려고 기독교인들에게 많은 노력을 한 것만큼 하야시키기 위해 싸우겠다. 다음 정권에 희망을 걸지 마라.’ ... 이슬람은 종교와 정치가 일치돼 있다. 펀드가 합법적으로 국회가 비준하고 국가에서 인준한 펀드가 되면 그것을 통해서 지하드도 할 수 있고, 종교를 펼칠 수가 있다. 좌우간 안 된다.’ ... ‘장관님. 원래 제가 달변인데 떨어져서 말이 잘 안 나오잖아요. 목숨을 건 것입니다.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정권 차원에서 허락한다면 장관님과 후손(후임자를 지칭한 듯)도 후회할 것이고 정권도 무너질 것입니다. 얼마 안 있으면 4월 재보선입니다. 이슬람 지지하는 사람이 나오면 기독교인들 목숨을 걸고

와 불교계와의 갈등은 종교와 결합한 권력이 얼마나 사회적 갈등을 고조시키는지, 또한 왜 국가와 종교가 분리되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가 아닐까 생각된다.⁷⁾

역사적으로 조선시대의 천주교 교난⁸⁾이나 일본제국주의 시기에 겪은 종교적 억압⁹⁾, 유교 및 불교 등 종교와 정치권력의 관계¹⁰⁾에서 나타난 갈등과 억압의 사례를 찾기 어려운 것은 아니지만, 단지 어떠한 종교적 신앙을 가진다는 이유만으로 차별이나 억압을 받는 경우는 오늘날 흔한 예는 아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사회적 다수를 점하는 종교에서 자기 종교를 가진 사람들만을 고용하는 것과 같은 사회적 배제의 모습을 접하는 것은 더 이상 어려운 일이 아닌 상황이 되고 있다. 특정 종교에 기초를 두고 설립된 사립학교에서 교원의 임용조건 또는 지원조건으로 당해 종교의 신자일 것을 요구한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에서 고용유지의 조건으로 종교적 의식참여나 신앙활동을 요구하는 사례도 종종 볼 수 있다. 소수종파에서 같은 행위를 하는 것은 소종파의 자기유지를 위한 것이라고 볼 여지도 있지만 사회적 다수를 차지하는 종교에서 같은 행위를 하는 것은 이제 사회적 활동을 위한 공여지책으로 종교적 활동이 사실상 강제되거나 사회적 배제를 경험하게 된다는 점에서 과거 국가에 의한 종교탄압보다 유연화된 것이면서 더욱 심각한 문제가 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과거의 종교의 자유 논의가 국가권력에 의한 억압의 금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면 이러한 상황은 종교의 자유에 관한 논의의 맥락의 변화를 요구하고 새로운 논의가 필요함

싸울 것입니다.”라고 발언하였다. 인터넷 국민일보 2011. 2. 25. 게시 「조용기 목사 24일 이슬람채권(수쿠르)법 관련 발언 全文」 제하의 기사(<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kmi&arcid=0004680226&cp=du> 검색일:2012. 2. 15.) 참조.

6) 이에 관하여는 송기춘, “국가조찬기도회”의 헌법적 문제,” 헌법학연구 제18권 제1호, 2012. 3. 참조.

7) 이에 대해서는 정상우·박종원·송기춘·신옥주·조소영, 공직자의 종교편향 방지를 위한 법제도·정책 기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08 참조.

8) 민경배, 한국기독교회사, 대한기독교출판사, 1982; 구중서, 한국천주교의 순교와 종교자유, 성 베네딕트 수도원 편, 자유에의 소명, 분도출판사, 1976, 175-191면 참조.

9) 강위조, 일본 통치하 한국의 종교와 정치, 대한기독교서회, 1977, 26면 이하 및 민경배, 앞의 책, 278-303면.

10) 유교와 불교의 정교관계에 대해서는 최종고, 국가와 종교, 제3장 한국에 있어서의 종교자유와 법적 보장과정, 139-144면과 같은 이, 한국에 있어서의 국가와 종교, 계간경향 사상과 정책, 제1권 제3호, 40-42면. 그는 막스 베버(Max Weber)의 견해를 인용하면서 유교적 정교관계는 정교합일주의로서 일종의 황제교황주의(Caesar-papism)로 파악하고, 유교는 예언자적인, 초현세적인 것을 절대자인 신의 이름으로 요구하는 일 없이 속인종교(俗人宗教)로서 가산적(家産的)에 적용하고 이를 정당화하는 기능을 하여 왔다고 한다. 또한 불교적 정교관계는 왕실접근성과 호국불교의 성격을 유지한 점에서 호국의 개념이 본질적으로 정치와 종교의 긴장관계를 예리하게 의식하는 개념이 아니라 항상 기성 정치질서와 정치권력을 정당화하는 일방적인 개념의 면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왕즉불(王即佛)"이라는 사상은 정치권력과 종교의 관계를 잘 보여주는 표현이다.

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종교에 의한 사회적 배제 또는 종교적 차별에는 다음과 같은 사례를 들 수 있다.

첫째, 특정 종교에 대한 차별적 대우이다. 2008년도에는 국토해양부의 대중교통정보시스템(알고가) 및 교육과학기술부의 교육지리정보서비스에 사찰정보가 누락된 적이 있으며, 교회와 천주교회가 주로 지원대상이 되는 종교시설에서의 문화활동 지원 프로그램(문화체육관광부) 등이 공고되기도 하였다. 공공시설이나 공간을 빌려 종교적 기념일을 홍보하는 경우에도 지나치게 강한 종교적 상징(성탄절 장식에 붉은 십자가)을 내세움으로써 공적 시설을 종교 선교에 제공하는 것으로서 정교분리의 원칙에 위반될 여지가 많고 아울러 특정종교에 대한 차별이 될 수도 있다. 군대에서의 군종장교의 선발도 거대 종교 또는 종단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공직자가 하는 특정 종교에 대한 지지와 후원의 발언도 문제이다. 표현의 자유와 관련하여 그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문제된다.¹¹⁾

둘째, 종교단체 또는 종교인이 소유 또는 운영하는 단체, 회사, 사회복지시설 또는 학교에서 종교를 이유로 고용, 승진 또는 업무배치 등에서 차별을 하는 경우이다. 실제 종립학교(이 연구에서 종립학교란 불교, 개신교, 천주교 등 특정한 종교적 이념에 기초하여 설립된 학교로서 일반적으로 이 설립이념에 따른 종교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를 말함. 설문지에서는 일부 종교계 사립학교라는 표현을 병행하기도 하였음.)에서 교직원을 임용할 때 채용조건을 특정 종교인으로 제한하거나 채용 후 특정 종교를 믿도록 강요하거나 타 종교인에 대해 승진에서 차별을 하는 경우도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미 이러한 사건과 관련하여 이를 차별이라 판단하고 그 시정권고¹²⁾를 하였으나 당해 대학교에서는 이를 따르지 않고 있다. 특정 종교적 이념에 기초를 두고 설립되어 운영되는 대학교의 교원(교수, 직원 및 최근에는 입학사정관의 채용도 문제된다) 임용과정에서 아예 지원자격을 종교계 대학교를 설립·운영하는 재단이 입학하고 있는 특정 종교의 신자임을 요구하는 사례나 학교 안에서 학교의 운영주체인 재단의 종교적 입장과 다르거나 재단이 요구하는 정도의 종교활동에 참여하지 않음을 이유로 징계를 가하는 일¹³⁾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종교적 차별은 근로기준법 제6조에서 금지(신앙을 이유로 한 차별적 처우의 금지)하고 있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이에 대한 조사와 구제의 권한을 가지고 있으나 그것이 사적인 주체에 의하여 사적 영

11) 이에 관련하여 정상우·송기춘 등, 앞의 연구보고서, 2008 참조.

12) 국가인권위원회 2007. 5. 14., 05진차345 결정; 2007. 10. 22., 05진차494 결정 등

13) 한 예로 강남대학교 이찬수 교수 사건을 들 수 있다. 대법원 특별3부(재판장 이홍훈)는 2008. 10. 23. 기독교계 대학교의 이교수가 사찰에서 절을 하였다는 이유로 재단이 재임용을 거부한 것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결하였다.

역에서 이뤄진다는 이유로 법적 규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셋째, 종립학교에서의 종교적 차별문제이다. 종교재단이 설립 운영하는 학교에서 입학조건으로 특정 종교를 요구하거나, 교육과정에서 종교 예배 참여와 교과목 수강을 강요하고, 무종교 또는 타 종교 학생을 위한 대체과목을 운영하지 않는 것 등은 여전히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미 이와 관련하여 서울 대광고에서 발생한 강제적인 종교교육과 관련한 손해배상청구사건에 관해 대법원의 판결¹⁴⁾이 내려졌지만, 그러한 종교교육을 강요하는 현실은 근본적으로 달라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종교의 자유에 대해 매우 상세하게 규정한 서울시학생인권조례(제16조 제3항)¹⁵⁾가 공포된 것은 이러한 문제점을 역설적으로 보여준다.

넷째, 종교간 차별뿐 아니라 종교 내 특정 종파에 대한 차별도 문제이다. 예를 들어 기독교 내에도 수많은 종파가 있으며, 특정 종파는 흔히 이단으로 평가되기도 한다. 종교적 이단인지 여부는 헌법과 무관하며 무관하여야 한다. 그러나 군대에서 특정 종파에 대해 그 교리의 이단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용 책자까지 배포한 일¹⁶⁾도 있는데, 이는 국가에 의한 종교 지원으로 정교분리의 원칙에 반하며 종교적 차별이라고 할 수 있다.

다섯째, 제도화된 종교적 차별의 문제이다. 이미 강고하게 법제도로 정착되어 헌법 위반 또는 종교적 차별의 의심조차 하지 않고 있지만, 성탄절(12월 25일)과 부처님 오신 날(음력 4월 8일), 개천절(10월 3일)은 그 종교적 성격에 대해 헌법적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 종교단체가 소유한 재산에 가해지는 법적 규제 또는 지원, 공휴일에 치르는 국가시험, 성직자에 대한 면세의 관행에 대해서도 종교적 우대 또는 차별의 관점에서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¹⁷⁾ 그밖에도 다양한 종교적 차별이 존재할 수 있다.

14) 대법원 2010.04.22 선고 2008다38288 전원합의체 판결.

15)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제16조 제3항은 다음과 같다.

“제16조(양심·종교의 자유) ③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학생에게 예배·법회 등 종교적 행사의 참여나 기도·참선 등 종교적 행위를 강요하는 행위
2. 학생에게 특정 종교교목의 수강을 강요하는 행위
3. 종교교목의 대체과목에 대하여 과제물의 부과나 시험을 실시하여 대체과목 선택을 방해하는 행위
4. 특정 종교를 믿거나 믿지 아니한다는 등의 이유로 학생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는 등의 차별행위
5. 학생의 종교 선전을 제한하는 행위
6. 특정 종교를 비방하거나 선전하여 학생에게 종교적 편견을 일으키는 행위
7. 종교와 무관한 과목 시간 중 특정 종교를 반복적, 장시간 언급하는 행위

16) 그러나 대법원 2007.04.26 선고 2006다87903 판결에서는 종교의 자유 침해를 이유로 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17) 송기춘, “종교 관련 제도의 헌법적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 헌법학연구 제12권 제5호, 한국헌법학회, 2006. 12. 참조.

이러한 사례들이 종교적 차별이라는 주장도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그것이 종교의 자유 또는 종교단체의 자율성의 차원에서 헌법적 문제가 없는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2) 중고등학교에서의 종교적 차별에 관한 실태조사의 필요성

앞에서 지적한 종교적 차별의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서는 국가에 의한 차별뿐 아니라 사인에 의한 것까지 포함하여야 한다. 즉, 종교적 차별의 주체로서 국가 또는 공공단체와 함께 기업, 종교단체 및 사인 등이, 그리고 차별행위가 발생하는 영역으로서 고용관계, 재화 등의 공급·이용, 교육·훈련 또는 교육시설의 이용 기타 등으로 분류하여 종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차별은 흔히 같은 부류끼리 어울린다 하여 당연한 것으로 치부되기도 하지만, 장기적으로 사회적 갈등을 일으키며 경제적 효과 측면에서도 부정적인 것으로 지적된다.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우선 어떠한 종교적 차별이 존재하는지, 그 실태는 어떠한지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방안을 연구하고 이를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 이는 국가인권위원회의 2012년-2014년 동안 추진할 《인권증진행동계획》에서도 주요 목표의 하나로 설정되어 있다. 아직 종교적 차별에 관한 전반적 실태조사가 이뤄진 적이 없어 이를 위한 연구가 요청되며 이를 통하여 종교적 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우리 사회에서의 종교로 인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지속적으로 사회적 평화를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성과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연구는 중고등학교¹⁸⁾에서의 종교적 차별의 실태조사와 함께 이를 통하여 그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 사회 전반에 걸친 종교적 차별의 실태를 조사하는 데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차별의 주체로 국가 또는 공공단체, 기업이나 종교단체 등 사인을, 차별의 영역으로 고용관계, 재화 등의 공급·이용, 교육·훈련 또는 교육시설의 이용 기타 등으로 나눠 차별실태를 촘촘히 조사하는 것은 많은 시간, 비용과 노력이 소요되는 작업이므로 짧은 연구기간과 한정된 예산으로 이러한 종합적인

18)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에서 공공기관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초·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와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 급 학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를 말한다”고 하므로 중·고등학교와 대학교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대상이 될 수 있다. 각 급 학교에는 초등학교·공민학교, 중학교·고등공민학교,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초·중등교육법 제2조),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고등교육법 제2조) 등이 있으며, 국립·공립 및 사립을 포함한다.

실태조사를 수행하는 것은 어렵다.

둘째, 종교적 차별행위 가운데 그 양과 질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영역 가운데 하나는 학교에서의 차별이다. 중고등학교에서의 종교적 차별은 특히 이 시기의 교육내용이 인격적 성장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더욱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된다.

셋째, 중고등학교는 학생이 학교를 선택하기도 하지만 상당 부분 학생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배정됨으로써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중립학교에 배정됨으로써 종교적 차별을 초래할 구조적 측면이 더욱 뚜렷하다는 점 때문이다. 평준화 지역에서 학생의 선택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자신의 집에서 가깝다거나 대학진학에 유리하다는 점에서 중립학교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고 종교교육에 대한 자발적 동의가 결여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학생의 의사에 반하는 종교교육의 문제가 부각된다.

넷째, 한국사회의 종교적 차별을 시정하는 첫걸음은 인간이 가장 먼저 종교를 접하게 되는 학교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중고등학교 영역에서의 종교적 차별의 실태를 조사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 것이야말로 종교적 차별 문제에서 핵심적이라는 점 등이다.

또한 중고등학교에서의 종교적 차별의 문제를 학생과 교사의 방면에서 각각 조사하여 그 문제점을 파악하는 한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방법

이 연구는 문헌연구, 설문조사, 심층면접과 전문가 의견조사 및 자문 등의 방법에 의한다. 문헌연구는 종교적 차별의 개념과 차별의 구체적 내용, 외국의 종교적 차별 관련 사례, 판결 및 법령에 관련된다. 종교적 차별이 무엇인지, 이를 위한 심사의 기준이 어떠한지 등 종교적 차별 실태 조사 및 자료 분석을 위한 기초적 논의는 한국과 미국의 헌법학, 인권법학에서의 논의를 바탕으로 주로 문헌연구에 의한다. 국내외의 종교적 차별 사례를 수집하여 분석한다. 미국의 인권법 제7편(Title VII)의 고용관계에서의 차별금지에 관한 법령과 판례(연방고용평등위원회(EEOC) 결정 포함)도 주된 연구의 대상이 될 것이다. 기존 통계자료의 수집과 분석도 문헌에 의할 부분도 있다. 한편 종교적 차별에 관련되는 중고등학교 학칙과 학교규정 등을 조사한다. 종교적 차별의 사례로 언론에 보도되었거나 신고된 것은 설문조사와 면접조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둘째, 설문조사의 방법이다. 각 급 학교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종교적 차별 사

례와 종교적 차별에 대한 의식을 조사한다. 지역별 학교수, 학생수, 종교인구수, 종교적 차별사례의 보고건수 등을 근거로 표본을 선정하고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셋째, 심층면접의 방법이다. 각 학교의 학생, 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심층 면접을 실시한다. 종교적 차별의 사례를 조사하며, 종교적 차별에 관한 의식조사도 병행한다. 면접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녹음하여 추후 분석한다.

넷째, 전문가 의견조사 및 회의 등을 통해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한다. 종교적 차별에 관한 객관적 기준의 설정을 위해서 종교단체 관계자, 헌법 및 종교 전문가 참여하는 회의를 통하여 실태조사 및 분석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는 자칫 연구자의 주관적 판단에 따른 일반적 재단을 막아주고, 일반인들의 인식과도 다를 수 있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보여줄 수 있어 사회적 논란의 해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제2장 학교에서의 종교적 차별

1. 종교적 차별의 개념

1) 종교란 무엇인가

우리 헌법상의 종교의 개념은 종래 신이나 초월적 존재 등에 관한 믿음이라는 관점에서 이해되어 온 것으로 보인다.¹⁹⁾ “신앙이란 신과 피안에 대한 인간의 내적 확신”²⁰⁾, “인간의 상념의 세계에서만 存在할 수 있는 神이나 절대자 등 초월적 존재 (supreme being)를 신봉하고 그것에 귀의하는 것”으로서 “인간의 형이상학적인 신앙을 내용으로 하며, 신과 피안에 대한 우주관적 확신을 필요로 한다”²¹⁾거나, “인간의 형이상학적인 신앙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상념의 세계에만 존재하는 초인적인 절대자에 대한 귀의 또는 신과 내세(피안)에 대한 ‘내적인 확신’의 집합개념”으로서 “종교의 내용은 신앙이고, 신앙의 내용은 절대자에 대한 귀의 또는 신과 피안에 대한 內的 확신”이기 때문에 “종교이기 위해서는 신과 피안에 대한 우주관적 확신을 필요로 한다”²²⁾고 하거나, “종교는 신의 존재섭리 등에 관한 믿음(신앙) 및 예배 등을 중심으로” 한다고 하는 정의²³⁾나 “종교의 핵심을 이루는 신앙이란 초월적 세계(피안의 세계)의 힘에 대한 주관적 확신”으로서 “신과 피안의 세계와 관련이 없는 주관적·내면적 확신은 신앙일 수 없다”는 견해²⁴⁾는 그 대상이 신이나 피안과 같은 초월적 존재를 향하고 있으며, 그 내용이 ‘신앙’이나 ‘확신’ 등 일정한 심리적, 정신적·지적, 의지적·자세를 수반하는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신이나 초월적 존재에 대한 믿음을 종교로 이해하는 관점은 매우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으나 우리나라와 같은 다종교사회에서는 이를 포괄할 수 있는 유연한 종교 개념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종교적 차별을 논의하기 위한 전제로서 종교의 개념을 정의하는 데는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19) 종교의 헌법학적 관점의 정의에 관한 논의는 송기춘, “우리 헌법상 종교의 개념: 미국연방대법원의 관례를 참고하여,” 헌법학연구 제5권 제2호, 1999.10. 참조.

20) 김철수, 헌법학신문, 박영사, 2010, 752면.

21)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10, 490면.

22) 허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2006, 401-402면.

23) 최대권, 헌법학강의, 박영사, 1998, 269면.

24) 계획열, “헌법상 종교의 자유,” 헌법논총 제8집, 헌법재판소, 1997, 65면.

첫째,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모든 종교와 새롭게 등장하고 변화하는 종교현상까지 포함할 수 있을 정도로 유연성이 있는 포괄할 수 있는 개념이어야 한다. 종교 개념이 종교가 제도화되었는지에 따라 달리 판단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사회적으로 제도화되지 않았다 하여 이를 종교가 아니라고 보는 것은 기성종교를 신흥종교 또는 개인의 종교에 대해 우대하는 것이고 기성종교의 관점에서 취하는 편협한 태도로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종교다원상황에서는 자칫 편협한 종교 개념은 종교적 소비니즘²⁵⁾의 위협²⁶⁾이 있다.

둘째, 종교는 믿음이라는 지적 또는 의지적 요소만이 아니라 종교감정의 측면 즉 외포, 성스러운 두려움이나 매혹 등의 경험 역시 종교성의 징표로 여겨져야 할 것이다. 감정에 기초를 둔 정의로는 “외포(畏怖)와 성스러운 두려움과 매혹적인 감정”(Rudolf Otto)²⁷⁾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셋째, 과학성 또는 이성이 유일한 잣대가 되어서는 안 된다. 유사종교나 사교에 대한 판단은 기성종교²⁸⁾나 기존질서의 관점에서 행해지는 것이므로 함부로 그것을 종교가 아니라고 해서는 안 된다.²⁹⁾ 사회적 해악을 끼치거나 금지되어야 할 행위는 종교인지 여부에서 고찰되어야 할 문제라기보다는 종교적 행위의 금지 여부의 문제이다.

이런 관점에서 종교는 일단 다음과 같이 정의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즉, 종교는 신이나 초월적 존재 또는 거룩한 것에 대한 믿음이나 절대적 의존의 감정으로서

25) 불교신문 1998년 7월 7일자에 보도된 제주도 제주시에 있는 원명선원에 대한 불상훼손사건이 그 대표적 예이다.

26) Mircea Eliade, *Cosmos and History*, 정진홍 역, 우주와 역사, 현대사상사, 1979, 245면(부록) 참조.

27) Rudolf Otto, *Das Heilige - über das Irrationale in der Idee des göttlichen und sein Verhältnis zum Rationalen*, 윤성범 역, 종교입문, 을유문화사, 1991, 134에서는 “어떠한 것을 ‘거룩하다(heilig)고 인식하고 그리고 승인하는 것은 먼저 종교적인 영역에서만 나타나게 되는 하나의 특수한 가치평가인 것”이라고 하고 있다. 이러한 감정은 엄숙성이나 장엄성과 같이 ‘모든 피조물 위에 계신 자에게 대하여 자신이 무로 떨어져 버리는’ ‘피조물감정’(같은 책, 136-137면)과 ‘부드러운 물결과 같이 부동(浮動)하되 조용한 기분, 따라서 명상적인 귀의의 형식 가운데서 심정을 파고드는’ ‘어마어마한 신비(mysterium tremendum)’(같은 책, 139면 이하), 매혹적인 것(같은 책, 159면), 소름끼치는 것(같은 책, 168면) 등을 들고 있다.

28) 미국에서 종교의 자유를 확립 내지 확장시킨 공로자는 Mormon교 등 당시의 신흥종교였다. Milton R. Konvitz, *Expanding Liberties*, New York: The Viking Press, 1967, 11면 이하. 최대균, *헌법학-법사회학적 접근*, 박영사, 1989, 189-190면에서 재인용.

29) 동아일보 1958 12. 30.자 보도에 의하면, 당시 박태선의 전도관문제와 관련하여 교리심사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김기두 교수, 신사훈 교수 등), 같은 신문 1959. 1. 10.자에서는 이 위원회에서 종교에 관한 잠정적인 정의를 하였음을 보도하고 있다. 이 정의에서는 종교는 ① 절대대상물(인격적 또는 비인격적 존재)이 있어야 하고 영적 구제를 받아 유익한 것이어야 하며 ② 종교행위는 미풍양속을 해치지 않는 사회적 행위여야 하며 ③ 반이성적 미신 및 마술과 구별된다고 한다.

인간의 삶의 총체적 문제에 대한 답을 추구하는 것이다. 이러한 종교 정의에 의할 때 기존의 제도적 종교인 불교, 기독교, 천주교, 원불교, 이슬람교 및 유교와 무속도 이 범주에 포함된다. 다만, 중고등학교에서의 종교적 차별의 현실에서 매우 복잡한 종교 정의가 그다지 필요한 상황은 아니지만 때로는 이러한 정의가 요구되는 상황도 배제하지는 못한다.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한 명상모임에 대해 중립학교가 이를 금지할 경우 이것이 종교적 차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 판단하여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2) 종교적 차별의 개념

종교적 차별은 종교를 이유로 하는 차별을 말한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의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관한 정의와 2006년 작성된 차별금지법(안)의 표현을 빌어 달리 정의하자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종교를 이유로 특정인 또는 특정 집단을 우대·분리·구별·제한·배제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라 할 수 있다. 일반적 또는 특정 종교를 가졌거나 가지지 않았음을 이유로 우대 또는 차별을 하는 것, 특정 종교 또는 일반적 종교에 대한 우대 또는 차별을 말한다.

(1) 직접차별과 간접차별

종래 직접적인 차별만이 차별이라고 인식되어 왔으며 간접 차별은 사회적 관습이나 고정관념에서 비롯된 것으로 사실상의 문제에 불과한 것으로 여겨졌다.³⁰⁾ 직접 차별은 ‘특정한 사안에서 동일하다고 생각되는 다수의 집단에 각각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달리 취급하는 것’을 말하며,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4호의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의 전형적인 경우이다. 이는 특정인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의 형태로 이뤄진다.

간접차별이란 일반적으로 다수의 집단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지만 사회적 고정관념·관행·제도·사실상의 차이 때문에 결과적으로 불평등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³¹⁾ 형식적 또는 표현상으로는 차별이 아니지만 그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자가 특정 종교인의 경우에는 현저히 적고 그 조건이 정당한 것임을 입증하기 어려울 때 차별적이라 할 수 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서는 차별의 정의와 관련하여 “사업주가 채용조건이나 근로조건은 동일하게 적용하더라도

30) 성낙인, 헌법학(제11판), 법문사, 2011, 447면.

31) 위의 책, 448면.

그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남성 또는 여성이 다른 한 성(性)에 비하여 현저히 적고 그에 따라 특정 성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며 그 조건이 정당한 것임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를 포함시키고 있어 간접 차별도 차별의 개념에 포섭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³²⁾

흔한 예는 아니지만 대학원의 면접시험을 사람들의 편의를 고려하여 토요일로 정한 경우 이것을 차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토요일을 안식일로 하는 종파의 경우는 면접기회를 배제하는 의미를 가진다는 점에서 그 차별성이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실제 어느 대학 의학전문대학원의 면접과 관련하여 발생한 실례이기도 하다.

(2) 종교적 괴롭힘(religious harassment)을 포함한다

차별의 문제는 비교대상과 우대 또는 불이익처우가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괴롭힘(harassment)은 자유 침해의 문제일 뿐 차별행위로 구성되기 어렵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괴롭힘을 가하는 자와 괴롭힘을 당하는 자 사이에 힘의 현저한 불균형 관계가 있는 경우는 달리 판단될 여지가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결정(2009. 11. 9. 09진차 652)에서는 성희롱을 성차별에 포함시키는 이유로 “남녀 간의 불평등한 권력관계 또는 성적 편견과 차별의식에 근거한 다수의 성이 근로관계에서 점유하고 있는 힘을 이용하여 소수의 성을 괴롭히거나 성적 요구를 하는 등으로 인해 피해자가 근로관계에서 이탈·배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는데, 이는 ‘성’을 ‘종교’로 치환하여도 타당한 진술이 된다고 생각된다. 즉, 종교를 믿는 사람들 사이의 불평등한 권력관계 또는 종교적 편견과 차별의식에 근거하여 다수의 종교인이 근로관계에서 점유하고 있는 힘을 이용하여 소수의 종교 또는 종교인을 괴롭히거나 종교적 요구를 하는 등으로 인해 피해자가 근로관계에서 이탈·배제되는 종교적 괴롭힘은 차별의 문제가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율법 상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 이슬람 신도에게 지속적으로 돼지고기를 먹도록 강요함으로써 퇴사를 하게 되는 경우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다. 종립학교에서 특정 종교 의례 및 신앙고백을 강요하는 것도 종교의 자유에 대

32) 1. "차별"이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성별, 혼인, 가족 안에서의 지위, 임신 또는 출산 등의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채용 또는 근로의 조건을 다르게 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는 경우[사업주가 채용조건이나 근로조건은 동일하게 적용하더라도 그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남성 또는 여성이 다른 한 성(性)에 비하여 현저히 적고 그에 따라 특정 성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며 그 조건이 정당한 것임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특정 성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 나. 여성 근로자의 임신·출산·수유 등 모성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는 경우, 다.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를 하는 경우

한 침해이면서 종교적 괴롭힘으로서 차별의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후술하는 바와 같이 전문가들은 종교에 대한 거부감 등으로 인하여 학교생활에서 괴로움을 겪는 것에 대해서도 67.2%가 종교적 차별이라고 보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3) 종교의 자유와 종교적 차별의 관계

종교적 차별은 종교로 인한 복수의 주체 사이의 차별이라는 점에서 종교의 자유의 침해가 반드시 차별행위가 된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러나 학교 안에서의 종교의 자유의 침해 문제는 힘의 우열관계가 뚜렷한 당사자 사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서 성희롱이 직장 내 힘의 불균형 관계에서의 문제라는 점을 근거로 차별행위의 한 예로 보는 것과 유사한 면을 가지고 있다는 점, 학교 안에서의 종교의 자유의 침해는 필연적으로 종교적 이유로 인한 불이익 또는 징계 등의 제재를 수반하므로 종교를 이유로 한 우대, 불이익 부과 또는 제재 등의 조치가 수반된다는 점에서 대부분 차별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3) 종교적 차별의 심사기준

종교로 인하여 우대 또는 불리하게 대우되는 것이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인지를 심사하는 기준으로는 헌법재판소 판례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자의금지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 가운데 어느 것을 취할 것인가가 문제된다. 헌법재판소 판례에서는 “입법자가 설정한 차별이 기본권에 관련된 차별을 가져온다면 헌법재판소는 그러한 차별에 대해서는 자의금지 내지 합리성 심사를 넘어서 목적과 수단 간의 엄격한 비례성이 준수되었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람이나 사항에 대한 불평등대우가 기본권으로 보호된 자유의 행사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도가 크면 클수록, 입법자의 형성의 여지에 대해서는 그만큼 더 좁은 한계가 설정되므로, 헌법재판소는 보다 엄격한 심사척도를 적용한다”³³⁾고 한다. 또한 “헌법에서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 엄격한 심사척도가 적용될 수 있다. 헌법이 스스로 차별의 근거로 삼아서는 아니 되는 기준을 제시하거나 차별을 특히 금지하고 있는 영역을 제시하고 있다면 그러한 기준을 근거로 한 차별이나 그러한 영역에서의 차별에 대하여 엄격하게 심사하는 것이 정당화된다. 다음으로 차별적 취급으로 인하여 관련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게 된다면 입법형성권은 축소되어 보다 엄격한 심사척도가 적용되어야

33) 헌법재판소 2003. 9. 25. 선고, 2003헌마30 결정.

할 것이다. ...엄격한 심사를 한다는 것은 자의금지원칙에 따른 심사, 즉 합리적 이유의 유무를 심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비례성원칙에 따른 심사, 즉 차별취급이 목적과 수단 간에 엄격한 비례관계가 성립하는지를 기준으로 한 심사를 행함을 의미한다.”³⁴⁾고 한다.

이러한 심사기준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차별심사에 그대로 적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기본적 내용은 그대로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상으로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의 차별금지 사유의 하나로 종교를 명시하고 있다는 점, 인간의 삶에서 종교로 인한 차별이 차별의 역사가 가장 뿌리 깊고 종교가 헌법 제11조에 명시된 차별금지의 사유라는 점, 헌법에서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고 있으면서 차별적 취급으로 인하여 관련 기본권(종교의 자유 등)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초래(헌재 1999. 12. 23. 선고, 98헌마363 결정)하기 때문에 종교를 이유로 하는 차별행위에 대한 심사기준은 대체로 엄격한 기준을 따라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평등권 침해여부에 대한 엄격한 심사적도를 취할 경우 차별행위의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에 대한 심사가 이뤄진다. 단순히 차별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것만으로는 엄격심사 기준을 통과할 수 없다. 이러한 심사 과정에는 정교분리의 원칙 위반의 판단기준의 하나로서 목적과 효과의 세속성 여부, 국가의 종교에 대한 과도한 개입금지 등 기준도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³⁵⁾

34) 헌법재판소 1999. 12. 23. 선고, 98헌마363 결정.

35) 정교분리 원칙 위반여부에 대한 이러한 심사기준은 미국연방대법원의 판례에서 형성된 것인데 이를 바탕으로 우리 판례도 등장하였다. 즉, “국가 등의 종교시설에 관한 지원이 정교분리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① 해당 사업의 목적이 종교적인지 세속적인지 여부, ② 해당 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직접적 내지는 일차적으로 특정 종교를 조장하거나 금지하는 효과가 발생하는지 여부, ③ 해당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가 등이 종교문제에 관하여 과도하게 개입하게 되는 결과가 초래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 따라서 이 사건 사업이 관광객 유치라는 세속적인 목적을 가진 점이나 천주교 신자 외의 관광객도 다수 위 시설을 방문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도 이 사건 사업, 특히 그 중 이 사건 토지에 관련된 부분은 정교분리의 원칙에 반하는 사업이라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이 사건 사업 시행과정에서 이루어진 일련의 개별적인 처분, 즉 이 사건 사업승인처분, 수용재결처분은 모두 정교분리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다.”(춘천지법 2007.11.1. 선고 2006구합1058 판결 : 항소【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 항소심(서울고법 2008. 8. 26. 선고 2007누31692 판결, 원심 파기)은 “오늘날 종교적인 의식 또는 행사가 하나의 사회공동체의 문화적인 현상으로 자리잡고 있다 할 것이므로, 어떤 의식, 행사, 유형물 등이 비록 종교적인 의식, 행사 또는 상징에서 유래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이미 우리 사회공동체 구성원들 사이에서 관습화된 문화요소로 인식되고 받아들여질 정도에 이르렀다면 이는 정교분리원칙이 적용되는 종교의 영역이 아니라 헌법적 보호가치를 지닌 문화의 의미를 갖게 되므로, 이와 같이 이미 문화적 가치로 성숙한 종교적인 의식, 행사, 유형물에 대한 국가 등의 지원은 일정 범위 내에서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이라는 문화국가원리에 부합하며 정교분리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하고 또한 “이 사건 유현문화관광지 조성사업으로 풍수원성당을 원조하는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수적이고 간접적인 효과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4) 종교적 차별 여부의 판단

종교적 차별인지를 판단하는 데는 각 사례마다 엄격심사기준에 의한 심사를 통하여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대체로 다음과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한 정당화의 이유가 충분하게 제시되지 않는 한 차별이라고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³⁶⁾

첫째, 차별행위의 주체가 되는 단체 또는 회사가 ‘종교적’인 경우이다. 이 단체가 종교적인지의 평가는 그 목적과 성격이 주로(primarily) 종교적인 경우여야 하는데, 소유관계(ownership), 종교와의 관련성(affiliation), 설립목적, 직원의 업무, 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성격이 ‘주로 종교적(primarily religious)’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러한 행위는 종교단체 내부의 자율성의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중립학교라 하여 모두 이 경우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재정지원을 받고 세속적 교과목의 교육이 중심이 되는 우리나라 종교계 중·고등학교는 대부분 이러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봐야 할 것이다.

둘째, 종교가 특정한 업무 또는 사업에 필요한 자격이 되는 경우이다. “종교…가 특정한 업무 또는 사업의 정상적인 운영에 합리적으로 필요한 직업적 필수요건(bona fide occupational qualification)인 경우… 종교에 기초하여 사용자가 직원을 고용하는 것은 불법적인 고용행위가 아니”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종교적 문제에 관한 컨설턴트를 채용할 경우는 특정 종교에 관한 신앙과 지식을 가질 것이 그 직업수행을 위한 필수요건이 될 수 있다.

이 연구를 위해서는 우선 ① 종교적 차별이 무엇인지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② 그 차별의 실태를 조사하고 ③ 이를 바탕으로 차별시정을 위한 여러 대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유엔문화관광지 조성계획이 특정 종교를 우대·조장하거나 배타적 특권을 부여하는 등 정교분리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고 하였다. 대법원(2009.5.28. 선고 2008두16933 판결)도 1심 법원의 심사기준을 취하지 않았다.

36) 이에 대해서는 송기춘, “고용관계에서의 종교적 차별의 금지: 사인간의 관계에서의 종교의 자유 보장에 관한 미국 실지조사연구”, 헌법학연구 제16권 제1호, 2010. 3; 같은 이, “직원의 종교적 요구에 따른 사용자의 업무상 배려의무: 미 연방 인권법 규정의 해석을 중심으로,” 세계헌법연구 제16권 제3호, 2010. 8; 같은 이, “대학교원의 임용과 종교적 사유에 의한 차별,” 민주법학 제41호, 2009. 11 참조.

2. 중·고등학교에서의 종교적 차별

종교적 차별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종교를 이유로 특정한 또는 특정 집단을 우대·분리·구별·제한·배제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로 정의할 경우, 중·고등학교에서 나타날 수 있는 종교적 차별에 관련되는 행위는 다음을 적시할 수 있을 것이다.

- ① 학생에게 종교적 행사에 참여하거나 종교적 행위를 할 것을 강요하는 행위
- ② 학생에게 특정 종교과목의 수업을 강요하는 행위
- ③ 종교과목의 대체과목에 대하여 과제물을 부과하거나 시험을 실시하는 등 학생들이 대체과목을 선택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
- ④ 특정 종교를 믿거나 믿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학생을 차별하는 행위
- ⑤ 특정 종교를 비방하는 등 학생에게 종교적 편견을 일으키는 행위
- ⑥ 특정 종교적 날짜에 시험 등을 실시하는 행위

이러한 행위는 직접적으로는 학생의 종교의 자유에 대한 침해이며, 이것이 현저한 힘의 불균형관계에서 이뤄지는 것이고 이를 바탕으로 학교생활에서 징계 또는 불이익이 수반된다는 점에서 차별에 관련된다고 할 수 있다. 종교행사 참여를 강제하는 것은 단순히 강제에 그치지 않고 학생에 대한 성적과 평가에 영향을 미치며, 징계를 당하기도 한다³⁷⁾는 점에서 단순한 종교의 자유 침해에 그치지 않는다.

종교재단이 설립 운영하는 학교에서 입학조건으로 특정 종교를 요구하거나, 학생회 임원자격으로 종교적 조건을 요구하는 경우, 교육과정에서 종교 예배 참여와 교과목 수업을 강요하고, 무종교 또는 타 종교 학생을 위한 대체과목을 운영하지 않는 것 등은 여전히 문제로 지적된다. 졸업을 위한 채플 등 종교과목의 이수, 국기에 대한 경례(또는 맹세)의 거부와 징계도 문제될 수 있다. 학교의 운영주체인 재단의 종교적 입장과 다르거나 재단이 요구하는 정도의 종교활동에 참여하지 않음을 이유로 징계를 가하는 일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 중립학교에서 교직원을 임용할 때 채용조건을 특정 종교인으로 하거나 채용 후 특정 종교를 믿도록 강요하거나 타 종교인에 대해 승진에서 차별을 하는 경우도 있다. 이것은 이미 국가인권위원회가 시정권고를 한 사항이기도 하나 아직까지 바로잡히지 않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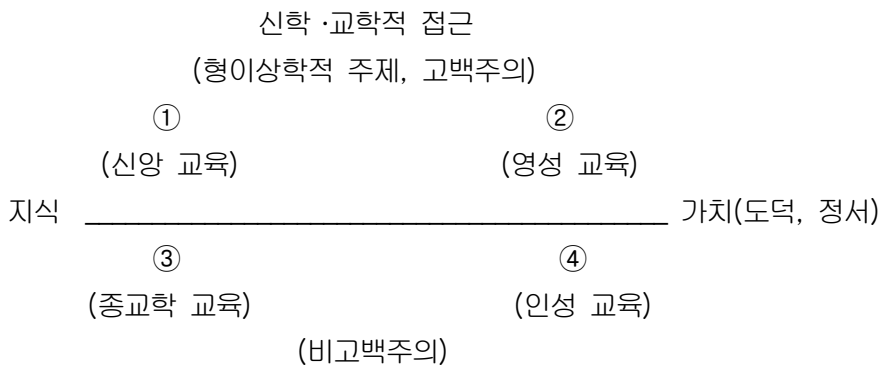
1) 중·고등학교 종교교육의 개념

37) 대법원 2010.4.22. 선고 2008다38288 전원합의체 판결 【손해배상(기)】 〈중립 사립학교 종교교육 사건〉

중고등학교에서의 종교교육의 문제가 심각해진 원인은 직접적으로는 평준화를 위한 학교강제배정제도에서 찾을 수 있다. 중고등학교 학생의 종교와 관련한 학교선택권이 기본적으로 보장되지 않기 때문이다. 중고등학교 평준화란 중고등학교 입학이 학교별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교육행정청에 의하여 강제로 배정되는 방식을 말하는 것으로 이해된다.³⁸⁾ 이러한 학교평준화제도 아래서는 실시지역 내 학교 사이의 인적 또는 물적 시설의 차이나 교육여건, 중립학교 여부를 묻지 않고 학생을 강제로 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선택권, 사립학교의 학생선발권, 거주이전의 자유, 학생의 종교교육을 받을 권리 등 종교의 자유 침해 또는 정교분리 원칙 위반 등의 문제가 제기된다.³⁹⁾ 물론 학교평준화제도가 폐지된다 하여 중고등학교에서의 종교적 차별의 문제가 없어진다고 할 수도 없다. 종교교육은 입학 당시의 형식적 동의만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모든 종교교육이 헌법적 문제 또는 차별행위인지 여부가 문제되는 것은 아니다. 이는 종교교육의 개념과 관련된다. 종교현상을 인간의 삶의 한 부분으로 인정한다면, 종교에 대한 일반적 이해는 교육과 학습의 필요가 있고 따라서 이러한 이해를 돕는 종교교육은 그 자체로 세속적 목적을 가진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종교교육의 개념에 대하여 고병철⁴⁰⁾은 다음과 같이 분류하고 있다.

[그림 1] 종교교육의 개념 분류



38) 이기우, “고등학교 평준화제도에 대한 헌법적 검토와 입법정책적 제언,” 최대권·정인섭 편, *고교 평준화, 사람생각*, 2002, 47면.

39) 학교평준화를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견해로는 김철수, “고교평준화는 위헌이다,” *동아일보* 2002. 2. 18.자; 이시우, “법정에 선 고교평준화,” *문화일보* 2002. 3. 25.자 등이 있다.

40) 고병철, *한국중등학교의 종교교과교육론*, 박문사, 2012, 27-32면.

즉, 종교에 관한 교육에서 신학교학적 접근을 강조하는 입장과 인문학적 접근을 강조하는 입장으로 분류하고, 이와 함께 종교에 관한 지식교육을 강조하는 입장과 가치교육을 강조하는 입장으로 분류하면 종교교육은 크게 4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①은 신앙교육으로서 종교적 교리 등에 관한 이해와 함께 종교적 고백을 추구한다. ②는 종교적 영성을 체득하는 데 중점을 두는 것으로 체험 위주의 영성 교육을 하는 유형이다. ③은 종교학 교육으로서 종교 자체에 대한 이해, 종교문화 등에 대한 지적 접근의 교육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다종교사회에서 필요한 종교교육이라 할 수 있다. ④는 도덕성과 정서 함양의 관점에서 종교교육을 이해하는 입장이다. 그밖에도 고병철은 종교현상을 지적대상으로 인식사유·종합할 뿐 아니라 그 인식사유·종합의 논리도 메타적으로 반추하는 성찰적 종교교육을 제안하고 있다.⁴¹⁾

우리나라 종립학교에서의 종교교육은 대체로 ①의 유형에 속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판단의 근거는 제5장에 서술된 설문조사 결과분석에서도 나타난다. 종교교리 교육과 함께 고백적 태도를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학생의 종교와 같음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 종교교육의 방식이다. 대안학교의 경우 ②의 유형에 속한다고 할 수 있는 예가 있지만, 특정 종교신앙에 투철한 교육을 위하여 설립된 대안학교의 경우는 ①의 유형도 적지 않다.⁴²⁾

2) 강제배정방식에 의하여 입학하는 종립학교에서의 종교교육의 문제⁴³⁾

중고등학교는 현재 전국적으로 상당히 많은 지역에서 국공립학교와 사립학교 또는 교육여건의 차이를 무시하고 별다른 예외 없이 일정 학군을 단위로 학생을 강제 배정하는 평준화제도⁴⁴⁾를 시행하고 있어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선택권, 거주이전의 자유, 종교의 자유 침해 또는 정교분리원칙 위반 문제, 학생의 종교교육을 받을 권리 침해, 사립학교의 학생선발권 제한 등이 문제된다. 경우에 따라 학생이 학교선택권을 가지기도 하나 매우 제한적이다.

41) 위의 책, 29-30면.

42) 한 예로, 기독교계 대안학교는 50여개 교에 달한다. 기독교대안학교연맹 홈페이지참조 (<http://www.casak.org/sch/sch010.aspx?gbn=1&mc=02001> 2012. 11. 1. 검색)

43) 이하의 논의는 송기춘, “종립학교에서의 종교교육과 학생의 종교의 자유: 평준화지역의 중등학교를 중심으로,” 공법연구 제33집 제1호, 한국공법학회, 2004. 11. 참조.

44) 중학교 평준화는 1969년부터 1972년 사이에 도입되었으며, 고등학교 평준화는 1974년 서울과 부산의 일반계 고등학교를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확대되었다.

종립학교에서 종교교육(주로 ①의 신앙교육 유형)을 실시하는 근거는 다음과 같이 생각할 수 있다. 첫째, 종립학교의 설립이념과 존재근거가 종교의 포교 또는 선교이며, 종교교육을 할 수 없다는 학교의 존재의의는 없다는 점이다. 둘째, 학생이 학교에 입학하면서 학교의 교육이념과 학칙에 따른 교육을 성실히 받기로 서약하였기 때문에 학생과 학교의 관계는 계약관계로서 학칙에 따라 실시하는 종교교육은 교육적 차원에 서라도 실시될 수 있으며, 교육을 거부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경우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나 제재 또는 성적을 부과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것이다. 현행 입시제도에서 생각하기 어려운 경우지만, 학생이 종교단체에서 설립·운영하는 학교에 학교교육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입학할 경우 이는 학칙에서 정한 종교교육을 받는 것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어서⁴⁵⁾ 학생을 대상으로 종교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어떤 방식으로 어떤 범위에서 실시하느냐는 따로 논의하더라도 원칙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교육당국이 개입하여 일정한 지역을 단위로 학생의 상급학교 진학에서 학생을 강제적으로 배정하는 현행제도에서 종립학교의 예배를 포함한 종교교육을 학생의 진지한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실시하는 것은 학생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면서 그것이 징계 또는 학교생활에서의 불이익을 수반하기 때문에 헌법에 반하고,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종교적 차별에 해당한다고 생각한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이 제시될 수 있다.

첫째, 입학하기 전에 학생이 입학하고자 하는 학교에서 어떤 방식과 내용의 교육을 실시하는지를 잘 알지 못한다는 점에서 학생이 자발적으로 종교교육에 동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종교단체에서 설립한 학교에서 비록 그 종교이념에 충실하게 교육한다는 것은 밝혔다 해도 그 내용이 실제 종교행사에 참여하여 그 절차에 따라야 하고 그게 점수까지 되고 졸업에 영향을 미치는 지까지 알고 입학하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⁴⁶⁾ 설사 대다수가 그걸 잘 알고 있다 하여도 잘 알지 못하는 학생에게까지 그런 교육에 대한 동의를 한 것으로 보는 근거가 되기는 어렵다. 또한 한창 정신적으로 성장하는 학생들이 신앙을 가지고 입학하였다 해도 신앙에 회의를 갖기도 하며 종교에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게 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입학 당시의

45) 대학교 채플과목 미이수로 졸업을 하지 못한 숭실대학교 학생이 학교법인 숭실학원을 상대로 학위수여이행을 구한 소송의 제1심, 제2심판결은 청구기각의 주요한 이유를 청구인이 학칙을 포괄적으로 알고 승인하였다는 사실에서 찾고 있다(서울지방법원 1995. 7. 6. 선고, 95가합30135 판결; 서울고등법원 1996. 7. 24. 선고, 95나29385 판결).

46) 앞에서 언급한 대광고의 경우 입학식에서 학생을 대표하여 선서한 강의석은 학교입학식에서 비로소 대광고가 종립학교라는 사실을 알았으며, 다른 학생들에게도 종교교육에 대한 내용이 전혀 전달되지 않았다고 한다.(2004. 8. 31. 국회인권포럼 「사립학교와 종교의 자유」 심포지움 토론 중)

동의만 가지고 지속적으로 종교교육강제의 근거로 삼기는 어렵다고 생각된다.

둘째, 종교단체 내부에서의 강제보다 더 강한 강제는 인정될 수 없다는 것이다. 학교에서의 교육은 선교보다는 시민으로서의 교육이 일차적 목적이다. 종립학교의 입장에서 종교교육이 가장 중요한 교육과정이라 인정해도 종립학교에서의 종교교육의 강도가 종교단체 안에서보다 더 강하게 인정될 수는 없다. 종교단체에서는 단체의 행사나 의식에 참석하는 사람이 당해 종교에 적대적이거나 종교단체 내부에 혼란을 초래하지 않는 한 그 사람을 배척하거나 축출하지는 않는다. 그런데도 세속적 교육을 하는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종교교육이 그 이상의 강도로 실시될 수 있을까? 종교단체 내부에서도 하지 않는 강제를 학교에서 가하는 것은 졸업과 결부시킴으로써 가능한 것이다.

셋째, 강제적 종교교육은 교육의 본질에도 종교의 본질에도 반하기 때문이다. 물론 종교의례나 교육을 형식적으로 하면 문제가 없지 않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형식적으로라도 의례에 참석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속으로는 어떻게 생각하더라도 겉으로만 학생의 생각과 다른 행위를 하라고 요구한다는 점에서 교육기관으로서 할 수 없는 거짓말을 공공연히 가르치는 비교육적 행위이며, 나아가 종교적 행위를 강제당하지 않을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아무리 학생이 잘못 생각하고 있고 학교가 이를 용납하기 어렵다고 하여도 신념이나 신앙의 문제를 학교가 졸업이나 평가와 관련시켜 종교의례에 참석이나 종교고백을 강요할 수는 없는 것이다. 강제되는 진리는 진리가 아니다.

넷째, 강제적 종교교육은 다종교사회에서 종교적 불관용을 교육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종립학교에서 그 설립이념이 학교 안에서의 유일한 행동지침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심지어 종립학교에서 표방하는 설립이념인 종교에서도 단일한 신학적 관점과 태도만이 있는 것도 아니다. 국가보안법의 개폐를 둘러싸고 기독교 안에서도 극단적인 견해의 대립이 신학적 근거를 가지고 대립되는 것⁴⁷⁾을 보면 이 점은 분명하게 드러난다. 종립학교라고 하여 학생들의 자유로운 사고를 제약할 권한은 없다. 특히 학교에서 종교적 관용을 가르치는 것이야말로 교육기본법에서 말하는 교육이념⁴⁸⁾에 부응하는 것이다.

종립학교라도 모든 학생은 신앙의 자유를 가지며, 자신이 하고 싶지 않은 고백을

47) 이에 관해서는 2004. 10. 4.에 열린 기독교 중심의 국가보안법 폐지반대집회(한겨레 2004. 10. 5.자 보도)와 기독교인사들의 이 법 폐지선언(같은 신문 10. 6.자 보도) 참조.

48) 제2조(교육이념)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여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데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강요하거나 의례에 참석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신앙의 자유에 대한 침해이다. 아무리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다 해도 강제적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요구할 수도 없다. 졸업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하거나 중요한 평가의 기준으로 삼는 것은 종교적 고백의 강요이다. 아무리 어린 학생도 신앙의 자유를 가지며, 특히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있는 중등학교 학생은 신앙의 자유가 부인될 근거가 전혀 없다. 독일 아동청소년 종교교육법(Gesetz über die religiöse Kindererziehung) 제5조에서 어린이가 14세가 되면 종교적 신앙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며, 12세가 되면 지금까지 해오던 것이라도 그의 다른 종교적 신앙에 기초한 의사에 반하여 종교적 교육을 할 수 없다(Nach der Vollendung des vierzehnten Lebensjahrs steht dem Kind die Entscheidung darüber zu, zu welchem religiösen Bekenntnis es sich halten will. Hat das Kind das zwölfte Lebensjahr vollendet, so kann es nicht gegen seinen Willen in einem anderen Bekenntnis als bisher erzogen werden.)고 한 것은 매우 시사적이다. 이런 점에서 강제 배정된 종립학교에서 학생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종교교육을 하는 것은 학생의 종교의 자유에 대한 침해와 함께 불이익을 수반하여 차별행위가 된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여러 가지의 문제를 보면, 학생강제배정에 참여하는 종립학교에서 실시하는 종교교육의 정도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문제는 단순히 학생의 종교의 자유와 학교의 종교교육의 자유가 갈등하는 문제만은 아니고 좀 더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종교교육이 가능한가를 구명하는 것이다. 학생의 학교선택권이 제한되고 있는 현 제도 아래서 학생을 배정받은 종립학교가 실시할 수 있는 종교교육의 범위는 어느 정도일까?

(1) 종교의례참석 강요

종교의식에 참석하는 것은 당해 종교신자의 특권이며 비신자나 타종교신자의 참석이 항상 자유로운 것은 아니다. 종립학교의 경우 입학식, 졸업식이나 조회나 종례 등에서 종교의식 참석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행위는 자기가 원치 않는 종교를 믿지 않을 자유에 반하는 것이며, 거짓고백을 강요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비교육적이고 신앙의 자유도 침해할 여지가 많다. 따라서 학생은 종교의례참석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다만 학교는 종교의례 참석에 상응하는 대체교과(예를 들어, 철학, 종교학 등)의 이수를 요구할 수는 있을 것이다.

(2) 종교교리교육

특정 종교의 교리교육은 종교의식과 함께 종교교육의 중심이 되는 부분이다. 체계적인 교리를 학생들에게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가르치는 것은 매우 효과적인 종교교육이다. 그 종교를 믿는 학생들의 경우 보다 깊은 신앙을 가질 수 있고,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거나 종교를 가지지 않은 학생들도 이 교육과정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종교교리의 교육은 단순한 종교지식의 교육만은 아니고 믿음의 형성과 고백과 관련되는 것이라는 신앙고백 관점의 종교교육의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즉, 종교교과를 필수이수과목으로 하고 이를 거부하는 학생을 성적평가를 통해 제재하는 것은 사실상 종교의례를 요구하는 것이고 헌법상 요구되는 종교교육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라 생각된다. 학생의 학교선택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종교교리만을 가르치는 교과 역시 대체과목이 복수로 개설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3) 전학 요구

종교교육을 거부하는 학생에게 전학을 요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있는가? 학생이 학교의 모든 교육방침과 내용을 알고 입학하였고 학칙에 위반되면 퇴학을 포함하여 학교의 조치에 따르겠다고 서약하였을 경우 학교가 전학을 요구하는 것은 사법적 계약관계⁴⁹⁾라는 논리에서 정당하다는 주장을 하는 이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 보았듯이 학교의 종교교육의 한계를 넘어서는 권한의 행사에 따르지 않는 것은 학생의 종교의 자유에 속하므로 정당한 기본권의 행사에 대하여 학교가 전학을 요구할 수는 없다. 학생 역시 지금까지 다니던 학교에서 이룬 여러 가지 관계도 있고,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학교를 옮겨야 할 잘못을 결코 범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학생이 종교적 이유로 전학을 요구할 수는 있을지언정, 학교가 학생의 전학을 요구할 수는 없다고 생각된다. 앞서 얘기했듯이 종립학교라고 모든 학생에게 동일한 신앙과 동일한 행동을 요구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학생에게 전학을 요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전학을 거부한다 하여 제적처분을 하는 것은 더더욱 인정될 수 없다. 이런 행위는 종교적 관용을 거부하는 것이고, 비교육적이기도 하다. 다른 신앙까지도 포용할 수 있음을 가르치는 것이야말로 종교적 진리에 입각한 교육이라고 생각된다.

(4) 소결

종교적 의례에 참여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가장 궁극적인 신앙고백이 있어야만 가

49) 앞의 송실대학교 사건의 원심인 서울지방법원 1995. 7. 6. 선고, 95가합30135 판결에서는 학생과 대학교와의 관계를 기본적으로 사법상 계약관계로 보고 있다.

능한 것이다. 물론 종교교육방법으로 제한적인 의례참석을 요구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자발적으로 종교의식과 교육에 참여하는 학생에 대해서만 가능한 것이고, 이를 거부하는 학생에게 참석을 요구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성적평가를 나쁘게 하거나 심지어 전학까지 요구하는 것은 중립학교의 종교교육의 자유를 넘어서는 것이며 학생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현행 제도 아래서 중립학교는 적어도 종교과목과 함께 선택 가능한 다른 과목을 반드시 두어야 하며, 과목설치가 어려울 경우에는 종교교육거부학생을 대상으로 종교과목을 운영하면서도 다른 방식(예, 철학서 과제 등)으로 교과를 운영하여야 한다는 것이 헌법의 올바른 해석이다.⁵⁰⁾

3)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선택권이 보장될 경우의 종교교육의 문제

현재 발생하는 중립학교에서의 종교의 자유 침해문제가 학교평준화 때문이고 이를 폐지하고 중립학교가 그 설립이념에 따라 종교교육을 자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견해⁵¹⁾도 있다. 이 입장에서는 학생이 자발적으로 학교를 선택하였고 입학 시 종교교육을 받기로 동의하였기 때문에 학칙에 따라 제재를 수반하여 종교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가능하다⁵²⁾는 것이다. 만약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선택권이 인

50) 서울시교육청이 국회 최순영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서울시내 학교별 종교활동 현황)에 의하면, 개신교계에 속하는 중립학교는 불교나 천주교에서 설립한 학교에 비하여, 복수과목을 편성치 않아 종교교과 선택을 사실상 강제하고, 강제적인 종교활동을 실시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한겨레 2004. 8. 23.자 보도)

종교별	학교수	종교과목 편성교	복수과목 미편성교	종교활동 강제실시교
개신교(배정)	25	22	9	2
개신교(지원)	28	26	16	11
불교	3	3	0	0
천주교	3	1	0	0

51) 손봉호, “사립학교와 종교의 자유,” 제18회 국회인권포럼 정기심포지움 주제발표문, 2004. 8. 31. 참조.

52) 대법원 판례는 “사립학교는 국·공립학교와는 달리 종교의 자유의 내용으로서 종교교육 내지는 종교선전을 할 수 있고, 학교는 인적·물적 시설을 포함한 교육시설로써 학생들에게 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본질로 하며, 특히 대학은 헌법상 자치권이 부여되어 있으므로 사립대학은 교육시설의 질서를 유지하고 재학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법률상 금지된 것이 아니면 학사관리, 입학 및 졸업에 관한 사항이나 학교시설의 이용에 관한 사항 등을 학칙 등으로 제정할 수 있으며, 또한 구 교육법시행령 제55조는 학칙을 학교의 설립인가신청에 필요한 서류의 하나로 규정하고, 제56조 제1항은 학칙에서 기재하여야 할 사항으로 '교과와 수업일수에 관한 사항', '교사(또는 시립)와 과정수료에 관한 사항', '입학·편입학·퇴학·전학·휴학·수료·졸업과 상벌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립대학은 종교교육 내지 종교선전을 위하여 학생들의 신앙을 가지지 않을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생들로 하여금 일정한 내용의 종교교육을 받을 것을 졸업

정될 경우 중립학교의 종교교육의 범위는 어떤가? 학생의 학교선택권이 보장된다면 지금까지 중립학교에서 실시한 방식의 종교교육이 헌법상 허용될 수 있을까? 후술하는 바와 같이 전문가 대상 의견조사 결과는 학생의 선택권이 인정된다면 종교교과에서 특정종교의 교리와 신앙의 교육이 가능하다고 보는 경우가 전체의 54.1%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어느 경우에 학생의 학교선택권이 인정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며, 학생의 학교선택권 또는 학교의 학생선발권이 보장되는 경우라 해도 중립학교에서 학생의 의사에 반하여 종교교육을 하는 것이 학생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차별행위가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대립한다.

대법원 관례의 취지에 비춰볼 때 중고등학교도 학생의 학교선택권이 보장될 때는, 종교교육의 내용이나 방법이 지나친 것이 아닌 한, 학생의 의사에 반하는 종교 교육이라도 학생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진다. 그러나 중고등학교 평준화제도는 정책결정의 문제이고, 학생이 중립학교를 선택하여 입학하는 방식으로 입시제도가 바뀐다고 하여도 이것만으로 학생의 학교선택권을 충분히 보장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종래의 방식으로 중립학교가 학생에게 종교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헌법상 허용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실제 학교선택권이 충실히 보장되고 있지 못하다

지금과 같이 사립학교의 비중이 높고 사립학교 가운데도 중립학교의 비중이 상당히 높은 경우 상급학교 진학을 앞둔 학생들이 종교적인 고려까지 하여 학교를 선택한다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학생들의 선택권이 충분히 보장되고 있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제도적으로 학생이 학교를 선택할 권리가 보장된다 하여도 학생이나 학부모는 학교교육의 내용, 명망, 인지도, 통학거리 등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지 종교만을 유일한 요소로 하여 결정하지는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점은 후술하는 설문조사 분석에서도 드러난다.

요건으로 하는 학칙을 제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대학교의 예배는 복음 전도나 종교인 양성에 직접적인 목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신앙을 가지지 않을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생들에게 종교교육을 함으로써 진리·사랑에 기초한 보편적 교양인을 양성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대학예배에의 6학기 참석을 졸업요건으로 정한 위 대학교의 학칙은 헌법상 종교의 자유에 반하는 위헌무효의 학칙이 아니"고 "승실대학교에서 법학과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있을 당시 구 교육법시행령 제56조에서 학칙의 기재사항으로 규정한 교육과정이나 졸업·학위수여에 관한 사립대학의 학칙은 그 내용이 법령에 위배되거나 학교교육의 본질에 반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연히 구속력을 가진다"고 본다. 즉, "종교교육 내지 종교선전을 위하여 학생들의 신앙을 가지지 않을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생들로 하여금 일정한 내용의 종교교육을 받을 것을 졸업요건으로 하는 학칙을 제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8. 11. 10. 선고 96다37268 판결 【학위수여이행】)

(2) 입학 시 종교교육에 관한 모든 걸 제대로 알고 동의한 것은 아니다

후술하는 설문조사 결과분석에서도 드러나듯이 평준화 지역이든 비평준화 지역이든 중립학교에서 실시할 종교교육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하는 경우가 드물다. 입학요강에는 종교교육에 관하여 매우 포괄적으로 서술되어 있으며 설명회에서도 종교교육의 구체적 내용을 잘 알려주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학생들도 학교가 막연하게 종교교육을 한다는 것 정도만 알고 있다가 실제 이뤄지는 종교교육의 정도를 접하고 놀라는 경우도 적지 않다. 입학식장에서 비로소 중립학교라는 사실을 알고 입학선서를 하는 실정에서는 결코 학생이 학교의 종교교육의 방향과 내용을 잘 알고 동의하였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3) 신앙은 변한다

실사 학생이 학교의 교육방침과 내용을 잘 알고 입학하였다고 해도 학생이 입학시와 같은 신앙을 계속 갖는다고만 보기는 어렵다. 본래 선교(전도 또는 포교)는 신앙이 바뀔 수 있다는 전제에 서 있는 것이다. 같은 종교를 믿어도 다른 종교적 견해를 가질 수 있는 것이므로 중립학교가 종교교육을 하더라도 학생이 다른 신앙 또는 종교적 견해를 가지지 못하게 하거나 하나의 종교적 행동만을 하도록 요구할 수 없다는 것이다.

(4) 교육기관은 법적 제약을 받는다

중등 중립학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고 설립된 교육기관이므로 헌법상 종교의 자유, 종교분리의 원칙, 교육제도 법정주의, 교육기본법상의 교육이념 교육의 종교적 중립성 등을 존중하여야 하고 특히 종교적 관용을 교육하여야 함은 당연한 헌법적 요청이라 할 수 있다. 중등중립학교라도 다른 신앙과 생각을 존중하여 종교교과의 대체 교과목을 두어야 한다. 종교와 철학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비중립학교 뿐만 아니라 중립학교에도 당연히 해당되는 요청이다.

(5) 소결

이런 근거에서 학생의 학교선택권, 학교의 학생선발권이 보장된 경우라도 학생에게 학생이 원하지 않는 종교의례를 강요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물론 종교의례거부를 선동하거나 질서를 어지럽히는 경우는 학칙에 의한 징계가 가능하겠지만, 이 경우 징계는 종교교육거부가 아니라 다른 사유(학교 내 질서 위반)에 의한 것이라는 점이다.

3. 고용관계에서의 종교적 차별

근로기준법 제6조⁵³⁾는 근로관계에서 신앙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특정한 종교를 가지거나 가지지 않았음을 조건으로 채용·승진조건을 제시하는 경우 이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가? 중립학교는 교원임용과 승진의 조건으로 특정 종교를 가지거나 가지지 않을 것을 요구할 수 있는가?

이에 관해서는 미국에서 다양한 사례를 접할 수 있다. 미국은 고용관계를 포함한 시민들의 생활상 인권침해문제에 광범위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연방인권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이에 관하여 상당한 판례가 축적되어 있어 우리 법의 해석에도 많은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⁵⁴⁾ 여기서는 미국의 교원의 임용과 관련된 사항에 한정하여 살펴보기로 한다.⁵⁵⁾

인권법 제7장(Title VII)의 적용을 받는 사용자 또는 기타 관계자가 종교를 이유로 근로자 또는 지원자를 고용, 고용거부 또는 해고하거나 고용계약조건을 차별하는 것은 불법이다. 아울러 단순한 종교적 차별의 금지를 넘어 근로자의 종교를 배려할 의무까지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종교기관과 교육기관 등에 대해서는 §702, 703에서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1) 고용관계에서의 종교적 차별금지에 관한 미국 연방 법제 개요⁵⁶⁾

53) 제6조(균등한 처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54) 미국의 고용평등 관련 법제는 연방헌법 수정 제5조와 제1조 제8항(Art. I, §8, cl. 3)의 주간통상규정(Inter-state Commerce Clause)에 근거하여 제정된 1964년 연방인권법 제7장(The Civil Rights Act of 1964 Title VII)이 그 대강을 규정하고 있다. 이 법 제7장 §703(a)(1)에서 근로자의 종교를 기초로 차별대우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일정한 행정적 구제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고용관계에서의 차별금지를 위하여 연방고용평등위원회(Equal Employment Opportunity Commission)가 구성되어 있고, ‘차별금지에 관한 가이드라인’(Guidelines on Discrimination Because of Religion)을 작성(1967)하여 제시하고 있다. 또한 각 주별로 고용관계에서의 종교적 차별에 관한 별도의 입법을 하고 주 인권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다.

55) 송기춘, “종교계 대학교의 교원 임용과 종교적 사유에 의한 차별,” 민주법학 제41호,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2009.11., 219-254면.

56) 이하의 내용은 송기춘, “대학교원의 임용과 종교적 사유에 의한 차별,” 민주법학 제41호, 2009. 11.과 같은 이, “고용관계에서의 종교적 차별의 금지: 사인간의 관계에서의 종교의 자유 보장에 관한 미국 실지조사연구,” 헌법학연구 제16권 제1호, 2010. 3 참조.

(1) 종교적 차별의 일반적인 금지

연방인권법 제7장 §703(a)(1)⁵⁷⁾에서는 종교를 포함하여 여러 차별금지사유를 열거하면서 이들 사유에 기한 고용거부 또는 해고 등을 불법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연방헌법 수정 제1조에서 종교의 자유행사(Free Exercise)를 보장하고 있는 정신과 상통⁵⁸⁾한다. 한편, 연방인권법 제7장 §701(j)에서는 고용관계에서의 종교적 사유에 의한 차별을 단순히 금지하는 정도를 넘어서 “사용자가 사업운영에 부당한 어려움이 없이 근로자 또는 채용예정 근로자의 종교적 요구에 맞춰 합리적으로 조정을 하는 것이 불가능함을 입증하지 않는 한(unless an employer demonstrates that he is unable to reasonably accommodate to an employee’s or prospective employee’s religious observance or practice without undue hardship on the conduct of the employer’s business)” 사용자에게 근로자의 종교에 따른 합리적인 ‘업무상 조정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예를 들어,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근로자가 토요일 근무를 면제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 인력 운용에 부당한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으면 토요일 근무를 면제하고 일요일 근무에 배치하는 등의 업무상 조정을 하여야 한다.

(2) 종교적 사유에 의한 차별이 합리적인 경우

연방인권법 제7장에서는 종교적 사유에 의한 차별금지가 면제되는 경우를 몇 가지 규정하고 있다. 물론 주에 따라 별도로 추가적인 규율을 하는 경우도 있다. 학교에서의 고용관계에 관하여 한정하여 살펴보면, 1) 종교적 교육기관에 대한 적용 제외, 2) 종교 또는 종교단체에 의하여 전적으로 또는 중요부분이 지배되는 교육기관에 대한 적용 제외, 3) 종교가 직업적 필수요건이 되는 경우, 4) 학교 커리큘럼이 종교적 선교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등이다.

첫째, 교육기관이 종교적(religious)인 경우에는 “그 활동”에 관하여 특정 종교를 가진 사람을 고용할 수 있다(연방인권법 제7장 §702; 42 U.S.C. §2000e-1(a)). 교육기관이 종교적인지의 평가는 그 목적과 성격이 주로(primarily) 종교적인 경우여야 하는데, 학교의 소유관계(ownership), 종교와의 관련성(affiliation), 설립목적, 교원의 업무, 학생모집, 학생활동, 커리큘럼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성격이 ‘주로 종교적(primarily religious)’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⁵⁹⁾고 한다. 침례교대학교가 1) 그

57) “사용자(employer)가 (1)근로자의 인종, 피부색, 종교, 성(性) 또는 민족을 이유로 고용을 거부하거나 해고하는 행위 또는 그의 고용상 보수, 계약조건 또는 권리에 관하여 차별하는 것은 ... 불법적인 고용행위이다.”

58) Robert Belton, Dianne Avery, Maria L. Ontiveros, Roberto L. Corrada, Employment Discrimination Law, 7th ed.(Thomson West, The Labor Law Group, 2004), 578면.

대부분의 재원이 주 침례교회 총회에서 나온다는 것, 2) 대학교가 총회에 재정에 관한 보고를 한다는 것, 3) 대학교 운영위원회의 구성원이 모두 침례교인이라는 것, 4) 이 대학교가 전국침례교대학교 및 학교협회의 회원이라는 것, 5) 학교의 정관상 설립 목적이 기독교신앙의 증진이라는 것 등을 입증하면 §702의 종교적 법인 또는 학교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는 판례⁶⁰⁾가 있다. Kamehameha Schools 판결⁶¹⁾에서는 이 학교가 비록 개신교 정신을 구현하는 학교로서 개신교인 교사만을 임용하라는 유언에 의하여 설립되었다고 하더라도 유언 그 자체가 학교를 설립한 것이 아니라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학교의 설립목적 및 교육과정, 교사 및 학생활동 등 전반을 검토하여 이 학교가 주로 종교적이라기보다는 세속적이라고 판단하여 종교적 교육기관에 대한 인권법 제7장 적용 제외 주장을 배척하고 있다. 또한 교육과정 자체가 종교적이지도 않고 프랑스어 과목교사의 직업적 필수요건으로서 일반적으로 종교가 요구되는 것도 아니라는 점에서 개신교인만 지원할 수 있는 이 학교의 교사자격요건이 종교적 차별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로올라대학 사건⁶²⁾과 같이 제수이트회에 관련된 시카고 로올라대학교의 철학부에서 제수이트 정신의 구현이라는 설립 목적의 실현을 위하여 이미 재직중인 3명 이외에 추가로 4명의 제수이트 대학 철학 교수를 임명하는 것은 종교적 차별이 아니라고 한 것과 비교된다. 즉, 제수이트 정신의 구현을 위하여 제수이트 교단 소속 교수의 임용이 필요한 최소한으로 요구된다면 그것은 합리적인 것이며 이를 종교적 차별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둘째, 교육기관에서 특정한 종교를 가진 사람을 고용자격으로 요구하는 게 가능한 두 번째 경우는 종교단체가 소유·지원·통제·운영하는 경우(연방인권법 제7장 §703(e)(2); 42 U.S.C. §2000e-(e)(2))⁶³⁾이다. 대체로 교회에서 직접 운영하고 교원의 급여의 대부분을 교회의 재정으로 충당하는 교회부설 학교나 특정 종파의 성직자 양성을 위한 신학교의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셋째, 종교가 특정한 업무 또는 사업에 필요한 자격이 되는 경우(연방인권법 제7장

59) EEOC v. Kamehameha Schools/Bishop Estate, 990 F. 2d 458(9th Cir.), cert. denied, 510 U. S. 963(1993).

60) Killinger v. Samford University, 113 F. 3d 196(11th Cir. 1997).

61) EEOC v. Kamehameha Schools/Bishop Estate, 990 F. 2d 458(9th Cir. 1993); 이승명령신 청 기각, 510 U.S. 963(1993).

62) Pime v. Loyola University of Chicago, 803 F. 2d 351, 358(7th Cir. 1986).

63) “학교, 단과대학, 대학교 기타 교육기관 또는 학습기관이 특정 종교 또는 특정 종교적 법인 (corporation), 단체(association) 또는 결사(society)에 의하여 전적으로 또는 중요한 부분(in substantial part)에서 소유, 지원, 관리 또는 운영되는(owned, supported, controlled or managed) 경우 이들이 특정 종교를 가진 근로자(employee)를 고용하는 것은 불법고용행위가 아니다.”

§703(e)(1); 42 U.S.C. §2000e-(e)(1))⁶⁴가 있다. 예를 들어, 종교적 문제에 관한 컨설턴트를 채용할 경우는 특정 종교에 관한 신앙과 지식을 가질 것이 그 직업수행을 위한 필수요건이 될 수 있다. 종립학교가 아니더라도 담당하고 있는 업무나 교육내용이 특정 종교신앙과 관련된 것일 경우에는 그 직업의 수행에 종교적 요건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하다.

넷째, 학교가 특정 종교의 선교를 위하여(directed toward the propagation of a particular religion) 설립된 경우에는 종교적 사유에 의한 차별이 가능하다(연방인권법 제7장 §703(e)(2) 후단 부분; 42 U.S.C. §2000e-2(e)(2))⁶⁵. 단순히 ‘기독교 이념에 입각한 교육’을 한다는 것 정도로는 부족하며 종교적 내용이 구체적으로 교육 과정과 학생활동 및 교원의 활동에 반영되어 있어야 한다. 이 조항은 본래 성직자 양성을 위하여 설립되고 그에 따른 교육과정을 가지는 학교에 한정되어 적용될 것을 상정한 조항이다.

(3) 소결

연방인권법 제7장에서는 일반적으로 종교적 차별을 금지하되 교육기관이 종교적인 경우, 종교단체 등에 의하여 전적으로 또는 중요한 부분에서 지배되는 경우, 특정 종교가 직업수행의 필수요건인 경우, 교육기관의 커리큘럼이 특정 종교의 선교를 목표로 하는 경우에는 특정 종교인을 자격조건으로 요구한 것이 불법적 고용행위가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다. 특정한 종교적 목적을 위해 설립되어 정규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를 설립하는 경우라도 그 종교적 교육의 정도가 크지 않아 학교가 ‘주로 세속적’이라고 평가되면 그 학교 교원의 채용에 종교적 조건을 요구하는 경우는 당연히 종교적 차별이 된다. 다만, 그 직무수행에 종교가 필수적 요건이 된다고 할 수 있는 종교 교과 교사나 교목에 대해서는 직업적 필수요건 규정에 의하여 종교적 조건에 대해 합리적이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앞의 Kamehameha Schools 판결에서 볼 수 있듯이, 학교의 교육과정에 매 학기 한 학기 정도의 채플 이수와 종교과목을 이수하여야 하고 방과 후 또는 정규 교육과정 이외에 종교적 활동을 하는 것이 아무리 그 학교의 일반적인 분위기이고 또 학교가 이를 예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그 학교가 종교적 교육기관이라고 판단할 것이라고 단정하기 힘들다⁶⁶)고 한 점은 우리에게

64) “종교…가 특정한 업무 또는 사업의 정상적인 운영에 합리적으로 필요한 직업적 필수요건 (bona fide occupational qualification)인 경우… 종교에 기초하여 사용자가 직원을 고용하는 것은 불법적인 고용행위가 아니다.”

65) “학교의 커리큘럼이 특정 종교의 선교를 위하여 마련된 것일 때에는 그 특정 종교를 가진 사람만 채용하는 것은 불법적인 고용행위가 아니다.”

게 매우 시사적이다.

2) 종립학교 교원임용계약에서의 종교적 조건의 가능성과 정도

우리나라에서 종교적 교육이념을 추구하는 학교의 설립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종립 학교에서 일정한 정도의 종교적 교육을 하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다. 그러나 아무리 종립학교라 하더라도 대부분 세속적인 교육을 목적으로 한 세속적 교육기관으로 인가를 받게 된다는 점에서 그것이 특정 종교단체가 자신의 신도나 교직자의 양성을 위해 지배하는 학교가 아닌 한 일반적인 교원의 임용에서 종교적 조건을 요구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된다. 문제는 그러한 종교적 조건의 요구가 어느 정도까지 인정될 수 있는가이다. 과연 어떤 내용이 가능하며 어느 정도의 조건의 제시가 가능하다고 할 수 있을까?

대체로 종립학교의 교원임용에는 학교의 직업수행의 자유와 교육권과 종교교육권과 지원자의 종교의 자유, 평등권 등이 조화롭게 보장되어야 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종립학교가 교원임용에 제시할 수 있는 종교적 조건이 임용지원자의 종교의 자유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것이 되기 위해서는 첫째, 종교적 조건의 업무관련성, 둘째, 종교적 조건의 필요성이 그 판단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첫째, 종립학교에서 교원이나 직원을 채용할 때 종교적 조건을 요구하는 것은 그것이 교원 또는 직원이 수행할 업무에 관련되는 것이어야 한다. 이 점은 승진 등 고용관계 전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업무관련성은 특정한 종교적 신앙이나 행위의 강제 또는 금지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지 않고 종교 이외의 생활관계에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계약이 체결되고 계약조건이 결정된다는 의미이다. 계약상 내용이나 조건이 종교적인 것이라고 해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되고, 업무수행에 필요하다면 종교적 조건이 업무와 관련이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임용계약의 종교적 조건은 업무와 관련되는 것일 뿐 아니라 업무수행에 필요한 것이어야 한다. 즉, 종교적 조건 또는 자격이 없이는 그 업무수행이 어려운 경우여야 하므로 업무수행을 위해 종교적 조건이 적합한 수단인 경우이며 아울러 업무수행에

66) EEOC v. Kamehameha Schools/Bishop Estate 판결에서는 ‘이 학교의 종교적 성격은 대체로 비교종교학, 정기적인 기도와 예배, 학교출판물에 성서구절 인용, 세속적인 과목을 가르치는 교사임용에 외형상 개신교인 임용 등 최소한에’ 그치며, ‘이 학교의 목적과 성격은 일차적으로 세속적이며, 일차적으로 종교적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하면서 종교적 교육기관에 의한 면제를 받기에 부족하다고 한다.

필요한 한도에서만 인정되어야 한다. 직업적 필수요건(bona fide occupational qualification)에 해당되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3) 종교적 임용조건은 업무관련성과 필요성이 있는가

(1) 종교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의 경우

종립학교의 설립이념인 종교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의 경우는 특정 종교에 대한 믿음과 지식을 갖출 것이 요구되므로 그러한 신앙과 지식을 객관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종교적 조건을 요구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현행 교육과정에서 종교교육이 특정종교의 신앙교육이 아니라라는 점에서 종교교과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가 반드시 특정 종교인이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주장이 타당하다고는 할 수 없다. 또한 설사 이러한 종교적 조건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하여도 일정한 객관적 징표(세례, 수계증명서, 교인증명서 등)를 갖추지 않을 경우 임용을 위한 지원 자체가 불가능한 것으로 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교원 일반에 대한 경우

종립학교의 교육내용이 세속적인 것이고, 교원이 수행하여야 할 직무 또한 비종교적인 것일지라도 학교의 교육방식이 종교적 분위기 속에서 일정한 종교생활까지 지도하고자 하는 것이라면 교원에게 나름의 필요한 종교적 조건이 요구될 수 있다는 주장은 타당성을 가진다. 그러나 아무리 종교적 교육을 한다고 해도 그러한 교육을 위한 교원의 일반적 자격으로 특정 종교의 특정한 요건을 요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 이유로는 다음과 같은 사유를 들 수 있다. 첫째, 학교가 특정한 종교의 신자를 만들어 내기 위한 교육과정을 가진 것이 아니라 일차적으로 학문적 진리탐구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즉, 교육과정에 종교 관련 교과가 있다 하더라도 이는 극히 미미한 정도에 불과하고 학교 전체의 분위기가 종교적이라 하더라도 대부분은 정규 교육과정 이외의 방과후 활동의 성격을 가진다는 것이다. 둘째, 학교의 설립이 여전히 제한적이며 교원임용에 지원하는 사람의 경우 학교에 대하여 매우 불리한 지위에 있다는 점이다. 즉, 계약상대방 결정의 자유가 극히 제한되는 실정이다. 셋째, 종교교육을 담당하지 않는 일반교원이 아무리 종교적 지도역할을 맡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정규교육과정에서 주된 임무가 아닌 이상 결정적인 지원자격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즉, 학교에서 교원이 차지하는 종교적 지도역할의 정도에 비례하여 일정한 종교

적 기준을 심사단계에서 고려할 수 있겠으나 이를 지원자격 자체를 제한하는 결정적인 기준으로 하는 것은 비례적 한계를 넘어선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넷째, 설사 요구되는 종교적 기준을 충족하였다 하여도 인간이 가지는 종교의 자유는 자신의 신앙을 선택하고 바꿀 권리도 포함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개종(改宗)의 자유가 인정되는 것이고 개종이 교원해임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 당초 임용단계에서부터 종교적 조건을 요구할 수는 없는 것이다.

물론 일반적으로 당해 학교의 설립이념인 종교를 존중할 것을 요구할 수는 있다고 생각된다. 이 점에서 학교를 설립·운영하고 있는 특정한 종교에 대한 지원자의 생각을 듣고 최소한의 수준에서 고려하는 것은 가능하리라 생각한다. 당해 종교에 대한 지원자의 생각을 제출하도록 하고 교목실에서 이를 검토하는 것은 그나마 타 종교에 대해 관용적인 태도라고 볼 수 있으나 이마저도 필요하지 않은 요구이다. 학교의 종교와 아무리 충돌하는 생각을 가졌다고 해도 단순한 신앙이나 사상만으로는 이를 처벌하거나 문제 삼을 수 없는 것이고 그것이 외부의 행위가 되어 징계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징계절차에 의하여 해결하면 되기 때문이다.

종교교육이나 활동에 관계되는 교직원에게는 종교적 조건을 요구할 수 있겠지만 학교 내에서 담당하는 업무가 일차적으로 종교교육이 아닌 교원에게까지 종교적 조건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히 허용되지 않는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업무관련성과 필요성이라는 요건에 의하여 판단하면 족하며 모든 교직원을 대상으로 종교적 요건을 요구하는 것은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 종교적 차별이라 할 수 있다.

4.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 분석

1) 의견조사 대상과 방법

종교적 차별에 관한 전문가의견조사는 헌법학을 포함한 공법학자, 교육법학자와 종교교육학자 등을 대상으로 하였다. 종교적 차별이 종교, 교육, 차별 등 요소에 대한 판단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는 종교학, 교육학과 법적 판단을 아우르는 것이기 때문이다. 연구기간 중 한국공법학회, 한국헌법학회, 한국교육법학회, 대한교육법학회, 공법이론과관례연구회, 한국종교교육학회 등에 요청하여 소속회원에게 이메일로 첨부 설문지를 발송하여 작성한 설문지를 이 연구책임자에게 발송하도록 하여 접수된 설문지를 분석하였다. 한국종교교육학회 소속 회원의 응답은 없었으며, 전체 61명의 전문가

가 의견조사에 응하였다.

전문가의 연구 분야로는 헌법 26명(42.6%), 행정법 7명(11.5%), 교육법 1명(1.6%), 기타 법학분야 8명(13.1%), 교육학 2명(3.3%) 등으로 대부분 법학분야의 전문가들이다. 소속 직장이 특정 종교와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52명이 무관하다고 답하였으며(85.2%), 7명이 관련이 있다고 응답하였다(11.5%). 성별로는 남자 51명(83.6%), 여자 9명(14.8%), 무응답 1명이었다. 전문가의 종교로는 불교 13명(21.3%), 개신교 16명(26.2%), 천주교 5명(8.2%), 유교 1명(1.6%), 기타 2명, 없음 23명(37.7%), 무응답 1명 등이다.

2) 의견조사 결과 분석

(1) 종교교과에서 특정종교 교리 및 신앙교육 가능 여부

종립학교에서 종교교육을 할 수 있다는 견해가 46명(75.4%), 할 수 없다는 견해가 9명(14.8%)이었다.

< 표 2 > 종교교과에서 특정종교 교리 및 신앙교육 가능 여부

항목	빈도	퍼센트
언제나 할 수 있다	3	4.9
학생과 부모의 학교선택권이 있으면 가능	33	54.1
입학 이전 종교교육 실시 고지 시	10	16.4
할 수 없다	9	14.8
기타	5	8.2
무응답	1	1.6
합계	61	100.0

기타로 분류된 의견은 학생에게 참가를 묻고 찬성자에 한하여 할 수 있다는 견해, 입학 전에 공지하여야 하고 학생의 학교선택권이 보장될 것을 조건으로 할 수 있다는 견해, 법적으로 입학 이전에 고지한 경우 가능하다고 보면서도 “교육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학생의 분포 등을 고려하여 학교의 설립, 통합, 폐교 등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므로 학교선택권이 있다기보다는 근처의 학교로 갈 수 밖에 없는 경우가 있어서 이러한 전제하에서는 교과목으로서 교리수업의 종교교육 외에 종교적 의식이나 행사를 하는 것은 종교의 자유의 측면에서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 대체로 기타의 의견도 가능하다는 의견에 속하며 조건에 대한 차이가 있다고 보인다.

이 경우 전문가의 78.7%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학생의 학교선택권이 보장된다고 할 수 있는 여건과 상황, 학생에 대해 종교교육을 고지하는 정도 등에 대해서는 이 조사에서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학생에 대한 설문조사에서도 드러나지만 학생에 대해 학교선택권이 인정된다고 해도 실제 집에서 가깝고 상급학교 진학에 유리한 학교를 선택하다보면 종교교육에 대한 고려나 동의는 뒷전으로 되는 경우가 많고, 종교교육을 실시한다고 설명하거나 알린다고 하는 경우도 그 내용이 추상적이고 포괄적으로 설립이념만을 언급하거나 구체적 내용을 말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전문가 조사결과에서는 큰 틀에서 학생의 학교선택권의 보장과 학교의 설명의무 이행 등을 조건으로 종교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는 점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대체로 중립학교에서 당해 학교 설립이념에 따른 종교교육의 자유를 일정 한도에서 가능하다고 보는 견해로 분류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후술하듯이 학교의 선택권이 보장되거나 학교의 설명이 충분하여 종교교육을 실시한다 해도 그에 대해 가해질 수 있는 불이익이나 제재 등에 한계가 있어 종교교육의 한계를 인정하는 견해가 대부분이다.

(2) 학교행사에서 특정종교 의식 가능 여부

전체적인 분포는 종교교과교육에 대한 의견과 비슷하게 나타나지만, 종교교과와 달리 할 수 없다는 견해가 5명 증가하였다.

<표 3 > 학교행사에서 특정종교 의식 가능 여부

항목	빈도	퍼센트
언제나 할 수 있다	3	4.9
학생과 부모의 학교선택권이 있으면 가능	28	45.9
입학 이전 종교교육 실시 고지 시	11	18.0
할 수 없다	14	23.0
기타	4	6.6
무응답	1	1.6
합계	61	100.0

종교교육을 종교교과의 교육 중심으로 보는 견해라고 생각된다. 종교의식 실시도 종교교과 교육과 마찬가지로 학생의 학교선택권과 종교의식 실시에 대한 고지에 좌우되는 것으로 보는 견해가 다수이다. 하지만 학교선택권이 보장되는 여건과 학교의 설명 정도에 대한 의견이 어떠한지는 이 조사에서 드러나지 않았다.

(3) 조회, 종례 또는 비종교 교과수업에서 특정종교의식 가능 여부
 종교교과에서의 종교교육이나 학교행사에서의 종교의식과 비교할 때 좀 더 학교의 종교교육에 대한 제한이 엄격해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 4 > 조회, 종례 또는 비종교 교과수업에서 특정종교의식 가능 여부

항목	빈도	퍼센트
언제나 할 수 있다	2	3.3
학생과 부모의 학교선택권이 있으면 가능	24	39.3
입학 이전 종교교육 실시 고지 시	7	11.5
할 수 없다	24	39.3
기타	3	4.9
무응답	1	1.6
합계	61	100.0

학생의 학교선택권이 인정되거나 학교의 종교의식 실시 등에 관한 고지 등이 있을 경우라도 앞의 두 경우와 비교하여 할 수 없다는 의견이 24명(39.3%)로 좀 더 높게 나타난다. 이러한 수치의 차이가 학교에서의 종교교육의 중심을 종교교과로 보고 학교의 공식적 행사보다 학급별 조회나 종례 등의 비중을 낮게 평가한 데 따른 것인지, 세속적 교과목에 대한 교육에서 종교의식을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데 따른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4) 중등교육과정에서 종교교육의 수준 및 가능 범위

특정 종교교리와 신앙교육이 가능하다(앞에서 말한 ①유형의 종교교육)는 견해는 21명으로 전체의 34.5%이며, 일반적 종교 종교교육과 지식으로서의 종교교육(③유형의 종교교육)이 가능하다는 견해는 34명으로 55.7%이다. (1)에서 학생의 학교선택권이나 종교교육에 대한 사전고지가 있으면 종교교과에서 특정 종교교리를 가르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한 입장이 65.4%에 이르렀던 것과 비교하면, 종교교리교육과 신앙교육에 더하여 주요 종교교리를 교육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합한 수치(65.6%)와 거의 같다는 점에서 (1)에서 학교선택권이나 학교의 종교교육 사전고지가 있으면 종교교육이 가능하다고 한 이들 가운데 31% 정도는 신앙교육 위주의 종교교육을 지지한 것은 아니고 지식으로서의 여러 종교의 교리교육에 한정하여 종교교육을 지지하는 견해를 알 수 있다.

<표 5 > 중등교육과정에서 종교교육의 수준 및 가능 범위

항목	빈도	퍼센트
일반적 종교 이해 교육만 가능	15	24.6
일반적 종교 이해와 주요 종교 교리 등의 지식교육 가능	19	31.1
종교 일반 이해, 주요 종교 지식습득, 특정종교 교리 교육 가능	17	27.9
해당 학교의 설립이념에 따른 종교교리 및 신앙교육만도 가능	4	6.6
잘 모르겠다	2	3.3
기타	3	4.9
무응답	1	1.6
합계	61	100.0

한편, 현행 교육과정에서는 종교교과목이라 해도 특정종교교리나 신앙교육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종교 일반에 대한 교육을 추구하고 있으므로 44% 이상이 현행 종교교육 제도에 대해 잘 알고 있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5) 선지원, 후추첨의 평준화 지역에서 종교교육 가능 여부

이 질문은 (1) 학생과 부모의 학교선택권이 있으면 가능하다고 답한 사람들에 한정된 설문항목이다.

<표 6 > 선지원, 후추첨의 평준화 지역에서 종교교육 가능 여부

항목	빈도	퍼센트
가능하다	12	19.7
안된다	18	29.5
잘 모르겠다	2	3.3
기타	2	3.3
무응답	27	44.3
합계	61	100.0

(1)에서 학생의 학교선택권에 따라 종교교육의 실시 가능 여부가 판단된다고 한 경우가 33명(54.1%)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할 수 있다고 한 의견이 12명으로 급격하게 감소한 것은 선지원후추첨제도가 실질적으로 학생의 학교선택권을 보장하지 못하는 것이라는 인식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6) 비평준화 지역에서 종교교육 가능 여부

이 질문은 (1)에서 학생과 부모의 학교선택권이 있으면 가능하다고 답한 사람들에 한정된 설문항목이다.

<표 7 > 비평준화 지역에서 종교교육 가능 여부

항목	빈도	퍼센트
가능하다	25	41.0
안된다	6	9.8
잘 모르겠다	2	3.3
기타	1	1.6
무응답	27	44.3
합계	61	100.0

비평준화지역은 학생의 학교선택권의 보장과 긴밀한 관련이 있다. 그러나 (1)에서 학교선택권이 있을 경우 33명(54.1%)이 종교교육이 가능하다고 한 것과 비교하면 25명(41.0%)만이 종교교육이 가능하다고 응답하여 19% 정도가 비평준화지역이라도 학교선택권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는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7) 대학교에서 종교교육 가능 여부

대학교의 경우는 본래 이 연구범위에 속하지 않으나, 학교선택권과 관련하여 의미 있는 설문항목으로 포함시켰다.

<표 8 > 대학교에서 종교교육 가능 여부

항목	빈도	퍼센트
가능하다	23	37.7
안된다	5	8.2
잘 모르겠다	2	3.3
기타	3	4.9
무응답	28	45.9
합계	61	100.0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비평준화지역에서와 같이 학교의 선택권을 주요한 요소로 고려하여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8) 종교교육 고지 방식차이

이 항목은 (1)의 설문에서 ③학생에게 당해 학교에서 설립이념인 종교에 따라 종교교육을 실시한다는 것을 알렸을 때 종교교육이 가능하다고 답한 이들(1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이다.

<표 9 > 종교교육 고지 방식차이(괄호 밖은 빈도수, 괄호 안은 비율)

항목	가능하다	안 된다	잘 모르겠다	무응답	합계
종교교과 이수가 필수라고만 명시한 경우	4 (6.6.)	3 (4.9)	1 (1.6)	53 (86.9)	61 (100.0)
설립이념 및 종교교육에 대한 포괄적 설명을 한 경우	7 (11.5)	1 (1.6)	1 (1.6)	52 (85.2)	61 (100.0)
종교교육에 대한 구체적 내용(종교교과, 행사시 종교의식 등) 설명	7 (11.5)	0	1 (1.6)	53 (86.9)	61 (100.0)
입학 전후의 종교교육 내용이나 방식이 서로 다를 경우	1 (1.6)	5 (8.2)	2 (3.3)	53 (86.9)	61 (100.0)

이 가운데 모두 8명이 응답하였으며, 대체로 필수교과임을 명시한 경우만으로는 안 된다는 견해가 3명이지만 포괄적 설명이나 구체적 설명이 있으면 가능하다는 의견이 많다. 한편, 이러한 설명이 학생의 동의의 기초이므로 입학 이전의 설명과 입학 이후의 교육의 내용과 방식이 다를 경우 안 된다는 의견은 5명으로 응답자 가운데 61.3%를 차지하였다.

(9) 학교의 설립이념과 다른 타종교 또는 무종교 학생의 종교교육 거부 여부

학생의 종교가 학교의 종교와 다를 경우 학생의 종교교육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종교교육을 받지 않을 수 있다는 응답자는 65.6%로 거부할 수 없다는 의견 21.3%와 비교하면 압도적으로 거부가 가능하다는 의견이 많다.

<표 10 > 학교의 설립이념과 다른 타종교 또는 무종교 학생의 종교교육 거부 여부

항목	빈도	퍼센트
학교선택권이 있다면 거부할 수 없다	13	21.3
종교교육 실시를 알고 입학하였다면 거부할 수 없다	7	11.5
종교교육을 받지 않을 수 있다	40	65.6
무응답	1	1.6
합계	61	100.0

(1)에서 중립학교에서의 종교교육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75.4%였던 것과 비교하면 학생의 명시적인 종교교육 거부 의사표시가 있을 경우 종교교육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으로서 대광학원에 대한 손해배상사건의 대법원의 판례와 같은 취지이다. 학교선택권이 있으면 거부할 수 없다는 의견은 13명으로 (1)에서 33명이 가능하다고 한 것

과 비교하면 종교교육의 한계가 있음을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0) 종교적 차별인지 여부(괄호 밖은 빈도수, 괄호 안은 비율)

종교교육과 관련하여 학교생활에서 학생이 받는 괴로움과 불이익, 징계 등과 관련하여 이것이 차별인지를 판단하는 설문이다. 이것이 교육기관에서의 행위라는 점에서 교사에 의한 상담(50.8%)이나 단순한 괴로움(27.9%)에 대해서는 이를 차별로 보지 않는 견해가 상대적으로 많으나 전체적으로 종교교육으로 인하여 겪는 어려움도 차별에 해당한다는 견해가 많다.

<표 11 > 종교적 차별인지 여부(괄호 밖은 빈도수, 괄호 안은 비율)

항목	차별임	차별아님	모르겠음	기타	합계
자신과 다른 종교 또는 종교의식에 대한 거부감 등으로 인한 괴로움	41 (67.2)	17 (27.9)	3 (4.9)	0	61 (100.0)
종교교과 미이수로 인한 졸업 또는 진급 거부	55 (90.2)	3 (4.9)	1 (1.6)	2 (3.3.)	61 (100.0)
학칙에 따른 징계	50 (82.0)	6 (9.8)	2 (3.3.)	3 (4.9)	61 (100.0)
교사와의 상담	28 (45.9)	31 (50.8)	2 (3.3.)	0	61 (100.0)
교사의 훈계	44 (72.1)	10 (16.4)	4 (6.6.)	3 (4.9)	61 (100.0)
종교교육 거부 학생에 대한 전학 요구	52 (85.2)	4 (6.6.)	2 (3.3.)	3 (4.9)	61 (100.0)
종교교과 대체교과목의 미개설	52 (85.2)	5 (8.2)	2 (3.3.)	2 (3.3)	61 (100.0)
종교교과 대체과목 이수시 과제물이나 공부부담을 더 받게 하는 경우	53 (86.9)	4 (6.6.)	4 (6.6)	0	61 (100.0)
종교교과 대체과목을 듣기 위해 다른 학교로 이동하는 경우	49 (80.3)	7 (11.5)	5 (8.2)	0	61 (100.0)
종교 관련 활동이나 경연대회 수상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하는 경우	31 (50.8)	25 (41.0)	4 (6.6)	1 (1.6)	61 (100.0)

종교교육으로 인하여 겪는 괴로움은 41명(67.2%), 졸업 또는 진급 거부는 55명(90.2%), 학칙에 따른 징계는 50명(82.0%), 교사의 훈계는 44명(72.1%), 전학요구는 52명(85.2%), 대체교과목의 미개설은 52명(85.2%), 대체과목 이수의 어려움 과중은 53명(86.9%), 대체교과 수강을 위한 학교이동은 49명(80.3%), 종교 관련 수상 사항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는 31명(50.8%)이 차별이라고 답하였다.

(11) 교직원 채용 시 특정종교인으로 자격 제한 여부

종립학교에서 교직원을 채용할 때 종교적 조건을 요구할 수 있는가와 관련하여 할

수 없다 14명(23.0%), 종교관련 업무담당 교원의 경우만 가능하다 25명(41.0%), 모든 교직원의 경우 가능하다 16명(26.2%)의 분포를 보였다.

<표 12 > 교직원 채용 시 특정종교인으로 자격 제한 여부

항목	빈도	퍼센트
할 수 없다	14	23.0
종교교과 또는 종교 관련 업무 담당 교직원의 경우만 가능	25	41.0
모든 교직원 가능	16	26.2
잘 모르겠다	1	1.6
기타	4	6.6
무응답	1	1.6
합계	61	100.0

(12) 소결

이상의 의견조사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학생의 학교선택권이 보장되면 학교의 종교교육이 가능하다고 보는 견해가 전체의 54.1%에 이르나 이들이 평준화지역에서 선지원·후추첨이 실시되는 경우나 비평준화지역에서의 학교지원을 학교선택권이 적절하게 보장된 것이라고 보는 것은 아니다. 선지원·후추첨의 경우는 19.7%, 비평준화지역은 41%만이 종교교육이 가능하다고 답하였다.

둘째, 학교가 학생에게 종교교육에 대해 사전에 고지를 하면 종교교육을 할 수 있다는 응답자가 전체의 16.4%이나 이 가운데 단지 종교교과목이 필수라고 표시한 정도로는 안 된다는 견해가 많으며, 포괄적 설명을 하거나 구체적 설명을 한 경우에는 종교교육이 가능하다는 입장이 대부분이다.

셋째, 종교교육을 실시하는 경우라도 그것이 졸업이나 진급을 어렵게 하거나 학칙에 따라 징계를 하는 정도까지 제재가 가해져서는 안 된다는 견해가 많다. 졸업이나 진급의 거부가 차별이라고 하는 견해는 90.2%, 학칙에 따른 징계가 차별이라는 견해는 82.0%, 대체교과목 미개설이나 대체교과목 수강의 어려움 등이 차별이라는 견해는 85~86%에 이른다. 단순한 종교의 자유 침해를 넘어서서 학교생활에서의 불이익이나 징계 등 처분과 관련된 때는 그것이 차별행위라고 보는 견해가 많음을 알 수 있다.

넷째, 종교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해도 종교교육에 대해 학생의 종교를 이유로 한 명시적인 거부 의사에 반해서까지 할 수 없다는 의견이 전체의 65.6%에 달하여 종교교육의 한계에 대해 지지의견이 많음을 알 수 있다.

제3장 종교적 차별에 대한 국내외 사례 연구

1. 외국에서의 판단기준과 판례: 미국을 중심으로

외국에서 종교적 차별에 대한 판단기준과 판례는 원칙적으로 국공립학교를 대상으로 한 것이다.⁶⁷⁾ 이 장에서는 외국의 경우 주로 미국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거기에 몇 개의 나라를 추가하여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1) ‘종교교육’ 개념의 문제

다른 나라의 사례를 살펴보기 전에 미국에서 ‘종교교육’에 대한 개념이 어떠한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흔히 사용하는 종교교육에 대하여 미국의 연방정부와 연방대법원은 두 가지 개념을 구분하여 사용한다. 즉 특정 종교를 위한 교육으로서의 종교교육(education of religion)과 종교 일반에 대한 교육으로서의 종교교육(education about religion)을 구분하고, 후자를 공립학교에서 인정하였다.⁶⁸⁾

‘종교에 대한 교육’은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⁶⁹⁾ 첫째, 종교에 대한 학교의 접근방법은 학문적(academic)이지 헌신적(devotional)인 것이 아니다.

둘째, 학교는 학생들이 종교를 알게 하는 것(awareness)을 추구해야지 어떤 종교를 받아들이도록(acceptance) 압력을 가해서는 안 된다.

셋째, 학교는 종교에 대해 공부하도록(study) 후원을 해야지 종교를 실천(practice)하도록 지원해서는 안 된다.

넷째, 학교는 종교적 견해의 다양성을 학생들에게 보여주어야지(expose) 어떤 특정한 견해를 갖도록 강요해서는(impose) 안 된다.

다섯째, 학교는 모든 종교에 대해 교육을 해야지(educate) 종교를 증진하거나 부정해서는(promote or denigrate) 안 된다.

67) 박홍우, 미국헌법, 사법연수원, 2005; 이영진, 종교의 자유의 한계와 정보분리에 관한 연구, 법학박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1998; 문화관광부, 종교관련법 조사 및 입법방향 연구, 2004 참고. 다만, 우리나라에서 종교적 차별에 대한 문제가 대부분 사립학교인 종립학교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고려하면, 외국의 판례를 이해함에 있어서 이 점을 감안해야 한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공교육에서 사립학교의 위상과 그에 대한 국가의 행·재정적 관계 그리고 사립학교의 의사결정구조 등은 별론으로 한다.

68) 류성민 외 1인, 외국(영, 미)의 종교교육제도 개선사례 연구, 문화체육관광부, 2011, 20면.

69) 위의 보고서, 76-77면.

여섯째, 학교는 학생들에게 다양한 신념을 알려 주어야지(inform) 어떤 특별한 신념을 학생들이 확신하도록(conform)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기준이 우리나라 사립학교에 대하여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지는 검토가 필요하지만, 우리나라의 현실을 고려할 때 유의미한 시사점을 준다. 즉 이러한 기준은 최소한 사립학교에서도 유지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2) 미국

(1) 종교교육에 대한 지침

미국의 경우 18세기 후반에서 19세기 초까지도 기독교 중심의 종교교육이 공교육 체제에 남아 있어 종교의 자유와 국교 설립 금지를 규정한 헌법에 위반되는 사례가 많았다.

20세기 중반에 연방대법원은 공립학교 정규 수업시간에 특정 종교 위주의 종교교육이나 신앙교육(the education of religion)은 위헌이나 종교에 대한 교육(the education about religion)은 가능하다는 판례를 정립하였다.

그 후 수많은 대법원 판례를 통해 공립학교에서 학생의 종교적 자유를 최대한 허용하는 한편 교사 및 교육행정 담당자의 종교적 중립의 의무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귀결되었다.⁷⁰⁾(<표 13> 참조⁷¹⁾)

<표 13 >미국 교육제도 변천과 주요 내용(20세기 중반 이후)

연도	제도 개선	주요 내용	특징
1948	맥콜롬 소송(대법원 판례)	공립학교 정규 수업시간에 종교교육 불가 판정	기독교내 교과교육 지양 의 기독교교육 실시
1951	국가 교육 협회 결정	유신론과 무신론을 중립적 입장에서 교육해야 한다.	종교에 대한 일반적 교육만 인정, 이후 유사한 판례가 계속 나타남, 공립학교에서는 어떤 종교교육도 불법으로 간주됨
1984	동등 접근법 (Equal Access Act)	공립학교에서 종교교육은 금지되나 정규 수업시간 외의 학생 주도의 자발적 종교모임은 허용, 학교 시설물 사용 허용	교사의 영향력이나 공적 재정의 지원이 없는 학생들의 자발적 종교모임 허용

70) 류성민 외 1인, 앞의 보고서, 5면.

71) 류성민 외 1인, 앞의 보고서, 29-30면.

연도	제도 개선	주요 내용	특징
1995 , 1998	“공립 학교에서의 종교: 현행법에 대한 공동성명” 및 “공립 학교에서의 종교적 표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들의 종교활동이나 종교적 발언을 차별하는 규칙을 만들거나 운영할 수 없다. - 학교 직원과 교사는 종교활동을 권유하거나 격려할 수 없으며 학생과 함께 참여할 수 없다. - 종교수업을 할 수는 없지만 종교에 대해서 가르칠 수는 있다. - 수업내용이 학생이나 학부모의 종교에 대한 이의나 양심적 불만을 일으킬 경우 학교는 학생 개인을 수업에서 면제시킬 수 있는 선택의 자유가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들의 보다 자유로운 자치활동으로서의 종교활동 보장 - 교사나 교직원은 공무원에 준하는 종교적 중립의무 규정 - 학생들의 종교 관련 선택권 부여
1999	“공립 학교에서의 종교교육을 위한 교사 지침” 및 “공립 학교에서의 종교교육을 위한 학부모 지침”	위 내용에 대한 구체적 지침	교사 및 학부모의 권리와 의무 규정

그 결과 미국 공립학교에서 종교교육을 위한 지침이 만들어졌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표 14>⁷²⁾

<표 14 >미국 공립학교 종교교육 지침 주요 내용

주요 항목	주요 내용
학생들의 기도	학생들은 개인적으로 혹은 집단을 이루어 기도하거나 종교적 입장을 발표할 권리를 가진다.
졸업식 기도와 종교적 학위수여식	학교 당국자들은 졸업식에 기도 순서를 포함시키지 말아야 하며, 종교적인 학위수여식을 거행해서도 안 된다.
종교 활동에의 공식 참여와 격려	교사들과 학교 직원들은 학생들에게 종교활동이나 반종교활동을 고무하거나 부추겨서는 안된다. 또한 학생들과 더불어 그러한 활동을 해서도 안된다. 그러나 사적으로 교사휴게실에서 종교활동을 하는 것은 무방하다.
종교에 대한 교수	종교에 대해서는 가르칠 수 있지만 공립학교에서 종교를 가르칠 수는 없다. 대법원판례에서 거듭거듭 강조했듯이, 종교의 역할에 대한 객관적 설명은 무방하다.

72) 류성민 외 1인, 앞의 보고서, 30-32면.

주요 항목	주요 내용
숙제와 종교	학생들은 보고서나 숙제, 예술작품 등에서 자신들의 종교적 신념을 표현할 수 있으며, 그러한 표현은 헌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다. 교사들은 그러한 것들이 단지 종교적인 상징들을 포함하거나 종교적인 주제를 다루었다고 하여 거부해서는 안된다. 숙제는 오직 학문적 기준에 의해 평가되어야 한다.
종교적 문건의 배포	적절한 시간과 장소와 방법을 제시하여 학생들이 종교적 문헌을 배포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외부인이 종교적 문건 혹은 반종교적 문건을 배포하기 위해 교실에 들어오는 것을 제지할 수 있다.
특별활동	방과 전이나 후에 있는 이벤트에 학생들이 참여하는 것은 허용된다. 학교 직원들이 그러한 이벤트에서 참여를 유도하거나 거부하게 해서는 안 된다.
종교적 설득과 종교적 괴롭힘	이 양자의 관계는 매우 미묘한 것이다. 정치적인 주제에 관해 자신의 견해를 동료 학생에게 말하고 설득하는 것은 학생의 권리인 것과 마찬가지로 종교적 주제에 대해서도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종교적 괴롭힘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한 학생이 다른 학생에게 교회에 가자고 초청하는 것은 무방하지만, 그만둘 것을 요구하는데도 계속 반복해서 가자고 초대를 하는 것은 종교적 괴롭힘이 될 수 있다.
평등한 사용권	만일 한 학교에서 비교과 클럽에게 방과시간 외에 만나는 것에 대해 학교매체를 사용할 수 있게 허용하고 있다면 학생들의 종교클럽에도 그것을 허용해야 한다. 그러나 교사들이 그러한 클럽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는 없으며, 외부인이 정기적으로 참여하여 그 활동을 지도하도록 할 수는 없다.
종교축일들	일반적으로 공립학교에서 종교적 축일들에 대해 가르칠 수 있으며, 그 휴일의 세속적 측면을 축하할 수도 있고, 그것들의 종교적 측면들에 대해 객관적으로 가르칠 수 있다. 그러나 그 축일들을 종교적 사건으로 준수할 수는 없다.
종교적으로 거부할 수 있는 수업의 면제	학교에서는 종교적인 이유로 개개의 학생들이나 그 부모에게 항의를 받을 수 있는 수업에 대해 면제를 해줄 수 있는 실질적 결정권을 갖고 있다. 만일 특정한 수업이 학생의 자유로운 종교적 실행에 부담이 되거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를 제시할 수 없다면 학생에게 그 수업을 면제하여 주는 것이 법적으로 요구된다.
가르침의 가치 문제	학교에서는 성적인 절제와 피임을 가르칠 수 있다. 그렇지만 종교적 신조로서 그러한 것들을 가르쳐서는 안 된다.
학생들의 의상	종교적 문구를 써넣은 티셔츠와 그와 같은 것들을 입고 다니는 것에 대해 강제적으로 금지해서는 안된다. 학생들은 유대교의 기도나 의식에서 남자들이 두르는 작은 두건(yarmulke)과 머리 스카프와 같은 종교적인 의상을 입을 수 있고, 그들이 종교적인 근거에서 정중하지 못한 것으로 간주되는 체육복을 입도록 강제해서는 안 된다.
교외에서 허용되는 개인활동	학교는 교외에서의 종교교육에 학생들을 내보낼 수 있는 결정권을 가진다. 단 학교가 참여를 독려하거나 저지하거나 참여하지 않는 학생들에게 벌을 주어서는 안 된다.

이러한 기준은 우리나라 중립학교에서의 종교교육과 비교할 때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해 주고 있다.

(2) 종교적 차별의 법적 기준

미국에서 학교에서의 종교적 차별의 문제는 고용평등 관련 법제로부터 출발할 수 있다. 즉 연방헌법 수정 제5조와 제1조 제8항(Art. I, §8, cl. 3)의 주간통상규정(Inter-state Commerce Clause)에 근거하여 제정된 1964년 인권법(이하에서는 ‘인권법’이라 한다.) 제7장(The Civil Rights Act of 1964 Title VII)이 그 대강을 규정하고 있다.

인권법 §701(j)는 차별 금지 사유로서의 ‘종교’ 개념에 대하여 근로자 또는 취업예정자의 종교적 의식과 관행에 대하여, 그 사업운영에서 과도한 부담 없이는 적절한 편의를 제공할 수 없다는 점을 입증하지 않는 한, 신념 자체뿐 아니라 그 종교적 의식(儀式, observance)과 관행(practice)의 모든 면을 포함한다.”고 정의하고 있다.⁷³⁾

따라서 ‘종교적 차별 금지’는, ① 종교에 근거하여 채용·해고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차별을 가하는 것(disparate treatment in hiring and firing; disparate treatment in terms and condition)을 금지하고, ② 종교적 활동을 강요 또는 금지하거나 종교에 대한 모욕적인 행위로 종교적 학대(religious harassment)를 못하게 하며, ③ 과도한 부담(undue hardship)이 없다면 종교 활동·관행에 대해 적절한 편의제공(reasonable accommodation)을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⁷⁴⁾

그런데 인권법 §703은 사용자 등이 종교를 이유로 하여 채용·해고·여타 고용상의 약정과 조건들을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인권법 제7장(Title VII)의 적용을 받는 사용자 또는 기타 관계자가 종교를 이유로 근로자 또는 지원자를 고용, 고용거부 또는 해고하거나 고용계약조건을 차별하는 것은 불법이다. 아울러 단순한 종교적 차별의 금지를 넘어 근로자의 종교를 배려할 의무까지 규정하고 있다.

인권법 제7장 §703(a)(1)에서 근로자의 종교를 기초로 차별대우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일정한 행정적 구제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고용관계에서의 차별금지를 위하여 연방고용평등위원회(Equal Employment Opportunity Commission, 이하 EEOC로 약칭함)가 구성되어 있고, ‘차별금지에 관한 가이드라인’(Guidelines

73) 김진 외 1인, 차별판단지침에 대한 외국사례 조사(연령·종교·전과), 국가인권위원회, 2006, 59면; 송기춘, “종교계 대학교의 교원 임용과 종교적 사유에 의한 차별,” 민주법학 제41호, 2009, 234면.

74) 김진 외 1인, 앞의 보고서, 59면.

on Discrimination Because of Religion)⁷⁵⁾을 작성(1967)하여 제시하고 있다. 또한 각 주별로 고용관계에서의 종교적 차별에 관한 별도의 입법을 하고 주 인권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다.

그러나 종교기관과 교육기관 등에 대해서는 §702, §703에서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즉 종교 기관의 경우 종교적 차별을 적용하지 않으며(§702), 종교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면서 종교기관이 설립한 교육기관에서의 적용 제외를 규정하고 있다(§703). 그것은 ① 종교적 교육기관에 대한 적용 제외, ② 종교 또는 종교단체에 의하여 전적으로 또는 중요 부분이 지배되는 교육기관에 대한 적용 제외, ③ 종교가 직업적 필수요건이 되는 경우, ④ 학교 커리큘럼이 종교적 선교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등이다.⁷⁶⁾

교육기관이 종교적인 경우에는 그 활동에 관하여 특정 종교를 가진 사람을 고용할 수 있다. 법원이 종교기관의 내부문제에 과도하게 개입할 가능성을 견제하기 위한 조항이라 할 수 있다.⁷⁷⁾ 다만 교육기관이 종교적인지에 대한 판단은 그 목적과 성격이 주로 종교적인 경우여야 하는데, 이는 학교의 소유관계, 종교와의 관련성, 설립목적, 교원의 업무, 학생모집, 학생활동, 커리큘럼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① 종교적 차별의 일반적인 금지⁷⁸⁾

인권법 제7장 §703(a)(1)에서는 종교를 포함하여 여러 차별금지사유를 열거하면서 이들 사유에 기한 고용거부 또는 해고 등을 불법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사용자(employer)가 (1)근로자의 인종, 피부색, 종교, 성(性) 또는 민족을 이유로 고용을 거부하거나 해고하는 행위 또는 그의 고용상 보수, 계약조건 또는 권리에 관하여 차별하는 것은 ... 불법적인 고용행위이다.” 고용관계에서의 차별금지의 한 사유로 종교가 규정된 것은 연방헌법 수정 제1조에서 종교의 자유행사(Free Exercise)를 보장하고 있는 정신과 상통⁷⁹⁾한다.

한편, 인권법 제7장 §701(j)에서는 고용관계에서의 종교적 사유에 의한 차별을 단순히 금지하는 정도를 넘어서 사용자에게 근로자의 종교에 따른 합리적인 ‘업무상 조정의 의

75) 29 CFR 1605.1(1967).

76) 송기춘, “종교계 대학교의 교원 임용과 종교적 사유에 의한 차별,” 민주법학 제41호, 2009, 235면.

77) 위의 글, 235면.

78) 이하의 내용은 송기춘, “대학교원의 임용과 종교적 사유에 의한 차별”(민주법학 제41호, 2009.11.)과 “고용관계에서의 종교적 차별의 금지: 사인간의 관계에서의 종교의 자유 보장에 관한 미국 실지조사연구”(헌법학연구 제16권 제1호, 2010.3) 참조.

79) Robert Belton, Dianne Avery, Maria L. Ontiveros, Roberto L. Corrada, Employment Discrimination Law, 7th ed.(Thomson West, The Labor Law Group, 2004), 578면.

무'를 부과하고 있다. 즉, “사용자가 사업운영에 부당한 어려움이 없이 근로자 또는 채용 예정 근로자의 종교적 요구에 맞춰 합리적으로 조정을 하는 것이 불가능함을 입증하지 않는 한(unless an employer demonstrates that he is unable to reasonably accommodate to an employee’s or prospective employee’s religious observance or practice without undue hardship on the conduct of the employer’s business)” 종교에는 종교적 의식과 행위 및 신앙을 포괄한다. 이는 본래 EEOC의 가이드라인⁸⁰⁾에 규정된 내용이었으나 1972년 인권법 개정시 제7장(Title VII) §701(j)에 그대로 수용되었다. 예를 들어,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근로자가 토요일 근무를 면제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 인력 운용에 부당한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으면 토요일 근무를 면제하고 일요일 근무에 배치하는 등의 업무상 조정을 하여야 한다.

② 종교적 사유에 의한 차별이 합리적인 경우

인권법 제7장에서는 종교적 사유에 의한 차별금지가 면제되는 경우를 몇 가지 규정하고 있다. 물론 주에 따라 별도로 추가적인 규율을 하는 경우도 있다. 학교에서의 고용관계에 관하여 한정하여 살펴보자면, 첫째는 종교적 교육기관에 대한 적용 제외, 둘째는 종교 또는 종교단체에 의하여 전적으로 또는 중요부분이 지배되는 교육기관에 대한 적용 제외, 셋째는 종교가 직업적 필수요건이 되는 경우, 넷째는 학교 커리큘럼이 종교적 선교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등이다.

가. 종교적 교육기관에 대한 적용 제외(인권법 제7장 §702; 42 U.S.C. §2000e-1(a))

교육기관이 종교적(religious)인 경우에는 “그 활동”에 관하여 특정 종교를 가진 사람을 고용할 수 있다. 즉 “이 조항은 …종교적 교육기관…이 그 활동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정 종교를 가진 사람을 고용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적용 제외가 교육기관의 종교적 활동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종교적 활동과 비종교적 활동을 구별하기 위해서는 법원이 종교의 내부문제에 과도하게 개입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만들어진 조항이라고 할 수 있다. §702에서 종교단체의 세속적, 비영리적 활동에 대해서까지 면제를 하는 것이 국교금지조항 위반으로 위헌인가가 쟁점이 되었으나 연방대법원은 합헌으로 판단하였다.⁸¹⁾

그러나 대학교 등 교육기관이 종교적인지의 평가는 그 목적과 성격이 주로(primarily)

80) 29 CFR 1605.1(1967).

81) Corporation of Presiding Bishop v. Amos, 483 U. S. 327, 107 S. Ct. 2862(1982).

종교적인 경우여야 하는데, 학교의 소유관계(ownership), 종교와의 관련성(affiliation), 설립목적, 교원의 업무, 학생모집, 학생활동, 커리큘럼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성격이 ‘주로 종교적(primarily religious)’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⁸²⁾고 한다. 침례교대학교가 ① 그 대부분의 재원이 주 침례교회 총회에서 나온다는 것, ② 대학교가 총회에 재정에 관한 보고를 한다는 것, ③ 대학교 운영위원회의 구성원이 모두 침례교 교인이라는 것, ④ 이 대학교가 전국침례교대학교 및 학교협회의 회원이라는 것, ⑤ 학교의 정관에서 설립목적이 기독교 신앙의 증진이라는 것 등을 입증하면 §702의 종교적 법인 또는 학교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는 판례⁸³⁾가 있다.

나. 종교단체가 소유·지원하는 교육기관에 대한 적용 제외(인권법 제7장 §703(e)
(2); 42 U.S.C. §2000e-(e)(2))

교육기관에서 특정한 종교를 가진 사람을 고용자격으로 요구하는 게 가능한 두 번째 경우는 종교단체가 소유·지원·통제·운영하는 경우이다. 즉, “학교, 단과대학, 대학교 기타 교육기관 또는 학습기관이 특정 종교 또는 특정 종교적 법인(corporation), 단체(association) 또는 결사(society)에 의하여 전적으로 또는 중요한 부분(in substantial part)에서 소유, 지원, 관리 또는 운영되는(owned, supported, controlled or managed) 경우 이들이 특정 종교를 가진 근로자(employee)를 고용하는 것은 불법고용행위가 아니다.”

이 조항의 적용 제외 대상이 되려면 ① 특정 종교 또는 특정 종교적 법인, 단체 또는 결사가 ② 교육기관 등을 전적으로 또는 중요한 부분에서 ③ 소유, 지원, 관리 또는 관리하고 있어야 한다. 대체로 교회에서 직접 운영하고 교원의 급여의 대부분을 교회의 재정으로 충당하는 교회부설 학교나 특정 종파의 성직자 양성을 위한 신학교의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다. 종교가 직업적 필수요건인 경우(인권법 제7장 §703(e)(1); 42 U.S.C. §2000e-(e)(1))

종교가 특정한 업무 또는 사업에 필요한 자격이 되는 경우가 있다. “종교…가 특정한 업무 또는 사업의 정상적인 운영에 합리적으로 필요한 직업적 필수요건(bona fide occupational qualification)인 경우… 종교에 기초하여 사용자가 직원을 고용하는 것은

82) EEOC v. Kamehameha Schools/Bishop Estate, 990 F. 2d 458(9th Cir.), cert. denied, 510 U. S. 963(1993).

83) Killinger v. Samford University, 113 F. 3d 196(11th Cir. 1997).

불법적인 고용행위가 아니다.” 예를 들어, 종교적 문제에 관한 컨설턴트를 채용할 경우는 특정 종교에 관한 신앙과 지식을 가질 것이 그 직업수행을 위한 필수요건이 될 수 있다. 학교의 경우 굳이 종립학교가 아니더라도 담당하고 있는 업무나 교육내용이 특정 종교신앙과 관련된 것일 경우에는 그 직업의 수행에 종교적 요건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하다. 상담학 가운데 특히 기독교상담 과목을 담당하는 교원의 자격으로 기독교 신앙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학교가 종교단체에 의해 전적으로 또는 중요한 부분에서 소유·지원·관리 또는 운영되는 학교인 경우는 위 2.2.2의 요건에 의한 적용 제외 사유와 중복될 수 있다.

라. 학교의 커리큘럼이 특정종교의 선교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의 면제(인권법 제7장 §703(e)(2) 후단 부분; 42 U.S.C. §2000e-2(e)(2))

종교단체에 의하여 전적으로 또는 중요 부분에서 운영되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그 학교가 특정 종교의 선교를 위하여(directed toward the propagation of a particular religion) 설립된 경우에는 종교적 사유에 의한 차별이 가능하다. 학교의 커리큘럼이 특정 종교의 선교를 위하여 마련된 것일 때에는 그 특정 종교를 가진 사람만 채용하는 것은 불법적인 고용행위가 아니다.” “선교(propagate)’란 적어도 특정한 종교적 가치를 전파하거나 주입한다(instill)는 일반적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커리큘럼이란 과목이수(coursework)에 한정되며 학교활동(school activities)을 요한다.”⁸⁴⁾ 단순히 ‘기독교 이념에 입각한 교육’을 한다는 것 정도로는 부족하며 종교적 내용이 구체적으로 교육과정과 학생활동 및 교원의 활동에 반영되어 있어야 한다. 이 조항은 본래 “교회와 관련된 대학 또는 대학교에 한정되어 적용되는 조항으로서, 그 대학이나 대학교의 사명의 일부가 이 교육기관을 뒷받침하는 종파의 신앙을 선교”하는 경우⁸⁵⁾에 적용될 것을 상정한 것이다. 즉, 성직자 양성을 위하여 설립되고 그에 따른 교육과정을 가지는 학교가 그 예이다. 종교단체가 소유·지원·관리 또는 운영하고 있는 경우는 위의 나)(종교단체가 소유·지원하는 교육기관에 대한 적용 제외)의 사유와도 중복될 수 있다.

(3) 학생교육 관련 구체적 사례

① 기도

84) EEOC v. Kamehameha Schools/Bishop Estate, 990 F. 2d 458(9th Cir.), 2993, 564면.

85) EEOC, Legislative History of Title VII and XI of Civil Rights Act of 1964(1968), 3198면.

미국의 경우 공립학교에서의 기도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관련 사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발적으로 1분 묵념시간을 강제하는 법률은 위헌이다.

Wallace v. Jaffree, 472 U.S. 38 (1985)에서 공립학교에서 학생들의 ‘자발적인 침묵 기도(voluntary silent prayer)’를 명시적으로 규정한 주 법률이 위헌선언을 받았다. 즉, 알라바마주 법률은 1분의 ‘침묵시간(silent period)’을 매일 학교 시작 전에 갖도록 규정하였고, 그 시간이 개인적 명상(meditation)이나 자발적 기도(voluntary prayer)를 위해 학생의 선택에 따라 사용될 수 있다고 하였음에도 6:3의 의견으로 위헌이 되었다.⁸⁶⁾

둘째, 공공행사에 성직자를 초대하여 기도하는 행위는 위헌이다.

Lee v. Weisman, 505 U.S. 577 (1992)에서 공립학교 졸업식에 학교장이 성직자를 초대되어 기도를 주관한 행위에 대해 연방최고법원은 공립학교가 명백하게 그 기도를 지원(endorse)했다고 하여 국교금지조항위반을 선언했다. 그 기도 내용이 특별히 종교적이지 않고, 다만 주로 하나님에 대한 감사만으로 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연방최고법원 5 : 4의 1표차 다수의견에 의해 국교금지조항 위반이 인정되었다.⁸⁷⁾

셋째, 공립학교 풋볼게임 전 학생기도는 위헌이다.

Santa Fe Independent School District v. Doe, 530 U.S. 290 (2000) 사건에서 본 공립학교는 학생들의 투표로 선출된 학생이 마이크를 학교대표팀 홈 풋볼게임시작 전 참석 관중 및 선수 앞에서 기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정책(policy)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풋볼게임에서 이루어진 학생이 주도하고 학생이 시작한 기도(student led, student-initiated prayer)가 과연 국교금지조항에 위반하는가에 대해서 연방최고법원은 그 정책 및 실행을 위헌이라고 하였다. 그 이유는 학교가 지원한 스포츠 행사(school sponsored sporting events)에서 학교가 소유한 연설장비 시스템을 가지고 기도가 이루어졌고, 이러한 행위는 기도가 개인적 기도가 아닌 학교의 지원에 의한 것이라는 인상(impression)을 주게 한다는 것이었다. 소 진행 중 학교 측은 “경기에서 기도를 해야 할 것인지 여부와 누가 기도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학생들 스스로 투표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정책을 변경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도 위헌판결을 받았다.⁸⁸⁾

그 밖에도 초등학교 일과개시 전의 기도문 낭독(Engel et al. v. Vitale et al., 370 U.S. 421, 1962)은 위헌이라는 판례가 있다. 즉 기도문 낭독이 강제성이 없고, 종교적 색채가 없더라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급여를 지급받는 교사가 작성한 기도문을 학

86) 정중섭 외 2인, 국내의 종교차별 사례연구, 문화체육관광부, 2009, 122면.

87) 위의 보고서, 122-123면.

88) 정중섭 외 2인, 앞의 보고서, 123면.

생들이 낭독하는 것은 미국 헌법상 국교설립금지 규정에 위배되어 위헌이라는 것이다. 또한 공립학교 일과개시 전에 기도문과 성서를 낭독(School District of Abington Township, Pennsylvania, et al. v. Schempp et al., 374 U.S. 203, 1936)에 대하여도 위헌 판결이 있었다.⁸⁹⁾

② 출판물 발간

미국의 연방대법원은 버지니아(Virginia) 주립대가 종교적 내용을 담은 출판물에 대해 다른 학생출판물과 차별하여 대학의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위헌이라고 판시했다. 대학 내의 학생 동아리 등 각종 학생단체들은 보통 대학 측의 재정지원에 의해 운영되고 유지된다. 이때 국공립대학들의 학교 내 학생단체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그 단체의 종교적 표현 내용을 이유로 차별적으로 행해진다면 그것은 그 학생단체의 종교행위의 자유에 대한 침해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⁹⁰⁾

1995년 연방최고법원의 로젠버거(Rosenberger v. Rector and Visitors of the University of Virginia, 515 US 819) 사건도 이러한 현상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학생들은 철학적이고 종교적인 표현을 담은 학생잡지를 발행하기 위해 ‘Wide Awake Productions’이라는 이름의 출판사를 세웠다. 이 출판사의 요청이 ‘종교적 활동’에의 비용 지출을 금하는 대학지침에 의해 대학 측으로부터 거부당했다. 이에 따라 로젠버거 등은 언론의 자유, 종교의 자유, 평등권 침해를 주장하며 대학 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연방지방법원은 대학 측에 승소판결을 내렸다. 연방항소법원도 대학지침이 내용을 근거로 한 차별에 해당되지만 연방지방법원의 판결은 헌법상의 정교분리 조항에 의해 정당화된다고 판시했다.

로젠버거는 연방최고법원에 상고했다. 케네디(Kennedy) 대법관이 집필한 다수의견은 정부가 표현의 실질적 내용이나 그것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에 근거해 어떤 표현을 규율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버지니아 주립대학은 종교를 중요한 문제에서 제외하지 않으나 종교적인 편집 관점을 가진 표현물을 만드는 학생들에게 비우호적인 대우를 하고 있다. 금지된 종교적 관점은 제3자인 학교 측의 대금 지불 거부라는 결과를 낳았다. 발간물의 내용이 종교적인 것이 아니었다면 그 발간물이 학교 측으로부터 발간 승인과 재정 지원을 얻을 수 있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들 자신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적(私的) 표현

89) 문화체육관광부, 공직자종교차별 예방업무 편람, 문화체육관광부, 2008.

90) 정종섭 외 2인, 국내의 종교차별 사례연구, 문화체육관광부, 2009, 129. 로젠버거 사건은 임지봉, “내적인 종교의 자유 v. 외적인 종교의 자유,” 인터넷법률신문 2008.5.19., <[http:// www.lawtimes.co.kr/LawNews/News/NewsContents.aspx?serial=39852](http://www.lawtimes.co.kr/LawNews/News/NewsContents.aspx?serial=39852)>, 검색일: 2012.10.22.

자들을 대신해서 제3 계약당사자인 학교가 돈을 지불해왔기 때문에 대학 측이 특정한 관점의 표현을 못하게 할 수는 없다.

따라서 학생활동기금 지원을 부정하려는 대학 측의 규제는 수정헌법 제1조에 의해 보장된 로젠버거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된다. 더 나아가, 특정종교에 대한 어떤 특혜도 종교중립적 입장에서는 대학 측의 세속적 목적을 위한 세속적 봉사조항에 부수하여 발생하는 것이다. 정교분리조항을 철저히 따른다는 이유로, 대학 측이 학생들의 종교적 관점 때문에 특정 표현물 출간을 막는 것은 불필요한 일이기까지 하다. 이에 하급심 판결을 파기한다.

다수의견의 입장은 이후 2001년의 Good News Club v. Milford Central School판결에서도 그대로 이어졌다. 이 판결을 통해 미국 연방대법원은 비종교 학생단체의 과외활동에 대해서만 공립학교가 학교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을 위헌이라 판시했다. 이러한 학교 측의 행위는 ‘종교적 관점에 따른 차별’이며 더불어 종교적 학생단체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임을 근거로 들었다. 즉 미국 수정헌법 제1조의 정교분리조항이 종교적 표현행위 제한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을 계속해서 견지하고 있는 것이다.

③ 교육과정

교육과정과 관련해서는 종교적인 목적에 의해 교과과정을 결정한 경우의 판례가 있다(Epperson v. Arkansas). 즉 공립학교에서 교사들이 진화론을 가르치지 못하도록 하는 주법은 종교적인 동기에 의하여 입법되었다는 이유로 미국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창조설을 가르치지 않는 한 진화론을 가르칠 수 없다는 주법도 초자연적인 존재에 의하여 인간이 창조되었다는 종교적인 관점을 장려한 것으로 종교를 승인하는 것에 해당하여 미국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다.

이외에도 공립학교에서 부모의 동의가 있는 학생들에게 정규수업시간에 외부의 종교교사에 의한 종교교육을 받게 한 행위에 대하여 미국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④ 종립학교의 경우

종립학교나 비종립학교 학생들의 현장학습비용을 정부가 부담한 경우 이는 국가가 종교에 너무 지나치게 연루된 것으로 Lemon Test⁹¹⁾의 세 번째 기준에 위배되어 미

91) Lemon Test는 미국 헌법의 국교설립금지 규정의 위반여부를 판단하는 미국연방대법원 판례에서 확립된 기준이다. 세 가지 기준으로 헌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데 첫 번째는 입법목적이 세

국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다(Wolman v. Walter). 또한 중립학교에서 일반 과목을 가르치는 교사의 봉급을 보조한 경우에도 이러한 재정 지원은 종교를 발전시키는 것에 해당하여 국교설립금지 규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다(Lemon v. Kurtzman).

이외에도 중립학교 학생의 건강과 안전 등을 위해 학교 시설과 자재를 유지보수하기 위해 자금을 지원한 경우(Committee for Public Education v. Nyquist), 주정부가 실시하는 학생들의 시험과 기록 보존을 위해 지출되는 비용을 지원한 경우(Levitt v. Committee for Public Education), 중립학교가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시험에 대한 실시, 평가, 자료보관 및 주 정부에 대한 결과 보고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한 경우(Committee for Public Education and Religious Liberty v. Reigan)에서 이러한 비용들의 지원은 국교설립금지규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다.

(4) 교원고용 관련 구체적 사례

종교적 교육기관으로서 적용이 제외되려면 그 교육기관이 ‘종교적’인 성격을 가지는 기관인지가 증명되어야 하며, 종교적 커리큘럼에 의한 면제의 경우에도 커리큘럼이 ‘특정 종교의 선교목적’이어야 한다. 진정한 직업적 요건에 의한 면제의 경우에도 직업요건으로서 ‘종교’가 관련되며 필요한 경우여야 한다.

Kamehameha Schools 판결⁹²⁾에서는 이 학교가 비록 개신교 정신을 구현하는 학교로서 개신교인 교사만을 임용하라는 유언에 의하여 설립되었다고 하더라도 유언 그 자체가 학교를 설립한 것이 아니라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학교의 설립목적 및 교육과정, 교사 및 학생활동 등 전반을 검토하여 이 학교가 주로 종교적이라기보다는 세속적이라고 판단하여 종교적 교육기관에 대한 인권법 제7장 적용 제외 주장을 배척하고 있다. 또한 교육과정 자체가 종교적이지도 않고 프랑스어 과목교사의 직업적 필수요건으로서 일반적으로 종교가 요구되는 것도 아니라는 점에서 개신교인만 지원할 수 있는 이 학교의 교사자격요건이 종교적 차별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물론 이는 학교 자체의 설립목적상의 종교적 정신의 구현이라는 것을 부정한 것도 아니고, 학교에서의 업무상 종교적 요건이 필요한 경우까지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로올라 대학 사건⁹³⁾과 같이 제수이트회에 관련된 시카고 로올라대학교의 철학부에서 제수이트 정신의 구현이라는 설립목적의 실현을 위하여 이미 재직 중인 3명 이외에 추가로 4명의

속적인지 여부, 두 번째는 주요한 효과가 종교를 발전시키거나 금지하는 것인지 여부, 세 번째는 국가가 종교에 과도하게 연루되는 것을 조장하는지 여부이다.

92) EEOC v. Kamehameha Schools/Bishop Estate, 990 F. 2d 458(9th Cir. 1993); 이승명령신청 기각, 510 U.S. 963(1993).

93) Pime v. Loyola University of Chicago, 803 F. 2d 351, 358(7th Cir. 1986).

제수이트 대학 철학 교수를 임명하는 것은 종교적 차별이 아니라고 한 것과 비교된다. 즉, 제수이트 정신의 구현을 위하여 제수이트 교단 소속 교수의 임용이 필요한 최소한으로 요구된다면 그것은 합리적인 것이며 이를 종교적 차별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나 Kamehameha School과 같이 개신교인 교사가 100%가 아니더라도 학교의 종교적 성격의 유지나 교육에 전혀 문제가 없는 경우는 모든 교사에게 종교적 조건을 요구하는 것은 종교적 차별에 해당하게 된다는 것이다. 반면 종교교과의 교사나 교목과 같이 그 업무가 종교와 관련이 있고 그 업무수행에 종교적 조건이 필요한 경우는 종교적 조건을 요구하는 것이 차별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5) 소결

인권법 제7장에서는 일반적으로 종교적 차별을 금지하되 교육기관이 종교적인 경우, 종교단체 등에 의하여 전적으로 또는 중요한 부분에서 지배되는 경우, 특정 종교가 직업수행의 필수요건인 경우, 교육기관의 커리큘럼이 특정 종교의 선교를 목표로 하는 경우에는 특정 종교인을 자격조건으로 요구한 것이 불법적 고용행위가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다.

미국의 법제에 의하면, 특정한 종교적 목적을 위해 설립되어 정규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를 설립하는 경우라도 Kamehameha Schools 사건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종교적 교육의 정도가 크지 않아 학교가 '주로 세속적'이라고 평가되면 그 학교 교원의 채용에 종교적 조건을 요구하는 경우는 당연히 종교적 차별이 된다. 다만, 그 직무수행에 종교가 필수적 요건이 된다고 할 수 있는 종교교과 교사나 교목에 대해서는 직업적 필수요건 규정에 의하여 종교적 조건에 대해 합리적이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신학교가 규모를 확장하여 종합대학이 되거나 다른 비종교적 학과를 설치하는 경우, 신학과 등 종교관련 학과에 대해 종교적 조건을 요구하는 것이 문제되지 않는다는 것은 어렵지 않게 결론이 나오나 기본적으로 세속적 학문을 강의하는 학과에 대해서가 문제이다. 종교적 조건을 요구하는 게 가능한 경우는 첫째, 세속적 학과를 포함하여 학교 전체가 '주로 종교적'이라는 평가를 받을 경우와, 둘째, 학교 전체를 또는 그 중요부분을 종교단체에서 소유·지원·관리 또는 운영하는 경우이다.

우리와 비교하면 대체로 특정 종교나 종교단체에 의하여 소유·지원·관리 또는 운영되는 대학교의 경우나 종교적 교육기관이라는 평가를 할 수 있으면 종교적 차별금지조항의 적용이 면제된다는 점에서 교육기관에서의 고용관계에서 종교적 조건이 좀 더 강하게 요구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여기에서 유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있다. 첫째 미국의 경우 법령에서 따로 정하지 않는 경우 자유롭게 고용 또는 해고할 수 있다는 법리

(이른바 임의고용의 원칙(employment-at-will))⁹⁴이 존재하여 우리에게 비하여 사용자의 고용계약상 재량이 훨씬 넓다는 것, 둘째, 대학교의 수가 우리와 비교하여 매우 많기 때문에 선택의 폭이 매우 넓다는 것, 셋째, 종교단체에서 지배, 운영하는 학교에 종교적 교육과 관련하여 연방 또는 주의 자금지원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 등은 우리와 크게 다른 점이다. 미국의 법제와 판례를 바탕으로 바로 우리 법제에서의 결론을 유도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Kamehameha Schools 판결에서 볼 수 있듯이, 학교의 교육과정에 매 학기 한 학기 정도의 채플 이수와 종교과목을 이수하여야 하고 방과 후 또는 정규 교육과정 이외에 종교적 활동을 하는 것이 아무리 그 학교의 일반적인 분위기이고 또 학교가 이를 예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그 학교가 종교적 교육기관이라고 판단할 것이라고 단정하기 힘들다⁹⁵)고 한 점이다.

Kamehameha 학교의 종교교육의 정도는 우리나라의 종립학교에서 실시하는 종교교육의 정도보다도 더한데 이 정도로는 이 학교가 종교적 교육기관으로서의 적용제외의 대상이 되는 데 부족하다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시사적이다. 또한 종교계 대학교의 학교법인의 구성원이 종교인이 대다수라는 이유만으로 그것이 특정 종교 또는 종교단체에 의하여 소유·지배·지원을 받는 교육기관이라고 보기도 힘들다는 점이다.

3) 기타의 국가

(1) 영국

영국은 EU의 고용평등지침에 따라 2003년 고용평등(종교나 신념) 규칙을 제정하여 같은 해 12. 2.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것은 고용과 직업훈련상의 차별을 그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로부터 학교에서의 종교차별의 문제를 유추해볼 수 있다.

법에서 금지되는 ‘차별’은 ① 종교 또는 신념 때문에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직접차별), ② 같은 규정·조건이나 관행을 적용하지만 결과적으로 특정 종교를 가진 사람에게 불이익을 가하면서 정당한 목적을 증명할 수 없을 때(간접차별)로 나뉜다.⁹⁶ 직접차별에서

94) Mack A. Player, *Employment Discrimination Law*(West Group, 1988), 1-2면.

95) EEOC v. Kamehameha Schools/Bishop Estate 판결에서는 ‘이 학교의 종교적 성격은 대체로 비교종교학, 정기적인 기도와 예배, 학교출판물에 성서구절 인용, 세속적인 과목을 가르치는 교사용에 외형상 개신교인 임용 등 최소한에’ 그치며, ‘이 학교의 목적과 성격은 일차적으로 세속적이며, 일차적으로 종교적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하면서 종교적 교육기관에 의한 면제를 받기에 부족하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종교계 대학교나 학교에서의 종교적 교육이 이 정도를 넘어서는 수준인가?

96) 김진 외 1인, 차별판단지침에 대한 외국사례 조사(연령·종교·전과), 국가인권위원회, 2006, 77

사용자의 종교가 차별받았다고 하는 근로자의 종교와 동일한 경우는 해당하지 않으며,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과 비교할 때에는 종교외의 조건은 본질적으로 동일한 상태에서 비교해야 한다.

영국은 2006년 평등법을 제정하였다. 「평등법」(Equality Act 2006)은 ‘평등 및 인권 위원회’(the Commission for Equality and Human Rights)를 설립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일반적인 공·사적 생활관계에서의 차별을 금지하기 위한 법률이다. 평등법은 종교 내지 신념을 이유로 한 차별금지에 관하여 규정하고, 이 외에도 성적 경향을 이유로 한 차별금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평등법 제46조 내지 제49조에서는 금지된 차별부문 목록을 제시하고 있는데, 상품, 설비 제공 및 서비스(제46조), 주거(제47조), 교육시설(제49조), 공적 기관(제52조)을 열거하고 있다. 이 부문에서는 차별적 공급이 금지된다. 제53조 내지 제55조에서는 일반적인 차별관행의 대표적 예를 제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차별적 관행(제53조), 차별적 광고(제54조), 차별의 교시나 유발(제55조) 등이 그것이다. 그리고 제56조 내지 제64조는 차별 금지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 국가의 입법을 준수하기 위한 경우(제56조), 그 자체 종교나 신념에 관련된 조직(제57조), 종교나 신념 관련 자선기관(제58조), 종립학교(제59조), 교육훈련 등의 자격요건(제61조), 연소자나 고령자 등에 대한 가족 내 특별 처우(제62조), 국가안보(제63조) 등을 위해서는 차별금지의 예외가 허용된다. 제64조에서는 국무장관이 명령으로 예외사유를 제·개정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⁹⁷⁾

(2) 독일

1995년 5월 16일 연방헌법재판소는 학교 교실에 하나의 십자가상(Kruzifix)이나 적어도 십자가(Kreuz)를 비치할 것을 정하고 있는 바이에른 주의 국립학교 명령(Volksschulverordnung)이 연방헌법에 위반된다고 선언하였다. 이는 독일에서 종교와 국가의 관계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관점에서 볼 때 매우 큰 반향을 일으켰던 사건이었다. 헌법재판소는 종립학교가 아닌 국립 의무학교의 교실에 십자가상이나 십자가를 비치하는 것은 기본법 제4조 제1항⁹⁸⁾에 위배된다고 하면서, 이러한 경우 학생들에 대해서는 종교 및 신앙의 자유가 침해되고, 그들의 부모에게는 부모의 교육권과 이와 연결되는 종교 및 신앙의 자유가 침해된다고 보았다.⁹⁹⁾

면.

97) 정중섭 외 2인, 국내외 종교차별 사례연구, 문화체육관광부, 2009, 68-69면.

98) 신앙과 양심의 자유 그리고 종교적·세계관적 고백의 자유는 불가침이다.

99) 정중섭 외 2인, 국내외 종교차별 사례연구, 문화체육관광부, 2009, 126면.

(3) 호주

호주에서는 헌법과 영방헌법(the Commonwealth Constitution), 그리고 인권위법(HREOCA), 인종차별금지법(the Racial Discrimination Act, RDA)⁶²), 노동관계법(the Workplace Relations Act)과 몇몇 주의 차별금지법에서 종교와 신념에 의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미국이나 영국처럼 종교·신념에 의한 차별을 금지하는 별도 법령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연방 종교차별금지법을 제정하자는 주장이 있었다. 그러나 의회나 인권위원회에서 많은 논의가 진행되었으나, 종교·신념에 의한 차별을 판단하는 구체적이거나 강제적인 지침은 아직 없다.¹⁰⁰⁾

2. 국내 판례

1) 종교의 비판과 명예훼손의 성립 여부

(1) 종교대학 교수가 수업시간에 같은 종교의 타 종단을 비난한 행위(서울고등법원 2007나27979)

종교의 자유에는 자기가 신봉하는 종교를 선전하고 새로운 신자를 규합하기 위한 선교의 자유가 포함되고 선교의 자유에는 다른 종교를 비판하거나 다른 종교의 신자에 대하여 개종을 권고하는 자유도 포함되는바, 종교적 선전, 타 종교에 대한 비판 등은 동시에 표현의 자유의 보호 대상이 되는 것이나, 그 경우 종교의 자유에 관한 헌법 제20조 제1항은 표현의 자유에 관한 헌법 제21조 제1항에 대하여 특별 규정의 성격을 갖는다 할 것이므로 종교적 목적을 위한 언론 출판의 경우에는 그 밖의 일반적인 언론 출판에 비하여 고도의 보장을 받게 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다른 종교나 종교 집단을 비판할 권리는 최대한 보장받아야 할 것인데, 그로 인하여 타인의 명예 등 인격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종교의 자유 보장과 개인의 명예 보호라는 두 법익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는 그 비판 행위로 얻어지는 이익, 가치와 공표가 이루어진 범위의 광협, 그 표현 방법 등 그 비판 행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비판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타인의 명예 침해의 정도를 비교 고려

100) 김진 외 1인, 차별판단지침에 대한 외국사례 조사(연령·종교·전과), 국가인권위원회, 2006, 94-95면.

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6. 9. 6. 선고 96다19246, 19253 판결 참조).

(2) 공립중학교 교사가 수업시간에 종교에 대한 비난 행위(서울고등법원 2010누 13311)

공립중학교 교사가 수업시간에 학생들에게(중학교 2, 3학년) 기독교보다 불교를 더 믿는다고 발언하거나, 성경이나 하나님을 비난한 발언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의 품위 유지의무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2) 학교에서의 종교교육

(1) 국공립학교에서의 종교교육

공립학교 수업시간의 교사의 일방적 종교교육에 대한 고등법원 판례가 있다(대구고등법원 2009누2581). 즉 공립초등학교 교사가 수업시간에 기도를 하거나 성경을 읽었으며 학생들(초등학교 4학년)에게 교회에 나갈 것을 강압적으로 권유한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의 품위유지의무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헌법의 정교분리 원칙(국교설립금지)에 따라 국공립학교는 특정 종교 교육을 할 수 없으며,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교사가 수업시간에 특정 종교의 선교 행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이 해당 교사에게 품위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징계한 것은 종교의 자유에 대한 기초적 인식이 결여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할 것이다.

한편 현행 국가공무원법 제59조의 2는 공무원들에게 종교중립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종교에 따른 차별 없이 직무를 수행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만 위반 시 별다른 제재조치를 두고 있지 않아 규범의 실효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

(2) 종립학교 및 비종립학교의 종교교육의 범위

대표적인 판례로는 대광고 사건(대법원 2008다38288)이 있다. 이 판례는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에 따른 강제 배정제도와 종립학교가 국가의 공교육체계 내에 편입되어 있는 상황에서 종립학교에서 허용될 수 있는 종교교육의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① 종립학교에서 허용되는 종교교육

종립학교가 고등학교 평준화정책에 따라 학생 자신의 신앙과 무관하게 입학하게 된 학생들을 상대로 종교적 중립성이 유지된 보편적인 교양으로서의 종교교육의 범위를 넘어

서서 학교의 설립이념이 된 특정의 종교교리를 전파하는 종파교육 형태의 종교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㉓ 그 종교교육의 구체적인 내용과 정도, ㉔ 종교교육이 일시적인 것인지 아니면 지속적인 것인지 여부, ㉕ 학생들에게 그러한 종교교육에 관하여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하고 동의를 구하였는지 여부, ㉖ 종교교육에 대한 학생들의 태도나 학생들이 불이익이 있을 것을 염려하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대체과목을 선택하거나 종교교육에 참여를 거부할 수 있었는지 여부 등의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법감정에 비추어 볼 때 용인될 수 있는 한계를 초과한 종교교육이라고 보이는 경우에는 위법한다고 판단하였다.

이 판례에서 대광고등학교는 주당 1시간씩 정규 수업으로 종교과목을 부과함에 있어 대체과목을 편성하지 아니하였고, 그 수업시간에 기독교 경전인 성경을 읽고 그에 관한 토론 등을 진행하였으며 학생들에게 십계명이나 사도신경을 써오도록 과제를 부과하기도 한 사실, 학생의 생활기록부에 그 종교과목 이수에 대한 교사의 평가의견을 기재하도록 하였는데, 이와 같이 대광고등학교가 실시한 종교과목 수업은 기독교 교리에 입각한 종파교육에 해당되며, 그럼에도 학교가 교육부고시와는 달리 대체과목을 개설하지 아니함으로써 학생들에게 선택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고 실질적인 참가의 자율성도 보장하지 아니하였으며 사전 동의조차 얻지 아니하였다는 점에서 비록 학교에서 제공하는 교육과정은 교원 수, 학급 수, 시설 등 학교의 현실적인 조건을 고려하여 운영될 수밖에 없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종교과목 수업 진행이 종파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학생들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② 종립학교에서 허용되는 종교행사

이 판례에서 종립학교가 학생들에게 실시한 종교 교육 및 종교 행사의 형태는, ㉗ 수업이 있는 매일 아침에 담임교사의 입회 아래 5분 정도 찬송과 기도 등을 실시하는 경건회 시간, ㉘ 매주 수요일 정규 교과시간에 강당 등에서 1시간 가량 찬송과 목사의 설교, 기도 등을 하는 수요일예배, ㉙ 학생들에게 매년 3박 4일에 걸쳐 합숙하면서 각종 기도와 성경읽기 등을 하는 생활관 교육, ㉚ 부활절에 정규 교과시간에 부활절 예배를 진행, ㉛ 3일간 정규 수업시간 일부로 심령수양회라는 시간을 편성하여 설교 및 기도 등을 진행, ㉜ 매년 반별 성가대회 개최, ㉝ 추수감사절에 정규수업 대신 감사예배, ㉞ 성탄절에 학생들을 교회에 출석하게 하는 등의 종교행사 등이었다.

그런데 이는 학생들에게 자율적 참여를 보장하거나 동의를 구하지도 않은 채 학생들이 경건회 시간에 참석하지 아니하면 지각으로 처리하고 주의를 주기도 하였으며 수요일예배가 있을 때에는 교사들이 학급을 돌아다니며 참석하지 않는 학생이 있는지

확인하여 참석하지 않는 학생들에게는 청소를 시키는 등 불이익을 주고 성탄절에 교회에 출석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도 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대광고등학교가 실시한 종교행사는 보편적인 교양으로서의 종교교육이 아니라 기독교라는 특정 종교의 교리를 기도와 설교, 찬송 등의 방법으로 전파하는 종파적인 행사라고 할 것임에도 위 학교는 이에 참석하지 아니하는 학생들에게 일정한 불이익을 줌으로써 참석을 거부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분위기를 조성하여 아무런 신앙을 갖지 아니한 학생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

이 판례에 의하면 종교적 중립성이 유지된 보편적인 교양으로서의 종교교육의 범위를 넘어서서 학교의 설립이념이 된 특정의 종교교리를 전파하는 이른바 ‘종파교육’ 형태로 행해지는 종립학교의 종교교육은 허용될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다.

그러나 위 대법원 판례는 학생들의 선택권이 제한된 강제배정제도의 측면에서 판단하였는데, 사실 종립학교가 국가로부터 학교 운영 경비의 상당수를 지원받고 있다는 측면을 감안한다면 국가로부터 학교 운영비의 상당 부분을 지원받고 있는 종립학교들은 종교의 자유에서 많은 제한이 뒤따른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이와 같은 측면에서 본다면 일반적인 교양으로서의 종교교육의 범위를 넘어서는 종교교육이나 종립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종교적 색채를 띠는 종교행사는 헌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3) 교원 임용과 종교의 자유

(1) 종교계 사립대학 교수의 재임용 평가 기준에 종교 활동과 관련된 평가항목(창원지방법원 2009가합433)

종교계 사립대학 교원에 대한 재임용 평가 기준에 “건학이념 구현”이라는 평가영역을 두고 평가항목으로 “건학이념 지도” 10점, “채플참가” 10점으로 구성한 것은 교원 임용 시 그 교원이 기독교 신자임을 요건으로 하지 않고 있고, 최초 임용될 당시 기독교 신자인지 여부는 고려되지 않았던 점, 교원에 대한 채플과정에 참여하지 아니하거나, 학생들에게 기독교와 관련된 건학이념을 지도하지 않았다고 하여 재임용 심사에서 불리하게 평가하는 것은 원고들에 대하여 사실상 채플참여나 학생들에 대한 건학이념 지도를 강요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다.

따라서 기독교 교리를 기반으로 한 종교교육에 있어서의 학생지도를 평가 기준으로 삼아 재임용 심사를 하거나, “채플참가”, 즉 교원으로 하여금 교직원예배(경건회) 등에 참여하도록 하고 이를 기준으로 재임용 심사를 하는 것은 결국 특정 종교행위를

원고들에게 요구하여 원고들의 종교의 자유, 즉 소극적인 신앙고백의 자유 내지 신앙 실행의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그 침해의 내용은 원고들의 종교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한편 종립학교 재단은 교원으로서 학생들의 채플 과정에 들어가 학생들의 참여 여부 등을 지도, 감독하는 것에 불과한 내용을 평가기준으로 삼은 것이므로 종교의 자유와는 무관하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지만 법원은 교원인 원고들로 하여금 기독교 신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신자 혹은 기독교 신자가 아닌 학생들에게 채플, 즉 기독교와 관련된 종교강좌 등에의 참여를 지도, 감독하게 하는 것 역시 원고들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다분하다고 판단하였다.

(2) 창학이념에 반한다는 이유로 재임용 거부(이찬수 교수 사건, 서울행정법원 2006구합25131, 서울고등법원 2007누21725, 대법원 2008두15046)

강남대학교는 이찬수 교수가 교육방송(EBS)의 “뜰레랑스”라는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단군상 건립 문제에 관하여 기독교가 토착문화와 정서를 함께 하고 이에 융화해야 한다.”는 요지의 발언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프로그램 마지막 부분에 사찰을 방문하여 불상에 합장 배례하는 장면이 방송되었다. 또한 그가 맡은 1학년 교양필수 과목인 ‘기독교와 현대사회’ 강의시간에 “① 다른 종교에도 진리와 구원이 있다. ② 사실 안식일은 토요일이다. ③ 주일 날 교회를 가는 것보다 자원봉사를 하는 게 낫다. ④ 불교에도 기독교가 보이고, 타 종교에서도 기독교가 보인다. ⑤ 무속신앙을 거론하면서 어떤 무당들은 예수님을 잡신의 하나로 여긴다.”고 강의하였다.

이러한 행위들은 학교법인 강남학원의 정관 제1조에 규정된 강남대학교는 기독교 정신에 의한 고등교육을 실시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는 창학 이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에 규정한 재임용기준 중 ‘학생교육에 관한 사항’과 ‘학생 지도에 관한 사항’의 부적격자에 해당함을 근거로 재임용을 거부하였다.

이에 이찬수 교수는 종교적인 다양성을 존중하는 것이야말로 강남대학교의 창학 이념에 부합하는 것이며, 본인은 강남대학교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교육과 연구를 해왔으며, 강남대학교가 문제 삼고 있는 일부 강의내용도 실제 강의 내용의 핵심과는 일치하지 않으며, 오히려 강의를 들은 대부분의 학생들은 자신을 옹호하고 있다는 취지로 강남대학교의 재임용거부처분이 위법하다면서 재임용거부처분의 취소를 교육인적자원부 소청심사위원회에 제기하였고, 소청심사위원회가 이찬수 교수의 주장을 받아들여 재임용거부처분을 취소하자 강남대학교가 소청심사위원회의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었다.

1심 법원은 정교분리의 원칙상 국·공립학교에서 특정 종교를 위한 종교교육은 금지되나 사립학교는 국·공립학교와는 달리 종교의 자유의 내용으로서 종교교육 내지는 종교선전을 할 수 있고, 학교는 인적·물적 시설을 포함한 교육시설로서 학생들에게 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본질로 하며, 특히 대학은 헌법상 자치권이 부여되어 있으므로(헌법 제31조 제4항), 법률상 금지된 것이 아니면 교원의 인사에 관한 사항 등을 정관이나 인사규정 등으로 정하면서 창학 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종교교육 내지는 종교선전과 관련된 사항도 자유로이 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다른 한편 헌법상 종교의 자유와 대학의 자치권도 그 본질적인 내용이 침해되지 않는 한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고(헌법 제37조), 헌법 제31조 제6항에 의하면,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사립학교법 제53조의2에서 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의 임면에 관하여 상세히 규정하고 있음을 원용하였다. 그에 따라 사립대학에서 교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정관이나 인사규정 등으로 정하면서 창학이념 구현과 관련된 사유를 포함시키더라도 그 한계는 “① 학생교육에 관한 사항, ② 학문연구에 관한 사항, ③ 학생지도에 관한 사항 등 객관적인 사유”로 포섭될 수 있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그리고 이찬수 교수가 교육방송(EBS)의 “폴레랑스”에 출연하여 단군상 건립 문제에 관하여 기독교가 토착문화와 정서를 함께하고 이에 융화해야 한다는 요지의 발언을 하였고, 사찰을 방문하여 불상에 합장배례를 하였으며, 기독교 재단이 설립한 강남대학교에서 1학년 교양필수 과목인 “기독교와 현대사회”를 강의하면서 종교다원주의로 비추어 질 수 있는 내용의 강의를 한 것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

즉 강남대학교의 창학이념과 정체성이 일부 훼손되었다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① 강남대학교가 재임용 부적격사유로 삼고 있는 ‘창학이념에 반하는 행위’는 그 개념이 포괄적이고 추상적이어서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에서 규정한 “객관적인 사유”라고 보기 어려우며, ② ‘창학이념에 반하는 행위’중에는 재임용거부의 사유가 아닌 가벼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도 포함될 우려가 있고, 이는 재임용거부 사유 및 절차와 징계사유 및 절차를 구분함으로써 교원의 신분을 두텁게 보장하고자 하는 사립학교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③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에서 재임용심사의 객관적인 사유로 예시하고 있는 학생교육에 관한 사항, 학문연구에 관한 사항, 학생지도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전혀 평정하지 않고, 창학이념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재임용 부적격자로 평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주관적이고 자의적일 수 있는 사유만으로 재임용 여부를 심사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으며, ④ 강남대학교는 목회자 및 종교지도자 등을 양성하는 신학교나 신학대학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교육이

념과 기독교 정신에 의하여 복지사회 구현을 위한 고등교육을 실시하여 교양인, 전문인, 봉사인을 양성하는 것을 교육목표로 하는 종합대학교이고, 이찬수 교수는 신학부 소속 교원이 아니라 교양학부 소속 교원이며, ⑤ 이찬수 교수가 담당하는 강의인 “기독교와 현대사회”는 1학년 교양필수 과목으로 그 수강생들 중에는 기독교를 믿지 않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기독교에 반감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도 있고, 수강생들 사이에서도 이찬수 교수의 강의 내용에 대한 평가가 상반되는 등 창학이념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평가는 어렵고, 그 만큼 이에 관한 평가에는 주관이나 자의가 개입될 여지가 있으며, ⑥ 이찬수 교수가 교육방송(EBS)의 “뜰레랑스”라는 프로그램에 출연한 후 강남대학교에 제출한 해명서를 통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였으며, 이 사건 재임용심사는 그로부터 약 2년 후에 이루어져 이찬수 교수의 교육방송 출연이 재임용계약 부적격자 평정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강남대학교가 “창학이념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이찬수 교수를 재임용계약 부적격자로 평정한 것은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① 학생교육에 관한 사항, ② 학문연구에 관한 사항, ③ 학생지도에 관한 사항 등 학칙이 정하는 객관적인 사유”에 의해 재임용이 거부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강남대학교의 재임용거부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한편 이와 같은 1심 법원의 판단은 항소심과 상고심에서도 그대로 받아들여져 기독교 창학이념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이찬수 교수를 재임용에서 탈락시킨 강남대학교의 행위는 위법한 것으로 확정되었다.

(3) 재임용 평가 항목 중 신앙관계 항목(서울고등법원 2006누31626)

종교계 사립대학의 교원 재임용 평가기준 항목 중 신앙관계 항목은 교수 재임용제도 본연의 목적과 관련성이 적으며, 헌법상 보호받는 종교의 자유를 교수 재임용제도와 관련시킴으로써 실질적으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게 되며, 객관적으로 수치화할 수 없는 평정내용이 많아 평정자의 주관적이고 자의적인 평정에 의해 국가정책 또는 사학재단에 비판적인 교원이 현실적으로 재임용이 거부당할 가능성이 매우 커 교원을 재임용하는 데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정기준으로 볼 수 없으므로 위 평정항목은 교원 재임용의 평정기준으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3. 국내외 사례의 비교연구로부터의 시사점

외국의 사립학교는 한국에 비해 국가로부터 상당히 자율성을 인정받고 있다.¹⁰¹⁾ 종립 학교라고 해서 다를 바 없으며, 학생에게 학교선택권이 보장된 이상 여간해서 종교차별의 문제가 제기될 여지도 많지 않다.

그런데 사립학교의 자율성의 문제는 그 사회에서 교육 및 학교가 처한 환경조건과 긴밀한 연관이 있다. 한국의 경우 대학 입시 경쟁은 무한경쟁이라고 말할 정도로 치열하다. 어떤 학교를 나왔느냐 하는 것이 상급학교로의 진학에서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될 뿐 아니라 대학 졸업 후의 삶에까지 매우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대학의 앞 글자를 따서 이른바 명문대학의 서열이 정해져 있으며, 부모의 생활수준에 따라 순위가 높은 명문 학교에 들어가는 비율이 달라진다. 더욱이 한국에서 사립학교는 학교 설립에서 재단이 재산을 출연하였지만, 국가의 재정지원 의존도가 매우 높다.

따라서 사립학교라고 해도 공교육제도에 편입되어 개인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지대하므로 그 공공성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 외국과 달리 종교 차별을 비롯한 종교의 자유와 같은 인권의 문제가 한국의 학교에서는 훨씬 더 진지하게 재검토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이다. 물론 전적으로 종교인 양성에 목적이 있는 학교의 경우는 예외일 것이다.

미국의 경우와 같이 특정 종교를 위한 교육으로서의 종교교육(education of religion)과 종교 일반에 대한 교육으로서의 종교교육(education about religion)을 구별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사립학교의 경우 전자에 가까운 면이 없지 않았기 때문이다. 물론 미국의 국공립학교에서의 문제였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사립학교가 차지하는 위상을 고려하면, 미국에서의 논의를 사립학교까지 포함하는 학교교육에서의 종교교육의 문제로 이해해야 한다. 우리나라 종립학교에서는 미국의 국공립학교에서와 같이 종교 일반에 대한 교육으로서의 종교교육에 대한 판단기준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즉 교육적 차원에서 종교에 대한 교육은 가능하지만, 아무리 종교적 이념을 가진 재단이 설립한 사립학교라고 하여도 학생들에게 특정 종교나 교파와 연계된 교육을 하는 것은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¹⁰²⁾

101) 예컨대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대한교육법학회 주최, 중등사학의 자율성과 공공성: 독일, 벨기에, 한국, 중국, 일본의 국제비교(한양대학교, 2012.10.9.)에 실린 글 참고.

102) 류성민 외 1인, 외국(영, 미)의 종교교육제도 개선사례 연구, 문화체육관광부, 2011, 33면 참조.

제4장 종교적 차별 실태조사

1. 설문조사 개요

1) 설문조사대상

종교적 차별실태조사는 전국의 3,158개의 중학교와 2,314개의 고등학교를 대상¹⁰³⁾으로 하였다. 이 중 종립학교는 중학교 152개 학교, 고등학교 218개 학교이다. 종립학교를 종교별로 살펴보면 중학교의 경우는 불교 14개 학교, 개신교 106개 학교, 천주교 23개 학교, 원불교 6개 학교, 통일교 2개 학교, 한국정교회 1개 학교이고, 고등학교의 경우는 불교 16개 학교, 개신교 151개 학교, 천주교 33개 학교, 원불교 8개 학교, 대순진리회 4개 학교, 천도교 1개 학교, 통일교 4개 학교, 한국정교회 1개 학교이다.¹⁰⁴⁾

103) 전국 중·고등학교 현황

구분	중학교			고등학교		
	학교수	학생수	교원수	학교수	학생수	교원수
국립	9	5,966	406	16	14,470	1,222
공립	2,509	1,513,038	91,583	1,332	1,058,516	76,758
비종교사립	488	237,791	14,015	748	644,114	43,200
종교사립	152	92,299	5,000	218	202,987	11,773
합계	3,158	1,849,094	111,004	2,314	1,920,087	132,953

104) 전국 종립학교 현황

구분	중학교			고등학교		
	학교수	학생수	교원수	학교수	학생수	교원수
불교	14	9,288	498	16	15,657	829
개신교	106	65,547	3,553	151	144,718	8,426
천주교	23	13,276	696	33	27,687	1,602
유교						
원불교	6	2,696	172	8	4,587	309
대순진리회				4	4,931	300
천도교				1	1,145	63
대종교						
통일교	2	1,360	66	4	3,464	200
한국정교회	1	132	15	1	798	44
성공회						
합계	152	92,299	5,000	218	202,987	11,773

설문지의 배포 비율은 중고등학교 학생 2,000명, 교원 300명을 기준으로 중학교, 고등학교를 각각 30%, 70%로 나눈 후, 설립형태별로 종교사립 60%, 비종교사립 20%, 국공립 20%로 다시 나누었다. 이를 다시 5대 권역별로 나누어 서울경기·인천 50%, 부산·대구·울산·경남·경북 20%, 광주·전남·전북 10%, 대전·충남·충북 15%, 강원·제주 5% 기준으로 최종 설문조사대상 학교를 선정하였다. 조사대상의 선정 비율은 시도별 인구분포, 종교별 인구수, 중립학교의 비중, 종교적 차별 행위가 보고된 사례의 빈도¹⁰⁵⁾ 등을 고려하여 정하였다. 이와 같은 기준으로 샘플링한 결과, 중학교의 경우 학생은 50개 학교, 교원은 16개 학교가 임의 선정되었고 고등학교는 학생은 117개 학교, 교원은 43개 학교가 임의로 선정되었다.

지역별로는 학생의 경우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합하여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81개 학교, 영남권(대구, 부산, 울산, 경남, 경북) 34개 학교, 호남권(광주, 전남, 전북) 17개 학교, 충청권(대전, 충남, 충북) 26개 학교, 기타 권역(강원, 제주) 9개 학교가 선정되었고, 교원의 경우 수도권 30개 학교, 영남권 12개 학교, 호남권 5개 학교, 충청권 10개 학교,

105)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은 연구용역을 위한 사전조사의 일환으로 2002년부터 2011년까지 종교적 차별로 논란이 되고 있는 사례들을 정리하여, 분류하였다. 이 사전조사는 종교적 차별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들의 내용과 수준, 빈도 등을 참고하여 본 연구조사의 참고자료로 활용하고자 실시하였다. 국가 및 공공기관의 제보사례,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제보상담사례, 언론이나 기타 관련 단체들에 의해 다루어진 사례들을 정리하였다. 조사한 사례를 몇 가지 범주로 나누어 구분해 보았다.

구분	사례수
종교를 이유로 한 교육시설 이용 차별	13
동아리·학생회 등 학생자치 제한	2
종교수업 강제	25
종교행위 참여 및 종교시설 이용 강제	16
타 종교 폄하 및 개종 강요 사례	8
교원 및 교육기관의 종교차별 사례	26
교직원 채용·승진 시의 종교차별 사례	14
기타	7
합 계	111

위의 사례를 학교의 설립형태별로 구분한 결과, 국립은 대학 5건, 공립은 초등학교 20건, 중학교 17건, 고등학교 3건, 사립은 초등학교 2건, 중학교 18건, 고등학교 23건, 대학교 23건 등으로 나타났다. 국립 5건, 공립 39건, 사립 67 건이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의 경우 서울 49, 인천 4, 경기 11 충청권은 대전 5, 충북 2 영남권은 대구 4, 경북 6, 경남 3, 울산 2 호남권은 광주 3, 전북 3, 전남 3 기타권역(강원·제주)은 0 이었다. 수도권 64건, 충청권 7건, 영남권 15건, 호남권 9건이고 나머지 사례는 지역을 확인할 수 없었다.

강원.제주 2개 학교가 선정되었다. 설립형태별로는 학생의 경우 국공립은 33개 학교, 비종립학교는 32개 학교, 종립학교는 102개 학교가 선정되었다. 102개 종립학교의 종교별 분포는 불교 12개 학교, 개신교 64개 학교, 천주교 16개 학교, 원불교 5개 학교 대순진리회 1개 학교, 천도교 1개 학교, 통일교 3개 학교이다. 교원의 경우는 국공립 13개 학교, 비종립학교 11개 학교, 종립학교 35개 학교가 선정되었다. 종립학교의 종교별 분포는 불교 7개 학교, 개신교 22개 학교, 천주교 3개 학교, 원불교 1개 학교, 통일교 2개 학교이다. 106)

2) 설문조사 진행 방법

설문지 문항의 작성은 자문위원회를 통해 2회에 걸쳐 자문을 받았으며, 설문문항의 이해도, 적절성,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해 현장교사의 검토와 학생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도 병행하였다. 설문조사는 2012년 11월 11일 9일부터 11월 30일에 실시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가 해당 학교에 설문협조 공문과 함께 설문지를 첨부하여 전자문서로 일괄 배포하고, 연구팀에서 전화를 통해 협조여부를 확인하여 진행하였다. 학교당 학생은 15부, 교원은 5부로 설문지 부수를 한정하였고 학교의 여건상 1학년, 2학년, 3

106) 학생과 교원의 설문조사대상 학교 설립형태 분포

■ 학생

구분	불교	개신교	천주교	유교	원불교	대순진리회	천도교	대종교	통일교	한국정교회	성공회	비종교사립	국공립	소계
중학교	6	19	2	0	0	0	0	0	1	0	0	12	10	50
고등학교	6	45	14	0	5	1	1	0	2	0	0	20	23	117
합계	12	64	16	0	5	1	1	0	3	0	0	32	33	167

■ 교원

구분	불교	개신교	천주교	유교	원불교	대순진리회	천도교	대종교	통일교	한국정교회	성공회	비종교사립	국공립	소계
중학교	5	6	0	0	0	0	0	0	1	0	0	2	2	16
고등학교	2	16	3	0	1	0	0	0	1	0	0	9	11	43
합계	7	22	3	0	1	0	0	0	2	0	0	11	13	59

학년 중 2학년이 설문조사가 용이할 것이라는 점¹⁰⁷⁾에서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러나 설문대상학교의 사정상 2학년이 아니더라도 설문조사가 가능토록 하였다. 교원의 경우는 특별히 설문대상의 범위를 제한하지 않았다.

설문지 회수는 해당학교의 담당교사가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포하고, 각자 작성한 설문지는 개인별로 봉투에 넣어 봉한 다음 다시 거두어 일괄적으로 국가인권위원회로 반송하도록 하였다. 학생의 경우 전체 대상 학교 167개 중 96개 학교(중학교 35, 고등학교 61)가 회신하여 1,491개의 설문지가 회수되어 59.5%의 회수율을 보였다. 교원의 경우 전체 대상학교 59개 중 37개 학교(중학교 13, 고등학교 24)가 회신하여 185개의 설문지가 회수되어 62.7%의 회수율을 보였다.

3) 설문조사의 내용

설문지는 학생과 교원용으로 나뉜다. 학생의 경우는 학교 선택권의 유무를 묻는 문항, 학교 내에 종교시설이 있는지를 묻는 문항, 학교생활에서 종교적인 이유로 불편함을 경험한 것들에 대해 묻는 문항과 종교교육 또는 종교교육의 실시와 그 만족도에 대한 생각을 묻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15 > 학생 설문조사 내용

영역	조사내용
학교 선택권	- 평준화 유무 - 선택권 유무 - 선택 이유
종교시설	- 학교내 종교시설 유무 - 종교적 상징물 유무,
학교생활	- 종교적 표현의 경험 유무 - 종교의식 또는 행사의 실시 여부 - 종교교과의 실시 여부 및 대체과목의 선택 여부 - 학생자치활동에서의 특정종교에 대한 우대 여부
종교교육 또는 종교의식 일반	- 학교에서의 종교교육 또는 종교의식의 실시 여부 또는 실시 수준 - 개인의 신앙생활이나 종교 선택 시 학교 내 종교의식 등이 미치는 영향

107) 대체적으로 1학년은 학교의 전반적 분위기나 여건을 이해하기는 학교생활기간이 부족하다는 점과 3학년의 경우는 진학 등의 학사일정으로 설문협조가 부담스러울 것이라는 현장교사의 조언을 참고하였다.

특히 학교생활의 경우는 종교적 표현의 경험 여부, 종교의식 또는 행사의 실시 여부, 종교교과의 실시여부 및 대체과목의 선택 여부, 학생자치활동에서의 특정종교에 대한 우대 여부 등을 묻는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교원의 경우는 교직생활에서 종교적인 이유로 불편함이 있었던 경험을 묻는 문항, 공무원의 종교중립 의무에 대한 생각을 묻는 문항, 종교의식이나 종교행사 또는 종교교육을 학교에서 실시하는 것에 대하여 생각을 묻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16 > 교원 설문조사 내용

영역	조사내용
교직 생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채용 당시의 특정종교로 자격조건을 제한한지의 여부 - 교직원 연수에서의 종교적 프로그램 경험 여부 - 종교활동의 참여 여부 - 종교활동에 따른 인사고과 및 불이익 여부 - 종교를 이유로 한 돈이나 물품의 기부 요구를 받았는지 여부 - 학교재단과 다른 종교에 대한 폄하 발언을 들은 적이 있는지 여부 - 상급자에 의해 종교적으로 불편했던 경험(상급자의 권유에 의한 종교활동 참여, 상급자의 종교가 자신과 달라 자신의 종교를 밝히지 못한 경우)
공무원의 종교중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직원의 근무시간 중 특정종교행사 주관 여부 - 국공립 학교 안에 종교시설 설치 여부 - 종교집단간의 적대적 감정 유발 행위에 대한 국가의 개입 여부
종교교육 또는 종교의식 일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에서의 종교교육 또는 종교의식 실시 여부 - 학교에서의 종교교육 또는 종교의식에 대한 선택권 여부 - 학교에서의 보편적 종교교육의 실시 여부

(1) 학교선택권

종교교육의 강제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학교의 선택권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현실적 경향에 비추어 학교선택권의 기본적인 근거가 되는 평준화 유무 1문항, 학교 진학 시 선택권 행사 여부 1문항, 학교 진학 시 해당 학교의 선택 이유 1문항으로 구성되었다.

(2) 종교시설

학교 내에 종교시설이나 종교적 상징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그 의도와는 무관하게 설치된 종교시설 또는 종교적 상징물과는 다른 종교를 신앙하거나 무신앙의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정 하에 종교시설 유무 1문항, 종교적 상징물 유무 1

문항, 종교적 상징물이 있다면 두 가지 이상의 종교적 상징물이 함께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 1문항으로 구성되었다.

(3) 학교생활

학교생활 중에서 종교적인 이유로 불편함을 느끼게 했던 구체적 사례들을 확인하고, 이러한 것들이 종교적 차별이 발생할 수 있는 환경적 요인 될 수 있다는 가정 하에 종교적 표현의 경험 여부 2문항, 종교의식 또는 행사의 실시 여부와 그 주체에 대한 물음 13문항¹⁰⁸⁾, 종교교과의 실시 여부 및 대체과목의 선택 여부 11문항, 학생자치활동에서의 특정종교에 대한 우대 여부 5문항으로 구성되었다.

(4) 종교의식 또는 종교교육 일반

종교의식 또는 종교교육의 실시 및 개인의 신앙생활이나 종교 선택 시 미치는 영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알아 볼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학교에서의 종교의식 또는 종교교육의 실시 여부 1문항, 개인의 신앙생활이나 종교 선택 시 학교 내 종교교육 또는 종교의식 등이 미치는 영향 1문항으로 구성되었다.

(5) 교직생활

교원은 채용 및 인사에 있어서 종교적인 이유로 불편함이나 불이익은 없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종교적 차별로 이어진다는 가정 하에서 자신이 재직하고 있는 학교에서 종교와 관련된 경험의 유무 1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그리고 1문항에 12가지 사례¹⁰⁹⁾를 제시하여 자신의 경험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6)공무원의 종교중립

교원의 지위 상 국가공무원법에 신설된 59조의 2 종교중립의 의무(2009.2.6)¹¹⁰⁾를

108) 질문지 8번 문항의 경우 8가지 사례로 제시된 ①입학식, 졸업식 ②학급조회 ③종례 ④종교교과수업 ⑤(종교 교과 이외의)수업 ⑥체육대회 또는 축제 ⑦현장학습 ⑧명상 또는 경건회 등은 학교의 학사일정 중 학생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만 정리한 것으로 대광고 강의식 사건을 위시하여 판례, 언론 및 기타의 경로들을 통해 언급된 사례들에서 확인된 것들이다.

109) 제시된 12가지 보기는 교원들이 종교적인 이유로 불편해 하거나, 불이익이 우려되는 사례들을 정리한 것으로 판례, 언론이나 기타 자료들을 통해 언급된 사례들에서 확인된 것들이다.

110) 제59조의2 (종교중립의 의무) ① 공무원은 종교에 따른 차별 없이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소속 상관이 제1항에 위배되는 직무상 명령을 한 경우에는 이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2.6]

준수해야 하는 바, 이에 대한 생각을 알아 볼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공무원 종교중립에 대한 물음 1문으로 구성되었다. 그리고 1문항에 교직원 근무시간 중 특정종교행사 주관 여부, 국공립학교 안에 종교시설 설치 여부, 종교집단간의 적대적 감정 유발 행위에 대한 국가의 개입 여부 등 3문항으로 구성하였다.

(7)종교의식 또는 종교교육 일반

교원의 입장에서 종교의식 또는 종교교육에 대한 견해를 알아보기 위해 종교의식 또는 종교교육의 실시 여부 1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그리고 1문항에 학교에서의 종교의식 또는 종교교육 실시 여부, 학교에서의 종교의식 또는 종교교육에 대한 선택권 여부, 학교에서의 보편적 종교교육의 실시 여부 등 4문항으로 구성되었다.

4) 설문조사 결과분석

본 연구는 현실적으로 종교적 차별의 형태로 발생하는 학교 내의 일련의 문제들을 다룬다. 특히 중립학교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은 종교단체에 의한 것이라는 점에서 종교의 자유와 종교단체의 자율성을 주장하면서 그것이 종교적 차별인지에 대해 다툼이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종교적 차별이 무엇인지를 바탕으로 중고등학교를 중심으로 학교 내의 종교적 차별의 실태를 파악하고, 학교의 설립형태에 따른 종교적 차별의 차이를 살펴봄, 중립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종교교육의 구체적인 형태에 따라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발견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 종교적 차별이란 무엇인가?

연구문제 2 : 학교에서 일어나는 종교적 차별은 어떠한 것들인가?

연구문제 3 : 학교의 설립형태에 따라 종교적 차별의 차이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4 : 중립학교의 종교교육의 구체적 형태에 따라 학생이 받아들이는 수준의 차이는 어떠한가?

본 설문조사에 참여한 중고등학교 학생 및 교원에 대한 최종분석 연구대상은 학생 1,491명, 교원 185명이었다. 설문내용 중 학교의 설립형태 및 건학이념에 대해서는 사전 조사를 통해 확인된 만큼, 코딩작업 시 응답의 오류(모르겠다, 기타, 타종교 선택의 경우)를 수정하였다. 분석과정은 먼저 빈도분석을 통해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보고, 교차분석을 통해 학교의 설립형태와 종교이념과 응답사례들과의 상관관

계를 살펴보았다.

먼저 학교의 설립형태에 따라 국공립, 비종립학교, 종립학교로 구분하여 전체적으로 응답의 경향을 분석한 후, 학교의 종교이념에 따라 교차분석을 하였다. 이는 종립학교가 사전 사례조사에서도 나타났고, 본 설문조사에서도 드러났듯이 사례의 빈도의 가장 높았고, 종립학교라는 특성이 종교적인 차별과 연관성이 있을 것이라는 가정에서 출발한 것이다.

이 설문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 애초 설계 당시 국공립학교, 비종립학교, 종립학교 등 학교의 설립형태와 관계없이 광범위하게 발생하는 종교적 차별의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 살펴보자는 취지에서 중고등학교 학생 전체를 모집단으로 상정하였다. 그러나 연구의 방향이 종립학교로 집중되면서 조사의 내용이 전체 모집단의 특성을 대변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전문가의 자문이 있었음을 밝혀둔다.

그러나 학생의 경우 국공립 425개, 비종립학교 327개, 종립학교 739개의 분포를 볼 때, 통계가 가능한 유효한 표본수를 만족하는 경우는 종립학교이고 이는 설문조사의 도출결과의 근거로서 문제가 없다는 점을 밝혀둔다. 전체 중고등학교 학생 중 종립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수는 중학교 92,299명, 고등학교 202,987명으로 합하면 295,286명이다. 참고로 교원의 경우는 국공립 45개, 비종립학교 40, 종립학교 100개의 분포를 나타냈다. 또한 종립학교에 재직 중인 교원의 수는 16,773명이다.

한편, 통계적 한계와는 다른 설문조사 과정의 또 다른 애로가 있었는데, 종립학교가 자신들의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종교교육 자체를 부정하는 의도가 있다며, 설문조사 자체를 조직적으로 거부하는 사태가 발생한 점이다. 특히 일부 개신교계 학교를 중심으로 나타났다. 이는 협조거부의사를 명확하게 밝힌 사례들에서도 명확히 드러난다.

설문 조사와 관련하여 총167개 학교에 협조 요청을 하였고, 이 중 71개 학교가 설문 조사에 응하지 아니하였는데, 문서나 전화를 통해 설문 협조에 거부의를 밝힌 학교가 20개 학교, 협조의사를 밝힌 설문지를 보내지 않은 학교가 18개 학교, 무응답으로 일관한 학교가 33개 학교이다.

설문조사의 성격과 진행과정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여 거부 사유를 정리하였다. 설문조사 자체에 대한 거부감을 표시한 학교가 7곳으로 그 이유들은 학교와 연계된 외부단체의 요청으로 인한 거부와 종교적 차별이 없다는 이유 등이고, 학교의 여건 등 학내 사정을 이유로 5곳, 명확한 이유를 밝히지 않은 채 무조건 협조가 불가능하다는 학교가 2곳이었다. 나머지 6곳은 국가인권위에 직접 협조거부의사를

밝히거나 협조거부사유가 기록으로 남아 있지 않아 제외하였다.111)

111) 설문조사 협조 거부 사유

순번	학교명	설립유형	거부 사유
1	A고등학교	종교계 사립	안녕하세요. A고등학교 교감 000입니다. 종교차별 실태조사 설문과 관련된 세부 협조요청 공문을 접수했기에 답장을 드립니다. 저희는 재학생과 학부모 전원이 기독교 신앙을 함양하는 것을 소원하며 본교에 지원했기에 학교 내에서의 종교의식이나 종교 교육의 경험과 그에 대한 인식현황을 알아보고자 하시는 귀 기관의 설문 취지에 도움을 드릴만한 여건이 안 되어 설문에 협조가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소망합니다.
2	B고등학교	종교계 사립	기독교대책위원회에서 비협조 공문을 받았기에 할 수 없다.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보니 법률에 위배되는 조항이 많다고 하더라. 사립학교법에서도 인정하는 종교교육을 왜 반대하는지 이해를 못하겠다. 설문문항 중 종교상징물이 종교별로 있냐는 질문은 기독교학교에 불상을 세우라는 이야기인데 말이 되느냐?
3	C고등학교	종교계 사립	중고등학교 학교장협의회에서 거부하기로 방침을 정했기 때문에 참여할 수 없음
4	D고등학교	종교계 사립	단순한 협조공문이라서 안하고 싶음...
5	E고등학교	종교계 사립	목사와 통화진행(종교자유정책연구원 비판, 국가인권위원회 설문조사 불이행)
6	F고등학교	비종교계 사립	F고등학교는 종교와 상관이 없는 학교로, 설문 조사와 관련성이 적어 설문에 응답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7	G고등학교	종교계 사립	안녕하십니까? G고등학교 교목실 담당기획 000입니다. 본교는 차별조사과-6603에서 시행한 <종교차별 실태조사 설문조사 협조요청> 공문을 2012년 11월 9일 수신하였습니다. 본교는 수학능력시험 이후 추계행사 관련 및 학업 교정 기간으로 인해 학생들의 설문조사를 수행하기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결과적으로 중립학교 학생만을 모집단으로 볼 경우, 이번 설문조사는 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는 $\pm 3.6\%$ 이다. 참고로 교원의 경우는 중립학교 교원만을 모집단으로 볼 경우 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는 $\pm 9.8\%$ 이다. 따라서 국공립 학교, 비중립학교, 교원의 경우는 중립학교의 설문조사 결과를 이해하는데 참고적인 자료로 활용하는 것 이상의 통계학적 활용은 무리가 있음을 알려둔다.

8	H고등학교	종교계 사립	학사일정 등으로 설문협조 불가 통보
9	I중학교	비종교계 사립	업무과다로 다른 학교에서 해주기를 희망
10	J중학교	종교계 사립	설문조사 안하겠음
11	K중학교	종교계 사립	안녕하세요.. K중학교 입니다. 종교차별 실태조사 설문조사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말씀드립니다. 본교에서는 전교직원 및 전교생에게 종교차별을 일체 하지 않으며, 설문지 내용 중 학생들의 종교 갈등을 유발하는 비교육적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으므로 협조하지 않게 되어 양해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2	L고등학교	종교계 사립	국가인권위원회 처리 방안에 대해 확실히 얘기해 주지 않는다. 종자연 등 불교편에서 하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한 답을 주지 않고 있는 실정에서 국가인권위원회 설문조사를 응하기에 부담스럽다.
13	M고등학교	종교계 사립	학생을 선발할 때 기독교 관련 교육 등에 대해 학부모 동의하에 학생을 선발하였기에 설문조사에 응하지 않겠다.
14	N중학교	종교계 사립	설문조사 요청하는 곳이 많아서 학부모 민원이 많음

2. 심층면접 개요

1) 심층면접 대상

본 연구의 심층면접 대상은 수도권 지역의 학생 및 교원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심층면접 대상자를 수도권 지역으로 제한한 것은 수도권에서 가장 많은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고, 가장 빠른 전파속도를 보이는 경향 때문에 충분히 설문조사를 보완하는 질적 연구가 가능하다고 보았다. 또한 전국적으로 심층면접대상자를 선정하고 심층면접을 실시하는데 들어가는 비용과 소요시간 등을 고려할 때 연구유역 기간 또한 충분하지 못한 점도 고려되었다.

심층면접 대상자는 학생 18명, 교원 11명이었다.¹¹²⁾ 심층면접 대상자 선정은 학생의 경우는 인터넷을 통해 공모를 하였다. 11월 26일부터 11월 30일까지 모집하였고, 심층면접의 내용을 사전에 알지 못하도록 하였다. 신청자에 신청자격제한은 두지 않았다. 다만, 취업·아르바이트 사이트를 통해 공모하였기 때문에 이에 따르는 제한은 불가피하였다. 참여 신청자 중 연구팀의 심층면접 대상으로 적합한 학생을 선정하였다. 선정 기준은 학교의 설립형태, 학교의 종교 이념을 고려하였다. 국공립 5명, 비종립학교 5명, 종립학교 10명을 선정하였으나, 최종 심층면접 참석은 국공립 4명, 비종립학교 5명, 종립학교 9명이었다. 다만, 천주교, 불교계 종교 사립학교의 학생은 신청자가 없어 부득이 신청학생 중심으로 선정하였음을 밝힌다.

교원의 경우는 심층면접대상자 선정은 연구팀의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개별적

112) 심층면접 대상자의 학교 설립형태 및 학교의 종교이념에 따른 분포 현황

구분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수	교원수	학생수	교원수
국공립			4	
비종교사립		1	5	4
종교사립	불교	1		
	개신교	2	8	2
	천주교			1
	대순진리회		1	
합계	0	4	18	7

으로 섭의를 실시하였고, 연구의 성격상 종립학교에 재직 중인 교원이 심층면접에 응하는 것이 심리적으로 부담이 된다는 점 때문에 대상자 선정에 어려움이 있었다. 선정 기준은 학생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학교의 설립형태, 학교의 종교이념을 고려하였다.

2) 심층면접 진행 방법

심층면접은 심층면접 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진행되었다. 학생의 경우는 12월3일부터 12월 6일까지 4차례의 집단면접을 실시하였고, 교원의 경우 당사자가 선호하는 장소에서 개별적으로 진행하였다.

학생은 리서치 회사의 FGI룸을 빌려 기본적으로 5명씩 집단면접을 실시하였고, 심층면접에 앞서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였다. 심층면접은 면접자들과 면접대상자 간의 긴밀한 관계 형성이 없는 상황이어서 먼저, 면접자와 면접 대상자 간 또는 면접 대상자 상호간의 친숙한 분위기를 위해 평소의 관심사 또는 개인 소개 등을 중심으로 시작하였다. 또한 심층면접의 진행상황에 따라 면접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구조화된 질문지를 사용하여 실시하였다. 그러나 구조화된 질문지와는 달리 면접과정에서는 현장의 분위기와 면접대상자의 응답내용에 따라 질문의 수준이나 내용에 맞게 적용하였다. 면접시간은 대체적으로 1시간 ~ 1시간 30분 정도 소요되었으며, 면접자가 심층면접 대상자의 동의 구하고, 면접내용과 특이사항을 기록하였으며, 모든 면접과정은 녹화되었다. 심층면접을 위해 연구팀은 여론조사 전문가를 통해 심층면접에 대해 2차례에 걸쳐 자문을 구했다.

3) 심층면접 대상 인적사항

심층면접의 대상은 학생의 경우 1학년 1명, 2학년 1명, 3학년 16명이다. 심층면접 공모의 특성상 수능시험을 마친 3학년 학생들이 다수 신청한 결과이다. 남학생 8명, 여학생 10명이었고, 개인의 종교는 불교 1명, 개신교 5명, 가톨릭 1명, 무교 11명으로 나타났다.

<표 17 > 심층면접 대상자 인적사항_학생

면접자	학교의 설립유형	학교의 종교이념	직책	개인종교	성별	학년
학생1	국공립	-	학생	천주교	남	3학년
학생2	국공립	-	학생	개신교	남	1학년
학생3	국공립	-	학생	개신교	남	3학년
학생4	국공립	-	학생	개신교	여	3학년
학생5	종립학교	개신교	학생	무교	여	3학년
학생6	종립학교	개신교	학생	개신교	여	3학년
학생7	종립학교	개신교	학생	무교	남	3학년
학생8	종립학교	개신교	학생	무교	여	2학년
학생9	종립학교	개신교	학생	무교	여	3학년
학생10	비종립학교	-	학생	무교	남	3학년
학생11	비종립학교	-	학생	무교	여	3학년
학생12	비종립학교	-	학생	무교	남	3학년
학생13	비종립학교	-	학생	무교	남	3학년
학생14	비종립학교	-	학생	개신교	남	3학년
학생15	종립학교	개신교	학생	불교	여	3학년
학생16	종립학교	개신교	학생	무교	여	3학년
학생17	종립학교	대순진리회	학생	무교	여	3학년
학생18	종립학교	개신교	학생	무교	여	3학년

교원의 경우 40대 초반에서 50대 후반까지 연령분포를 보이고 있고, 남교사 10명, 여교사 1명이다. 종립학교 교사는 6명, 비종립학교 교사는 5명이다. 종립학교 교사 6명 중 학교의 종교이념별로 보면 불교 1명, 개신교 4명, 천주교 1명으로 나타났다. 개

인의 종교는 불교 2명, 개신교 3명, 천주교 2명, 무교 4명이다.

< 표 18 > 심층면접 대상자 인적사항_교원

면접자	학교의 설립유형	학교의 종교이념	직책	개인종교	성별	연령
교사1	종립학교	개신교	교사	천주교	남	45
교사2	비종립학교	-	교사	개신교	남	42
교사3	종립학교	불교	교사	불교	남	49
교사4	종립학교	가톨릭	교사	개신교	남	56
교사5	비종립학교	-	교사	무교	남	47
교사6	비종립학교	-	교사	무교	남	48
교사7	종립학교	개신교	교사	천주교	여	48
교사8	비종립학교	-	교사	무교	남	42
교사9	비종립학교	-	교사	불교	남	52
교사10	종립학교	개신교	교사	개신교	남	55
교사11	종립학교	개신교	교사	무교	남	54

4) 심층면접 분석방법

심층면접은 면접 과정을 면접자가 기본적으로 기록하고 녹화 또는 녹음하는 것을 면접대상자의 동의를 구하고 실시하였다. 학생의 집단심층면접은 녹화한 영상을 바탕으로 음성파일만 추출하여 녹취록을 작성하였다. 교사는 개별적으로 디지털레코드로 녹음한 파일을 가지고 녹취하였다. 1차적으로 녹취록 전체를 일독하였고, 2차적으로 녹취록 내용 중 설문조사의 결과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구조화된 질문지에서 제시하는 핵심 범주들을 중심으로 요약 정리하였다. 한편, 설문지 형식의 한계로 드러나지 않는 새로운 정보들이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심층면접 분석 결과와 설문조사 결과를 비교검토 하였다.

5) 심층면접 결과 요약

(1) 학생의 심층면접 결과 요약

① 국공립 학교 학생 심층면접

가. 헌법 20조의 종교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에 대한 이해 정도

헌법 20조의 종교의 자유에 관한 내용이 있다는 것에 대해 모르는 학생도 있었으나, 대체적으로는 알고 있었고, 종교의 자유에 대해서는 자신이 종교를 선택할 수 있으며, 종교를 강요당하지 아니할 자유로 인식하고 있었다.

나. 신앙생활을 통한 자신의 변화 정도

대체적으로 신앙생활이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었으나,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는 데는 신앙생활이 크게 기여한다고 보지는 않는다는 의견도 있었다. 특히 현실 교단의 좋지 않은 모습이 싫었다고 밝혔다.

다. 친구들 사이에서 서로 신앙생활을 권하는가?

대개는 개신교, 천주교를 믿는 학생들이 친구들에게 권하는 경우가 있는데, 같이 가면 좋고, 안 가도 상관없다고 답했다. 믿고 안 믿고는 자기 자유라고 생각하였고 친구들의 종교와 상관없이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부모님들의 경우 종교를 고려하는 것 같고, 특히 배우자를 고를 때는 같은 종교를 우선시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라. 학교에서 종교동아리 활동은 하는가?

대체적으로 종교동아리 같은 것은 없으나, 신앙심이 강한 교사나 학생이 종교동아리를 만들어 활동하는 경우도 있었다. 학교에 공식적인 동아리로 등록이 되지만, 특별한 지원이 있는 것은 아니었다.

마. 학교 행사에서 종교적인 의식이나 행사가 있나요?

학교축제 때 종교동아리 같은 곳에서 먹거리나 성경책 등을 교실에 두고 판매하는 등 행사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하나, 공식적인 것은 따로 없다고 하였다.

바. 선생님의 경우, 종교활동을 하거나, 신앙생활을 권하는 경우가 있나요?

연세가 드신 교사들 중 일부가 신앙생활을 권하기도 하였다고 밝혔다. 대개 수업시간 말미에 짜투리 시간에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듣는 아이도 있고, 안 듣는 아이도 있는 등 교사들의 종교적 발언에 대해 크게 동요되거나 불편해하는 것 같지 않은 것 같다고 했다.

사. 종교교육이 필요한가?

대체적으로 보편적 종교교육에 대해서는 괜찮다고 생각하였다. 그라 종교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다.

아. 종교과목이외에 듣고 싶은 과목이 있다면?

대체적으로 각자가 좋아하는 것을 하면 좋겠다는 의견이지만, 실현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하였다. 오히려 종교과목이든 다른 과목을 하든 확일적으로 통일적으로 수업을 듣는 것 자체가 싫다고 하였다. 굳이 대신할 것을 찾는다면, 자치활동, 동아리 활동, CA활동 같은 것을 확대하면 좋겠다는 의견이었다. 이렇게 하면 취미활동이나 여가활동을 통해 친구들과의 교우관계가 돈독해져 학교폭력이나 왕따 문제가 사라질 것이라고 답했다.

② 비종교 사립학교 학생 심층면접

가. 종교동아리가 있는지?

특별한 활동을 하거나 선교, 포교를 목적으로 하는 동아리는 없으며, 일부학교에서 소수의 학생들이 개인적 신앙활동을 위한 동아리를 만드는 경우가 있다고 했다.

나. 선생님께서부터 선교, 포교를 당한적은?

종교를 가진 일부 선생님들이 수업시간을 이용하여 자기종교를 홍보하는 경우가 있었으나, 학생들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고 답했다.

다. 종교로 인해 친구와 불편했던 적은?

다른 종교를 가진 친구와 종교이야기를 하면 항상 끝이 좋지 않기 때문에 종교 이야기는 안 하려고 노력한다고 했다.

라. 종교교육에 대한 생각은?

자기 선택과 상관없이 모든 학생들이 강제적으로 종교교육과 종교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종교교육과 종교활동을 점수로 매기는 것에 대해 비판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마. 종교교육의 대안은?

참여를 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경우는 봉사활동을 시키면 좋겠다.

③ 종교 사립학교 학생 심층면접

가. 학교가 종교교육을 하는 것을 알고 지원하였나?

알고 지원했던 경우와 모르고 지원했던 경우가 거의 반반이었다. 알고 지원했던 경우에도 특정 종교활동과 특정 종교과목이 존재하는지는 몰랐고, 1학년 때는 다른 종교학생들의 반발 등으로 혼란스러운 학교생활을 했다고 답했다.

나. 학교에서 진행되는 종교교육 및 종교행사는?

개신교 학교의 경우 종교활동을 다양하게 강요하고 있었으며 특히 종교활동으로 인해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당하고 있는 사례가 있다고 아래와 같이 말했다.

- i) 졸업식이나 입학식 등의 행사를 예배형식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종교활동 시간에 다른 행위(책을 보거나 잠을 자거나, 참여하지 않는)는 일절하지 못하게 종교활동을 강요하고 있다.
- ii) 학생들의 창의적재량활동시간을 종교활동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으며, 학생들의 행사 (합창대회, 율동대회, 퀴즈대회, 암송대회)등은 모두 종교재단과 같은 종교내용이 없으면 입상을 할 수 없고, 같은 종교를 가진 학생들의 학교 생활이 다른 학생들에 비해 유리하도록 진행하였다.
- iii) 아침 조례시간에 학생의 종교와 상관없이 돌아가면서 기도를 강요하고, 헌금을 의무적으로 내도록 강요하였다.
- iv) 종교과목의 대체과목을 개설하지 않거나, 개설한 경우에도 대체과목을 선택하는 학생들을 설득하여 선택을 포기하도록 유도하고, 대체과목인 철학수업에 교목선생님이 배정되기도 하였다.

v) 매년 신앙부흥회를 2~3시간씩 하면서 학생들을 강제로 참여하게 하거나 참여하지 않을 경우 학급의 TV를 통해 방송하고 그 내용을 종이에 써서 제출하도록 하여 학습권을 침해하였다.

다. 종교교육에 대한 학생들의 생각은?

종교를 가졌던 안 가졌던 대부분의 학생들은 비판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아래와 같은 사례들이 있다고 말했다.

- i) 교육내용을 성경적으로 해석하거나, 종교와 상관없는 내용도 종교적으로 해석하여 자기 종교가 우월하다고 홍보하는 경우가 많아 억지스럽게 느끼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경우가 많다.
- ii) 학교는 공부하러 가는 곳인데, 종교활동으로 인해 학습권이 침해당하고 의무적으로 참석하는 것에 대해 불편해 하고 있으며, 같은 종교를 가진 학생도 자기 종교에 대해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다.
- iii) 학생인권조례의 내용을 알고 있지만, 학교에서는 잘 지켜지고 있지 않지만, 그렇다고 학생의 입장에서 학교와 선생님들의 지시를 거부하기 어렵다.
- iv) 고등학생의 경우 자기 선택이 아닌 강요에 의해 종교교육을 하면 잘못된 인성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종교교육이 선택적으로 이루어 져야 한다.

(2) 교원의 심층면접 결과 요약

① 비종교 사립학교 교원 심층면접

가. 채용과정에서 특정종교를 우대하거나 불이익?

특별히 우대하거나 불이익 없다.

나. 학교에서의 종교활동?

없다.

다. 종교동아리?

소수학교에서 개신교 선생님들 중심으로 신우회가 있으나, 특정 활동없이 교과시간 이외에 개인적인 종교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라. 학생들과의 갈등?

특정종교를 가진 선생님이 개인적 판단에 따라 수업시간을 이용하여 학생들에게 자기종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마. 종교교육의 필요성?

학생의 지원에 의해 모집된 학교의 경우 학생의 선택에 따라 진행되는 종교교육은 찬성하나, 지원 배정이 아닌 경우 종교교육은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심리적으로 미약하고 미성숙한 학생의 경우 종교교육에 대한 반감이 크기 때문이다.

② 종교 사립학교 교원 심층면접 결과

가. 채용과정에서의 특정종교를 우대하거나 불이익?

i) 채용의 경우

개신교 종교사립 학교의 경우 예전에는 종교에 상관없이 직원을 채용했으나, 최근에는 서류면접에서 세례증명서와 목사추천서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단종교 및 다른 종교인의 경우 면접에서 불이익을 주고 있다. 천주교, 불교 종교사립의 경우 특정하지는 않았으나, 면접에서 걸러질 것으로 예상된다.

ii) 진급의 경우

개신교 종교사립의 경우 교장, 교감, 부장교사로 진급하기 위해서는 종교재단과 같은 종교인이거나 개종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암묵적 동의를 이루어지고 있다. 종교가 다를 경우 진급에서 불이익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나. 학교의 공식행사에 종교활동이 포함되어 있나?

개신교 종교사립 학교의 경우 학교의 모든 공식행사의 시작과 끝에 종교행사로 볼 수 있는 기도를 하고 있으며, 개신교 행사일에 학교에서도 똑같이 종교행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천주교와 불교의 경우 종교행사를 학생전체가 참여하는 것은 없다.

다. 종교행사에 대해 불편해 하는 사람이 있나?

교직원의 경우 월요일 아침 업무시작 전에 간단예배를 교무실에서 진행한다. 그러나, 불편해 하는 경우는 소수이다. 그 이유는 개신교는 이미 같은 종교인으로 선발하고 있으며, 천주교와 불교의 경우는 강제성을 두지 않기 때문이다.

라. 학교의 종교시설이 존재?

예배당, 법당, 기도실, 교회 등 대부분의 학교에 종교시설이 존재하고 있다.

마. 종교동아리?

개신교의 경우 성경공부, 기도모임, 신우회 등 다양한 종교동아리가 존재하며, 불교의 경우 교사불자회가 존재함. 주로 수업시간 이외에 친목을 다지거나 개인의 종교활동을 하는 경우가 다수임.

바. 종교교육에 대한 생각은?

대체적으로 학교의 건학이념에 따른 종교교육은 인정하고 있다. 또한 입시에 지친 학생들에게 휴식과 인성함양을 위한 종교의 순기능은 인정하여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종교교육이 강제적으로, 의무적으로 진행되는 것은 반대하고 있으며, 학생 스스로 선택권을 가지는 종교교육을 바람직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종교교육의 대체과목이 개설되어야 하며, 대체과목으로는 철학 과목을 추천하였다.

사. 기타

개신교 종교사립의 경우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제 종교교육 및 예배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으나,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강제 종교교육 및 예배는 문제화되고 있지 않고 있다. 사립학교의 경우 같은 학교 교사와 평생을 같이 근무해야 하는 특성으로 인해 어느 정도의 불이익은 감수하며 받아들이고 있으나, 심리적으로는 큰 고통을 겪고 있기도 한다.

3. 학생 설문조사 결과분석

1) 응답자의 특성

(1) 인구사회학적 특성

응답자의 성별 분포는 남학생 55.9%, 여학생 42.3%, 응답을 하지 않은 경우 1.9%로 남학생이 여학생 보다 약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9 > 응답자의 성별 분포_학생

구분	빈도	퍼센트
남	833	55.9
여	630	42.3
무응답	28	1.9
합계	1491	100.0

중학생은 36.6%였고, 고등학생은 61.6%, 응답을 하지 않은 경우는 1.8%로 고등학생이 더 많았다. 학년별로는 중학생과 고등학생 모두 2학년이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표 20 > 응답자의 학년별 분포_학생

구분	빈도	퍼센트
중1	4	.3
중2	521	34.9
중3	20	1.3
고1	14	.9
고2	904	60.6
고3	1	.1
무응답	27	1.8
합계	1491	100.0

이는 본래 표본선정을 중학교와 고등학교 각 2학년으로 정한 결과로 보인다. 2학년을 대상으로 표본을 선정한 이유는 이들이 각 학교에서 1년 이상 학교생활을 한 경험이 있어 학교생활에 대해 잘 알고 있을 뿐 아니라 사안에 대한 자신의 관

단이 정립된 시기라고 보기 때문이다. 또한 3학년의 경우 입시를 앞두고 1-2학년과는 다른 종교교육이나 학교생활 방식을 취한다는 점에서 학교 안에서 일반적으로 경험하는 모습과 일정한 거리가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조사대상을 중학생 30%, 고등학생 70%로 하였으나 고등학교 가운데 조사를 거부한 사례가 많아 중학생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증가하였다.

응답자들의 종교별 분포를 살펴보면, 종교를 갖지 않은 학생이 45.8%로 가장 많았고, 개신교 26.8%, 불교 11.9%, 천주교 9.8% 등 3대 종교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한편 유교, 원불교, 천도교, 대종교 등의 종교는 각각 1% 미만의 분포를 보이고 있었고, 기타라고 답한 응답자는 1.7%였다. 조사대상 학생 가운데 종교를 갖는 학생과 갖지 않는 학생의 비율은 전 국민 가운데 종교 인구(53.1%)와 비종교인구(46.5%) 사이의 비율과 대체로 일치한다. 다만, 종교인구 가운데 전 국민 가운데 불교 43.0%, 개신교 34.5%, 천주교 20.6%인 것과 비교하면 불교나 천주교를 가진 학생의 비율이 낮게 나타난다. 조사대상 학교 가운데 종교계 사립으로서 개신교 계통의 학교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51.1%) 이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 자신의 종교 때문에 이 학교를 선택하였거나 종교교육의 결과로 신자가 되는 등의 원인이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표 21 > 응답자의 종교별 분포_학생

구분	빈도	퍼센트
불교	178	11.9
개신교	399	26.8
천주교	146	9.8
유교	8	.5
원불교	9	.6
천도교	3	.2
대종교	4	.3
기타	26	1.7
없음	683	45.8
무응답	35	2.3
합계	1491	100.0

(2) 재학 중인 학교와 학교생활

응답자들이 재학 중인 학교의 유형은 종립학교가 49.6%로 가장 많았고, 국·공립학

교 28.5%, 비종립학교 21.9%의 분포를 보였다. 이는 당초 조사대상 학교를 전 국민 가운데 종교인구수, 종립학교의 비율, 종래 종교적 차별 관련 사례의 발생빈도 등으로 고려하여 조사대상 학교를 선정한 결과이다. 당초 국공립학교 20%, 비종립학교 20%, 종립학교 60% 비율로 조사하였으나 종립학교 가운데 조사에 응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전체적으로 국공립학교의 비율이 증가한 반면 종립학교의 비율은 감소하였다.

<표 22 > 응답자의 학교유형별 분포_학생

구분	빈도	퍼센트
국공립	425	28.5
비종교계 사학	327	21.9
종교계 사학	739	49.6
합계	1491	100.0

이 중에서 종립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의 50.9%는 개신교를 설립 이념으로 하는 학교에 재학 중이었고, 불교계 학교 재학생 19.8%, 천주교계 학교 재학생 18.4%, 원불교계 학교 재학생 4.3%, 대순진리회와 천도교, 통일교가 세운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각각 약 2% 남짓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종립학교 가운데 개신교 계통의 학교가 차지하는 비율이 69.5%인 점에서 대체로 조사대상 학교의 종교간 비율과 비례한다고 할 수 있다.

<표 23 > 응답자의 학교의 건학이념별 분포_학생

구분	빈도	퍼센트
불교	146	19.8
개신교	376	50.9
천주교	136	18.4
원불교	32	4.3
대순진리회	15	2.0
천도교	15	2.0
통일교	19	2.6
합계	739	100.0

평준화 지역에 위치한 학교에 재학 중인 응답자는 63.4%였고, 비평준화 지역에 위치한 학교의 재학생은 34.9%, 응답을 하지 않은 학생은 1.7%였다.

<표 24 > 응답자의 평준화 유무에 따른 분포_학생

구분	빈도	퍼센트
평준화 지역	946	63.4
비평준화 지역	520	34.9
무응답	25	1.7
합계	1491	100.0

현재 재학 중인 학교를 스스로 선택해 진학한 응답자는 69.8%이며, 강제로 배정되었다고 답한 응답자는 20.6%, 잘 모르거나 응답하지 않은 경우는 9.7%였다. 평준화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이 63.4%임에도 학교를 선택하였다고 응답한 학생의 비율이 69.8%에 이르는 것(강제배정 20.6%)은 평준화지역에서도 학교의 선택권이 제한적이지만 인정되기 때문이다. 물론 이 선택권은 결정적인 것은 아니며 동일학교를 희망하는 학생이 많은 경우 자신의 희망에도 불구하고 희망하지 않았던 학교에 배정되기도 한다는 점에서 진정한 의미의 학교선택권은 아니다. 또한 학교선택권이 인정된다고 하여 학생의 학교선택행위가 종립학교에 입학하면서 종교교육에 관한 포괄적 동의를 하였다고 보는 것과는 다른 문제라는 것이다. 학생이 학교를 선택하면서도 학교의 평판, 자신의 집에서 가깝기 때문에 또는 대학입시에 유리해서 선택하는 경우가 많으며, 종립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종교교육의 내용 등에 관하여 설명을 제대로 받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것도 학교선택권을 근거로 학생에 대한 종교교육을 정당화하는 데 장애가 된다.

<표 25 > 응답자의 학교선택권 유무에 따른 분포_학생

구분	빈도	퍼센트
개인 선택	1040	69.8
강제 배정	307	20.6
잘 모름	116	7.8
무응답	28	1.9
합계	1491	100.0

재학 중인 학교를 선택한 이유를 복수로 선택하게 한 질문에서 학교의 평판

(27.3%), 학교와의 거리(20.1%), 대학 진학(17.3%) 등을 고려해 학교를 선택했다고 답한 응답자들이 많았고,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는 응답자는 17.3%였다. 이에 비해 학교의 종교적 분위기와 종교 교육(5.5%), 부모 및 자신의 종교(각각 4.2%, 8.3%) 등의 종교적 이유로 학교를 선택한 경우는 상대적으로 분포가 적었다. 이는 학생의 학교선택이 종교교육에 대한 동의를 포함하는 것이라는 해석에 일정한 장애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표 26 > 재학 중인 학교를 선택한 이유_학생

구분	빈도	퍼센트
종교적 분위기가 좋고, 종교교육 희망	37	5.5
부모 종교와 일치	28	4.2
나의 종교와 일치	56	8.3
대학 진학에 유리	116	17.3
학교 평판이 좋음	183	27.3
집에서 가까움	135	20.1
선택의 여지가 없음	116	17.3
합계	671	100.0

한편 학교생활에 만족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51.9%였고, 학교생활이 만족스럽지 않다고 답한 응답자는 10.7%, 보통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35.7%, 응답하지 않은 학생이 1.7%였다. 조사에 응한 학생들은 전반적으로 만족스러운 학교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표 27 > 학교생활의 만족도_학생

구분	빈도	퍼센트
매우 만족	262	17.6
다소 만족	511	34.3
보통	533	35.7
다소 불만	89	6.0
매우 불만	70	4.7
무응답	26	1.7
합계	1491	100.0

2) 교차분석 결과

(1) 학교 내 종교 시설

학교 안에 법당이나 예배당과 같은 종교 시설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31.5%이다. 종교 시설이 없다고 답한 응답자는 62.4%, 모른다고 답한 응답자는 6.1%였다.

이를 학교의 유형에 따라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국공립학교 및 비종립학교 재학생 중에서 종교 시설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각각 0.5%, 4.3%인 반면, 종립학교 재학생의 경우는 종교 시설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가 60.8%에 이른다. 학교 내에 종교 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대부분 종립학교라는 점은 명확한 것으로 판단된다.

특이한 것은 국공립학교의 경우에도 교내에 종교시설이 있다고 답하는 응답이 있는 점이다. 그것이 불교, 기독교나 이슬람 등 기성종교의 시설인지 아니면 넓은 의미의 종교적 상징이나 시설인지는 설문에서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비종교계 사학의 경우에도 이사장, 교장 또는 교원이나 학생의 활동에 따라 종교적 상징물이 설치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나 그 비율이 아주 낮다.

<표 28 > 학교유형별 종교시설 설치 유무_학생

학교 유형	교내 종교 시설			계	
	있음	없음	모름		
국공립	빈도	2	397	12	411
	학교 유형 중 %	0.5%	96.6%	2.9%	100.0%
비종교계 사학	빈도	14	295	15	324
	학교 유형 중 %	4.3%	91.0%	4.6%	100.0%
종교계 사학	빈도	446	224	63	733
	학교 유형 중 %	60.8%	30.6%	8.6%	100.0%
계	빈도	462	916	90	1468
	학교 유형 중 %	31.5%	62.4%	6.1%	100.0%

$$\chi^2=656.3 \quad df=4 \quad p=.000$$

학교의 설립 이념과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학교 내에 종교 시설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의 분포는 개신교(22.9%), 불교(17.5%), 천주교(15.6%)의 순으로 나타났다. 다른 종교의 경우는 3% 미만의 분포를 보이고 있어 학교 내 종교 시설은 대부분 개신교와 불교, 천주교 등 3대 종교의 시설물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불교와 천주교에서 세운 학교의 재학생들 중에서는 학교 내에 종교 시설이 없

다고 답한 응답자의 비율이 각각 10% 미만으로 나타난 반면, 개신교계 사립학교 재학생 중에서는 46.1%가 종교 시설이 없다고 답하고 있었다. 이는 불교와 천주교계 종립학교는 대체로 학교 내에 종교 시설을 설치하는데 비해 개신교계 종립학교는 종교 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음을 의미한다.

<표 29 > 학교의 종교이념에 따른 종교시설 설치 분포_학생

학교의 종교 이념	교내 종교 시설			전체	
	있음	없음	모름		
불교	빈도	128	11	6	145
	학교의 종교 이념 중 %	88.3%	7.6%	4.1%	100.0%
	전체 %	17.5%	1.5%	0.8%	19.8%
개신교	빈도	168	172	33	373
	학교의 종교 이념 중 %	45.0%	46.1%	8.8%	100.0%
	전체 %	22.9%	23.5%	4.5%	50.9%
천주교	빈도	114	13	9	136
	학교의 종교 이념 중 %	83.8%	9.6%	6.6%	100.0%
	전체 %	15.6%	1.8%	1.2%	18.6%
원불교	빈도	18	9	5	32
	학교의 종교 이념 중 %	56.3%	28.1%	15.6%	100.0%
	전체 %	2.5%	1.2%	0.7%	4.4%
대순진리회	빈도	1	8	6	15
	학교의 종교 이념 중 %	6.7%	53.3%	40.0%	100.0%
	전체 %	0.1%	1.1%	0.8%	2.0%
천도교	빈도	14	1	0	15
	학교의 종교 이념 중 %	93.3%	6.7%	0.0%	100.0%
	전체 %	1.9%	0.1%	0.0%	2.0%
통일교	빈도	3	10	4	17
	학교의 종교 이념 중 %	17.6%	58.8%	23.5%	100.0%
	전체 %	0.4%	1.4%	0.5%	2.3%
전체	빈도	446	224	63	733
	학교의 종교 이념 중 %	60.8%	30.6%	8.6%	100.0%
	전체 %	60.8%	30.6%	8.6%	100.0%

$$\chi^2=173.0 \quad df=12 \quad p=.000$$

심층면접에서 종립학교의 경우 학교 강당이 종교시설의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가 있었으며, 휴일에는 일반인들이 종교시설로 이용하고, 평일에는 학생들이 강당에서

종교교육이나 종교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로 제공되고 있으며, 교사 이외에 성직자가 상주하는 경우도 있었다.

(2) 학교 내 종교적 상징물

학교 안에 불상, 예수상, 십자가, 종교인 동상 등 종교적 상징물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30.4%이고, 없다고 답한 응답자는 60.0%, 모른다고 답한 경우는 9.6%로 나타났다. 종교적 상징물과 관련하여 심층면접에서 강당에 주기도문이 걸려있거나 교실에 십계명이 걸려있다는 사례들이 있었다.

학교 유형별로 살펴보면, 국공립학교 재학생 중 종교적 상징물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1명도 없으며, 비종립학교 재학생 중에서 종교적 상징물이 학교 내에 있다고 답한 비율은 2.8%이다. 이에 비해 종립학교 재학생의 경우는 59.8%가 종교적 상징물이 있다고 답하고 있다. 이 비율은 종교적 상징물이 있다고 답한 학생들의 약 98%에 해당한다.

<표 30 > 학교유형별 종교상징물 설치 유무_학생

학교 유형	교내 종교 상징물			계
	있음	없음	모름	
국공립	0	397	17	414
빈도				
학교 유형 중 %	0.0%	95.9%	4.1%	100.0%
비종교계 사학	9	294	19	322
빈도				
학교 유형 중 %	2.8%	91.3%	5.9%	100.0%
종교계 사학	438	190	105	733
빈도				
학교 유형 중 %	59.8%	25.9%	14.3%	100.0%
계	447	881	141	1469
빈도				
학교 유형 중 %	30.4%	60.0%	9.6%	100.0%

$$\chi^2=732.1 \quad df=4 \quad p=.000$$

설립 이념별로는 개신교(19.5%), 불교(16.4%), 천주교(18.0%) 등 3대 종교의 종립학교 재학생들이 교내에 종교적 상징물이 있다고 답하고 있다. 한편 불교계 종립학교 재학생의 82.8%, 천주교계 종립학교 재학생의 97.1%가 학교 내에 종교적 상징물이 있다고 답한 반면, 개신교계 종립학교 재학생은 38.3%만 종교적 상징물이 있다고 답하였다. 이는 불교와 천주교계 종립학교는 대체로 학교 내에 종교적 상징물을 설치하는데 비해 개신교계 종립학교는 종교적 상징물을 설치하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음을 의미한다.

<표 31 > 학교의 종교이념에 따른 종교상징물 설치 분포 학생

학교의 종교 이념	교내 종교 상징물			전체	
	있음	없음	모름		
불교	빈도	120	18	7	145
	학교의 종교 이념 중 %	82.8%	12.4%	4.8%	100.0%
	전체 %	16.4%	2.5%	1.0%	19.8%
개신교	빈도	143	146	84	373
	학교의 종교 이념 중 %	38.3%	39.1%	22.5%	100.0%
	전체 %	19.5%	19.9%	11.5%	50.9%
천주교	빈도	132	1	3	136
	학교의 종교 이념 중 %	97.1%	0.7%	2.2%	100.0%
	전체 %	18.0%	0.1%	0.4%	18.6%
원불교	빈도	20	9	2	31
	학교의 종교 이념 중 %	64.5%	29.0%	6.5%	100.0%
	전체 %	2.7%	1.2%	0.3%	4.2%
대순진리회	빈도	0	11	4	15
	학교의 종교 이념 중 %	0.0%	73.3%	26.7%	100.0%
	전체 %	0.0%	1.5%	0.5%	2.0%
천도교	빈도	13	1	1	15
	학교의 종교 이념 중 %	86.7%	6.7%	6.7%	100.0%
	전체 %	1.8%	0.1%	0.1%	2.0%
통일교	빈도	10	4	4	18
	학교의 종교 이념 중 %	55.6%	22.2%	22.2%	100.0%
	전체 %	1.4%	0.5%	0.5%	2.5%
전체	빈도	438	190	105	733
	학교의 종교 이념 중 %	59.8%	25.9%	14.3%	100.0%
	전체 %	59.8%	25.9%	14.3%	100.0%

$\chi^2=213.0$ $df=12$ $p=.000$

대순진리회의 경우 아래의 조사결과에서도 드러나지만 종교적 시설이나 상징물, 종교의식, 종교교육, 종교적 비방이나 편견 등에 관한 사실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전혀 없는 것도 의미있는 부분이다. 이는 대순진리회에서 설립한 사립학교 학생에 대한 심층면접에서도 그대로 확인된다. 학교의 교육과정이나 교육내용에서

또는 교사와의 대화에서도 대순진리회에 관한 언급에 소극적이라고 한다. 학교설립이념과 교육이 분리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3) 복수 종교에 대한 대등한 비중의 교육

두 가지 이상의 종교에 대해 대등한 비중으로 배운 적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14.5%이고, 없다는 응답자가 68.7%, 모른다는 응답자가 16.9%였다.

학교 유형별로 보면, 국공립학교와 비종립학교는 각각 4.1%와 5.9%만이 복수의 종교를 대등하게 배웠다고 답한 반면, 종립학교는 24.2%가 복수의 종교를 대등하게 배웠다고 답하였다. 국공립학교나 비종립학교의 경우 종교교육교과가 개설이 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응답비율이 낮게 나온 것으로 보인다. 종립학교에서 24.2%가 복수의 종교교육을 대등하게 하고 있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가 51.6%인 것과 비교하면 전체 종립학교 가운데 3분의 1 정도가 복수 종교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복수종교교육을 하고 있는 종립학교의 비율과 비슷한 수의 학교에서는 종교교과 시간에 종교의식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아 종립학교의 3분의 2는 종교교육을 신앙교육의 관점에서, 나머지 3분의 1은 종교학교육 등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수치는 종립학교(대부분 개신교) 가운데 설문조사에 응하지 않은 학교를 제외한 것이므로 실제 신앙교육의 관점에서 종교교육을 하는 학교는 종립학교 가운데서도 3분의 2를 넘는다고 판단된다.

<표 32 > 학교유형별 대등한 비율의 복수종교교육 실시 유무_학생

학교 유형	대등한 비율의 복수 종교 교육			계
	있음	없음	모름	
국공립	17	363	38	418
학교 유형 중 %	4.1%	86.8%	9.1%	100.0%
비종교계 사학	19	270	34	323
학교 유형 중 %	5.9%	83.6%	10.5%	100.0%
종교계 사학	177	377	176	730
학교 유형 중 %	24.2%	51.6%	24.1%	100.0%
계	213	1010	248	1471
학교 유형 중 %	14.5%	68.7%	16.9%	100.0%

$$\chi^2=202.7 \quad df=4 \quad p=.000$$

설립 이념별로는 불교(10.5%), 개신교(8.5%), 천주교(3.3%)의 순으로 복수의 종교에 대해 대등하게 배웠다고 응답하고 있다. 이는 상대적으로 불교가 다른 종교들에 비해 덜 배타적임을 의미한다.

<표 33 > 학교의 종교이념에 따른 대등한 비율의 복수종교교육 분포_학생

학교의 종교 이념		대등한 비율의 복수 종교 교육			전체
		있음	없음	모름	
불교	빈도	77	34	34	145
	학교의 종교 이념 중 %	53.1%	23.4%	23.4%	100.0%
	전체 %	10.5%	4.7%	4.7%	19.9%
개신교	빈도	62	213	95	370
	학교의 종교 이념 중 %	16.8%	57.6%	25.7%	100.0%
	전체 %	8.5%	29.2%	13.0%	50.7%
천주교	빈도	24	77	35	136
	학교의 종교 이념 중 %	17.6%	56.6%	25.7%	100.0%
	전체 %	3.3%	10.5%	4.8%	18.6%
원불교	빈도	3	23	5	31
	학교의 종교 이념 중 %	9.7%	74.2%	16.1%	100.0%
	전체 %	0.4%	3.2%	0.7%	4.2%
대순진리회	빈도	1	12	2	15
	학교의 종교 이념 중 %	6.7%	80.0%	13.3%	100.0%
	전체 %	0.1%	1.6%	0.3%	2.1%
천도교	빈도	1	12	2	15
	학교의 종교 이념 중 %	6.7%	80.0%	13.3%	100.0%
	전체 %	0.1%	1.6%	0.3%	2.1%
통일교	빈도	9	6	3	18
	학교의 종교 이념 중 %	50.0%	33.3%	16.7%	100.0%
	전체 %	1.2%	0.8%	0.4%	2.5%
전체	빈도	177	377	176	730
	학교의 종교 이념 중 %	24.2%	51.6%	24.1%	100.0%
	전체 %	24.2%	51.6%	24.1%	100.0%

$$\chi^2=109.9 \quad df=12 \quad p=.000$$

(4) 교직원의 종교/종교인 비방 혹은 편견

교직원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다른 종교나 종교인에 대해 근거가 없이 나쁘게 말하거나 편견을 나타낸 적이 있다는 응답자는 4.7%에 불과하였고, 79.5%의 응답자가 그런 일이 없다고 답하였다. 모른다는 응답자는 15.8%였다.

종교/종교인에 대한 비방 혹은 편견이 드러나는 발언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국공립학교 3.1%, 비종교계 사학 7.4%, 종립학교 4.5%였다. 종교/종교인에 대한 비방이나 편견이었던 발언은 비종교계 사학에서 가장 많고, 종립학교, 국공립학교의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그런 비방이나 편견이 없거나 모른다고 답한 응답자의 비율을 보면 비종교계 사학보다 종립학교에서 문제의 소지가 더 많을 개연성을 보이고 있다.

심층면접에서 종교시간에 강의하는 전도사가 기독교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여 수업을 듣던 학생이 충격을 받았고, 천주교나 불교 믿으면 어떻게 되냐고 질문을 하였는데 그래도 지옥간다고 답변하여 충격을 받았다고 답변한 사례가 있었다. 또한 비종교계 사학에서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자신과 종교가 다른 학생을 상대로 자신의 종교가 좋으면서 다닐 것을 권유한 사례도 있었다.

<표 34 > 학교유형별 교직원의 타종교 비방/편견 학생

학교 유형		교직원의 종교/종교인 비방			계
		있음	없음	모름	
국공립	빈도	13	358	46	417
	학교 유형 중 %	3.1%	85.9%	11.0%	100.0%
비종교계 사학	빈도	24	251	50	325
	학교 유형 중 %	7.4%	77.2%	15.4%	100.0%
종교계 사학	빈도	33	565	137	735
	학교 유형 중 %	4.5%	76.9%	18.6%	100.0%
계	빈도	70	1174	233	1477
	학교 유형 중 %	4.7%	79.5%	15.8%	100.0%

$$\chi^2=20.0 \quad df=4 \quad p=.001$$

설립 이념별로는 개신교(3.0%), 불교(0.7%), 천주교(0.3%)의 순으로 교직원에 의한 문제 발언은 개신교계 종립학교에서 상대적으로 더 많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5 > 학교의 종교이념에 따른 타종교 비방/편견 분포_학생

학교의 종교 이념		교직원의 다른 종교 비방/편견			전체
		있음	없음	모름	
불교	빈도	5	123	17	145
	학교의 종교 이념 중 %	3.4%	84.8%	11.7%	100.0%
	전체 %	0.7%	16.7%	2.3%	19.7%
개신교	빈도	22	266	85	373
	학교의 종교 이념 중 %	5.9%	71.3%	22.8%	100.0%
	전체 %	3.0%	36.2%	11.6%	50.7%
천주교	빈도	2	110	24	136
	학교의 종교 이념 중 %	1.5%	80.9%	17.6%	100.0%
	전체 %	0.3%	15.0%	3.3%	18.5%
원불교	빈도	1	29	2	32
	학교의 종교 이념 중 %	3.1%	90.6%	6.3%	100.0%
	전체 %	0.1%	3.9%	0.3%	4.4%
대순진리회	빈도	0	15	0	15
	학교의 종교 이념 중 %	0.0%	100.0%	0.0%	100.0%
	전체 %	0.0%	2.0%	0.0%	2.0%
천도교	빈도	0	14	1	15
	학교의 종교 이념 중 %	0.0%	93.3%	6.7%	100.0%
	전체 %	0.0%	1.9%	0.1%	2.0%
통일교	빈도	3	8	8	19
	학교의 종교 이념 중 %	15.8%	42.1%	42.1%	100.0%
	전체 %	0.4%	1.1%	1.1%	2.6%
전체	빈도	33	565	137	735
	학교의 종교 이념 중 %	4.5%	76.9%	18.6%	100.0%
	전체 %	4.5%	76.9%	18.6%	100.0%

$$\chi^2=39.4 \quad df=12 \quad p=.000$$

(5) 교육과정에서의 종교 의식 거행

① 입학식, 졸업식

입학식과 졸업식에서 종교 의식을 거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31.2%의 응답자가 ‘언제나’라고 답했고, ‘대부분’ 6.4%, ‘가끔’ 4.2%, ‘없음’ 58.2%로 나타났다. 입학식과 졸업식에서 종교 의식을 거행하는 학교는 그다지 많지 않은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학교 유형별로는 국공립학교는 전혀 종교의식을 거행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비종교학교도 거의 종교의식을 거행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종교학교의 60.8%는 언제나 종교 의식을 거행하고 있으며, 18.4%만이 종교 의식을 거행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입학식과 졸업식에서 종교 의식을 거행하는 것은 대부분 종교학교임을 알 수 있다.

<표 36 > 학교유형별 종교의식 시행 유무(입학식/졸업식)_학생

학교 유형	종교의식 거행-입학식/졸업식				전체
	언제나	대부분	가끔	없음	
국공립	0	0	0	393	393
학교 유형 중 %	0.0%	0.0%	0.0%	100.0%	100.0%
비종교계 사학	2	0	0	289	291
학교 유형 중 %	0.7%	0.0%	0.0%	99.3%	100.0%
종교계 사학	433	90	58	131	712
학교 유형 중 %	60.8%	12.6%	8.1%	18.4%	100.0%
전체	435	90	58	813	1396
학교 유형 중 %	31.2%	6.4%	4.2%	58.2%	100.0%

$$\chi^2=948.3 \quad df=6 \quad p=.000$$

설립 이념별로는 천주교(19.3%), 불교 및 개신교(각 15.4%)의 순으로 종교 의식을 거행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불교와 개신교가 천주교에 비해 상대적으로 입학식/졸업식에서 종교의식을 더 많이 거행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언제나 종교의식을 거행한다는 응답자의 비율로만 보면 불교-개신교-천주교의 순으로 종교의식이 자주 거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7 > 학교의 종교이념별 종교의식 시행 유무(입학식/졸업식) 분포_학생

학교의 종교 이념		종교의식 거행-입학식/졸업식				전체
		언제나	대부분	가끔	없음	
불교	빈도	91	14	5	20	130
	학교의 종교 이념 중 %	70.0%	10.8%	3.8%	15.4%	100.0%
	전체 %	12.8%	2.0%	0.7%	2.8%	18.3%
개신교	빈도	241	40	32	57	370
	학교의 종교 이념 중 %	65.1%	10.8%	8.6%	15.4%	100.0%
	전체 %	33.8%	5.6%	4.5%	8.0%	52.0%
천주교	빈도	64	29	16	26	135
	학교의 종교 이념 중 %	47.4%	21.5%	11.9%	19.3%	100.0%
	전체 %	9.0%	4.1%	2.2%	3.7%	19.0%
원불교	빈도	15	2	2	10	29
	학교의 종교 이념 중 %	51.7%	6.9%	6.9%	34.5%	100.0%
	전체 %	2.1%	0.3%	0.3%	1.4%	4.1%
대순진리회	빈도	0	0	0	15	15
	학교의 종교 이념 중 %	0.0%	0.0%	0.0%	100.0%	100.0%
	전체 %	0.0%	0.0%	0.0%	2.1%	2.1%
천도교	빈도	12	3	0	0	15
	학교의 종교 이념 중 %	80.0%	20.0%	0.0%	0.0%	100.0%
	전체 %	1.7%	0.4%	0.0%	0.0%	2.1%
통일교	빈도	10	2	3	3	18
	학교의 종교 이념 중 %	55.6%	11.1%	16.7%	16.7%	100.0%
	전체 %	1.4%	0.3%	0.4%	0.4%	2.5%
전체	빈도	433	90	58	131	712
	학교의 종교 이념 중 %	60.8%	12.6%	8.1%	18.4%	100.0%
	전체 %	60.8%	12.6%	8.1%	18.4%	100.0%

$\chi^2=103.5$ $df=18$ $p=.000$

② 학급 조회

학급 조회에서 종교의식을 거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언제나’ 8.7%, ‘대부분’ 2.0%, ‘가끔’ 6.0%, ‘없음’ 83.3%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학급 조회에서 종교 의식을 거행하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음을 의미한다.

학교 유형별로는 국공립학교와 비종립학교는 조회에서 종교의식을 거행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 반면, 종립학교는 32.8%가 조회에서 종교 의식을 거행한다고 답하였다.

<표 38 > 학교유형별 종교의식 시행 유무(학급조회)_학생

학교 유형		종교의식 거행-학급조회				전체
		언제나	대부분	가끔	없음	
국공립	빈도	0	0	0	392	392
	학교 유형 중 %	0.0%	0.0%	0.0%	100.0%	100.0%
비종교계 사학	빈도	2	0	0	289	291
	학교 유형 중 %	0.7%	0.0%	0.0%	99.3%	100.0%
종교계 사학	빈도	118	28	82	465	693
	학교 유형 중 %	17.0%	4.0%	11.8%	67.1%	100.0%
전체	빈도	120	28	82	1146	1376
	학교 유형 중 %	8.7%	2.0%	6.0%	83.3%	100.0%

$$\chi^2=262.9 \quad df=6 \quad p=.000$$

설립 이념별로는 불교(90.3%), 천주교(80.3%), 개신교(49.2%)의 순으로 조회에서 종교의식을 거행하지 않는다고 답하고 있다. 즉, 조회에서 종교 의식을 거행하는 비율은 개신교가 다른 종교들에 비해 현저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39 > 학교의 종교이념별 종교의식 시행 유무(학급조회) 분포_학생

학교의 종교 이념	종교의식 거행-학급조회				전체	
	언제나	대부분	가끔	없음		
불교	빈도	6	3	3	112	124
	학교의 종교 이념 중 %	4.8%	2.4%	2.4%	90.3%	100.0%
	전체 %	0.9%	0.4%	0.4%	16.2%	17.9%
개신교	빈도	103	22	59	178	362
	학교의 종교 이념 중 %	28.5%	6.1%	16.3%	49.2%	100.0%
	전체 %	14.9%	3.2%	8.5%	25.7%	52.2%
천주교	빈도	6	3	17	106	132
	학교의 종교 이념 중 %	4.5%	2.3%	12.9%	80.3%	100.0%
	전체 %	0.9%	0.4%	2.5%	15.3%	19.0%
원불교	빈도	2	0	1	24	27
	학교의 종교 이념 중 %	7.4%	0.0%	3.7%	88.9%	100.0%
	전체 %	0.3%	0.0%	0.1%	3.5%	3.9%
대순진리회	빈도	0	0	0	15	15
	학교의 종교 이념 중 %	0.0%	0.0%	0.0%	100.0%	100.0%
	전체 %	0.0%	0.0%	0.0%	2.2%	2.2%
천도교	빈도	1	0	1	13	15
	학교의 종교 이념 중 %	6.7%	0.0%	6.7%	86.7%	100.0%
	전체 %	0.1%	0.0%	0.1%	1.9%	2.2%
통일교	빈도	0	0	1	17	18
	학교의 종교 이념 중 %	0.0%	0.0%	5.6%	94.4%	100.0%
	전체 %	0.0%	0.0%	0.1%	2.5%	2.6%
전체	빈도	118	28	82	465	693
	학교의 종교 이념 중 %	17.0%	4.0%	11.8%	67.1%	100.0%
	전체 %	17.0%	4.0%	11.8%	67.1%	100.0%

$\chi^2=124.9$ $df=18$ $p=.000$

③ 종례

종례에서 종교의식을 거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언제나’ 1.7%, ‘대부분’ 0.8%, ‘가끔’ 3.5%, ‘없음’ 94.0%로 종례에서 종교의식을 거행하는 것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유형별로는 국공립학교와 비종립학교는 종례를 할 때 종교 의식을 거의 거행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종립학교는 11.8%가 종례 시에 종교 의식을 거행한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40 > 학교유형별 종교의식 시행 유무(종례)_학생

학교 유형	종교의식 거행-종례				전체	
	언제나	대부분	가끔	없음		
국공립	빈도	0	0	0	392	392
	학교 유형 중 %	0.0%	0.0%	0.0%	100.0%	100.0%
비종교계 사학	빈도	1	0	0	290	291
	학교 유형 중 %	0.3%	0.0%	0.0%	99.7%	100.0%
종교계 사학	빈도	23	11	48	611	693
	학교 유형 중 %	3.3%	1.6%	6.9%	88.2%	100.0%
전체	빈도	24	11	48	1293	1376
	학교 유형 중 %	1.7%	0.8%	3.5%	94.0%	100.0%

$$\chi^2=83.1 \quad df=6 \quad p=.000$$

설립 이념별로는 개신교(18.5%), 천주교(7.6%), 불교(2.4%)의 순으로 종례 시에 종교 의식을 거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 > 학교의 종교이념별 종교의식 시행 유무(종례) 분포_학생

학교의 종교 이념	종교의식 거행-종례				전체	
	언제나	대부분	가끔	없음		
불교	빈도	2	1	0	122	125
	학교의 종교 이념 중 %	1.6%	0.8%	0.0%	97.6%	100.0%
	전체 %	0.3%	0.1%	0.0%	17.6%	18.0%
개신교	빈도	18	10	39	295	362
	학교의 종교 이념 중 %	5.0%	2.8%	10.8%	81.5%	100.0%
	전체 %	2.6%	1.4%	5.6%	42.6%	52.2%
천주교	빈도	3	0	7	122	132
	학교의 종교 이념 중 %	2.3%	0.0%	5.3%	92.4%	100.0%
	전체 %	0.4%	0.0%	1.0%	17.6%	19.0%
원불교	빈도	0	0	0	26	26
	학교의 종교 이념 중 %	0.0%	0.0%	0.0%	100.0%	100.0%
	전체 %	0.0%	0.0%	0.0%	3.8%	3.8%
대순진리회	빈도	0	0	0	15	15
	학교의 종교 이념 중 %	0.0%	0.0%	0.0%	100.0%	100.0%
	전체 %	0.0%	0.0%	0.0%	2.2%	2.2%
천도교	빈도	0	0	1	14	15
	학교의 종교 이념 중 %	0.0%	0.0%	6.7%	93.3%	100.0%
	전체 %	0.0%	0.0%	0.1%	2.0%	2.2%
통일교	빈도	0	0	1	17	18
	학교의 종교 이념 중 %	0.0%	0.0%	5.6%	94.4%	100.0%
	전체 %	0.0%	0.0%	0.1%	2.5%	2.6%
전체	빈도	23	11	48	611	693
	학교의 종교 이념 중 %	3.3%	1.6%	6.9%	88.2%	100.0%
	전체 %	3.3%	1.6%	6.9%	88.2%	100.0%

$\chi^2=37.8$ $df=18$ $p=.004$

④ 종교교과 수업

종교교과 수업에서 종교 의식을 거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언제나’ 14.5%, ‘대부분’ 3.8%, ‘가끔’ 9.1%, ‘없음’ 72.6%로 조사되었다.

국공립학교와 비종립학교는 종교교과 수업에서 종교 의식을 거행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종립학교는 54.3%가 종교교과 수업을 하면서 종교 의식을 거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층면접 결과 종립학교의 경우 대부분 종교교과목이외에 별도로 재량활동시간에 전체 학생들을 상대로 종교교육과 관련된 수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표 42 > 학교유형별 종교의식 시행 유무(종교교과 수업)_학생

학교 유형	종교의식 거행-종교교과 수업				전체	
	언제나	대부분	가끔	없음		
국공립	빈도	0	0	0	395	395
	학교 유형 중 %	0.0%	0.0%	0.0%	100.0%	100.0%
비종교계 사학	빈도	0	0	0	291	291
	학교 유형 중 %	0.0%	0.0%	0.0%	100.0%	100.0%
종교계 사학	빈도	200	52	126	318	696
	학교 유형 중 %	28.7%	7.5%	18.1%	45.7%	100.0%
전체	빈도	200	52	126	1004	1382
	학교 유형 중 %	14.5%	3.8%	9.1%	72.6%	100.0%

$$\chi^2=512.8 \quad df=6 \quad p=.000$$

종립학교의 경우 개신교(71.9%), 천주교(40.2%), 불교(27.8%)의 순으로 종교교과 수업에서 종교 의식을 거행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신교의 경우 종교교과에서 종교의식을 거행하지 않는 경우가 28.1%인데, 이는 개신교 학교에서 복수종교에 대한 교육을 하는 비율과 근사한 수치(약 3분의 1)이다. 개신교 학교에서 종교의식을 많이 하는 것은 이들 학교가 종교교육을 신앙교육의 관점에서 접근하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43 > 학교의 종교이념별 종교의식 시행 유무(종교교과 수업) 분포_학생

학교의 종교 이념		종교의식 거행-종교교과 수업				전체
		언제나	대부분	가끔	없음	
불교	빈도	15	6	14	91	126
	학교의 종교 이념 중 %	11.9%	4.8%	11.1%	72.2%	100.0%
	전체 %	2.2%	0.9%	2.0%	13.1%	18.1%
개신교	빈도	159	29	73	102	363
	학교의 종교 이념 중 %	43.8%	8.0%	20.1%	28.1%	100.0%
	전체 %	22.8%	4.2%	10.5%	14.7%	52.2%
천주교	빈도	12	12	29	79	132
	학교의 종교 이념 중 %	9.1%	9.1%	22.0%	59.8%	100.0%
	전체 %	1.7%	1.7%	4.2%	11.4%	19.0%
원불교	빈도	4	1	3	19	27
	학교의 종교 이념 중 %	14.8%	3.7%	11.1%	70.4%	100.0%
	전체 %	0.6%	0.1%	0.4%	2.7%	3.9%
대순진리회	빈도	0	0	0	15	15
	학교의 종교 이념 중 %	0.0%	0.0%	0.0%	100.0%	100.0%
	전체 %	0.0%	0.0%	0.0%	2.2%	2.2%
천도교	빈도	8	3	1	3	15
	학교의 종교 이념 중 %	53.3%	20.0%	6.7%	20.0%	100.0%
	전체 %	1.1%	0.4%	0.1%	0.4%	2.2%
통일교	빈도	2	1	6	9	18
	학교의 종교 이념 중 %	11.1%	5.6%	33.3%	50.0%	100.0%
	전체 %	0.3%	0.1%	0.9%	1.3%	2.6%
전체	빈도	200	52	126	318	696
	학교의 종교 이념 중 %	28.7%	7.5%	18.1%	45.7%	100.0%
	전체 %	28.7%	7.5%	18.1%	45.7%	100.0%

$$\chi^2=154.2 \quad df=18 \quad p=.000$$

⑤ 일반 수업

종교교과 이외의 일반 수업에서 종교의식을 거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언제나’ 1.7%, ‘대부분’ 2.1%, ‘가끔’ 7.2%, ‘없음’ 88.9%로 나타났다. 따라서 일반 수업에서는 종교 의식을 거행하는 경우가 흔치 않은 것으로 여겨진다.

<표 44 > 학교유형별 종교의식 시행 유무(일반수업)_학생

학교 유형		종교의식 거행-일반 수업				전체
		언제나	대부분	가끔	없음	
국공립	빈도	0	0	0	393	393
	학교 유형 중 %	0.0%	0.0%	0.0%	100.0%	100.0%
비종교계 사학	빈도	3	1	2	285	291
	학교 유형 중 %	1.0%	0.3%	0.7%	97.9%	100.0%
종교계 사학	빈도	21	28	97	542	688
	학교 유형 중 %	3.1%	4.1%	14.1%	78.8%	100.0%
전체	빈도	24	29	99	1220	1372
	학교 유형 중 %	1.7%	2.1%	7.2%	88.9%	100.0%

$$\chi^2=146.2 \quad df=6 \quad p=.000$$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수업에서 종교 의식을 거행한다는 종립학교 응답자의 비율은 응답자의 21.2%에 달하고 있다. 이에 비해 국공립학교와 비종립학교 응답자는 각각 0.0%와 2.1%에 불과하다. 이것은 종립학교가 국공립학교와 비종립학교에 비해 일반 수업에서조차 종교 의식을 거행하는 경우가 현저히 높음을 의미한다.

일반 수업에서 종교 의식을 거행한다는 응답자의 비율은 종립학교의 경우 개신교(29.6%), 천주교(15.3%), 불교(7.4%)의 순으로 나타나, 개신교가 다른 종교에 비해 일반 수업에서 종교 의식을 거행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신교 학교의 경우 일반 수업에서 종교의식을 하는 비율이 30%에 가깝다. 70% 이상의 일반과목 수업에서 종교의식을 하지 않는다는 것과 관련하여 판단하면 이는 세속과목의 교육도 종교적 차원에서 접근하는 교사가 다른 종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된다.

<표 45 > 학교의 종교이념별 종교의식 시행 유무(일반수업) 분포_학생

학교의 종교 이념		종교의식 거행-일반 수업				전체
		언제나	대부분	가끔	없음	
불교	빈도	0	4	5	112	121
	학교의 종교 이념 중 %	0.0%	3.3%	4.1%	92.6%	100.0%
	전체 %	0.0%	0.6%	0.7%	16.3%	17.6%
개신교	빈도	17	23	67	254	361
	학교의 종교 이념 중 %	4.7%	6.4%	18.6%	70.4%	100.0%
	전체 %	2.5%	3.3%	9.7%	36.9%	52.5%
천주교	빈도	3	0	17	111	131
	학교의 종교 이념 중 %	2.3%	0.0%	13.0%	84.7%	100.0%
	전체 %	0.4%	0.0%	2.5%	16.1%	19.0%
원불교	빈도	1	0	5	21	27
	학교의 종교 이념 중 %	3.7%	0.0%	18.5%	77.8%	100.0%
	전체 %	0.1%	0.0%	0.7%	3.1%	3.9%
대순진리회	빈도	0	0	0	15	15
	학교의 종교 이념 중 %	0.0%	0.0%	0.0%	100.0%	100.0%
	전체 %	0.0%	0.0%	0.0%	2.2%	2.2%
천도교	빈도	0	1	1	13	15
	학교의 종교 이념 중 %	0.0%	6.7%	6.7%	86.7%	100.0%
	전체 %	0.0%	0.1%	0.1%	1.9%	2.2%
통일교	빈도	0	0	2	16	18
	학교의 종교 이념 중 %	0.0%	0.0%	11.1%	88.9%	100.0%
	전체 %	0.0%	0.0%	0.3%	2.3%	2.6%
전체	빈도	21	28	97	542	688
	학교의 종교 이념 중 %	3.1%	4.1%	14.1%	78.8%	100.0%
	전체 %	3.1%	4.1%	14.1%	78.8%	100.0%

$\chi^2=46.5$ $df=18$ $p=.000$

⑥ 체육대회/축제

체육대회나 축제에서 종교 의식을 거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언제나’ 16.0%, ‘대부분’ 4.9%, ‘가끔’ 10.1%, ‘없음’ 69.1%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다른 교육과정에 비해 체육대회나 축제가 종교 의식이 거행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음을 의미한다.

체육대회나 축제에서 종교의식을 거행한다는 중립학교 재학생의 비율은 60.2%에 달하고 있는 반면, 국공립학교와 비중립학교는 각각 0.0%, 2.1%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46 > 학교유형별 종교의식 시행 유무(체육대회/축제)_학생

학교 유형	종교의식 거행-체육대회/축제				전체	
	언제나	대부분	가끔	없음		
국공립	빈도	0	0	0	391	391
	학교 유형 중 %	0.0%	0.0%	0.0%	100.0%	100.0%
비종교계 사학	빈도	3	0	3	285	291
	학교 유형 중 %	1.0%	0.0%	1.0%	97.9%	100.0%
종교계 사학	빈도	218	68	136	279	701
	학교 유형 중 %	31.1%	9.7%	19.4%	39.8%	100.0%
전체	빈도	221	68	139	955	1383
	학교 유형 중 %	16.0%	4.9%	10.1%	69.1%	100.0%

$$\chi^2=569.7 \quad df=6 \quad p=.000$$

설립 이념별로는 개신교(75.5%), 불교(52.8%), 천주교(40.2%)의 순으로 체육대회나 축제에서 종교의식을 거행한다고 답하고 있다.

< 표 47 > 학교의 종교이념별 종교의식 시행 유무(체육대회/축제) 분포_학생

학교의 종교 이념		종교의식 거행-체육대회/축제				전체
		언제나	대부분	가끔	없음	
불교	빈도	15	13	39	60	127
	학교의 종교 이념 중 %	11.8%	10.2%	30.7%	47.2%	100.0%
	전체 %	2.1%	1.9%	5.6%	8.6%	18.1%
개신교	빈도	165	45	67	90	367
	학교의 종교 이념 중 %	45.0%	12.3%	18.3%	24.5%	100.0%
	전체 %	23.5%	6.4%	9.6%	12.8%	52.4%
천주교	빈도	24	7	22	79	132
	학교의 종교 이념 중 %	18.2%	5.3%	16.7%	59.8%	100.0%
	전체 %	3.4%	1.0%	3.1%	11.3%	18.8%
원불교	빈도	0	1	5	21	27
	학교의 종교 이념 중 %	0.0%	3.7%	18.5%	77.8%	100.0%
	전체 %	0.0%	0.1%	0.7%	3.0%	3.9%
대순진리회	빈도	0	0	0	15	15
	학교의 종교 이념 중 %	0.0%	0.0%	0.0%	100.0%	100.0%
	전체 %	0.0%	0.0%	0.0%	2.1%	2.1%
천도교	빈도	11	1	1	2	15
	학교의 종교 이념 중 %	73.3%	6.7%	6.7%	13.3%	100.0%
	전체 %	1.6%	0.1%	0.1%	0.3%	2.1%
통일교	빈도	3	1	2	12	18
	학교의 종교 이념 중 %	16.7%	5.6%	11.1%	66.7%	100.0%
	전체 %	0.4%	0.1%	0.3%	1.7%	2.6%
전체	빈도	218	68	136	279	701
	학교의 종교 이념 중 %	31.1%	9.7%	19.4%	39.8%	100.0%
	전체 %	31.1%	9.7%	19.4%	39.8%	100.0%

$\chi^2=155.8$ $df=18$ $p=.000$

⑦ 현장학습

현장학습에서 종교 의식을 거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언제나’ 5.7%, ‘대부분’ 2.8%, ‘가끔’ 6.2%, ‘없음’ 85.3%로 나타났다.

현장학습에서 종교 의식을 거행했다는 응답자의 비율은 국공립학교 0.0%, 비종립 학교 0.7%, 종립학교 28.8%였다.

심층면접에서 일종의 수련회와 같은 여름캠프의 장소를 교회에서 1박2일간 진행한 사례도 있었다.

<표 48 > 학교유형별 종교의식 시행 유무(현장학습)_학생

학교 유형	종교의식 거행-현장학습				전체	
	언제나	대부분	가끔	없음		
국공립	빈도	0	0	0	393	393
	학교 유형 중 %	0.0%	0.0%	0.0%	100.0%	100.0%
비종교계 사학	빈도	1	0	1	289	291
	학교 유형 중 %	0.3%	0.0%	0.3%	99.3%	100.0%
종교계 사학	빈도	77	38	85	494	694
	학교 유형 중 %	11.1%	5.5%	12.2%	71.2%	100.0%
전체	빈도	78	38	86	1176	1378
	학교 유형 중 %	5.7%	2.8%	6.2%	85.3%	100.0%

$$\chi^2=224.2 \quad df=6 \quad p=.000$$

설립 이념별로는 개신교(43.9%), 불교(12.8%), 천주교(10.7%)의 순으로 나타나, 현장학습에서 종교의식을 거행하는 것은 개신교계 종립학교가 다른 종교의 종립학교보다 더 잦은 것으로 나타났다. 언제나 종교의식을 거행하는 경우가 불교와 천주교가 미미하거나 없는데 반하여 개신교의 경우 20.4%이다. 가끔이라도 종교의식을 하는 경우는 개신교 43.9%, 원불교 17.9%, 불교 12.8%, 천주교 10.7%의 순이다. 대순진리회의 경우 다른 항목과 달리 가끔 종교의식을 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심층면접에서 대순진리회 소속 학교의 경우 종교의식이나 교육을 전혀 하지 않으며 대순진리회에 대해서도 언급을 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의 개인적인 성향 때문인지 아니면 학교의 다른 공식적인 방침이 있는지는 설문조사나 심층면접으로는 알

수 없었다.

<표 49 > 학교의 종교이념별 종교의식 시행 유무(현장학습) 분포_학생

학교의 종교 이념		종교의식 이행-현장학습				전체
		언제나	대부분	가끔	없음	
불교	빈도	1	2	13	109	125
	학교의 종교 이념 중 %	0.8%	1.6%	10.4%	87.2%	100.0%
	전체 %	0.1%	0.3%	1.9%	15.7%	18.0%
개신교	빈도	74	31	54	203	362
	학교의 종교 이념 중 %	20.4%	8.6%	14.9%	56.1%	100.0%
	전체 %	10.7%	4.5%	7.8%	29.3%	52.2%
천주교	빈도	0	2	12	117	131
	학교의 종교 이념 중 %	0.0%	1.5%	9.2%	89.3%	100.0%
	전체 %	0.0%	0.3%	1.7%	16.9%	18.9%
원불교	빈도	1	2	2	23	28
	학교의 종교 이념 중 %	3.6%	7.1%	7.1%	82.1%	100.0%
	전체 %	0.1%	0.3%	0.3%	3.3%	4.0%
대순진리회	빈도	0	0	1	14	15
	학교의 종교 이념 중 %	0.0%	0.0%	6.7%	93.3%	100.0%
	전체 %	0.0%	0.0%	0.1%	2.0%	2.2%
천도교	빈도	0	0	1	14	15
	학교의 종교 이념 중 %	0.0%	0.0%	6.7%	93.3%	100.0%
	전체 %	0.0%	0.0%	0.1%	2.0%	2.2%
통일교	빈도	1	1	2	14	18
	학교의 종교 이념 중 %	5.6%	5.6%	11.1%	77.8%	100.0%
	전체 %	0.1%	0.1%	0.3%	2.0%	2.6%
전체	빈도	77	38	85	494	694
	학교의 종교 이념 중 %	11.1%	5.5%	12.2%	71.2%	100.0%
	전체 %	11.1%	5.5%	12.2%	71.2%	100.0%

$\chi^2=105.1$ $df=18$ $p=.000$

⑧ 명상/경건회

명상이나 경건회에서 종교 의식을 거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언제나’ 12.0%, ‘대부분’ 6.5%, ‘가끔’ 6.7%, ‘없음’ 74.9%로 나타났다.

명상이나 경건회에서 종교 의식을 거행했다는 응답자의 비율은 국공립학교 0.0%, 비종립학교 0.3%, 종립학교 49.9%였다.

<표 50 > 학교유형별 종교의식 시행 유무(명상/경건회)_학생

학교 유형	종교의식 거행-명상/경건회				전체
	언제나	대부분	가끔	없음	
국공립	0	0	0	396	396
학교 유형 중 %	0.0%	0.0%	0.0%	100.0%	100.0%
비종교계 사학	0	0	1	288	289
학교 유형 중 %	0.0%	0.0%	0.3%	99.7%	100.0%
종교계 사학	165	89	91	346	691
학교 유형 중 %	23.9%	12.9%	13.2%	50.1%	100.0%
전체	165	89	92	1030	1376
학교 유형 중 %	12.0%	6.5%	6.7%	74.9%	100.0%

$$\chi^2=453.0 \quad df=6 \quad p=.000$$

설립 이념별로는 개신교(54.7%), 불교(47.2%), 천주교(46.6%)의 순으로 나타나, 명상이나 경건회에서 종교의식을 거행하는 것은 개신교계 종립학교가 다른 종교의 종립학교보다 더 잦았다. 명상-경건회에서 언제나 종교의식을 거행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불교 14.4%, 개신교 32.8%, 천주교 13.0%, 원불교 14.8%, 천도교 40%, 통일교 11.1%로 나타난다. 개신교의 비율이 가장 높으며 학교생활 전반에서 신앙교육의 차원이 강조됨을 보여준다.

<표 51 > 학교의 종교이념별 종교의식 시행 유무(명상/경건회) 분포_학생

학교의 종교 이념		종교의식 거행-명상/경건회				전체
		언제나	대부분	가끔	없음	
불교	빈도	18	30	11	66	125
	학교의 종교 이념 중 %	14.4%	24.0%	8.8%	52.8%	100.0%
	전체 %	2.6%	4.3%	1.6%	9.6%	18.1%
개신교	빈도	118	37	42	163	360
	학교의 종교 이념 중 %	32.8%	10.3%	11.7%	45.3%	100.0%
	전체 %	17.1%	5.4%	6.1%	23.6%	52.1%
천주교	빈도	17	12	32	70	131
	학교의 종교 이념 중 %	13.0%	9.2%	24.4%	53.4%	100.0%
	전체 %	2.5%	1.7%	4.6%	10.1%	19.0%
원불교	빈도	4	3	4	16	27
	학교의 종교 이념 중 %	14.8%	11.1%	14.8%	59.3%	100.0%
	전체 %	0.6%	0.4%	0.6%	2.3%	3.9%
대순진리회	빈도	0	0	0	15	15
	학교의 종교 이념 중 %	0.0%	0.0%	0.0%	100.0%	100.0%
	전체 %	0.0%	0.0%	0.0%	2.2%	2.2%
천도교	빈도	6	5	1	3	15
	학교의 종교 이념 중 %	40.0%	33.3%	6.7%	20.0%	100.0%
	전체 %	0.9%	0.7%	0.1%	0.4%	2.2%
통일교	빈도	2	2	1	13	18
	학교의 종교 이념 중 %	11.1%	11.1%	5.6%	72.2%	100.0%
	전체 %	0.3%	0.3%	0.1%	1.9%	2.6%
전체	빈도	165	89	91	346	691
	학교의 종교 이념 중 %	23.9%	12.9%	13.2%	50.1%	100.0%
	전체 %	23.9%	12.9%	13.2%	50.1%	100.0%

$$\chi^2=85.6 \quad df=18 \quad p=.000$$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입학식/졸업식, 체육대회/축제, 종교교과 수업, 명상/경건회 등이 다른 교육과정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종교의식이 자주 거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종교 의식은 종립학교에서 다 자주 거행되는 것으로 보이며, 개신교계 종립학교가 다른 종교의 종립학교보다 더 자주 종교의식을 거행하고 있었다.

심층면접에서 찬양율동대회, 신앙부흥일, 찬송가 합창대회, 교내 축구시합 전 기도 예배 등의 종교행사를 진행하는 사례가 있었다.

(6) 종교 의식 거행의 주체

종교의식을 거행한 경험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종교 의식의 거행이 학교의 공식 방침인지, 교사의 재량권인지, 혹은 학생들이 스스로 하고 있는 것인지를 묻는 질문하였다.

① 입학식, 졸업식

입학식과 졸업식에서 종교 의식을 거행하는 것이 학교의 공식 방침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91.3%였고, 교사의 재량권이라는 응답자는 7.2%, 학생들 스스로 거행한다는 응답자는 4.8%였다. 따라서 입학식과 졸업식에서의 종교의식은 대체로 학교에 의해서 공식화된 행사임을 알 수 있다. 특히 종립학교에 재학 중인 응답자들 중에서는 종교 의식이 학교의 공식 방침이라는 답변의 비율이 91.7%에 달하고 있다.

<표 52 > 학교유형별 종교의식 시행 주체(입학식/졸업식)_학생

학교 유형	입학식/졸업식의 종교의식 주체			계
	학교 방침	교사 재량	학생	
비종교계 사학	0	1	1	2
학교 유형 중 %	0.0%	50.0%	50.0%	
종교계 사학	495	38	25	540
학교 유형 중 %	91.7%	7.0%	4.6%	
계	495	39	26	542
학교 유형 중 %	91.3%	7.2%	4.8%	

설립 이념별로 보면, 입학식 및 졸업식에서의 종교의식이 학교에 의해 공식화된 경우가 개신교는 91.6%, 불교 98.9%, 천주교 90.2%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순진리회는 학교 내 종교의식이 없다는 점이 이 항목에서도 드러난다.

<표 53 > 학교의 종교이념별 종교의식 시행 주체(입학식/졸업식) 분포_학생

학교의 종교 이념	입학식/졸업식의 종교의식 주체			합계
	학교 방침	교사 재량	학생	
불교	91	1	1	92
빈도				
학교의 종교 이념 중 %	98.9%	1.1%	1.1%	
전체 %	16.9%	0.2%	0.2%	17.0%
개신교	272	22	18	297
빈도				
학교의 종교 이념 중 %	91.6%	7.4%	6.1%	
전체 %	50.4%	4.1%	3.3%	55.0%
천주교	92	9	2	102
빈도				
학교의 종교 이념 중 %	90.2%	8.8%	2.0%	
전체 %	17.0%	1.7%	0.4%	18.9%
원불교	14	3	2	19
빈도				
학교의 종교 이념 중 %	73.7%	15.8%	10.5%	
전체 %	2.6%	0.6%	0.4%	3.5%
대순진리회	0	0	1	1
빈도				
학교의 종교 이념 중 %	0.0%	0.0%	100.0%	
전체 %	0.0%	0.0%	0.2%	0.2%
천도교	15	0	1	15
빈도				
학교의 종교 이념 중 %	100.0%	0.0%	6.7%	
전체 %	2.8%	0.0%	0.2%	2.8%
통일교	11	3	0	14
빈도				
학교의 종교 이념 중 %	78.6%	21.4%	0.0%	
전체 %	2.0%	0.6%	0.0%	2.6%
합계	495	38	25	540
빈도				
학교의 종교 이념 중 %	91.7%	7.0%	4.6%	100.0%

② 학급 조회

학급 조회에서 종교 의식을 거행하는 것이 학교의 공식 방침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49.0%였고, 교사의 재량권이라는 응답자는 40.8%, 학생들 스스로 거행한다는 응답자는 12.4%였다. 중립학교에서 학급 조회 시 종교의식을 공식화 한 경우는 49.3%였고, 교사의 재량권인 경우는 40.8%였다.

<표 54 > 학교유형별 종교의식 시행 주체(학급조회)_학생

학교 유형	학급조회 의 종교의식 주체			계	
	학교 방침	교사 재량	학생		
비종교계 사학	빈도	0	1	1	2
	학교 유형 중 %	0.0%	50.0%	50.0%	
종교계 사학	빈도	150	124	37	304
	학교 유형 중 %	49.3%	40.8%	12.2%	
계	빈도	150	125	38	306
	학교 유형 중 %	49.0%	40.8%	12.4%	

학급 조희 시 종교의식이 학교에 의해 공식화된 경우는 개신교 50.9%, 천주교 52.6%, 불교 56.7%였고, 교사의 재량권인 경우는 개신교 43.0%, 천주교 34.2%, 불교 26.7%였다.

<표 55 > 학교의 종교이념별 종교의식 시행 주체(학급조희) 분포_학생

학교의 종교 이념	학급조희의 종교의식 주체			합계
	학교 방침	교사 재량	학생	
불교	빈도 17	8	6	30
	학교의 종교 이념 중 % 56.7%	26.7%	20.0%	
	전체 % 5.6%	2.6%	2.0%	9.9%
개신교	빈도 109	92	19	214
	학교의 종교 이념 중 % 50.9%	43.0%	8.9%	
	전체 % 35.9%	30.3%	6.3%	70.4%
천주교	빈도 20	13	5	38
	학교의 종교 이념 중 % 52.6%	34.2%	13.2%	
	전체 % 6.6%	4.3%	1.6%	12.5%
원불교	빈도 1	6	4	11
	학교의 종교 이념 중 % 9.1%	54.5%	36.4%	
	전체 % 0.3%	2.0%	1.3%	3.6%
대순진리회	빈도 0	0	1	1
	학교의 종교 이념 중 % 0.0%	0.0%	100.0%	
	전체 % 0.0%	0.0%	0.3%	0.3%
천도교	빈도 0	3	1	4
	학교의 종교 이념 중 % 0.0%	75.0%	25.0%	
	전체 % 0.0%	1.0%	0.3%	1.3%
통일교	빈도 3	2	1	6
	학교의 종교 이념 중 % 50.0%	33.3%	16.7%	
	전체 % 1.0%	0.7%	0.3%	2.0%
합계	빈도 150	124	37	304
	학교의 종교 이념 중 % 49.3%	40.8%	12.2%	100.0%

③ 종례

종례에서 종교 의식을 거행하는 것이 학교의 공식 방침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20.9%였고, 교사의 재량권이라는 응답자는 66.4%, 학생들 스스로 거행한다는 응답자는 14.8%였다. 중립학교에서 종례 시 종교의식을 공식화 한 경우는 21.1%였고, 교사의 재량권인 경우는 66.1%였다. 이는 종례시의 종교 의식은 학교의 방침이라기보다는 교사의 재량권에 의해 거행되는 경우가 많음을 의미한다.

<표 56 > 학교유형별 종교의식 시행 주체(종례)_학생

학교 유형	종례의 종교의식 주체			계	
	학교 방침	교사 재량	학생		
비종교계 사학	빈도	0	2	0	2
	학교 유형 중 %	0.0%	100.0%	0.0%	
종교계 사학	빈도	51	160	36	242
	학교 유형 중 %	21.1%	66.1%	14.9%	
계	빈도	51	162	36	244
	학교 유형 중 %	20.9%	66.4%	14.8%	

종례 시 종교의식이 학교에 의한 공식화된 경우는 개신교 16.4%, 천주교 34.4%, 불교 34.8%였고, 교사의 재량권인 경우는 개신교 74.5%, 천주교 53.1%, 불교 43.5%였다.

<표 57 > 학교의 종교이념별 종교의식 시행 주체(종례) 분포_학생

학교의 종교 이념	종례의 종교의식 주체			합계
	학교 방침	교사 재량	학생	
불교	빈도 8	10	6	23
학교의 종교 이념 중 %	34.8%	43.5%	26.1%	
전체 %	3.3%	4.1%	2.5%	9.5%
개신교	빈도 27	123	18	165
학교의 종교 이념 중 %	16.4%	74.5%	10.9%	
전체 %	11.2%	50.8%	7.4%	68.2%
천주교	빈도 11	17	5	32
학교의 종교 이념 중 %	34.4%	53.1%	15.6%	
전체 %	4.5%	7.0%	2.1%	13.2%
원불교	빈도 2	5	4	11
학교의 종교 이념 중 %	18.2%	45.5%	36.4%	
전체 %	0.8%	2.1%	1.7%	4.5%
대순진리회	빈도 0	0	1	1
학교의 종교 이념 중 %	0.0%	0.0%	100.0%	
전체 %	0.0%	0.0%	0.4%	0.4%
천도교	빈도 0	3	1	4
학교의 종교 이념 중 %	0.0%	75.0%	25.0%	
전체 %	0.0%	1.2%	0.4%	1.7%
통일교	빈도 3	2	1	6
학교의 종교 이념 중 %	50.0%	33.3%	16.7%	
전체 %	1.2%	0.8%	0.4%	2.5%
합계	빈도 51	160	36	242
학교의 종교 이념 중 %	21.1%	66.1%	14.9%	100.0%

④ 종교교과 수업

종교교과 수업에서 종교 의식을 거행하는 것이 학교의 공식 방침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63.1%였고, 교사의 재량권이라는 응답자는 29.9%, 학생들 스스로 거행한다는 응답자는 11.6%였다. 종립학교에서 종례 시 종교의식을 공식화 한 경우는 63.4%였고, 교사의 재량권인 경우는 29.8%였다. 이에 의하면 종교교과 수업에서의 종교 의식은 학교의 방침인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8 > 학교유형별 종교의식 시행 주체(종교교과 수업)_학생

학교 유형	종교교과 수업의 종교의식 주체			계
	학교 방침	교사 재량	학생	
비종교계 사학	빈도 0	빈도 1	빈도 1	빈도 2
학교 유형 중 %	0.0%	50.0%	50.0%	
종교계 사학	빈도 251	빈도 118	빈도 45	빈도 396
학교 유형 중 %	63.4%	29.8%	11.4%	
계	빈도 251	빈도 119	빈도 46	빈도 398
학교 유형 중 %	63.1%	29.9%	11.6%	

종교교과 수업 시 종교의식이 학교에 의한 공식화된 경우는 개신교 64.2%, 천주교 57.4%, 불교 63.9%이고, 교사의 재량권인 경우는 개신교 31.7%, 천주교 33.3%, 불교 25.0%였다.

<표 59 > 학교의 종교이념별 종교의식 시행 주체(종교교과 수업) 분포_학생

학교의 종교 이념	종교교과 수업의 종교의식 주체			합계
	학교 방침	교사 재량	학생	
불교	빈도 23 학교의 종교 이념 중 % 63.9% 전체 % 5.8%	빈도 9 교사의 재량 25.0% 전체 % 2.3%	빈도 5 학생 13.9% 전체 % 1.3%	36 9.1%
개신교	빈도 174 학교의 종교 이념 중 % 64.2% 전체 % 43.9%	빈도 86 교사의 재량 31.7% 전체 % 21.7%	빈도 28 학생 10.3% 전체 % 7.1%	271 68.4%
천주교	빈도 31 학교의 종교 이념 중 % 57.4% 전체 % 7.8%	빈도 18 교사의 재량 33.3% 전체 % 4.5%	빈도 5 학생 9.3% 전체 % 1.3%	54 13.6%
원불교	빈도 5 학교의 종교 이념 중 % 41.7% 전체 % 1.3%	빈도 2 교사의 재량 16.7% 전체 % 0.5%	빈도 5 학생 41.7% 전체 % 1.3%	12 3.0%
대순진리회	빈도 0 학교의 종교 이념 중 % 0.0% 전체 % 0.0%	빈도 0 교사의 재량 0.0% 전체 % 0.0%	빈도 1 학생 100.0% 전체 % 0.3%	1 0.3%
천도교	빈도 13 학교의 종교 이념 중 % 92.9% 전체 % 3.3%	빈도 1 교사의 재량 7.1% 전체 % 0.3%	빈도 0 학생 0.0% 전체 % 0.0%	14 3.5%
통일교	빈도 5 학교의 종교 이념 중 % 62.5% 전체 % 1.3%	빈도 2 교사의 재량 25.0% 전체 % 0.5%	빈도 1 학생 12.5% 전체 % 0.3%	8 2.0%
합계	빈도 251 학교의 종교 이념 중 % 63.4%	빈도 118 교사의 재량 29.8%	빈도 45 학생 11.4%	396 100.0%

⑤ 일반 수업

일반 수업에서 종교 의식을 거행하는 것이 학교의 공식 방침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22.6%였고, 교사의 재량권이라는 응답자는 63.5%, 학생들 스스로 거행한다는 응답자는 15.4%였다. 종립학교에서 일반 수업에서 종교의식을 공식화 한 경우는 22.7%였고, 교사의 재량권인 경우는 63.6%였다. 이에 의하면 일반 수업에서의 종교 의식은 교사의 재량권인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60 > 학교유형별 종교의식 시행 주체(일반 수업)_학생

학교 유형	일반 수업의 종교의식 주체			계	
	학교 방침	교사 재량	학생		
비종교계 사학	빈도	0	1	1	2
	학교 유형 중 %	0.0%	50.0%	50.0%	
종교계 사학	빈도	60	168	40	264
	학교 유형 중 %	22.7%	63.6%	15.2%	
계	빈도	60	169	41	266
	학교 유형 중 %	22.6%	63.5%	15.4%	

일반 수업 시 종교의식이 학교에 의한 공식화의 경우는 개신교 19.3%, 천주교 34.3%, 불교 29.2%이고, 교사의 재량권인 경우는 개신교 72.4%, 천주교 42.9%, 불교 50.0%였다.

<표 61 > 학교의 종교이념별 종교의식 시행 주체(일반 수업) 분포_학생

학교의 종교 이념	일반 수업의 종교의식 주체			합계
	학교 방침	교사 재량	학생	
불교	빈도 7	12	6	24
	학교의 종교 이념 중 % 29.2%	50.0%	25.0%	
	전체 % 2.7%	4.5%	2.3%	9.1%
개신교	빈도 35	131	18	181
	학교의 종교 이념 중 % 19.3%	72.4%	9.9%	
	전체 % 13.3%	49.6%	6.8%	68.6%
천주교	빈도 12	15	8	35
	학교의 종교 이념 중 % 34.3%	42.9%	22.9%	
	전체 % 4.5%	5.7%	3.0%	13.3%
원불교	빈도 3	4	5	12
	학교의 종교 이념 중 % 25.0%	33.3%	41.7%	
	전체 % 1.1%	1.5%	1.9%	4.5%
대순진리회	빈도 0	0	1	1
	학교의 종교 이념 중 % 0.0%	0.0%	100.0%	
	전체 % 0.0%	0.0%	0.4%	0.4%
천도교	빈도 0	4	1	5
	학교의 종교 이념 중 % 0.0%	80.0%	20.0%	
	전체 % 0.0%	1.5%	0.4%	1.9%
통일교	빈도 3	2	1	6
	학교의 종교 이념 중 % 50.0%	33.3%	16.7%	
	전체 % 1.1%	0.8%	0.4%	2.3%
합계	빈도 60	168	40	264
	학교의 종교 이념 중 % 22.7%	63.6%	15.2%	100.0%

⑥ 체육대회/축제

체육대회나 축제에서 종교 의식을 거행하는 것이 학교의 공식 방침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80.2%였고, 교사의 재량권이라는 응답자는 14.7%, 학생들 스스로 거행한다는 응답자는 9.1%였다. 종립학교에서 일반 수업에서 종교의식을 공식화 한 경우는 80.3%였고, 교사의 재량권인 경우는 14.6%였다. 이에 의하면 체육대회나 축제에서의 종교 의식은 학교의 공식 방침에 의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62 > 학교유형별 종교의식 시행 주체(체육대회/축제)_학생

학교 유형	체육대회/축제의 종교의식 주체			계	
	학교 방침	교사 재량	학생		
비종교계 사학	빈도	2	1	0	3
	학교 유형 중 %	66.7%	33.3%	0.0%	
종교계 사학	빈도	314	57	36	391
	학교 유형 중 %	80.3%	14.6%	9.2%	
계	빈도	316	58	36	394
	학교 유형 중 %	80.2%	14.7%	9.1%	

체육대회나 축제 시 종교의식이 학교에 의한 공식화의 경우는 개신교 82.5%, 불교 88.2%, 천주교 75.5%이고, 교사의 재량권인 경우는 개신교 14.4%, 천주교 16.3%, 불교 9.8%였다.

< 표 63 > 학교의 종교이념별 종교의식 시행 주체(체육대회/축제) 분포_학생

학교의 종교 이념	체육대회/축제의 종교의식 주체			합계
	학교 방침	교사 재량	학생	
불교	45	5	2	51
학교의 종교 이념 중 %	88.2%	9.8%	3.9%	
전체 %	11.5%	1.3%	0.5%	13.0%
개신교	212	37	22	257
학교의 종교 이념 중 %	82.5%	14.4%	8.6%	
전체 %	54.2%	9.5%	5.6%	65.7%
천주교	37	8	5	49
학교의 종교 이념 중 %	75.5%	16.3%	10.2%	
전체 %	9.5%	2.0%	1.3%	12.5%
원불교	3	5	4	12
학교의 종교 이념 중 %	25.0%	41.7%	33.3%	
전체 %	0.8%	1.3%	1.0%	3.1%
대순진리회	0	0	1	1
학교의 종교 이념 중 %	0.0%	0.0%	100.0%	
전체 %	0.0%	0.0%	0.3%	0.3%
천도교	12	0	1	13
학교의 종교 이념 중 %	92.3%	0.0%	7.7%	
전체 %	3.1%	0.0%	0.3%	3.3%
통일교	5	2	1	8
학교의 종교 이념 중 %	62.5%	25.0%	12.5%	
전체 %	1.3%	0.5%	0.3%	2.0%
합계	314	57	36	391
학교의 종교 이념 중 %	80.3%	14.6%	9.2%	100.0%

⑦ 현장학습

현장학습에서 종교 의식을 거행하는 것이 학교의 공식 방침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48.2%였고, 교사의 재량권이라는 응답자는 39.6%, 학생들 스스로 거행한다는 응답자는 13.7%였다. 종립학교에서 일반 수업에서 종교의식을 공식화 한 경우는 48.4%였고, 교사의 재량권인 경우는 39.6%였다. 이에 의하면 현장학습에서의 종교 의식은 학교의 공식 방침에 의한 경우가 교사의 재량권에 의한 것보다 다소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64 > 학교유형별 종교의식 시행 주체(현장학습)_학생

학교 유형	현장학습의 종교의식 주체			계	
	학교 방침	교사 재량	학생		
비종교계 사학	빈도	1	1	1	3
	학교 유형 중 %	33.3%	33.3%	33.3%	
종교계 사학	빈도	133	109	37	275
	학교 유형 중 %	48.4%	39.6%	13.5%	
계	빈도	134	110	38	278
	학교 유형 중 %	48.2%	39.6%	13.7%	

현장학습에서 종교의식이 학교에 의한 공식화의 경우는 개신교 52.8%, 천주교 41.4%, 불교 40.9%이고, 교사의 재량권인 경우는 개신교 38.7%, 천주교 37.9%, 불교 50.0%였다.

< 표 65 > 학교의 종교이념별 종교의식 시행 주체(현장학습) 분포_학생

학교의 종교 이념	현장학습의 종교의식 주체			합계	
	학교 방침	교사 재량	학생		
불교	빈도	9	11	3	22
	학교의 종교 이념 중 %	40.9%	50.0%	13.6%	
	전체 %	3.3%	4.0%	1.1%	8.0%
개신교	빈도	105	77	19	199
	학교의 종교 이념 중 %	52.8%	38.7%	9.5%	
	전체 %	38.2%	28.0%	6.9%	72.4%
천주교	빈도	12	11	7	29
	학교의 종교 이념 중 %	41.4%	37.9%	24.1%	
	전체 %	4.4%	4.0%	2.5%	10.5%
원불교	빈도	1	5	5	11
	학교의 종교 이념 중 %	9.1%	45.5%	45.5%	
	전체 %	0.4%	1.8%	1.8%	4.0%
대순진리회	빈도	1	0	1	2
	학교의 종교 이념 중 %	50.0%	0.0%	50.0%	
	전체 %	0.4%	0.0%	0.4%	0.7%
천도교	빈도	0	3	1	4
	학교의 종교 이념 중 %	0.0%	75.0%	25.0%	
	전체 %	0.0%	1.1%	0.4%	1.5%
통일교	빈도	5	2	1	8
	학교의 종교 이념 중 %	62.5%	25.0%	12.5%	
	전체 %	1.8%	0.7%	0.4%	2.9%
합계	빈도	133	109	37	275
	학교의 종교 이념 중 %	48.4%	39.6%	13.5%	100.0%

⑧ 명상/경건회

명상이나 경건회에서 종교 의식을 거행하는 것이 학교의 공식 방침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66.1%였고, 교사의 재량권이라는 응답자는 22.6%, 학생들 스스로 거행한다는 응답자는 16.8%였다. 중립학교에서 일반 수업에서 종교의식을 공식화 한 경우는 66.5%였고, 교사의 재량권인 경우는 22.4%였다. 이에 의하면 명상이나 경건회에서의 종교 의식은 학교의 공식 방침에 의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66 > 학교유형별 종교의식 시행 주체(명상/경건회)_학생

학교 유형	명상/경건회의 종교의식 주체			계	
	학교 방침	교사 재량	학생		
비종교계 사학	빈도	0	1	1	2
	학교 유형 중 %	0.0%	50.0%	50.0%	
종교계 사학	빈도	228	77	57	343
	학교 유형 중 %	66.5%	22.4%	16.6%	
계	빈도	228	78	58	345
	학교 유형 중 %	66.1%	22.6%	16.8%	

명상이나 경건회에서의 종교의식이 학교에 의한 공식화의 경우는 개신교 64.1%, 천주교 71.0%, 불교 79.5%의 순이었고, 교사의 재량권인 경우는 개신교 25.2%, 천주교 16.1%, 불교 18.2%였다.

<표 67 > 학교의 종교이념별 종교의식 시행 주체(명상/경건회) 분포_학생

학교의 종교 이념	명상/경건회의 종교의식 주체			합계	
	학교 방침	교사 재량	학생		
불교	빈도	35	8	2	44
	학교의 종교 이념 중 %	79.5%	18.2%	4.5%	
	전체 %	10.2%	2.3%	0.6%	12.8%
개신교	빈도	132	52	40	206
	학교의 종교 이념 중 %	64.1%	25.2%	19.4%	
	전체 %	38.5%	15.2%	11.7%	60.1%
천주교	빈도	44	10	8	62
	학교의 종교 이념 중 %	71.0%	16.1%	12.9%	
	전체 %	12.8%	2.9%	2.3%	18.1%
원불교	빈도	4	3	5	12
	학교의 종교 이념 중 %	33.3%	25.0%	41.7%	
	전체 %	1.2%	0.9%	1.5%	3.5%
대순진리회	빈도	0	0	1	1
	학교의 종교 이념 중 %	0.0%	0.0%	100.0%	
	전체 %	0.0%	0.0%	0.3%	0.3%
천도교	빈도	9	2	0	11
	학교의 종교 이념 중 %	81.8%	18.2%	0.0%	
	전체 %	2.6%	0.6%	0.0%	3.2%
통일교	빈도	4	2	1	7
	학교의 종교 이념 중 %	57.1%	28.6%	14.3%	
	전체 %	1.2%	0.6%	0.3%	2.0%
합계	빈도	228	77	57	343
	학교의 종교 이념 중 %	66.5%	22.4%	16.6%	100.0%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입학식 및 졸업식, 종교교과 수업, 체육대회/축제, 명상/경건회 등에서의 종교 의식은 학교의 공식 방침인 경우가 많았으며, 종례와 일반 수업에서의 종교 의식은 교사의 재량권에 의한 경우가 많았다. 그리고 이상에서 살펴본 모든 교육과정에서 개신교계 종립학교가 다른 종교계 종립학교보다 학교에 의해 공식적으로 혹은 교사의 재량권에 의해 종교 의식을 거행하는 경우가 현저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7) 학교 내 종교활동에 대한 만족도

학교 내에서의 종교적 활동에 대해 만족한다는 응답자는 14.5%였고, 불만이라는 응답자는 34.5%로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반응이 2배 이상 많았다. 한편 보통이라는 응답자는 약 절반인 51.1%였다.

학교 유형별로는 종립학교가 국공립학교나 비종립학교보다 만족한다는 응답자의 비율은 높고, 불만이라는 응답자의 비율이 낮게 나타났다. 국공립학교는 만족 4.3%, 불만 47.5%, 비종립학교는 만족 4.5%, 불만 43.4%, 종립학교는 만족 22.4%, 불만 25.5%였다. 이것은 국공립학교나 비종립학교에서는 학교 내 종교 활동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 강한 반면, 종립학교에서는 종교 활동에 대한 긍정적 입장이 강함을 의미한다.

<표 68 > 학교유형별 학교 내 종교활동에 대한 만족도_학생

학교 유형	학교 내 종교활동에 대한 만족도					전체
	매우 만족	다소 만족	보통	다소 불만	매우 불만	
국공립	3	12	169	72	94	350
학교 유형 중 %	0.9%	3.4%	48.3%	20.6%	26.9%	100.0%
비종교계 사학	8	2	115	39	57	221
학교 유형 중 %	3.6%	0.9%	52.0%	17.6%	25.8%	100.0%
종교계 사학	53	108	375	130	53	719
학교 유형 중 %	7.4%	15.0%	52.2%	18.1%	7.4%	100.0%
전체	64	122	659	241	204	1290
학교 유형 중 %	5.0%	9.5%	51.1%	18.7%	15.8%	100.0%

$$\chi^2=150.2 \quad df=8 \quad p=.000$$

설립 이념별로는 개신교계 종립학교 재학생은 만족스럽다(24.3%)는 경우보다는 불만(26.3%)이라는 응답이 다소 많았고, 불교계 종립학교 재학생도 역시 만족(16.1%)이

란 응답보다는 불만(23.9%)이란 응답이 다소 많았다. 이에 비해 천주교계 종립학교 재학생은 만족(30.9%)이란 응답이 불만(16.9%)이란 응답보다 많았다. 대체로 천주교계 종립학교 학생들이 개신교나 불교계 종립학교 재학생들보다 학교 내 종교활동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편이다.

<표 69 > 학교의 종교이념별 학교 내 종교활동에 대한 만족도 분포_학생

학교의 종교 이념	학교 내 종교활동에 대한 만족도					전체	
	매우 만족	다소 만족	보통	다소 불만	매우 불만		
불교	빈도	6	15	78	20	11	130
	학교의 종교 이념 중 %	4.6%	11.5%	60.0%	15.4%	8.5%	100.0%
	전체 %	0.8%	2.1%	10.8%	2.8%	1.5%	18.1%
개신교	빈도	33	58	184	72	26	373
	학교의 종교 이념 중 %	8.8%	15.5%	49.3%	19.3%	7.0%	100.0%
	전체 %	4.6%	8.1%	25.6%	10.0%	3.6%	51.9%
천주교	빈도	13	29	71	18	5	136
	학교의 종교 이념 중 %	9.6%	21.3%	52.2%	13.2%	3.7%	100.0%
	전체 %	1.8%	4.0%	9.9%	2.5%	0.7%	18.9%
원불교	빈도	1	5	19	4	3	32
	학교의 종교 이념 중 %	3.1%	15.6%	59.4%	12.5%	9.4%	100.0%
	전체 %	0.1%	0.7%	2.6%	0.6%	0.4%	4.5%
대순진리회	빈도	0	0	9	4	1	14
	학교의 종교 이념 중 %	0.0%	0.0%	64.3%	28.6%	7.1%	100.0%
	전체 %	0.0%	0.0%	1.3%	0.6%	0.1%	1.9%
천도교	빈도	0	0	7	7	1	15
	학교의 종교 이념 중 %	0.0%	0.0%	46.7%	46.7%	6.7%	100.0%
	전체 %	0.0%	0.0%	1.0%	1.0%	0.1%	2.1%
통일교	빈도	0	1	7	5	6	19
	학교의 종교 이념 중 %	0.0%	5.3%	36.8%	26.3%	31.6%	100.0%
	전체 %	0.0%	0.1%	1.0%	0.7%	0.8%	2.6%
전체	빈도	53	108	375	130	53	719
	학교의 종교 이념 중 %	7.4%	15.0%	52.2%	18.1%	7.4%	100.0%
	전체 %	7.4%	15.0%	52.2%	18.1%	7.4%	100.0%

$\chi^2=51.3$ $df=24$ $p=.001$

학교 내 종교 활동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로는 ‘원하지 않아서’ 66.1%, ‘흥미가 없고 지루해서’ 48.2%, ‘종교가 달라서’ 22.4%, ‘공부할 시간을 빼앗기므로’ 17.4%, ‘기대했던 바와 달라서’ 6.6%로 나타났다.

학교 유형별로는 국공립학교와 비종립학교의 경우는 ‘원하지 않아서’에 대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편이고(각각 73.9%, 68.4%), 종립학교의 경우에는 ‘흥미없고 지루해서’(58.9%)와 ‘종교가 달라서’(27.6%)라는 이유를 꼽은 응답자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표 70 > 학교유형별 학교 내 종교활동에 대한 불만족 이유_학생

학교 유형	불만 이유					합계	
	원하지 않아서	종교가 달라서	지루함	공부 시간	기대와 달라서		
국공립	빈도	88	17	45	12	3	119
	학교 유형 중 %	73.9%	14.3%	37.8%	10.1%	2.5%	
비종교계 사학	빈도	52	17	29	14	10	76
	학교 유형 중 %	68.4%	22.4%	38.2%	18.4%	13.2%	
종교계 사학	빈도	111	51	109	40	12	185
	학교 유형 중 %	60.0%	27.6%	58.9%	21.6%	6.5%	
합계	빈도	251	85	183	66	25	380
	학교 유형 중 %	66.1%	22.4%	48.2%	17.4%	6.6%	

불교계와 천주교계 종립학교 재학생들은 ‘원하지 않아서’(각각 57.6%, 54.5%)와 ‘흥미없고 지루해서’(각각 63.6%, 72.7%)를 주로 꼽고 있고, 개신교계 종립학교 재학생들은 ‘원하지 않아서’가 가장 많지만(66.7%) ‘흥미없고 지루해서’(57.7%)와 ‘종교가 달라서’(29.9%)도 중요한 이유로 거론되고 있다.

<표 71 > 학교의 종교이념별 학교 내 종교활동에 대한 불만족 이유 분포_학생

학교의 종교 이념	불만 이유					합계
	원하지 않아서	종교가 달라서	지루함	공부 시간	기대와 달라서	
불교	19	9	21	6	2	33
학교의 종교 이념 중 %	57.6%	27.3%	63.6%	18.2%	6.1%	
전체 %	10.3%	4.9%	11.4%	3.2%	1.1%	17.8%
개신교	64	29	56	24	6	97
학교의 종교 이념 중 %	66.0%	29.9%	57.7%	24.7%	6.2%	
전체 %	34.6%	15.7%	30.3%	13.0%	3.2%	52.4%
천주교	12	4	16	5	1	22
학교의 종교 이념 중 %	54.5%	18.2%	72.7%	22.7%	4.5%	
전체 %	6.5%	2.2%	8.6%	2.7%	0.5%	11.9%
원불교	3	2	4	2	1	9
학교의 종교 이념 중 %	33.3%	22.2%	44.4%	22.2%	11.1%	
전체 %	1.6%	1.1%	2.2%	1.1%	0.5%	4.9%
대순진리회	3	2	2	0	0	5
학교의 종교 이념 중 %	60.0%	40.0%	40.0%	0.0%	0.0%	
전체 %	1.6%	1.1%	1.1%	0.0%	0.0%	2.7%
천도교	4	2	7	1	1	8
학교의 종교 이념 중 %	50.0%	25.0%	87.5%	12.5%	12.5%	
전체 %	2.2%	1.1%	3.8%	0.5%	0.5%	4.3%
통일교	6	3	3	2	1	11
학교의 종교 이념 중 %	54.5%	27.3%	27.3%	18.2%	9.1%	
전체 %	3.2%	1.6%	1.6%	1.1%	0.5%	5.9%
합계	111	51	109	40	12	185
학교의 종교 이념 중 %	60.0%	27.6%	58.9%	21.6%	6.5%	100.0%

학교의 종교 이념과 학생이 믿고 있는 종교가 일치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따라 학교 내 종교활동에 대한 만족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교차분석 하였다.

불교계 종립학교의 경우 불교신도인 학생들은 학교 내 종교활동에 대해 만족하는 응답자가 26.0%, 불만인 경우는 8.7%였다. 이에 비해 다른 종교를 믿는 학생들의 경우 학교 내 종교활동에 만족한다는 응답자는 14.0%, 불만이라는 응답자는 27.1%이다.

개신교계 종립학교의 경우 개신교 신도인 학생들은 만족한다는 응답자가 42.4%, 불만이라는 응답자가 14.7%였다. 그리고 다른 종교를 믿는 학생들의 경우는 만족한다는 응답자가 8.1%, 불만이라는 응답자가 36.7%였다.

천주교계 종립학교의 경우 천주교 신도인 학생들은 55.8%가 만족하다고 답하였고, 7.0%는 불만이라고 답하였다. 다른 종교를 믿는 학생들의 경우는 만족한다는 응답자가 19.4%, 불만이라는 응답자가 21.5%였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대체로 학교의 종교 이념과 학생 자신의 종교가 일치하는 경우에 학교 내 종교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높고, 불만은 낮아지고 있으며, 학교의 종교 이념과 자신의 종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는 반대로 만족도는 낮고, 불만은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학교의 종교 이념과 학생의 종교가 일치할 경우 천주교계 종립학교-개신교계 종립학교-불교계 종립학교의 순으로 만족한다는 응답자의 비율이 높았고,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개신교계 종립학교-불교계 종립학교-천주교계 종립학교의 순으로 불만이라는 응답자의 비율이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천주교계 종립학교의 학교 내 종교활동은 학생들의 종교와 무관하게 비교적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음을 의미한다. 반면에 개신교계 종립학교의 경우는 종교가 일치하는 학생들의 불만도 다른 종립학교에 비해 높은 편이고, 종교가 다른 학생들의 경우는 학교 내 종교활동에 대한 불만 비율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 또한 개신교계 종립학교의 학교 내 종교활동은 학생들의 종교와 무관하게 불만을 표시하는 학생들의 비율이 다른 종교계 종립학교에 비해 가장 높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학생들에게 가장 환영받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불교계 종립학교의 학교 내 종교활동은 천주교계 종립학교에 비해서는 만족도가 낮고, 개신교계 종립학교에 비해서는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 표 72 > 학교와 학생의 종교 일치 여부에 따른 종교활동에 대한 만족도 분포_학생

학교 종교 이념	학교-개인의 종교 일치	학교 내 종교활동에 대한 만족도					전체	
		매우 만족	다소 만족	보통	다소 불만	매우 불만		
교 파	일치	빈도	1	5	15	2	0	23
		학교의 종교 이념 중 %	4.3%	21.7%	65.2%	8.7%	0.0%	100.0%
		전체 %	0.8%	3.8%	11.5%	1.5%	0.0%	17.7%
	불 일치	빈도	5	10	63	18	11	107
		학교의 종교 이념 중 %	4.7%	9.3%	58.9%	16.8%	10.3%	100.0%
		전체 %	3.8%	7.7%	48.5%	13.8%	8.5%	82.3%
	전 체	빈도	6	15	78	20	11	130
		학교의 종교 이념 중 %	4.6%	11.5%	60.0%	15.4%	8.5%	100.0%
		전체 %	4.6%	11.5%	60.0%	15.4%	8.5%	100.0%
$\chi^2=5.8$ $df=4$ $p=.212$								
개 신 교	일치	빈도	31	44	76	19	7	177
		학교의 종교 이념 중 %	17.5%	24.9%	42.9%	10.7%	4.0%	100.0%
		전체 %	8.3%	11.8%	20.4%	5.1%	1.9%	47.5%
	불 일치	빈도	2	14	108	53	19	196
		학교의 종교 이념 중 %	1.0%	7.1%	55.1%	27.0%	9.7%	100.0%
		전체 %	0.5%	3.8%	29.0%	14.2%	5.1%	52.5%
	전 체	빈도	33	58	184	72	26	373
		학교의 종교 이념 중 %	8.8%	15.5%	49.3%	19.3%	7.0%	100.0%
		전체 %	8.8%	15.5%	49.3%	19.3%	7.0%	100.0%
$\chi^2=67.4$ $df=4$ $p=.000$								
천 주 교	일치	빈도	9	15	16	2	1	43
		학교의 종교 이념 중 %	20.9%	34.9%	37.2%	4.7%	2.3%	100.0%
		전체 %	6.6%	11.0%	11.8%	1.5%	0.7%	31.6%
	불 일치	빈도	4	14	55	16	4	93
		학교의 종교 이념 중 %	4.3%	15.1%	59.1%	17.2%	4.3%	100.0%
		전체 %	2.9%	10.3%	40.4%	11.8%	2.9%	68.4%
	전 체	빈도	13	29	71	18	5	136
		학교의 종교 이념 중 %	9.6%	21.3%	52.2%	13.2%	3.7%	100.0%
		전체 %	9.6%	21.3%	52.2%	13.2%	3.7%	100.0%
$\chi^2=20.5$ $df=4$ $p=.000$								

(8) 방과 후 종교행사 의무 참여

방과 후 혹은 휴일에 종교 행사에 의무적으로 참여한 적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8.5%였고, 그런 적이 없다는 응답자는 82.6%, 모른다고 답한 응답자는 8.9%로 나타났다. 이것은 방과 후 종교행사에 의무적으로 참여하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방과 후 종교 행사에 의무적으로 참여한 적이 있다는 응답자의 비율이 종립 학교(16.1%)의 경우 국공립학교(0.5%)나 비종립학교(1.6%)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표 73 > 방과 후 종교 행사 의무참여_학생

학교 유형		방과후/휴일에 종교행사 의무 참여			계
		있음	없음	모름	
국공립	빈도	2	384	25	411
	학교 유형 중 %	0.5%	93.4%	6.1%	100.0%
비종교계 사학	빈도	5	296	18	319
	학교 유형 중 %	1.6%	92.8%	5.6%	100.0%
종교계 사학	빈도	117	523	87	727
	학교 유형 중 %	16.1%	71.9%	12.0%	100.0%
계	빈도	124	1203	130	1457
	학교 유형 중 %	8.5%	82.6%	8.9%	100.0%

$$\chi^2=133.3 \quad df=4 \quad p=.000$$

한편 방과 후 종교 행사에 의무적으로 참여한 적이 있다는 응답자는 불교계 종립학교(20.3%)가 가장 많았고, 천주교계 종립학교(16.9%), 개신교계 종립학교(13.9%)의 순으로 나타났다.

< 표 74 > 학교의 종교이념별 방과 후 종교 행사 의무참여 분포_학생

학교의 종교 이념		방과후/휴일에 종교행사 의무 참여			전체
		있음	없음	모름	
불교	빈도	28	99	11	138
	학교의 종교 이념 중 %	20.3%	71.7%	8.0%	100.0%
	전체 %	3.9%	13.6%	1.5%	19.0%
개신교	빈도	52	267	54	373
	학교의 종교 이념 중 %	13.9%	71.6%	14.5%	100.0%
	전체 %	7.2%	36.7%	7.4%	51.3%
천주교	빈도	23	99	14	136
	학교의 종교 이념 중 %	16.9%	72.8%	10.3%	100.0%
	전체 %	3.2%	13.6%	1.9%	18.7%
원불교	빈도	5	23	4	32
	학교의 종교 이념 중 %	15.6%	71.9%	12.5%	100.0%
	전체 %	0.7%	3.2%	0.6%	4.4%
대순진리회	빈도	0	15	0	15
	학교의 종교 이념 중 %	0.0%	100.0%	0.0%	100.0%
	전체 %	0.0%	2.1%	0.0%	2.1%
천도교	빈도	4	10	0	14
	학교의 종교 이념 중 %	28.6%	71.4%	0.0%	100.0%
	전체 %	0.6%	1.4%	0.0%	1.9%
통일교	빈도	5	10	4	19
	학교의 종교 이념 중 %	26.3%	52.6%	21.1%	100.0%
	전체 %	0.7%	1.4%	0.6%	2.6%
전체	빈도	117	523	87	727
	학교의 종교 이념 중 %	16.1%	71.9%	12.0%	100.0%
	전체 %	16.1%	71.9%	12.0%	100.0%

$\chi^2=19.2$ $df=12$ $p=.084$

(9) 타종교 신고 후 종교 행사 불참 시 불이익

학교의 설립 이념과 자신의 종교가 다르다는 것을 알리고 종교 행사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응답자는 42.4%이고, 불이익을 받는다는 응답자는 19.9%, 모른다는 응답자는 37.7%로 나타났다. 불이익이 없는 경우가 불이익을 받는 경우보다 많기는 하지만, 불이익을 받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불이익의 여부는 거의 중립학교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중립학교에서도 상대적으로 불이익이 없는 경우가 많은 편이다.

<표 75 > 타종교 신고 후 종교행사 불참 시 불이익 여부_학생

학교 유형		타종교 신고 후 종교행사 불참시 불이익			계
		받지 않음	받음	모름	
비종교계 사학	빈도	0	1	1	2
	학교 유형 중 %	0.0%	50.0%	50.0%	100.0%
종교계 사학	빈도	302	141	268	711
	학교 유형 중 %	42.5%	19.8%	37.7%	100.0%
계	빈도	302	142	269	713
	학교 유형 중 %	42.4%	19.9%	37.7%	100.0%

$$\chi^2=1.8 \quad df=2 \quad p=.398$$

불이익을 받는다는 응답자들 중에서는 불교계 중립학교 재학생의 비율이 33.6%로 가장 높고, 개신교 16.7%, 천주교 15.6%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76 > 학교의 종교이념별 타종교 신고 후 종교행사 불참시 불이익 분포_학생

학교의 종교 이념		타종교 신고 후 종교행사 불참시 불이익			전체
		받지 않음	받음	모름	
불교	빈도	64	47	29	140
	학교의 종교 이념 중 %	45.7%	33.6%	20.7%	100.0%
	전체 %	9.0%	6.6%	4.1%	19.7%
개신교	빈도	154	61	150	365
	학교의 종교 이념 중 %	42.2%	16.7%	41.1%	100.0%
	전체 %	21.7%	8.6%	21.1%	51.3%
천주교	빈도	55	21	59	135
	학교의 종교 이념 중 %	40.7%	15.6%	43.7%	100.0%
	전체 %	7.7%	3.0%	8.3%	19.0%
원불교	빈도	8	6	17	31
	학교의 종교 이념 중 %	25.8%	19.4%	54.8%	100.0%
	전체 %	1.1%	0.8%	2.4%	4.4%
대순진리회	빈도	8	3	4	15
	학교의 종교 이념 중 %	53.3%	20.0%	26.7%	100.0%
	전체 %	1.1%	0.4%	0.6%	2.1%
천도교	빈도	9	1	5	15
	학교의 종교 이념 중 %	60.0%	6.7%	33.3%	100.0%
	전체 %	1.3%	0.1%	0.7%	2.1%
통일교	빈도	4	2	4	10
	학교의 종교 이념 중 %	40.0%	20.0%	40.0%	100.0%
	전체 %	0.6%	0.3%	0.6%	1.4%
전체	빈도	302	141	268	711
	학교의 종교 이념 중 %	42.5%	19.8%	37.7%	100.0%
	전체 %	42.5%	19.8%	37.7%	100.0%

$$\chi^2=37.8 \quad df=12 \quad p=.000$$

(10)종교의식 불참시 불이익

종교의식이나 수업에 참여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임하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응답자는 12.9%, 받지 않는다는 응답자는 56.5%, 모른다는 응답자는 30.6%였다.

불이익을 받는다는 응답자들은 모두 중립학교 재학생(13.0%)이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층면접에서 한 중립학교는 학교의 종교행사나 종교교육에 불참하는 학생에게 벌점을 부과하고 벌점의 수에 따라 징계 조치를 한다고 응답한 사례가 있었다.

<표 77 > 종교의식 불참시 불이익 여부_학생

학교 유형	종교의식/수업 불참 혹은 불성실 참여로 인한 불이익			계
	받음	받지 않음	모름	
비종교계 사학	0	4	3	7
학교 유형 중 %	0.0%	57.1%	42.9%	100.0%
종교계 사학	95	412	222	729
학교 유형 중 %	13.0%	56.5%	30.5%	100.0%
계	95	416	225	736
학교 유형 중 %	12.9%	56.5%	30.6%	100.0%

$$\chi^2=1.3 \quad df=2 \quad p=.532$$

또한 불이익을 받는다는 응답자들 중에서는 개신교계 중립학교 재학생의 비율이 14.3%로 가장 높고, 천주교 13.2%, 불교 8.4%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78 > 학교의 종교이념별 종교의식 불참시 불이익 분포_학생

학교의 종교 이념		종교의식/수업 불참 혹은 불성실 참여로 인한 불이익			전체
		받음	받지 않음	모름	
불교	빈도	12	107	24	143
	학교의 종교 이념 중 %	8.4%	74.8%	16.8%	100.0%
	전체 %	1.6%	14.7%	3.3%	19.6%
개신교	빈도	53	185	133	371
	학교의 종교 이념 중 %	14.3%	49.9%	35.8%	100.0%
	전체 %	7.3%	25.4%	18.2%	50.9%
천주교	빈도	18	77	41	136
	학교의 종교 이념 중 %	13.2%	56.6%	30.1%	100.0%
	전체 %	2.5%	10.6%	5.6%	18.7%
원불교	빈도	3	15	13	31
	학교의 종교 이념 중 %	9.7%	48.4%	41.9%	100.0%
	전체 %	0.4%	2.1%	1.8%	4.3%
대순진리회	빈도	0	15	0	15
	학교의 종교 이념 중 %	0.0%	100.0%	0.0%	100.0%
	전체 %	0.0%	2.1%	0.0%	2.1%
천도교	빈도	2	9	4	15
	학교의 종교 이념 중 %	13.3%	60.0%	26.7%	100.0%
	전체 %	0.3%	1.2%	0.5%	2.1%
통일교	빈도	7	4	7	18
	학교의 종교 이념 중 %	38.9%	22.2%	38.9%	100.0%
	전체 %	1.0%	0.5%	1.0%	2.5%
전체	빈도	95	412	222	729
	학교의 종교 이념 중 %	13.0%	56.5%	30.5%	100.0%
	전체 %	13.0%	56.5%	30.5%	100.0%

$\chi^2=53.5$ $df=12$ $p=.000$

종교의식 불참 또는 불성실한 태도를 이유로 받게 되는 불이익의 종류로는 ‘간접적인 체벌’ 50.6%, ‘체벌’ 29.1%, ‘공식적인 징계’ 17.7%, ‘벌금 또는 봉사’ 13.9%, ‘다른 종교행사 의무적 참석 확인’ 10.1%, ‘장학금이나 혜택 대상에서 제외’ 5.1% 등이 꼽혔다.

<표 79 > 학교유형별 불이익의 유형_학생

학교 유형	불이익의 유형						합계	
	징계	벌금 봉사	체벌	간접 체벌	다른행 사의무 참여	혜택 배제		
비종교계 사학	빈도 학교 유형 중 %	1 100.0%	0 0.0%	1 100.0%	1 100.0%	0 0.0%	1 100.0%	1
종교계 사학	빈도 학교 유형 중 %	12 15.0%	12 15.0%	22 27.5%	38 47.5%	9 11.3%	5 6.3%	80
합계	빈도 학교 유형 중 %	13 17.7%	12 13.9%	23 29.1%	39 50.6%	9 10.1%	6 5.1%	81 100.0%

(11) 종교행사에 학생 참여 검사

공식적인 종교행사에 학생이 참여하는지 또는 성실하게 임하는지 교직원이 검사한다고 답한 경우는 16.0%, 아니라고 답한 경우는 62.8%, 모른다고 답한 경우는 21.3%였다.

국공립학교와 비종립학교에서는 이러한 검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종립학교에서는 이런 검사가 있다고 답한 경우가 30.9%였다.

심층면접에서 한 종립학교의 담임선생님이 학년예배에 계속 빠지는 학생을 알면서 모른 척 해주었다가 교장실에 불러가서 특정 학생을 편애한다는 이유로 주의를 받았던 사례가 있었다.

<표 80 > 학교유형별 종교행사 참여유무 검사_학생

학교 유형	종교행사 참여 검사			계
	그렇다	그렇지 않다	모름	
국공립	2	349	51	402
학교 유형 중 %	0.5%	86.8%	12.7%	100.0%
비종교계 사학	2	257	45	304
학교 유형 중 %	0.7%	84.5%	14.8%	100.0%
종교계 사학	225	295	209	729
학교 유형 중 %	30.9%	40.5%	28.7%	100.0%
계	229	901	305	1435
학교 유형 중 %	16.0%	62.8%	21.3%	100.0%

$$\chi^2=362.7 \quad df=4 \quad p=.000$$

종립학교 재학생 중에서 종교행사에 참여하는지 검사를 한다고 답한 경우는 천주교 41.0%, 개신교 37.4%, 불교 12.6% 등의 순이었다.

<표 81 > 학교의 종교이념별 종교행사 참여유무 검사 분포_학생

학교의 종교 이념	종교행사 참여 검사			전체	
	그렇다	그렇지 않다	모름		
불교	빈도	18	92	33	143
	학교의 종교 이념 중 %	12.6%	64.3%	23.1%	100.0%
	전체 %	2.5%	12.6%	4.5%	19.6%
개신교	빈도	139	126	107	372
	학교의 종교 이념 중 %	37.4%	33.9%	28.8%	100.0%
	전체 %	19.1%	17.3%	14.7%	51.0%
천주교	빈도	55	37	42	134
	학교의 종교 이념 중 %	41.0%	27.6%	31.3%	100.0%
	전체 %	7.5%	5.1%	5.8%	18.4%
원불교	빈도	5	12	15	32
	학교의 종교 이념 중 %	15.6%	37.5%	46.9%	100.0%
	전체 %	0.7%	1.6%	2.1%	4.4%
대순진리회	빈도	0	14	1	15
	학교의 종교 이념 중 %	0.0%	93.3%	6.7%	100.0%
	전체 %	0.0%	1.9%	0.1%	2.1%
천도교	빈도	3	5	7	15
	학교의 종교 이념 중 %	20.0%	33.3%	46.7%	100.0%
	전체 %	0.4%	0.7%	1.0%	2.1%
통일교	빈도	5	9	4	18
	학교의 종교 이념 중 %	27.8%	50.0%	22.2%	100.0%
	전체 %	0.7%	1.2%	0.5%	2.5%
전체	빈도	225	295	209	729
	학교의 종교 이념 중 %	30.9%	40.5%	28.7%	100.0%
	전체 %	30.9%	40.5%	28.7%	100.0%

$$\chi^2=83.4 \quad df=12 \quad p=.000$$

(12) 종교 경전의 암기

교사가 성경이나 불경 등 종교 경전의 구절을 암기하라고 하는 경우가 있다고 답한 경우는 5.9%, 없다는 응답자는 84.4%, 모른다는 응답자는 9.7%였다.

학교 유형별로 보면 국공립학교와 비종립학교에서는 각각 0.7%, 1.3%로 이러한 일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종립학교에서는 있다고 답한 경우가 10.8%였다.

<표 82 > 학교유형별 종교경전의 암기 유무_학생

학교 유형		교사의 경전 암기 요구			전체
		있음	없음	모름	
국공립	빈도	3	382	25	410
	학교 유형 중 %	0.7%	93.2%	6.1%	100.0%
비종교계 사학	빈도	4	287	20	311
	학교 유형 중 %	1.3%	92.3%	6.4%	100.0%
종교계 사학	빈도	79	558	96	733
	학교 유형 중 %	10.8%	76.1%	13.1%	100.0%
전체	빈도	86	1227	141	1454
	학교 유형 중 %	5.9%	84.4%	9.7%	100.0%

$$\chi^2=88.8 \quad df=4 \quad p=.000$$

종립학교 재학생 중에서 경전 암기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개신교 13.4%, 불교 7.6%, 천주교 7.4% 등의 순이었다.

<표 83 > 학교의 종교이념별 종교행사 종교경전의 암기 유무 분포_학생

학교의 종교 이념		교사의 경전 암기 요구			전체
		있음	없음	모름	
불교	빈도	11	121	13	145
	학교의 종교 이념 중 %	7.6%	83.4%	9.0%	100.0%
	전체 %	1.5%	16.5%	1.8%	19.8%
개신교	빈도	50	269	53	372
	학교의 종교 이념 중 %	13.4%	72.3%	14.2%	100.0%
	전체 %	6.8%	36.7%	7.2%	50.8%
천주교	빈도	10	113	13	136
	학교의 종교 이념 중 %	7.4%	83.1%	9.6%	100.0%
	전체 %	1.4%	15.4%	1.8%	18.6%
원불교	빈도	0	23	9	32
	학교의 종교 이념 중 %	0.0%	71.9%	28.1%	100.0%
	전체 %	0.0%	3.1%	1.2%	4.4%
대순진리회	빈도	0	15	0	15
	학교의 종교 이념 중 %	0.0%	100.0%	0.0%	100.0%
	전체 %	0.0%	2.0%	0.0%	2.0%
천도교	빈도	3	9	3	15
	학교의 종교 이념 중 %	20.0%	60.0%	20.0%	100.0%
	전체 %	0.4%	1.2%	0.4%	2.0%
통일교	빈도	5	8	5	18
	학교의 종교 이념 중 %	27.8%	44.4%	27.8%	100.0%
	전체 %	0.7%	1.1%	0.7%	2.5%
전체	빈도	79	558	96	733
	학교의 종교 이념 중 %	10.8%	76.1%	13.1%	100.0%
	전체 %	10.8%	76.1%	13.1%	100.0%

$\chi^2=37.6$ $df=12$ $p=.000$

(13)종교행사 시 기부

종교기념일이나 종교행사를 할 때, 돈이나 물품 등을 기부하게 하는 경우가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11.6%, 없다는 응답자는 79.6%, 모른다는 응답자는 8.7%였다.

학교 유형별로 보면 국공립학교와 비종립학교에서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종립학교에서는 있다고 답한 경우가 23.0%였다.

심층면접에서 지각하는 학생들이 내는 지각비로 모아둔 돈을 매주 예배시간에 반 명의로 현금하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종립학교에서 교목선생님이 현금을 많이 한 학생을 칭찬하면서 현금을 많이할 것을 조장하는 분위기를 만드는 사례도 있었다.

<표 84 > 학교유형별 종교행사시 기부 유무_학생

학교 유형	종교행사 시 기부			전체	
	있음	없음	모름		
국공립	빈도	0	378	27	405
	학교 유형 중 %	0.0%	93.3%	6.7%	100.0%
비종교계 사학	빈도	0	293	15	308
	학교 유형 중 %	0.0%	95.1%	4.9%	100.0%
종교계 사학	빈도	168	478	84	730
	학교 유형 중 %	23.0%	65.5%	11.5%	100.0%
계	빈도	168	1149	126	1443
	학교 유형 중 %	11.6%	79.6%	8.7%	100.0%

$$\chi^2=215.0 \quad df=4 \quad p=.000$$

종립학교 재학생 중에서 종교행사 시에 기부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개신교 40.5%, 불교 8.5%, 천주교 2.2% 등의 순이었다.

<표 85 > 학교의 종교이념별 종교행사시 기부 유무 분포_학생

학교의 종교 이념		기부			전체
		있음	없음	모름	
불교	빈도	12	118	12	142
	학교의 종교 이념 중 %	8.5%	83.1%	8.5%	100.0%
	전체 %	1.6%	16.2%	1.6%	19.5%
개신교	빈도	151	178	44	373
	학교의 종교 이념 중 %	40.5%	47.7%	11.8%	100.0%
	전체 %	20.7%	24.4%	6.0%	51.1%
천주교	빈도	3	117	16	136
	학교의 종교 이념 중 %	2.2%	86.0%	11.8%	100.0%
	전체 %	0.4%	16.0%	2.2%	18.6%
원불교	빈도	0	23	8	31
	학교의 종교 이념 중 %	0.0%	74.2%	25.8%	100.0%
	전체 %	0.0%	3.2%	1.1%	4.2%
대순진리회	빈도	0	15	0	15
	학교의 종교 이념 중 %	0.0%	100.0%	0.0%	100.0%
	전체 %	0.0%	2.1%	0.0%	2.1%
천도교	빈도	0	14	1	15
	학교의 종교 이념 중 %	0.0%	93.3%	6.7%	100.0%
	전체 %	0.0%	1.9%	0.1%	2.1%
통일교	빈도	2	13	3	18
	학교의 종교 이념 중 %	11.1%	72.2%	16.7%	100.0%
	전체 %	0.3%	1.8%	0.4%	2.5%
전체	빈도	168	478	84	730
	학교의 종교 이념 중 %	23.0%	65.5%	11.5%	100.0%
	전체 %	23.0%	65.5%	11.5%	100.0%

$\chi^2=150.8$ $df=12$ $p=.000$

종립학교의 경우 기부금품의 관리는 종교담당 교사가 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22.8%), 학교(17.1%), 학생회(9.8%) 등의 순으로 비율이 높았다. 한편 모르겠다고 답한 경우도 37.3%로 나타났다. 비종립학교의 경우도 종립학교의 경우와 거의 유사하게 나타났다.

<표 86 > 학교유형별 기부금품의 관리자_학생

학교 유형	기부금품의 관리자						전체
	학교	종교담당교사	학생회	종교담당학생회간부	학급	모름	
국공립	0	0	0	0	0	1	1
학교 유형 중 %	0.0%	0.0%	0.0%	0.0%	0.0%	100.0%	100.0%
비종교계 사학	33	44	19	13	12	71	192
학교 유형 중 %	17.2%	22.9%	9.9%	6.8%	6.3%	37.0%	100.0%
종교계 사학	33	44	19	13	12	72	193
학교 유형 중 %	17.1%	22.8%	9.8%	6.7%	6.2%	37.3%	100.0%
전체	33	47	19	13	12	93	217
학교 유형 중 %	15.2%	21.7%	8.8%	6.0%	5.5%	42.9%	100.0%

$$\chi^2=1.7 \quad df=5 \quad p=.890$$

기부금품의 관리는 불교계 종립학교는 종교담당교사(30.0%)-종교담당 학생회 간부/학급(각 10.0%)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개신교계 종립학교의 경우 종교담당교사(22.4%)-학교(19.1%)-학생회(11.2%) 등의 순으로 기부금품을 관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천주교계 종립학교에서는 종교담당교사(36.4%)-학교(18.2%)-학급(9.1%)의 순이었다.

<표 87 > 학교의 종교이념별 기부금품의 관리자 분포_학생

학교의 종교 이념	기부금품의 관리자						전체
	학교	종교담당교사	학생회	종교담당학생회간부	학급	모름	
빈도	1	6	1	2	2	8	20
불교 학교의 종교 이념 중 %	5.0%	30.0%	5.0%	10.0%	10.0%	40.0%	100.0%
전체 %	0.5%	3.1%	0.5%	1.0%	1.0%	4.2%	10.4%
빈도	29	34	17	11	9	52	152
개신교 학교의 종교 이념 중 %	19.1%	22.4%	11.2%	7.2%	5.9%	34.2%	100.0%
전체 %	15.1%	17.7%	8.9%	5.7%	4.7%	27.1%	79.2%
빈도	2	4	0	0	1	4	11
천주교 학교의 종교 이념 중 %	18.2%	36.4%	0.0%	0.0%	9.1%	36.4%	100.0%
전체 %	1.0%	2.1%	0.0%	0.0%	0.5%	2.1%	5.7%
빈도	0	0	1	0	0	3	4
원불교 학교의 종교 이념 중 %	0.0%	0.0%	25.0%	0.0%	0.0%	75.0%	100.0%
전체 %	0.0%	0.0%	0.5%	0.0%	0.0%	1.6%	2.1%
빈도	1	0	0	0	0	4	5
통일교 학교의 종교 이념 중 %	20.0%	0.0%	0.0%	0.0%	0.0%	80.0%	100.0%
전체 %	0.5%	0.0%	0.0%	0.0%	0.0%	2.1%	2.6%
빈도	33	44	19	13	12	71	192
전체 학교의 종교 이념 중 %	17.2%	22.9%	9.9%	6.8%	6.3%	37.0%	100.0%
전체 %	17.2%	22.9%	9.9%	6.8%	6.3%	37.0%	100.0%

$$\chi^2=16.7 \quad df=20 \quad p=.671$$

종립학교에서 기부금품의 사용 결과를 알려주는 경우는 54.5%였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16.3%, 모른다고 답한 경우는 29.2%였다.

<표 88 > 학교유형별 기부금품의 사용결과 통보 유무_학생

학교 유형	기부금품의 사용결과 통보			전체	
	통보함	통보 안함	모름		
비종교계 사학	빈도	0	0	3	3
	학교 유형 중 %	0.0%	0.0%	100.0%	100.0%
종교계 사학	빈도	114	34	58	206
	학교 유형 중 %	55.3%	16.5%	28.2%	100.0%
계	빈도	114	34	61	209
	학교 유형 중 %	54.5%	16.3%	29.2%	100.0%

$$\chi^2=7.4 \quad df=2 \quad p=.025$$

기부금품의 사용 결과를 알려주지 않는 경우를 설립 이념별로 보면, 개신교계 종립 학교 11.2%, 불교계 종립학교 45.0%, 천주교계 종립학교 36.4%로 나타났다.

<표 89 > 학교의 종교이념별 기부금품의 사용결과 통보 분포_학생

학교의 종교 이념	기부금품의 사용결과 통보			전체	
	통보함	통보 안함	모름		
불교	빈도	5	9	6	20
	학교의 종교 이념 중 %	25.0%	45.0%	30.0%	100.0%
	전체 %	2.4%	4.4%	2.9%	9.7%
개신교	빈도	107	18	36	161
	학교의 종교 이념 중 %	66.5%	11.2%	22.4%	100.0%
	전체 %	51.9%	8.7%	17.5%	78.2%
천주교	빈도	2	4	5	11
	학교의 종교 이념 중 %	18.2%	36.4%	45.5%	100.0%
	전체 %	1.0%	1.9%	2.4%	5.3%
원불교	빈도	0	2	6	8
	학교의 종교 이념 중 %	0.0%	25.0%	75.0%	100.0%
	전체 %	0.0%	1.0%	2.9%	3.9%
대순진리회	빈도	0	0	1	1
	학교의 종교 이념 중 %	0.0%	0.0%	100.0%	100.0%
	전체 %	0.0%	0.0%	0.5%	0.5%
통일교	빈도	0	1	4	5
	학교의 종교 이념 중 %	0.0%	20.0%	80.0%	100.0%
	전체 %	0.0%	0.5%	1.9%	2.4%
전체	빈도	114	34	58	206
	학교의 종교 이념 중 %	55.3%	16.5%	28.2%	100.0%
	전체 %	55.3%	16.5%	28.2%	100.0%

$\chi^2=49.2$ $df=10$ $p=.000$

(14) 종교교과 개설

종교교과가 개설되어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29.2%이고, 그렇지 않다는 응답자는 61.7%, 모른다고 답한 경우는 9.1%였다. 이 중에서 종립학교 재학생이 종교교과가 개설되어 있다고 답한 경우는 58.1%로 나타났다. 이는 종교교과가 개설되는 대부분의 학교가 종립학교임을 의미한다.

<표 90 > 학교유형별 종교교과 개설 여부_학생

학교 유형		종교교과 개설 여부			전체
		개설됨	개설 안됨	모름	
국공립	빈도	0	378	27	405
	학교 유형 중 %	0.0%	93.3%	6.7%	100.0%
비종교계 사학	빈도	0	298	14	312
	학교 유형 중 %	0.0%	95.5%	4.5%	100.0%
종교계 사학	빈도	421	214	90	725
	학교 유형 중 %	58.1%	29.5%	12.4%	100.0%
계	빈도	421	890	131	1442
	학교 유형 중 %	29.2%	61.7%	9.1%	100.0%

$$\chi^2=680.2 \quad df=4 \quad p=.000$$

종교교과가 개설되어 있다고 답한 응답자의 분포를 설립 이념별로 보면 불교 66.4%, 개신교 62.6%, 천주교 49.3%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91 > 학교의 종교이념별 종교교과 개설 분포_학생

학교의 종교 이념	종교교과 개설 여부			전체
	개설됨	개설 안됨	모름	
불교	95	38	10	143
학교의 종교 이념 중 %	66.4%	26.6%	7.0%	100.0%
전체 %	13.1%	5.2%	1.4%	19.7%
개신교	231	89	49	369
학교의 종교 이념 중 %	62.6%	24.1%	13.3%	100.0%
전체 %	31.9%	12.3%	6.8%	50.9%
천주교	66	52	16	134
학교의 종교 이념 중 %	49.3%	38.8%	11.9%	100.0%
전체 %	9.1%	7.2%	2.2%	18.5%
원불교	3	19	9	31
학교의 종교 이념 중 %	9.7%	61.3%	29.0%	100.0%
전체 %	0.4%	2.6%	1.2%	4.3%
대순진리회	0	14	1	15
학교의 종교 이념 중 %	0.0%	93.3%	6.7%	100.0%
전체 %	0.0%	1.9%	0.1%	2.1%
천도교	14	0	1	15
학교의 종교 이념 중 %	93.3%	0.0%	6.7%	100.0%
전체 %	1.9%	0.0%	0.1%	2.1%
통일교	12	2	4	18
학교의 종교 이념 중 %	66.7%	11.1%	22.2%	100.0%
전체 %	1.7%	0.3%	0.6%	2.5%
전체	421	214	90	725
학교의 종교 이념 중 %	58.1%	29.5%	12.4%	100.0%
전체 %	58.1%	29.5%	12.4%	100.0%

$$\chi^2=88.0 \quad df=12 \quad p=.000$$

① 종교교과 수강 선택의 자유

종교교과의 수강 선택 시 자유가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25.2%였고, 그렇지 않다는 응답자는 60.9%, 모른다는 응답자는 13.9%였다. 이 중에서 종립학교 재학생이 종교교과 수강 선택 시 자유가 없다고 답한 경우는 61.1%로 나타났다.

심층면접에서 한 학생은 종립학교에 지원하면서 입학원서를 제출하였는데, “입학원서에 이름 같은 거를 쓰고 밑에 무슨 종교에 관한 얘기가 있어 선생님한테 물어봤더니 선생님이 아, 그냥 이거 있다고 체크해서 내라고 하여 그렇게 냈는데, 입학하고 나서 알고 보니 종교시간이 따로 있는데 그 시간에 종교를 들을 것인지 아니면 다른 교과목을 배울 것인지에 대한 거였다고 답변한 사례가 있었다.

<표 92 > 학교유형별 종교교과 수강선택의 자율성_학생

학교 유형	종교교과 수강 선택의 자율성			전체
	있음	없음	모름	
비종교계 사학	빈도 1	빈도 0	빈도 1	빈도 2
학교 유형 중 %	50.0%	0.0%	50.0%	100.0%
종교계 사학	빈도 115	빈도 280	빈도 63	빈도 458
학교 유형 중 %	25.1%	61.1%	13.8%	100.0%
계	빈도 116	빈도 280	빈도 64	빈도 460
학교 유형 중 %	25.2%	60.9%	13.9%	100.0%

$$\chi^2=3.6 \quad df=2 \quad p=.166$$

종교교과 수강 선택 시 자유가 없다고 답한 응답자의 분포를 설립 이념별로 보면 개신교 70.6%, 천주교 55.2%, 불교 39.8%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93 > 학교의 종교이념별 종교교과 수강선택의 자율성 분포_학생

학교의 종교 이념		종교교과 수강 선택의 자율성			전체
		있음	없음	모름	
불교	빈도	47	41	15	103
	학교의 종교 이념 중 %	45.6%	39.8%	14.6%	100.0%
	전체 %	10.3%	9.0%	3.3%	22.5%
개신교	빈도	41	175	32	248
	학교의 종교 이념 중 %	16.5%	70.6%	12.9%	100.0%
	전체 %	9.0%	38.2%	7.0%	54.1%
천주교	빈도	25	37	5	67
	학교의 종교 이념 중 %	37.3%	55.2%	7.5%	100.0%
	전체 %	5.5%	8.1%	1.1%	14.6%
원불교	빈도	1	3	6	10
	학교의 종교 이념 중 %	10.0%	30.0%	60.0%	100.0%
	전체 %	0.2%	0.7%	1.3%	2.2%
대순진리회	빈도	0	13	1	14
	학교의 종교 이념 중 %	0.0%	92.9%	7.1%	100.0%
	전체 %	0.0%	2.8%	0.2%	3.1%
천도교	빈도	1	11	4	16
	학교의 종교 이념 중 %	6.3%	68.8%	25.0%	100.0%
	전체 %	0.2%	2.4%	0.9%	3.5%
통일교	빈도	115	280	63	458
	학교의 종교 이념 중 %	25.1%	61.1%	13.8%	100.0%
	전체 %	25.1%	61.1%	13.8%	100.0%
전체	빈도	401	211	83	695
	학교의 종교 이념 중 %	57.7%	30.4%	11.9%	100.0%
	전체 %	57.7%	30.4%	11.9%	100.0%

$\chi^2=70.5$ $df=10$ $p=.000$

② 종교교과 대체과목의 수

종교교과를 대체할 수 있는 교과목이 1과목이라는 응답자가 73.80.5%로 가장 많았고, 21.4%는 2과목, 3.6%는 4과목 이상, 1.2%는 3과목이라고 답하였다. 중립학교 재학생들은 74.1%가 대체교과목이 1과목이라고 답하고 있었다. 이런 결과는 대부분의 종교교과가 중립학교에서 개설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체교과목이 충분히 개설되지 않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표 94 > 학교유형별 종교교과 대체 교과목의 수_학생

학교 유형	종교교과 대체 교과목의 수				전체	
	1과목	2과목	3과목	4과목 이상		
비종교계 사학	빈도	1	0	1	0	2
	학교 유형 중 %	50.0%	0.0%	50.0%	0.0%	100.0%
종교계 사학	빈도	123	36	1	6	166
	학교 유형 중 %	74.1%	21.7%	0.6%	3.6%	100.0%
전체	빈도	124	36	2	6	168
	학교 유형 중 %	73.8%	21.4%	1.2%	3.6%	100.0%

$$\chi^2=41.2 \quad df=3 \quad p=.000$$

대체교과목의 수를 설립 이념별로 보면, 1과목인 경우는 천주교(83.9%)-불교(80.0%)-개신교(65.0%)의 순이었다.

<표 95 > 학교의 종교이념별 종교교과 대체 교과목의 수_학생

학교의 종교 이념	종교교과 대체 교과목의 수				전체
	1과목	2과목	3과목	4과목 이상	
빈도	52	12	0	1	65
불교 학교의 종교 이념 중 %	80.0%	18.5%	0.0%	1.5%	100.0%
전체 %	31.3%	7.2%	0.0%	0.6%	39.2%
빈도	39	20	0	1	60
개신교 학교의 종교 이념 중 %	65.0%	33.3%	0.0%	1.7%	100.0%
전체 %	23.5%	12.0%	0.0%	0.6%	36.1%
빈도	26	3	1	1	31
천주교 학교의 종교 이념 중 %	83.9%	9.7%	3.2%	3.2%	100.0%
전체 %	15.7%	1.8%	0.6%	0.6%	18.7%
빈도	2	0	0	2	4
원불교 학교의 종교 이념 중 %	50.0%	0.0%	0.0%	50.0%	100.0%
전체 %	1.2%	0.0%	0.0%	1.2%	2.4%
빈도	1	0	0	0	1
천도교 학교의 종교 이념 중 %	100.0%	0.0%	0.0%	0.0%	100.0%
전체 %	0.6%	0.0%	0.0%	0.0%	0.6%
빈도	3	1	0	1	5
통일교 학교의 종교 이념 중 %	60.0%	20.0%	0.0%	20.0%	100.0%
전체 %	1.8%	0.6%	0.0%	0.6%	3.0%
빈도	123	36	1	6	166
전체 학교의 종교 이념 중 %	74.1%	21.7%	0.6%	3.6%	100.0%
전체 %	74.1%	21.7%	0.6%	3.6%	100.0%

$$\chi^2=42.5 \quad df=15 \quad p=.000$$

③ 대체교과목 선택의 자유

종교 교과목 이외의 대체 교과목 선택이 자유롭다고 답한 응답자는 47.5%, 그렇지 않다는 응답자는 20.1%, 모른다는 응답자는 32.4%였다. 종립학교 재학생 중에서 대체 교과목 선택의 자유가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48.3%이고, 모른다고 답한 경우는 31.3%. 자유가 없다는 응답자는 20.4%였다.

<표 96 > 학교유형별 종교교과 대체 교과목 선택의 자유_학생

학교 유형		대체과목 선택의 자유			전체
		있음	없음	모름	
비종교계 사학	빈도	0	0	3	3
	학교 유형 중 %	0.0%	0.0%	100.0%	100.0%
종교계 사학	빈도	97	41	63	201
	학교 유형 중 %	48.3%	20.4%	31.3%	100.0%
계	빈도	97	41	66	204
	학교 유형 중 %	47.5%	20.1%	32.4%	100.0%

$$\chi^2=6.4 \quad df=2 \quad p=.041$$

대체교과목 선택의 자유가 있다고 답한 경우의 설립 이념별 분포는 개신교 48.2%, 불교 50.0%, 천주교 55.9%였고, 자유가 없다는 응답자의 설립 이념별 분포는 개신교 27.7%, 불교 15.7%, 천주교 17.6%였다. 이런 결과는 천주교와 불교가 상대적으로 대체교과목 선택이 자유로운 편이며, 개신교계 종립학교의 일부는 다른 종립학교에 비해 대체교과목 선택이 자유롭지 않음을 의미한다.

<표 97 > 학교의 종교이념별 종교교과 대체 교과목 선택의 자유 분포_학생

학교의 종교 이념		대체과목 선택의 자유			전체
		있음	없음	모름	
불교	빈도	35	11	24	70
	학교의 종교 이념 중 %	50.0%	15.7%	34.3%	100.0%
	전체 %	17.4%	5.5%	11.9%	34.8%
개신교	빈도	40	23	20	83
	학교의 종교 이념 중 %	48.2%	27.7%	24.1%	100.0%
	전체 %	19.9%	11.4%	10.0%	41.3%
천주교	빈도	19	6	9	34
	학교의 종교 이념 중 %	55.9%	17.6%	26.5%	100.0%
	전체 %	9.5%	3.0%	4.5%	16.9%
원불교	빈도	2	0	5	7
	학교의 종교 이념 중 %	28.6%	0.0%	71.4%	100.0%
	전체 %	1.0%	0.0%	2.5%	3.5%
천도교	빈도	0	1	2	3
	학교의 종교 이념 중 %	0.0%	33.3%	66.7%	100.0%
	전체 %	0.0%	0.5%	1.0%	1.5%
통일교	빈도	1	0	3	4
	학교의 종교 이념 중 %	25.0%	0.0%	75.0%	100.0%
	전체 %	0.5%	0.0%	1.5%	2.0%
전체	빈도	97	41	63	201
	학교의 종교 이념 중 %	48.3%	20.4%	31.3%	100.0%
	전체 %	48.3%	20.4%	31.3%	100.0%

$$\chi^2=17.5 \quad df=10 \quad p=.064$$

대체교과목 선택이 자유롭지 못한 이유로는 출석이나 수업 태도 등에서 기준이 엄격하다는 경우가 59.5%로 가장 많았고, 과제물이 종교교과목 보다 많다는 응답자와 학교에서 폐강을 유도한다는 응답자가 각각 27.0%였다.

<표 98 > 학교유형별 대체교과목 선택이 부자유한 이유_학생

학교 유형	대체교과목 선택이 부자유한 이유			전체
	기준 엄격	과제물 많음	학교의 폐강 유도	
비종교계 사학	0	0	1	1
학교 유형 중 %	0.0%	0.0%	100.0%	
종교계 사학	22	10	9	36
학교 유형 중 %	61.1%	27.8%	25.0%	
계	22	10	10	37
학교 유형 중 %	59.5%	27.0%	27.0%	

출석이나 수업 태도 등에서 기준이 엄격하다는 응답자의 비율은 불교(70.0%), 개신교(66.7%), 천주교(44.4%)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99 > 학교의 종교이념별 대체교과목 선택이 부자유한 이유_학생

학교의 종교 이념		대체교과목 선택이 부자유한 이유			전체
		기준 엄격	과제물 많음	학교의 폐강 유도	
불교	빈도	7	4	3	10
	학교의 종교 이념 중 %	70.0%	40.0%	30.0%	
	전체 %	19.4%	11.1%	8.3%	27.8%
개신교	빈도	10	2	3	15
	학교의 종교 이념 중 %	66.7%	13.3%	20.0%	
	전체 %	27.8%	5.6%	8.3%	41.7%
천주교	빈도	4	3	3	9
	학교의 종교 이념 중 %	44.4%	33.3%	33.3%	
	전체 %	11.1%	8.3%	8.3%	25.0%
원불교	빈도	0	1	0	1
	학교의 종교 이념 중 %	0.0%	100.0%	0.0%	
	전체 %	0.0%	2.8%	0.0%	2.8%
천도교	빈도	1	0	0	1
	학교의 종교 이념 중 %	100.0%	0.0%	0.0%	
	전체 %	2.8%	0.0%	0.0%	2.8%
전체	빈도	22	10	9	36
	전체 %	61.1%	27.8%	25.0%	100.0%

④ 대체교과목 개설 시 학생 의견 반영

대체교과목의 개설에 관하여 학생 의견이 반영된다고 답한 응답자는 18.8%이고, 그렇지 않다는 응답자는 33.9%, 모른다는 응답자는 47.2%였다.

<표 100 > 학교유형별 대체과목 개설시 학생 의견 반영 유무_학생

학교 유형		대체과목 개설시 학생의견 반영			전체
		반영함	반영안함	모름	
비종교계 사학	빈도	0	1	3	4
	학교 유형 중 %	0.0%	25.0%	75.0%	100.0%
종교계 사학	빈도	65	116	160	341
	학교 유형 중 %	19.1%	34.0%	46.9%	100.0%
계	빈도	65	117	163	345
	학교 유형 중 %	18.8%	33.9%	47.2%	100.0%

$$\chi^2=1.5 \quad df=2 \quad p=.468$$

대체교과목 개설에 학생 의견을 반영한다고 답한 경우의 설립 이념별 분포를 살펴 보면, 불교 37.0%, 개신교 15.9%, 천주교 11.3%로 나타났다. 이것은 불교계 종립학교가 상대적으로 다른 종립학교에 비해 대체교과목 개설에서 학생 의견을 더 많이 반영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표 101 > 학교의 종교이념별 대체과목 개설시 학생 의견 반영 분포_학생

학교의 종교 이념	대체과목 개설시 학생의견 반영			전체	
	반영함	반영안함	모름		
불교	빈도	30	12	39	81
	학교의 종교 이념 중 %	37.0%	14.8%	48.1%	100.0%
	전체 %	8.8%	3.5%	11.4%	23.8%
개신교	빈도	29	78	75	182
	학교의 종교 이념 중 %	15.9%	42.9%	41.2%	100.0%
	전체 %	8.5%	22.9%	22.0%	53.4%
천주교	빈도	6	20	27	53
	학교의 종교 이념 중 %	11.3%	37.7%	50.9%	100.0%
	전체 %	1.8%	5.9%	7.9%	15.5%
원불교	빈도	0	0	9	9
	학교의 종교 이념 중 %	0.0%	0.0%	100.0%	100.0%
	전체 %	0.0%	0.0%	2.6%	2.6%
대순진리회	빈도	0	1	2	3
	학교의 종교 이념 중 %	0.0%	33.3%	66.7%	100.0%
	전체 %	0.0%	0.3%	0.6%	0.9%
천도교	빈도	0	1	4	5
	학교의 종교 이념 중 %	0.0%	20.0%	80.0%	100.0%
	전체 %	0.0%	0.3%	1.2%	1.5%
통일교	빈도	0	4	4	8
	학교의 종교 이념 중 %	0.0%	50.0%	50.0%	100.0%
	전체 %	0.0%	1.2%	1.2%	2.3%
전체	빈도	65	116	160	341
	학교의 종교 이념 중 %	19.1%	34.0%	46.9%	100.0%
	전체 %	19.1%	34.0%	46.9%	100.0%

$$\chi^2=46.5 \quad df=12 \quad p=.000$$

(15) 고교 지원 시 종교교육 실시 고지

종립학교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고등학교에 지원할 때, 학교 측에서 종교교육을 실시한다는 설명을 들었는지를 묻는 질문하였다.

이에 대해 31.8%의 응답자는 설명을 들었다고 답한 반면, 30.6%는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답했고, 37.7%는 모른다고 응답하였다. 이런 결과는 종교교육을 실시하는 것에 대해 분명한 설명이 이루어지 않고 있다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

심층면접에서 지원한 학교가 종립학교라는 사실을 알고 지원하였지만, 학교 측이 예배 등에 참여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사실을 사전에 알려주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특히 한 학생은 “지원한 학교가 종립학교인 것을 알고 있었고, 어느 정도 종교 활동은 있을 거라고 생각하였지만 1주일에 2시간씩 종교에 시간을 뺏는다는 것을 몰랐다.”고 답변하기도 하였다.

<표 102 > 학교유형별 고교 지원 시 종교교육 실시 고지 유무_학생

학교 유형	학교 지원 시 종교교육 실시 고지			전체
	고지함	고지 안함	모름	
비종교계 사학	0	2	0	2
학교 유형 중 %	0.0%	100.0%	0.0%	100.0%
종교계 사학	157	149	186	492
학교 유형 중 %	31.9%	30.3%	37.8%	100.0%
계	157	151	186	494
학교 유형 중 %	31.8%	30.6%	37.7%	100.0%

$$\chi^2=4.6 \quad df=2 \quad p=.102$$

한편 개신교계 종립학교의 경우는 사전에 종교교육 실시에 대해 설명을 하는 비율이 40.8%로 불교(28.6%)나 천주교(26.2%)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103 > 학교의 종교이념별 고교 지원 시 종교교육 실시 고지 분포_학생

학교의 종교 이념		학교 지원 시 종교교육 실시 고지			전체
		고지함	고지 안함	모름	
불교	빈도	18	22	23	63
	학교의 종교 이념 중 %	28.6%	34.9%	36.5%	100.0%
	전체 %	3.7%	4.5%	4.7%	12.8%
개신교	빈도	97	62	79	238
	학교의 종교 이념 중 %	40.8%	26.1%	33.2%	100.0%
	전체 %	19.7%	12.6%	16.1%	48.4%
천주교	빈도	32	36	54	122
	학교의 종교 이념 중 %	26.2%	29.5%	44.3%	100.0%
	전체 %	6.5%	7.3%	11.0%	24.8%
원불교	빈도	1	13	16	30
	학교의 종교 이념 중 %	3.3%	43.3%	53.3%	100.0%
	전체 %	0.2%	2.6%	3.3%	6.1%
대순진리회	빈도	0	13	2	15
	학교의 종교 이념 중 %	0.0%	86.7%	13.3%	100.0%
	전체 %	0.0%	2.6%	0.4%	3.0%
천도교	빈도	4	2	9	15
	학교의 종교 이념 중 %	26.7%	13.3%	60.0%	100.0%
	전체 %	0.8%	0.4%	1.8%	3.0%
통일교	빈도	5	1	3	9
	학교의 종교 이념 중 %	55.6%	11.1%	33.3%	100.0%
	전체 %	1.0%	0.2%	0.6%	1.8%
전체	빈도	157	149	186	492
	학교의 종교 이념 중 %	31.9%	30.3%	37.8%	100.0%
	전체 %	31.9%	30.3%	37.8%	100.0%

$$\chi^2=52.3 \quad df=12 \quad p=.000$$

종교교육 실시에 대한 설명을 상세히 하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18.0%였으며, 30.7%는 학교의 설립 이념이 특정 종교라고만 설명하고 있다. 종교교육을 한다고만 포괄적으로 설명한 경우가 24.4%이고, 설명을 안 한 경우는 9.3%, 모른다고 답한 경우는 17.6%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종교교육에 대한 충분하고 상세한 정보가 학생들에게 제공되지 않고 있음을 의미한다.

<표 104 > 학교유형별 종교교육 고지의 수준_학생

학교 유형	종교교육 고지의 수준					전체
	상세히 설명	포괄적 설명	설립 이념만 설명	설명 안함	모름	
비종교계 사학	0	1	0	0	0	1
학교 유형 중 %	0.0%	100.0%	0.0%	0.0%	0.0%	100.0%
종교계 사학	37	49	63	19	36	204
학교 유형 중 %	18.1%	24.0%	30.9%	9.3%	17.6%	100.0%
전체	37	50	63	19	36	205
학교 유형 중 %	18.0%	24.4%	30.7%	9.3%	17.6%	100.0%

$$\chi^2=3.1 df=4 p=.539$$

설립 이념별로 종교교육에 대한 정보를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것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교계 종립학교 재학생들의 경우 설립 이념만 설명을 받았다고 답한 경우가 52.0%로 가장 많았고, 종교교육을 한다는 포괄적인 설명을 받은 경우와 상세하게 설명을 받았다는 응답자는 각각 4.0%에 불과하며, 설명을 안 했다고 답한 응답자는 20.0%에 이른다. 천주교계 종립학교는 설립 이념만 설명 받았다는 응답자가 42.5%, 상세히 설명 받았다는 응답자는 20.0%, 포괄적인 설명만 받았다는 응답자는 17.5%이고, 설명을 안 했다는 응답자는 10.0%이다. 개신교계 종립학교는 포괄적인 설명을 받은 학생이 32.5%로 가장 많고, 설립 이념만 설명 받은 학생이 26.5%, 상세한 설명을 받은 학생이 22.2%이고, 설명을 받지 않은 경우는 7.7%였다. 이러한 결과는 개신교계 종립학교가 불교나 천주교 등 다른 종립학교에 비해 학교의 종교적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번에 조사된 결과로 유추하면, 종교적 정체성은 개신교계 종립학교가 가장 분명히 하고 있고, 천주교계 종립학교와 불교계 종립학교가 뒤를 잇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105 > 학교의 종교이념별 고교 지원 시 종교교육 고지의 수준 분포_학생

학교의 종교 이념	종교교육 고지의 수준					전체	
	상세히 설명	포괄적 설명	설립 이념만 설명	설명 안함	모름		
빈도	1	1	13	5	5	25	
불교	학교의 종교 이념 중 %	4.0%	4.0%	52.0%	20.0%	20.0%	100.0%
	전체 %	0.5%	0.5%	6.4%	2.5%	2.5%	12.3%
빈도	26	38	31	9	13	117	
개신교	학교의 종교 이념 중 %	22.2%	32.5%	26.5%	7.7%	11.1%	100.0%
	전체 %	12.7%	18.6%	15.2%	4.4%	6.4%	57.4%
빈도	8	7	17	4	4	40	
천주교	학교의 종교 이념 중 %	20.0%	17.5%	42.5%	10.0%	10.0%	100.0%
	전체 %	3.9%	3.4%	8.3%	2.0%	2.0%	19.6%
빈도	0	1	0	0	9	10	
원불교	학교의 종교 이념 중 %	0.0%	10.0%	0.0%	0.0%	90.0%	100.0%
	전체 %	0.0%	0.5%	0.0%	0.0%	4.4%	4.9%
빈도	0	0	0	1	1	2	
대순진리회	학교의 종교 이념 중 %	0.0%	0.0%	0.0%	50.0%	50.0%	100.0%
	전체 %	0.0%	0.0%	0.0%	0.5%	0.5%	1.0%
빈도	0	1	2	0	1	4	
천도교	학교의 종교 이념 중 %	0.0%	25.0%	50.0%	0.0%	25.0%	100.0%
	전체 %	0.0%	0.5%	1.0%	0.0%	0.5%	2.0%
빈도	2	1	0	0	3	6	
통일교	학교의 종교 이념 중 %	33.3%	16.7%	0.0%	0.0%	50.0%	100.0%
	전체 %	1.0%	0.5%	0.0%	0.0%	1.5%	2.9%
빈도	37	49	63	19	36	204	
전체	학교의 종교 이념 중 %	18.1%	24.0%	30.9%	9.3%	17.6%	100.0%
	전체 %	18.1%	24.0%	30.9%	9.3%	17.6%	100.0%

$\chi^2=77.1$ $df=24$ $p=.000$

(16) 종교교육에 대한 이의 제기

고교 지원 시 혹은 입학 후 학교의 종교교육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선서나 서약을 요구받은 적이 있다는 응답자는 2.7%에 불과하고, 63.5%는 그런 요구를 받지 않았다고 답하였다. 중립학교 재학생의 경우에도 이의 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선서나 서약을 요구받은 경우는 2.7%이고, 그런 요구를 받지 않았다는 경우는 63.4%로 나타났다. 따라서 종교교육에 대한 이의 제기를 막기 위한 학교 측의 노력은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표 106 > 학교유형별 종교교육에 대한 선서/서약 요구_학생

학교 유형		종교교육에 대한 이의제기 않는 선서/서약 요구			전체
		있음	없음	모름	
비종교계 사학	빈도	0	5	2	7
	학교 유형 중 %	0.0%	71.4%	28.6%	100.0%
종교계 사학	빈도	16	374	200	590
	학교 유형 중 %	2.7%	63.4%	33.9%	100.0%
계	빈도	16	379	202	597
	학교 유형 중 %	2.7%	63.5%	33.8%	100.0%

$$\chi^2=0.3 \quad df=2 \quad p=.853$$

설립 이념별로 보면 개신교계 종립학교 재학생 중 3.5%, 천주교계 종립학교 재학생 3.1%가 그런 요구를 받은 반면, 불교계 종립학교 재학생은 1.4%만 그런 요구를 받았다고 답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개신교 및 천주교계 종립학교가 종교교육에 대한 학생들의 이의 제기에 민감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표 107 > 학교의 종교이념별 종교교육에 대한 선서/서약 요구 분포_학생

학교의 종교 이념		종교교육에 대한 이의제기 않는 선서/서약 요구			전체
		있음	없음	모름	
불교	빈도	1	47	21	69
	학교의 종교 이념 중 %	1.4%	68.1%	30.4%	100.0%
	전체 %	0.2%	8.0%	3.6%	11.7%
개신교	빈도	11	182	120	313
	학교의 종교 이념 중 %	3.5%	58.1%	38.3%	100.0%
	전체 %	1.9%	30.8%	20.3%	53.1%
천주교	빈도	4	92	35	131
	학교의 종교 이념 중 %	3.1%	70.2%	26.7%	100.0%
	전체 %	0.7%	15.6%	5.9%	22.2%
원불교	빈도	0	16	15	31
	학교의 종교 이념 중 %	0.0%	51.6%	48.4%	100.0%
	전체 %	0.0%	2.7%	2.5%	5.3%
대순진리회	빈도	0	15	0	15
	학교의 종교 이념 중 %	0.0%	100.0%	0.0%	100.0%
	전체 %	0.0%	2.5%	0.0%	2.5%
천도교	빈도	0	11	4	15
	학교의 종교 이념 중 %	0.0%	73.3%	26.7%	100.0%
	전체 %	0.0%	1.9%	0.7%	2.5%
통일교	빈도	0	11	5	16
	학교의 종교 이념 중 %	0.0%	68.8%	31.3%	100.0%
	전체 %	0.0%	1.9%	0.8%	2.7%
전체	빈도	16	374	200	590
	학교의 종교 이념 중 %	2.7%	63.4%	33.9%	100.0%
	전체 %	2.7%	63.4%	33.9%	100.0%

$$\chi^2=21.3 \quad df=12 \quad p=.046$$

(17) 종교교육 실시

입학 전후 설명한 대로 종교교육이 이루어진다고 답한 응답자는 41.7%이고, 그렇지 않다는 응답자는 15.1%, 모른다는 응답자는 43.2%로 나타났다.

<표 108 > 학교유형별 고지한 바에 따른 종교교육 실시 유무_학생

학교 유형	고지 내용대로 종교교육 실시 여부			전체
	그렇다	그렇지 않다	모름	
비종교계 사학	0	7	0	7
학교 유형 중 %	0.0%	100.0%	0.0%	100.0%
종교계 사학	290	98	300	688
학교 유형 중 %	42.2%	14.2%	43.6%	100.0%
계	290	105	300	695
학교 유형 중 %	41.7%	15.1%	43.2%	100.0%

$$\chi^2=39.7 \quad df=2 \quad p=.000$$

설명대로 종교교육이 이루어진다는 응답자와 그렇지 않다는 응답자의 분포를 설립 이념별로 살펴보면, 불교계 종립학교 재학생들은 36.6%: 11.6%, 개신교계 종립학교 재학생들은 52.9%: 11.0%, 천주교계 종립학교 재학생들은 28.6%: 18.8%로 나타났다. 대체로 개신교계 종립학교가 설명한 대로 종교교육을 실시하는 경우가 많으며, 천주교계 사립학교는 상대적으로 실제 종교교육과 사전 설명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짐작된다.

<표 109 > 학교의 종교이념별 고지한 바에 따른 종교교육 실시 분포_학생

학교의 종교 이념		고지 내용대로 종교교육 실시 여부			전체
		그렇다	그렇지 않다	모름	
불교	빈도	41	13	58	112
	학교의 종교 이념 중 %	36.6%	11.6%	51.8%	100.0%
	전체 %	6.0%	1.9%	8.4%	16.3%
개신교	빈도	193	40	132	365
	학교의 종교 이념 중 %	52.9%	11.0%	36.2%	100.0%
	전체 %	28.1%	5.8%	19.2%	53.1%
천주교	빈도	38	25	70	133
	학교의 종교 이념 중 %	28.6%	18.8%	52.6%	100.0%
	전체 %	5.5%	3.6%	10.2%	19.3%
원불교	빈도	5	3	22	30
	학교의 종교 이념 중 %	16.7%	10.0%	73.3%	100.0%
	전체 %	0.7%	0.4%	3.2%	4.4%
대순진리회	빈도	0	10	5	15
	학교의 종교 이념 중 %	0.0%	66.7%	33.3%	100.0%
	전체 %	0.0%	1.5%	0.7%	2.2%
천도교	빈도	8	0	7	15
	학교의 종교 이념 중 %	53.3%	0.0%	46.7%	100.0%
	전체 %	1.2%	0.0%	1.0%	2.2%
통일교	빈도	5	7	6	18
	학교의 종교 이념 중 %	27.8%	38.9%	33.3%	100.0%
	전체 %	0.7%	1.0%	0.9%	2.6%
전체	빈도	290	98	300	688
	학교의 종교 이념 중 %	42.2%	14.2%	43.6%	100.0%
	전체 %	42.2%	14.2%	43.6%	100.0%

$\chi^2=89.0$ $df=12$ $p=.000$

입학 전 설명과 실제 종교교육의 내용이 어떻게 다른가를 질문한 결과, 다른 종교를 가진 학생을 배려하지 않는다는 것이 45.5%, 입학 전 설명 없이 종교교육을 실시하는 경우가 47.7%, 종교교육의 강제적인 실시가 25.0% 등으로 나타났다.

<표 110 > 학교유형별 입학전 설명과 다른 종교교육의 내용_학생

학교 유형	입학전 설명과 다른 종교교육의 내용					전체	
	사전 설명 없이 종교교육	예상 정도를 넘어섬	설명 이외 교육 실시	강제적 교육	타종교 학생 고려 없음		
비종교계 사학	빈도	0	0	0	0	4	4
	학교 유형 중 %	0.0%	0.0%	0.0%	0.0%	100.0%	
종교계 사학	빈도	21	7	5	11	16	40
	학교 유형 중 %	52.5%	17.5%	12.5%	27.5%	40.0%	
전체	빈도	21	7	5	11	20	44
	학교 유형 중 %	47.7%	15.9%	11.4%	25.0%	45.5%	

불교계 종립학교 재학생들이 가장 문제로 삼은 것은 입학 전 설명 없이 종교교육을 실시한 것(5명)과 강제적인 종교교육(4명)이다. 천주교계 종립학교 재학생들은 입학 전 설명 없이 종교교육을 실시한 것(3명)이었고, 개신교계 종립학교 재학생들의 경우는 입학 전 설명 없이 종교교육을 실시한 것(10명)과 다른 종교를 가진 학생들을 배려하지 않는 것(8명)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1 > 학교의 종교이념별 입학 전 설명과 다른 종교교육의 내용 분포_학생

학교의 종교 이념	입학 전 설명과 다른 종교교육의 내용					합계
	사전 설명 없이 종교교육	예상 정도를 넘어섬	설명 이외 교육 실시	강제적 교육	타종교 학생 고려 없음	
불교	5	0	1	4	1	7
학교의 종교 이념 중 %	71.4%	0.0%	14.3%	57.1%	14.3%	
전체 %	12.5%	0.0%	2.5%	10.0%	2.5%	17.5%
개신교	10	5	2	5	8	19
학교의 종교 이념 중 %	52.6%	26.3%	10.5%	26.3%	42.1%	
전체 %	25.0%	12.5%	5.0%	12.5%	20.0%	47.5%
천주교	3	0	1	1	1	6
학교의 종교 이념 중 %	50.0%	0.0%	16.7%	16.7%	16.7%	
전체 %	7.5%	0.0%	2.5%	2.5%	2.5%	15.0%
원불교	1	0	0	0	2	2
학교의 종교 이념 중 %	50.0%	0.0%	0.0%	0.0%	100.0%	
전체 %	2.5%	0.0%	0.0%	0.0%	5.0%	5.0%
대순진리회	0	0	0	0	1	1
학교의 종교 이념 중 %	0.0%	0.0%	0.0%	0.0%	100.0%	
전체 %	0.0%	0.0%	0.0%	0.0%	2.5%	2.5%
통일교	2	2	1	1	3	5
학교의 종교 이념 중 %	40.0%	40.0%	20.0%	20.0%	60.0%	
전체 %	5.0%	5.0%	2.5%	2.5%	7.5%	12.5%
전체	21	7	5	11	16	40
전체 %	52.5%	17.5%	12.5%	27.5%	40.0%	100.0%

(18) 학생회 임원의 자격 제한

학생회 임원이 되기 위해서 특정 종교를 가지거나 단체에 일정 기간 이상 출석을 해야 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한 응답자는 0.9%에 불과하였고, 80.4%는 그렇지 않다고 답하였다. 모른다고 답한 경우가 18.7%로 나타났지만, 종교 활동을 기준으로 학생회 임원의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여겨진다.

심층면접에서 학생 임원 중 선교부장이나 신앙부 회장의 경우 세례를 받은 학생만 가능하도록 규정을 두고 있는 사례가 있었다.

<표 112 > 학교유형별 학생회 임원의 자격 제한 유무_학생

학교 유형	종교활동 기준으로 학생회 임원 자격 제한			전체
	제한함	제한 안함	모름	
국공립	0	357	49	406
학교 유형 중 %	0.0%	87.9%	12.1%	100.0%
비종교계 사학	0	266	43	309
학교 유형 중 %	0.0%	86.1%	13.9%	100.0%
종교계 사학	13	532	176	721
학교 유형 중 %	1.8%	73.8%	24.4%	100.0%
계	13	1155	268	1436
학교 유형 중 %	0.9%	80.4%	18.7%	100.0%

$$\chi^2=46.9 \quad df=4 \quad p=.000$$

종립학교 재학생 중에서 종교 활동을 기준으로 학생회 임원의 자격을 제한한다고 답한 경우는 모두 13명이다. 그 중에서 개신교계 종립학교 재학생은 9명, 천주교계 종립학교 재학생은 3명, 불교계 종립학교 재학생은 1명이었다.

<표 113 > 학교의 종교이념별 학생회 임원의 자격 제한 분포_학생

학교의 종교 이념	종교활동 기준으로 학생회 임원 자격 제한			전체
	제한함	제한 안함	모름	
불교	1	111	31	143
학교의 종교 이념 중 %	0.7%	77.6%	21.7%	100.0%
전체 %	0.1%	15.4%	4.3%	19.8%
개신교	9	267	90	366
학교의 종교 이념 중 %	2.5%	73.0%	24.6%	100.0%
전체 %	1.2%	37.0%	12.5%	50.8%
천주교	3	101	29	133
학교의 종교 이념 중 %	2.3%	75.9%	21.8%	100.0%
전체 %	0.4%	14.0%	4.0%	18.4%
원불교	0	15	16	31
학교의 종교 이념 중 %	0.0%	48.4%	51.6%	100.0%
전체 %	0.0%	2.1%	2.2%	4.3%
대순진리회	0	15	0	15
학교의 종교 이념 중 %	0.0%	100.0%	0.0%	100.0%
전체 %	0.0%	2.1%	0.0%	2.1%
천도교	0	11	4	15
학교의 종교 이념 중 %	0.0%	73.3%	26.7%	100.0%
전체 %	0.0%	1.5%	0.6%	2.1%
통일교	0	12	6	18
학교의 종교 이념 중 %	0.0%	66.7%	33.3%	100.0%
전체 %	0.0%	1.7%	0.8%	2.5%
전체	13	532	176	721
학교의 종교 이념 중 %	1.8%	73.8%	24.4%	100.0%
전체 %	1.8%	73.8%	24.4%	100.0%

$$\chi^2=22.5 \quad df=12 \quad p=.032$$

(19) 동아리 활동 지원

종교를 이유로 동아리 활동의 지원에 있어서 차별적인 대우가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한 응답자가 1.2%, 그렇지 않다고 답한 응답자가 81.6%, 모른다는 응답자는 17.2%였다.

<표 114 > 학교유형별 종교에 따른 차별적 동아리 지원 유무_학생

학교 유형		종교에 따른 차별적 동아리 지원/대우			전체
		있음	없음	모름	
국공립	빈도	1	355	51	407
	학교 유형 중 %	0.2%	87.2%	12.5%	100.0%
비종교계 사학	빈도	0	270	41	311
	학교 유형 중 %	0.0%	86.8%	13.2%	100.0%
종교계 사학	빈도	16	548	156	720
	학교 유형 중 %	2.2%	76.1%	21.7%	100.0%
계	빈도	17	1173	248	1438
	학교 유형 중 %	1.2%	81.6%	17.2%	100.0%

$$\chi^2=34.9 \quad df=4 \quad p=.000$$

종립학교 재학생 중에서 종교를 이유로 동아리 활동을 차별적으로 지원했다고 답한 경우는 모두 16명이다. 그 중에서 개신교계 종립학교 재학생이 10명으로 가장 많았고, 천주교계 종립학교 재학생은 2명, 불교계 종립학교 재학생은 3명이었다.

<표 115 > 학교의 종교이념별 종교에 따른 차별적 동아리 지원 분포_학생

학교의 종교 이념		종교에 따른 차등적 동아리 지원/대우			전체
		있음	없음	모름	
불교	빈도	3	115	22	140
	학교의 종교 이념 중 %	2.1%	82.1%	15.7%	100.0%
	전체 %	0.4%	16.0%	3.1%	19.4%
개신교	빈도	10	275	81	366
	학교의 종교 이념 중 %	2.7%	75.1%	22.1%	100.0%
	전체 %	1.4%	38.2%	11.3%	50.8%
천주교	빈도	2	105	28	135
	학교의 종교 이념 중 %	1.5%	77.8%	20.7%	100.0%
	전체 %	0.3%	14.6%	3.9%	18.8%
원불교	빈도	0	15	16	31
	학교의 종교 이념 중 %	0.0%	48.4%	51.6%	100.0%
	전체 %	0.0%	2.1%	2.2%	4.3%
대순진리회	빈도	0	15	0	15
	학교의 종교 이념 중 %	0.0%	100.0%	0.0%	100.0%
	전체 %	0.0%	2.1%	0.0%	2.1%
천도교	빈도	1	13	1	15
	학교의 종교 이념 중 %	6.7%	86.7%	6.7%	100.0%
	전체 %	0.1%	1.8%	0.1%	2.1%
통일교	빈도	0	10	8	18
	학교의 종교 이념 중 %	0.0%	55.6%	44.4%	100.0%
	전체 %	0.0%	1.4%	1.1%	2.5%
전체	빈도	16	548	156	720
	학교의 종교 이념 중 %	2.2%	76.1%	21.7%	100.0%
	전체 %	2.2%	76.1%	21.7%	100.0%

$\chi^2=34.1$ $df=12$ $p=.001$

(20) 학생자치활동에서 특정 종교 활동의 특혜 제공

학생자치활동에서 특정 종교 활동에 대해서만 혜택을 제공한 경우가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2.3%이고, 없다고 답한 응답자는 77.8%, 모른다고 답한 경우는 19.9%였다.

<표 116 > 학교유형별 학생자치활동에서 특정 종교활동의 특혜 제공 유무_학생

학교 유형	학생자치활동 시 특정 종교활동에 대해서만 혜택 제공			전체
	있음	없음	모름	
국공립	0	357	51	408
학교 유형 중 %	0.0%	87.5%	12.5%	100.0%
비종교계 사학	0	268	43	311
학교 유형 중 %	0.0%	86.2%	13.8%	100.0%
종교계 사학	33	496	192	721
학교 유형 중 %	4.6%	68.8%	26.6%	100.0%
계	33	1121	286	1440
학교 유형 중 %	2.3%	77.8%	19.9%	100.0%

$$\chi^2=81.6 \quad df=4 \quad p=.000$$

학생자치활동에서 특정 종교 활동에 대한 특혜가 있다는 중립학교 응답자는 모두 33명이고, 그 중 개신교가 14명으로 가장 많았고, 불교와 천주교 각 8명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표 117 > 학교의 종교이념별 학생자치활동에서 특정 종교활동의 특혜 제공 분포_학생

학교의 종교 이념		학생자치활동 시 특정 종교활동에 대해서만 혜택 제공			전체
		있음	없음	모름	
불교	빈도	8	102	32	142
	학교의 종교 이념 중 %	5.6%	71.8%	22.5%	100.0%
	전체 %	1.1%	14.1%	4.4%	19.7%
개신교	빈도	14	252	100	366
	학교의 종교 이념 중 %	3.8%	68.9%	27.3%	100.0%
	전체 %	1.9%	35.0%	13.9%	50.8%
천주교	빈도	8	92	34	134
	학교의 종교 이념 중 %	6.0%	68.7%	25.4%	100.0%
	전체 %	1.1%	12.8%	4.7%	18.6%
원불교	빈도	1	15	15	31
	학교의 종교 이념 중 %	3.2%	48.4%	48.4%	100.0%
	전체 %	0.1%	2.1%	2.1%	4.3%
대순진리회	빈도	0	15	0	15
	학교의 종교 이념 중 %	0.0%	100.0%	0.0%	100.0%
	전체 %	0.0%	2.1%	0.0%	2.1%
천도교	빈도	2	9	4	15
	학교의 종교 이념 중 %	13.3%	60.0%	26.7%	100.0%
	전체 %	0.3%	1.2%	0.6%	2.1%
통일교	빈도	0	11	7	18
	학교의 종교 이념 중 %	0.0%	61.1%	38.9%	100.0%
	전체 %	0.0%	1.5%	1.0%	2.5%
전체	빈도	33	496	192	721
	학교의 종교 이념 중 %	4.6%	68.8%	26.6%	100.0%
	전체 %	4.6%	68.8%	26.6%	100.0%

$$\chi^2=21.6 \quad df=12 \quad p=.042$$

(21) 학생자치활동에서 특정 종교 활동의 금지 혹은 불이익
 학생자치활동에서 특정 종교 활동을 금지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경우가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0.6%이고, 없다고 답한 응답자는 81.3%, 모른다고 답한 경우는 18.2%였다.

<표 118 > 학교유형별 학생자치활동 시 특정 종교활동 금지/불이익 제공 유무_학생

학교 유형	학생자치활동 시 특정 종교활동 금지/불이익 제공			전체
	있음	없음	모름	
국공립	1	353	54	408
학교 유형 중 %	0.2%	86.5%	13.2%	100.0%
비종교계 사학	0	271	39	310
학교 유형 중 %	0.0%	87.4%	12.6%	100.0%
종교계 사학	7	547	169	723
학교 유형 중 %	1.0%	75.7%	23.4%	100.0%
계	8	1171	262	1441
학교 유형 중 %	0.6%	81.3%	18.2%	100.0%

$\chi^2=31.8$ $df=4$ $p=.000$

학생자치활동에서 특정 종교 활동에 대한 금지 혹은 불이익이 있다는 중립학교 응답자는 모두 8명(개신교 6명, 불교 1명)이었다.

<표 119 > 학교의 종교이념별 학생자치활동 시 특정종교활동 금지/불이익 분포_학생

학교의 종교 이념		학생자치활동 시 특정 종교활동 금지/불이익 제공			전체
		있음	없음	모름	
불교	빈도	1	122	20	143
	학교의 종교 이념 중 %	0.7%	85.3%	14.0%	100.0%
	전체 %	0.1%	16.9%	2.8%	19.8%
개신교	빈도	6	270	90	366
	학교의 종교 이념 중 %	1.6%	73.8%	24.6%	100.0%
	전체 %	0.8%	37.3%	12.4%	50.6%
천주교	빈도	0	105	30	135
	학교의 종교 이념 중 %	0.0%	77.8%	22.2%	100.0%
	전체 %	0.0%	14.5%	4.1%	18.7%
원불교	빈도	0	15	16	31
	학교의 종교 이념 중 %	0.0%	48.4%	51.6%	100.0%
	전체 %	0.0%	2.1%	2.2%	4.3%
대순진리회	빈도	0	15	0	15
	학교의 종교 이념 중 %	0.0%	100.0%	0.0%	100.0%
	전체 %	0.0%	2.1%	0.0%	2.1%
천도교	빈도	0	10	5	15
	학교의 종교 이념 중 %	0.0%	66.7%	33.3%	100.0%
	전체 %	0.0%	1.4%	0.7%	2.1%
통일교	빈도	0	10	8	18
	학교의 종교 이념 중 %	0.0%	55.6%	44.4%	100.0%
	전체 %	0.0%	1.4%	1.1%	2.5%
전체	빈도	7	547	169	723
	학교의 종교 이념 중 %	1.0%	75.7%	23.4%	100.0%
	전체 %	1.0%	75.7%	23.4%	100.0%

$$\chi^2=35.1 \quad df=12 \quad p=.000$$

(22) 기숙사 입실 혹은 장학금 배정 시 종교 차별

기숙사 입실이나 장학금 배정 등에서 종교에 따라 특혜나 차별이 존재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3.0%이고, 없다고 답한 응답자는 79.8%, 모른다는 응답은 17.2%였다.

한편 심층면접에서 기숙사의 사감선생님이 기독교인이여야지 기숙사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을 하였다는 사례가 있었다. 그리고 학교 자체적으로 만든 상 중 특정상의 경우 세례를 받아야만 받을 수 있는 상이 있어, 그 상을 받기 위해 학교에서 세례를 받는 경우가 있다고 답변하였다. 또한 중립학교의 경우 학교가 주최하는 성경 암송대회나 신앙부흥회와 연계해서 글쓰기대회를 열어 대학진학에 도움이 되는 상을 주는 사례도 있었다.

한편 종교계 사립대학의 경우 크리스찬 리더쉽 전형으로 세례를 받은 학생들을 상대로 선발하는 전형이 있는데, 중립학교에서 세례를 받도록 권유하여 종교가 불교인 학생이 대학진학을 위해 세례를 받은 경우도 있었다.

<표 120 > 학교유형별 기숙사/장학금 배정시 종교차별 유무_학생

학교 유형	기숙사/장학금 등에서 특정 종교 학생의 차별 대우			전체
	있음	없음	모름	
국공립	0	361	47	408
빈도				
학교 유형 중 %	0.0%	88.5%	11.5%	100.0%
비종교계 사학	1	269	40	310
빈도				
학교 유형 중 %	0.3%	86.8%	12.9%	100.0%
종교계 사학	42	521	161	724
빈도				
학교 유형 중 %	5.8%	72.0%	22.2%	100.0%
계	43	1151	248	1442
빈도				
학교 유형 중 %	3.0%	79.8%	17.2%	100.0%

$$\chi^2=71.8 \quad df=4 \quad p=.000$$

차별이나 특혜가 존재했다는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설립 이념별 분포를 살펴보면, 개신교계 종립학교가 26명, 천주교계 종립학교 11명, 불교계 종립학교 4명 등의 순이다.

<표 121 > 학교의 종교이념별 기숙사/장학금 배정시 종교차별 분포_학생

학교의 종교 이념		기숙사/장학금 등에서 특정 종교 학생의 차별 대우			전체
		있음	없음	모름	
불교	빈도	4	118	21	143
	학교의 종교 이념 중 %	2.8%	82.5%	14.7%	100.0%
	전체 %	0.6%	16.3%	2.9%	19.8%
개신교	빈도	26	252	89	367
	학교의 종교 이념 중 %	7.1%	68.7%	24.3%	100.0%
	전체 %	3.6%	34.8%	12.3%	50.7%
천주교	빈도	11	99	25	135
	학교의 종교 이념 중 %	8.1%	73.3%	18.5%	100.0%
	전체 %	1.5%	13.7%	3.5%	18.6%
원불교	빈도	0	16	15	31
	학교의 종교 이념 중 %	0.0%	51.6%	48.4%	100.0%
	전체 %	0.0%	2.2%	2.1%	4.3%
대순진리회	빈도	0	15	0	15
	학교의 종교 이념 중 %	0.0%	100.0%	0.0%	100.0%
	전체 %	0.0%	2.1%	0.0%	2.1%
천도교	빈도	1	12	2	15
	학교의 종교 이념 중 %	6.7%	80.0%	13.3%	100.0%
	전체 %	0.1%	1.7%	0.3%	2.1%
통일교	빈도	0	9	9	18
	학교의 종교 이념 중 %	0.0%	50.0%	50.0%	100.0%
	전체 %	0.0%	1.2%	1.2%	2.5%
전체	빈도	42	521	161	724
	학교의 종교 이념 중 %	5.8%	72.0%	22.2%	100.0%
	전체 %	5.8%	72.0%	22.2%	100.0%

$$\chi^2=40.7 \quad df=12 \quad p=.000$$

(23) 종교교육에 대한 인식

① 학교 내 종교교육의 문제점

학교에서 종교교육이나 의식을 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의견에 찬성하는 응답자는 24.9%, 반대하는 응답자는 35.1%, 유보적인 입장은 40.1%로 나타났다. 즉, 학교 내 종교교육이나 의식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인식이 다소 높게 형성되어 있는 것이다.

학교 유형별로 보면 국공립학교는 찬성 6.8%, 반대 58.0%이고, 비종립학교는 찬성 6.2%, 반대 60.0%로 찬성보다 반대 의견이 더 강한 편이다. 그러나 종립학교의 경우는 찬성 38.6%, 반대 17.1%로 오히려 종교교육이나 의식에 찬성하는 의견이 2배 정도 더 많다.

심층면접에서 종립학교에 다니는 학생 중 일부는 학교의 강제적인 종교교육이 오히려 학교의 종교에 대한 신뢰감 상실로 이어졌다고 답변한 사례가 있으며, 종교 교육을 담당하는 선생님이 언행일치가 되지 않아 실망감이 크다는 이야기를 한 사례도 있었다. 또한 종립학교에 다니는 일부 학생은 종교교육 및 종교활동 시간으로 인해 공부에 방해가 된다고 이야기를 한 경우도 있었다.

<표 122 > 학교유형별 학교 내 종교교육의 문제 유무_학생

학교 유형	학교 내 종교교육은 문제 없음					전체
	매우 찬성	다소 찬성	보통	다소 반대	매우 반대	
국공립	7	13	103	68	102	293
학교 유형 중 %	2.4%	4.4%	35.2%	23.2%	34.8%	100.0%
비종교계 사학	5	8	71	38	88	210
학교 유형 중 %	2.4%	3.8%	33.8%	18.1%	41.9%	100.0%
종교계 사학	107	151	295	76	38	667
학교 유형 중 %	16.0%	22.6%	44.2%	11.4%	5.7%	100.0%
전체	119	172	469	182	228	1170
학교 유형 중 %	10.2%	14.7%	40.1%	15.6%	19.5%	100.0%

$\chi^2=299.7$ $df=8$ $p=.000$

설립 이념별로 보면, 개신교계 종립학교 재학생들은 학교 내 종교교육이 문제없다는 의견이 40.4%, 반대인 경우가 16.1%로 나타났고, 천주교계 종립학교 재학생들은 문제없음 54.7%, 문제 있음 9.4%, 불교계 종립학교 재학생은 문제없음 28.9%, 문제 있음 18.2%로 나타났다. 이 결과에 의하면, 학교내 종교교육에 대해 천주교계 종립학

교 학생들이 다른 종립학교 학생들에 비해 더 긍정적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개신교계 사립학교 재학생의 경우 문제가 없다는 의견도 많지만, 문제가 있다고 인식하는 비율도 적지 않은 것으로 여겨진다. 그리고 불교계 사립학교 재학생들은 상대적으로 다른 종립학교 재학생에 비해 종교교육에 비판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표 123 > 학교의 종교이념별 학교 내 종교교육의 문제 분포_학생

학교의 종교 이념	학교 내 종교교육은 문제 없음					전체	
	매우 찬성	다소 찬성	보통	다소 반대	매우 반대		
불교	빈도	11	24	64	12	10	121
	학교의 종교 이념 중 %	9.1%	19.8%	52.9%	9.9%	8.3%	100.0%
	전체 %	1.6%	3.6%	9.6%	1.8%	1.5%	18.1%
개신교	빈도	63	80	154	42	15	354
	학교의 종교 이념 중 %	17.8%	22.6%	43.5%	11.9%	4.2%	100.0%
	전체 %	9.4%	12.0%	23.1%	6.3%	2.2%	53.1%
천주교	빈도	28	42	46	10	2	128
	학교의 종교 이념 중 %	21.9%	32.8%	35.9%	7.8%	1.6%	100.0%
	전체 %	4.2%	6.3%	6.9%	1.5%	0.3%	19.2%
원불교	빈도	3	2	10	3	6	24
	학교의 종교 이념 중 %	12.5%	8.3%	41.7%	12.5%	25.0%	100.0%
	전체 %	0.4%	0.3%	1.5%	0.4%	0.9%	3.6%
대순진리회	빈도	0	0	5	5	2	12
	학교의 종교 이념 중 %	0.0%	0.0%	41.7%	41.7%	16.7%	100.0%
	전체 %	0.0%	0.0%	0.7%	0.7%	0.3%	1.8%
천도교	빈도	1	3	9	2	0	15
	학교의 종교 이념 중 %	6.7%	20.0%	60.0%	13.3%	0.0%	100.0%
	전체 %	0.1%	0.4%	1.3%	0.3%	0.0%	2.2%
통일교	빈도	1	0	7	2	3	13
	학교의 종교 이념 중 %	7.7%	0.0%	53.8%	15.4%	23.1%	100.0%
	전체 %	0.1%	0.0%	1.0%	0.3%	0.4%	1.9%
전체	빈도	107	151	295	76	38	667
	학교의 종교 이념 중 %	16.0%	22.6%	44.2%	11.4%	5.7%	100.0%
	전체 %	16.0%	22.6%	44.2%	11.4%	5.7%	100.0%

$\chi^2=74.1$ $df=24$ $p=.000$

② 종교교육에 대한 학생 선택권

종교교육이나 의식 등의 참여에 대한 선택권을 주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59.3%가 찬성하고 있으며, 반대는 10.3%로 나타났다.

학교 유형별로 선택권 부여에 대한 의견을 살펴보면, 국공립학교 재학생들은 찬성 57.9%, 반대 13.3%이고, 비종립학교 재학생들은 찬성 48.0%, 반대 24.9%, 종립학교 재학생들은 찬성 63.5%, 반대 4.4%로 나타난다. 이는 종립학교 재학생들이 종교교육 참여의 선택권을 더 강하게 원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심층면접에 참여한 대부분의 학생은 종교의 자유에 대해 종교를 자유롭게 선택하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종교를 강요받지 아니할 권리로 인식하고 있으며, 학교에서 종교교육을 하거나 종교의식이 결합된 학교 행사에 대해 참석 여부에 대한 선택의 자유가 주어지기를 원하고 있었다. 기독교계 사립학교에 다니는 한 학생은 학교에서 종교를 너무 강조하여 같은 기독교인으로서 부끄러운 감정이 들었다고 이야기한 사례도 있었다. 또한 심층면접에 참여한 대다수의 학생들은 종교교육에 대한 선택권이 있다면 종교교육을 선택하지 않겠다고 답변하였다.

<표 124 > 학교유형별 종교교육에 대한 선택권 제공_학생

학교 유형	종교교육 참여시 선택권 제공					전체
	매우 찬성	다소 찬성	보통	다소 반대	매우 반대	
국공립	130	39	84	10	29	292
학교 유형 중 %	44.5%	13.4%	28.8%	3.4%	9.9%	100.0%
비종교계 사학	81	19	56	18	34	208
학교 유형 중 %	38.9%	9.1%	26.9%	8.7%	16.3%	100.0%
종교계 사학	243	180	214	14	15	666
학교 유형 중 %	36.5%	27.0%	32.1%	2.1%	2.3%	100.0%
전체	454	238	354	42	78	1166
학교 유형 중 %	38.9%	20.4%	30.4%	3.6%	6.7%	100.0%

$\chi^2=111.6$ $df=8$ $p=.000$

설립 이념별로는 개신교계 종립학교 재학생들의 경우는 61.0%가 선택권 부여에 찬성하고 있고, 반대 의견은 4.6%로 나타났다. 천주교계 종립학교의 경우는 찬성 72.7%, 반대 3.9%이고, 불교계 종립학교의 경우는 찬성 63.3%, 반대 2.5%였다. 이

결과를 보면 상대적으로 천주교계 종립학교 재학생들이 종교교육 참여의 선택권 부여에 더 긍정적이고, 개신교계 종립학교 재학생들이 상대적으로 더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125 > 학교의 종교이념별 종교교육에 대한 선택권 제공 분포_학생

학교의 종교 이념		종교교육 참여시 선택권 제공					전체
		매우 찬성	다소 찬성	보통	다소 반대	매우 반대	
불교	빈도	40	36	41	1	2	120
	학교의 종교 이념 중 %	33.3%	30.0%	34.2%	0.8%	1.7%	100.0%
	전체 %	6.0%	5.4%	6.2%	0.2%	0.3%	18.0%
개신교	빈도	126	90	122	8	8	354
	학교의 종교 이념 중 %	35.6%	25.4%	34.5%	2.3%	2.3%	100.0%
	전체 %	18.9%	13.5%	18.3%	1.2%	1.2%	53.2%
천주교	빈도	48	45	30	4	1	128
	학교의 종교 이념 중 %	37.5%	35.2%	23.4%	3.1%	0.8%	100.0%
	전체 %	7.2%	6.8%	4.5%	0.6%	0.2%	19.2%
원불교	빈도	9	1	10	1	3	24
	학교의 종교 이념 중 %	37.5%	4.2%	41.7%	4.2%	12.5%	100.0%
	전체 %	1.4%	0.2%	1.5%	0.2%	0.5%	3.6%
대순진리회	빈도	6	3	3	0	0	12
	학교의 종교 이념 중 %	50.0%	25.0%	25.0%	0.0%	0.0%	100.0%
	전체 %	0.9%	0.5%	0.5%	0.0%	0.0%	1.8%
천도교	빈도	10	4	1	0	0	15
	학교의 종교 이념 중 %	66.7%	26.7%	6.7%	0.0%	0.0%	100.0%
	전체 %	1.5%	0.6%	0.2%	0.0%	0.0%	2.3%
통일교	빈도	4	1	7	0	1	13
	학교의 종교 이념 중 %	30.8%	7.7%	53.8%	0.0%	7.7%	100.0%
	전체 %	0.6%	0.2%	1.1%	0.0%	0.2%	2.0%
전체	빈도	243	180	214	14	15	666
	학교의 종교 이념 중 %	36.5%	27.0%	32.1%	2.1%	2.3%	100.0%
	전체 %	36.5%	27.0%	32.1%	2.1%	2.3%	100.0%

$\chi^2=42.6$ $df=24$ $p=.011$

③ 학교 내 종교교육의 금지

학교에서는 어떠한 종교교육이나 의식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26.8%가 찬성하고 있고, 반대 의견은 25.1%, 유보적 입장은 48.1%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내 종교교육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이 긍정적 인식보다 다소 높아 보이기 는 하지만, 그 차이는 오차범위 내에 있으므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찬반양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학교 유형별로 보면, 국공립학교 재학생의 경우는 44.7%가 종교교육 금지에 찬성하고 있고, 반대 의견은 16.4%였다. 비종립학교 재학생들은 37.0%가 찬성, 반대는 23.1%이고, 종립학교 재학생들은 15.6%가 찬성, 반대는 29.6%였다. 종립학교 학생들이 종교교육 금지에 대해 반대 의견이 높다는 것은 종교교육이 이들 학생들에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보다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표 126 > 학교유형별 학교 내 종교교육의 금지_학생

학교 유형		학교 내 종교교육 금지					전체
		매우 찬성	다소 찬성	보통	다소 반대	매우 반대	
국공립	빈도	87	44	114	19	29	293
	학교 유형 중 %	29.7%	15.0%	38.9%	6.5%	9.9%	100.0%
비종교계 사학	빈도	48	29	83	18	30	208
	학교 유형 중 %	23.1%	13.9%	39.9%	8.7%	14.4%	100.0%
종교계 사학	빈도	34	70	364	133	64	665
	학교 유형 중 %	5.1%	10.5%	54.7%	20.0%	9.6%	100.0%
전체	빈도	169	143	561	170	123	1166
	학교 유형 중 %	14.5%	12.3%	48.1%	14.6%	10.5%	100.0%

$$\chi^2=150.9 \quad df=8 \quad p=.000$$

설립 이념별로는 개신교계 종립학교 재학생들의 경우는 15.0%가 종교교육 금지에 찬성하고 있고, 반대 의견은 29.7%로 나타났다. 천주교계 종립학교의 경우는 찬성 9.4%, 반대 46.1%이고, 불교계 종립학교의 경우는 찬성 19.2%, 반대 17.5%였다. 이것은 종교교육 금지에 대해 천주교계 종립학교 학생들이 가장 부정적이고, 개신교계 종립학교 학생들보다는 불교계 종립학교 학생들이 종교교육 금지에 대해 더 긍정적인 의미를 의미한다. 따라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설립 이념별로 학교에서 실시되고 있는 종교교육의 실상과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세밀하게 분석해야 할 것이다.

<표 127 > 학교의 종교이념별 학교 내 종교교육의 금지 분포_학생

학교의 종교 이념	학교 내 종교교육 금지					전체	
	매우 찬성	다소 찬성	보통	다소 반대	매우 반대		
불교	빈도	8	15	76	14	7	120
	학교의 종교 이념 중 %	6.7%	12.5%	63.3%	11.7%	5.8%	100.0%
	전체 %	1.2%	2.3%	11.4%	2.1%	1.1%	18.0%
개신교	빈도	12	41	195	66	39	353
	학교의 종교 이념 중 %	3.4%	11.6%	55.2%	18.7%	11.0%	100.0%
	전체 %	1.8%	6.2%	29.3%	9.9%	5.9%	53.1%
천주교	빈도	4	8	57	46	13	128
	학교의 종교 이념 중 %	3.1%	6.3%	44.5%	35.9%	10.2%	100.0%
	전체 %	0.6%	1.2%	8.6%	6.9%	2.0%	19.2%
원불교	빈도	4	1	13	2	4	24
	학교의 종교 이념 중 %	16.7%	4.2%	54.2%	8.3%	16.7%	100.0%
	전체 %	0.6%	0.2%	2.0%	0.3%	0.6%	3.6%
대순진리회	빈도	3	3	6	0	0	12
	학교의 종교 이념 중 %	25.0%	25.0%	50.0%	0.0%	0.0%	100.0%
	전체 %	0.5%	0.5%	0.9%	0.0%	0.0%	1.8%
천도교	빈도	0	2	10	3	0	15
	학교의 종교 이념 중 %	0.0%	13.3%	66.7%	20.0%	0.0%	100.0%
	전체 %	0.0%	0.3%	1.5%	0.5%	0.0%	2.3%
통일교	빈도	3	0	7	2	1	13
	학교의 종교 이념 중 %	23.1%	0.0%	53.8%	15.4%	7.7%	100.0%
	전체 %	0.5%	0.0%	1.1%	0.3%	0.2%	2.0%
전체	빈도	34	70	364	133	64	665
	학교의 종교 이념 중 %	5.1%	10.5%	54.7%	20.0%	9.6%	100.0%
	전체 %	5.1%	10.5%	54.7%	20.0%	9.6%	100.0%

$\chi^2=71.8$ $df=24$ $p=.000$

④ 모든 종교에 대한 교육

특정 종교만이 아니라 모든 종교를 함께 가르쳐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18.3%가 찬성하고, 반대는 39.9%로 나타났다.

학교 유형별로는 국공립학교의 경우 찬성 17.1%, 반대 43.7%이고, 비종립학교의 경우는 찬성 16.9%, 반대 44.5%, 종립학교의 경우는 찬성 19.2%, 반대 36.8%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기본적으로 모든 종교에 대한 교육에 반대하는 의견이 다수를 형성하고 있으며, 종교교육이 적은 국공립학교 및 비종립학교에서 반대 의견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기왕 종교교육을 하고 있는 종립학교에서는 상대적으로 찬성 의견이 다소 늘고, 반대 의견은 줄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것은 특정 종교만을 교육하는 것에 대한 비판적 인식이 존재하고 있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을 수 있어서 향후 보다 정교한 연구와 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표 128 > 학교유형별 모든 종교에 대한 교육_학생

학교 유형		모든 종교를 함께 교육해야함					전체
		매우 찬성	다소 찬성	보통	다소 반대	매우 반대	
국공립	빈도	24	26	115	42	86	293
	학교 유형 중 %	8.2%	8.9%	39.2%	14.3%	29.4%	100.0%
비종교계 사학	빈도	15	20	80	26	66	207
	학교 유형 중 %	7.2%	9.7%	38.6%	12.6%	31.9%	100.0%
종교계 사학	빈도	48	80	292	120	125	665
	학교 유형 중 %	7.2%	12.0%	43.9%	18.0%	18.8%	100.0%
전체	빈도	87	126	487	188	277	1165
	학교 유형 중 %	7.5%	10.8%	41.8%	16.1%	23.8%	100.0%

$$\chi^2=24.3 \quad df=8 \quad p=.002$$

설립 이념별로 살펴보면, 불교계 종립학교의 경우는 찬성 26.7%, 반대 24.2%이고, 개신교계 종립학교의 경우는 찬성 18.1%, 반대 41.7%, 천주교계 종립학교의 경우는 찬성 20.4%, 반대 32.8%로 나타났다. 대체로 불교계 종립학교의 경우는 모든 종교에 대한 교육을 찬성하는 입장이 조금 우세하고, 개신교계 종립학교와 천주교계 종립학교의 경우는 반대 입장이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

<표 129 > 학교의 종교이념별 모든 종교에 대한 교육 분포_학생

학교의 종교 이념		모든 종교를 함께 교육해야함					전체
		매우 찬성	다소 찬성	보통	다소 반대	매우 반대	
불교	빈도	12	20	59	12	17	120
	학교의 종교 이념 중 %	10.0%	16.7%	49.2%	10.0%	14.2%	100.0%
	전체 %	1.8%	3.0%	8.9%	1.8%	2.6%	18.0%
개신교	빈도	24	40	142	73	74	353
	학교의 종교 이념 중 %	6.8%	11.3%	40.2%	20.7%	21.0%	100.0%
	전체 %	3.6%	6.0%	21.4%	11.0%	11.1%	53.1%
천주교	빈도	8	18	60	28	14	128
	학교의 종교 이념 중 %	6.3%	14.1%	46.9%	21.9%	10.9%	100.0%
	전체 %	1.2%	2.7%	9.0%	4.2%	2.1%	19.2%
원불교	빈도	1	0	13	1	9	24
	학교의 종교 이념 중 %	4.2%	0.0%	54.2%	4.2%	37.5%	100.0%
	전체 %	0.2%	0.0%	2.0%	0.2%	1.4%	3.6%
대순진리회	빈도	0	2	4	3	3	12
	학교의 종교 이념 중 %	0.0%	16.7%	33.3%	25.0%	25.0%	100.0%
	전체 %	0.0%	0.3%	0.6%	0.5%	0.5%	1.8%
천도교	빈도	1	0	8	1	5	15
	학교의 종교 이념 중 %	6.7%	0.0%	53.3%	6.7%	33.3%	100.0%
	전체 %	0.2%	0.0%	1.2%	0.2%	0.8%	2.3%
통일교	빈도	2	0	6	2	3	13
	학교의 종교 이념 중 %	15.4%	0.0%	46.2%	15.4%	23.1%	100.0%
	전체 %	0.3%	0.0%	0.9%	0.3%	0.5%	2.0%
전체	빈도	48	80	292	120	125	665
	학교의 종교 이념 중 %	7.2%	12.0%	43.9%	18.0%	18.8%	100.0%
	전체 %	7.2%	12.0%	43.9%	18.0%	18.8%	100.0%

$\chi^2=40.1$ $df=24$ $p=.021$

⑤ 학교 내 종교의식 등의 효과

학교 내 종교의식 등이 신앙생활이나 종교 선택에 도움이 되었나를 묻는 질문에 대해 20.2%는 긍정적인 응답을, 46.4%는 부정적인 응답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종교학교의 경우는 모두 학교 내 종교의식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고, 종립학교의 경우는 긍정적 응답이 20.3%이고, 부정적 응답은 46.0%로 나타났다. 비종교학교에 비해 일부 긍정적 입장이 나타나고 있지만, 부정적 응답이 긍정적 응답에 비해 2배 이상 많았다.

<표 130 > 학교유형별 학교 내 종교활동의 효과_학생

학교 유형		학교 내 종교의식이 신앙생활/종교선택에 도움이 됨						전체
		많은 도움됨	다소 도움됨	보통	별로 도움 안됨	아무 도움 안됨	반감 갖게됨	
비종교계 사학	빈도	0	0	0	2	3	1	6
	학교 유형 중 %	0.0%	0.0%	0.0%	33.3%	50.0%	16.7%	100.0%
종교계 사학	빈도	60	80	231	130	140	46	687
	학교 유형 중 %	8.7%	11.6%	33.6%	18.9%	20.4%	6.7%	100.0%
전체	빈도	60	80	231	132	143	47	693
	학교 유형 중 %	8.7%	11.5%	33.3%	19.0%	20.6%	6.8%	100.0%

$\chi^2=7.3$ $df=5$ $p=.200$

설립 이념별로 살펴보면, 불교계 종립학교의 경우는 긍정적 응답이 11.3%, 부정적 응답이 55.6%이고, 개신교계 종립학교의 경우는 긍정적 응답이 23.8%, 부정적 응답이 42.6%, 천주교계 종립학교의 경우는 긍정적 응답이 29.3%, 부정적 응답이 38.4%로 나타났다. 모두 부정적 응답이 더 높게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 현재의 학교 내 종교의식 등에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천주교계 종립학교의 경우 상대적으로 긍정적 응답 비율이 높고, 부정적 응답 비율이 낮다. 따라서 천주교계 종립학교의 사례를 진지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표 131 > 학교의 종교이념별 학교 내 종교활동의 효과 분포_학생

학교의 종교 이념	학교 내 종교의식이 신앙생활/종교선택에 도움이 됨						전체
	많은 도움이 됨	다소 도움이 됨	보통	별로 도움이 안됨	아무 도움이 안됨	반감 갖게 됨	
빈도	3	11	41	28	35	6	124
불교 학교의 종교 이념 중 %	2.4%	8.9%	33.1%	22.6%	28.2%	4.8%	100.0%
전체 %	0.4%	1.6%	6.0%	4.1%	5.1%	0.9%	18.0%
빈도	41	44	120	65	57	30	357
개신교 학교의 종교 이념 중 %	11.5%	12.3%	33.6%	18.2%	16.0%	8.4%	100.0%
전체 %	6.0%	6.4%	17.5%	9.5%	8.3%	4.4%	52.0%
빈도	15	24	43	27	19	5	133
천주교 학교의 종교 이념 중 %	11.3%	18.0%	32.3%	20.3%	14.3%	3.8%	100.0%
전체 %	2.2%	3.5%	6.3%	3.9%	2.8%	0.7%	19.4%
빈도	1	1	16	4	6	0	28
원불교 학교의 종교 이념 중 %	3.6%	3.6%	57.1%	14.3%	21.4%	0.0%	100.0%
전체 %	0.1%	0.1%	2.3%	0.6%	0.9%	0.0%	4.1%
빈도	0	0	2	4	8	0	14
대순진리회 학교의 종교 이념 중 %	0.0%	0.0%	14.3%	28.6%	57.1%	0.0%	100.0%
전체 %	0.0%	0.0%	0.3%	0.6%	1.2%	0.0%	2.0%
빈도	0	0	2	2	9	1	14
천도교 학교의 종교 이념 중 %	0.0%	0.0%	14.3%	14.3%	64.3%	7.1%	100.0%
전체 %	0.0%	0.0%	0.3%	0.3%	1.3%	0.1%	2.0%
빈도	0	0	7	0	6	4	17
통일교 학교의 종교 이념 중 %	0.0%	0.0%	41.2%	0.0%	35.3%	23.5%	100.0%
전체 %	0.0%	0.0%	1.0%	0.0%	0.9%	0.6%	2.5%
빈도	60	80	231	130	140	46	687
전체 학교의 종교 이념 중 %	8.7%	11.6%	33.6%	18.9%	20.4%	6.7%	100.0%
전체 %	8.7%	11.6%	33.6%	18.9%	20.4%	6.7%	100.0%

$\chi^2=88.4$ $df=30$ $p=.000$

4. 교원 설문조사 결과분석

1) 응답자 특성

(1) 성별 분포

설문에 응답한 교사들의 성별 분포는 남자가 51.9%, 여자가 43.8%였고, 응답을 하지 않은 경우가 4.3%였다.

<표 132 > 성별 분포_교원

구분	빈도	퍼센트
남	96	51.9
여	81	43.8
무응답	8	4.3
합계	185	100.0

(2) 연령별 분포

연령별로는 30대가 35.1%로 가장 많았고, 50대(27.6%)와 40대(22.7%)가 뒤를 잇고 있다.

<표 133 > 연령별 분포_교원

구분	빈도	퍼센트
20대	15	8.1
30대	65	35.1
40대	42	22.7
50대	51	27.6
60대 이상	4	2.2
무응답	8	4.3
합계	185	100.0

(3) 임용기간

임용기간별로는 5년 이하가 24.3%로 가장 많았고, 21년~25년이 21.1%, 6년~10년 19.5%, 26년 이상 15.1%의 순이었다.

<표 134 > 임용기간_교원

구분	빈도	퍼센트
5년 이하	45	24.3
10년 이하	36	19.5
15년 이하	20	10.8
20년 이하	12	6.5
25년 이하	39	21.1
26년 초과	28	15.1
무응답	5	2.7
합계	185	100.0

(4) 근무 학교

근무 학교별로는 중학교 교사가 34.1%, 고등학교 교사가 62.7%였고, 응답을 하지 않은 경우는 3.2%였다.

<표 135 > 근무학교_교원

구분	빈도	퍼센트
중학교	63	34.1
고등학교	116	62.7
무응답	6	3.2
합계	185	100.0

국공립학교 교사는 25.9%, 비종립학교 교사는 21.6%, 종립학교 교사는 54.1%로 종립학교 교사의 응답이 절반 가량을 차지하였다.

<표 136 > 학교유형별 근무학교_교원

구분	빈도	퍼센트
국공립	45	25.9
비종교계 사학	40	21.6
종교계 사학	100	54.1
합계	185	100.0

종립학교 재단의 종교는 개신교 49.0%로 가장 많았고, 불교 36.0%, 천주교 10.0%, 통일교 5.0%의 순이었다.

<표 137 > 학교의 종교이념에 따른 구분_교원

구분	빈도	퍼센트
불교	36	36.0
개신교	49	49.0
천주교	10	10.0
통일교	5	5.0
합계	100	100.0

(5) 교사의 종교

교사들의 종교는 개신교 27.6%, 불교 25.9%, 천주교 14.1%, 기타 종교 1.1%, 종교 없음 27.6%로 나타났고, 무응답자는 3.8%였다.

<표 138 > 응답자의 개인 종교 분포_교원

구분	빈도	퍼센트
불교	48	25.9
개신교	51	27.6
천주교	26	14.1
기타	2	1.1
없음	51	27.6
무응답	7	3.8
합계	185	100.0

2) 교차분석 결과

(1) 채용 시 특정 종교에 대한 조건

채용 당시 특정 종교의 교인 또는 활동에 관한 조건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15.3%이고, 없다고 답한 응답자는 82.0%였다.

국공립학교 및 비종립학교 교사 중에는 특정 종교에 대한 조건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가 없었으나, 종립학교 교사 중에서는 28.6%가 특정 종교에 대한 조건이 있다고 답하고 있다. 따라서 종립학교가 채용 시 지원자들에게 종교를 제한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표 139 > 학교유형별 채용시 특정 종교에 대한 조건 유무_교원

학교 유형	채용 당시 특정 종교 교인/활동에 관한 조건이 있었다			전체	
	예	아니오	모름		
국공립	빈도	0	45	0	45
	학교 유형 중 %	0.0%	100.0%	0.0%	100.0%
비종교계 사학	빈도	0	40	0	40
	학교 유형 중 %	0.0%	100.0%	0.0%	100.0%
종교계 사학	빈도	28	65	5	98
	학교 유형 중 %	28.6%	66.3%	5.1%	100.0%
전체	빈도	28	150	5	183
	학교 유형 중 %	15.3%	82.0%	2.7%	100.0%

$$\chi^2=34.9 \quad df=4 \quad p=.000$$

특정 종교에 대한 조건이 있다고 답한 경우는 불교계 종립학교 교사 중에서 38.2%, 개신교계 종립학교 교사 중에서 28.6%, 천주교계 종립학교 교사 중에서 10.0%였다. 이 결과에 의하면 상대적으로 불교와 개신교계 종립학교가 천주교계 종립학교보다 교사의 종교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가 더 많음을 알 수 있다. 교사의 재직 기간을 고려하면 이 수치가 현재도 종교적 조건을 요구하고 있다고 단정하는 근거는 되지 않는다.

심층면접에서 중립학교의 경우 예전에는 종교에 상관없이 채용이 이루어졌지만 최근에는 제출서류에 세례증명서나 목사추천서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러한 서류를 요구하지 않더라도 채용 면접에서 지원자의 종교활동에 대해 매우 상세한 질문을 하고 있어 사실상 학교의 종교와 지원자의 종교가 다른 경우 교사로 채용되기 어렵다고 한다.

<표 140 > 학교의 종교이념별 채용 시 특정 종교에 대한 조건 분포_교원

학교의 종교 이념	채용 당시 특정 종교 교인/활동에 관한 조건이 있었다			전체
	예	아니오	모름	
불교	13	18	3	34
학교의 종교 이념 중 %	38.2%	52.9%	8.8%	100.0%
전체 %	7.1%	9.8%	1.6%	18.6%
개신교	14	33	2	49
학교의 종교 이념 중 %	28.6%	67.3%	4.1%	100.0%
전체 %	7.7%	18.0%	1.1%	26.8%
천주교	1	9	0	10
학교의 종교 이념 중 %	10.0%	90.0%	0.0%	100.0%
전체 %	0.5%	4.9%	0.0%	5.5%
통일교	0	5	0	5
학교의 종교 이념 중 %	0.0%	100.0%	0.0%	100.0%
전체 %	0.0%	2.7%	0.0%	2.7%
없음	0	85	0	85
학교의 종교 이념 중 %	0.0%	100.0%	0.0%	100.0%
전체 %	0.0%	46.4%	0.0%	46.4%
전체	28	150	5	183
학교의 종교 이념 중 %	15.3%	82.0%	2.7%	100.0%
전체 %	15.3%	82.0%	2.7%	100.0%

$$\chi^2=47.4 \quad df=8 \quad p=.000$$

(2) 면접 시의 종교 관련 질문

면접 과정에서 종교와 관련된 질문을 받은 적이 있냐는 질문에 22.4%가 그렇다고 답하였고, 76.5%는 그렇지 않다고 답하였다.

종립학교 교사 중에서 41.8%는 종교 관련 질문을 받았고, 질문을 받지 않은 경우는 56.1%였다. 종교 관련 질문을 받았다고 답한 41명은 모두 종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사이다.

<표 141 > 학교유형별 채용면접 시 종교관련 질문 유무_교원

학교 유형	채용 당시 면접 과정에서 종교관련 질문을 받은 적이 있다			전체
	예	아니오	모름	
국공립	0	45	0	45
학교 유형 중 %	0.0%	100.0%	0.0%	100.0%
비종교계 사학	0	40	0	40
학교 유형 중 %	0.0%	100.0%	0.0%	100.0%
종교계 사학	41	55	2	98
학교 유형 중 %	41.8%	56.1%	2.0%	100.0%
전체	41	140	2	183
학교 유형 중 %	22.4%	76.5%	1.1%	100.0%

$$\chi^2=48.8 \quad df=4 \quad p=.000$$

재단의 종교별로 보면 불교계 종립학교 교사 중에서 종교 관련 질문을 받은 경우는 47.1%, 받지 않은 경우는 52.9%이고, 개신교계 종립학교 교사 중에서는 46.9%가 종교 관련 질문을 받았고, 49.0%는 질문을 받지 않았다. 천주교계 종립학교 교사 중에서는 20.0%만이 종교 관련 질문을 받았고, 80.0%는 종교 관련 질문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42 > 학교의 종교이념별 채용면접 시 종교관련 질문 분포_교원

학교의 종교 이념	채용 당시 면접 과정에서 종교관련 질문을 받은 적이 있다			전체	
	예	아니오	모름		
불교	빈도	16	18	0	34
	학교의 종교 이념 중 %	47.1%	52.9%	0.0%	100.0%
	전체 %	8.7%	9.8%	0.0%	18.6%
개신교	빈도	23	24	2	49
	학교의 종교 이념 중 %	46.9%	49.0%	4.1%	100.0%
	전체 %	12.6%	13.1%	1.1%	26.8%
천주교	빈도	2	8	0	10
	학교의 종교 이념 중 %	20.0%	80.0%	0.0%	100.0%
	전체 %	1.1%	4.4%	0.0%	5.5%
통일교	빈도	0	5	0	5
	학교의 종교 이념 중 %	0.0%	100.0%	0.0%	100.0%
	전체 %	0.0%	2.7%	0.0%	2.7%
없음	빈도	0	85	0	85
	학교의 종교 이념 중 %	0.0%	100.0%	0.0%	100.0%
	전체 %	0.0%	46.4%	0.0%	46.4%
전체	빈도	41	140	2	183
	학교의 종교 이념 중 %	22.4%	76.5%	1.1%	100.0%
	전체 %	22.4%	76.5%	1.1%	100.0%

$$\chi^2=61.9 \quad df=8 \quad p=.000$$

(3) 연수 장소

교직원 연수를 종교 관련 시설에서 받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19.1%가 그렇다고 답하였고, 80.3%는 그렇지 않다고 답하였다.

국공립학교 및 비종립학교 교사 중에서 종교 관련 시설에서 연수를 받았다고 답한 응답자는 1명도 없었다. 한편 종립학교 교사 중에서 35.7%는 종교 관련 시설에서 연수를 받은 적이 있다고 한 반면에 64.3%는 그런 적이 없다고 답하고 있었다. 따라서 종립학교가 종교 관련 시설을 연수 장소로 사용하는 경우가 가끔 있으나 그 비율이 높은 편은 아닌 것으로 여겨진다.

<표 143 > 학교유형별 종교관련 시설에서의 연수 유무_교원

학교 유형		교직원 연수를 종교 관련 시설에서 받은 적이 있다			전체
		예	아니오	모름	
국공립	빈도	0	45	0	45
	학교 유형 중 %	0.0%	100.0%	0.0%	100.0%
비종교계 사학	빈도	0	39	1	40
	학교 유형 중 %	0.0%	97.5%	2.5%	100.0%
종교계 사학	빈도	35	63	0	98
	학교 유형 중 %	35.7%	64.3%	0.0%	100.0%
전체	빈도	35	147	1	183
	학교 유형 중 %	19.1%	80.3%	0.5%	100.0%

$$\chi^2=40.7 \quad df=4 \quad p=.000$$

불교계 중립학교 교사 중 64.7%는 종교 관련 시설에서 연수를 받았다고 답하고 있으며, 그렇지 않다는 응답자는 35.3%였다. 개신교계 중립학교 교사 중에서는 24.5%가 종교 관련 시설에서 연수를 받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75.5%였다. 천주교계 중립학교 교사 중에서는 10.0%만이 종교 관련 시설에서 연수를 받았고, 90.0%는 그런 적이 없다고 답하였다. 따라서 종교 관련 시설을 연수 장소로 이용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불교계 중립학교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표 144 > 학교의 종교이념별 종교관련 시설에서의 연수 분포_교원

학교의 종교 이념		교직원 연수를 종교 관련 시설에서 받은 적이 있다			전체
		예	아니오	모름	
불교	빈도	22	12	0	34
	학교의 종교 이념 중 %	64.7%	35.3%	0.0%	100.0%
	전체 %	12.0%	6.6%	0.0%	18.6%
개신교	빈도	12	37	0	49
	학교의 종교 이념 중 %	24.5%	75.5%	0.0%	100.0%
	전체 %	6.6%	20.2%	0.0%	26.8%
천주교	빈도	1	9	0	10
	학교의 종교 이념 중 %	10.0%	90.0%	0.0%	100.0%
	전체 %	0.5%	4.9%	0.0%	5.5%
통일교	빈도	0	5	0	5
	학교의 종교 이념 중 %	0.0%	100.0%	0.0%	100.0%
	전체 %	0.0%	2.7%	0.0%	2.7%
없음	빈도	0	84	1	85
	학교의 종교 이념 중 %	0.0%	98.8%	1.2%	100.0%
	전체 %	0.0%	45.9%	0.5%	46.4%
전체	빈도	35	147	1	183
	학교의 종교 이념 중 %	19.1%	80.3%	0.5%	100.0%
	전체 %	19.1%	80.3%	0.5%	100.0%

$$\chi^2=69.2 \quad df=8 \quad p=.000$$

(4) 연수 중 종교적 프로그램 경험

교직원 연수중에 종교적 프로그램을 경험한 적이 있냐는 질문에 그렇다는 응답은 21.9%, 그렇지 않다는 응답자는 77.0%였다.

국공립학교와 비종립학교 교사 중에서 연수중에 종교적 프로그램을 경험한 적이 있다는 응답자는 1명도 없었고, 종립학교 교사 중에서 40.8%는 연수중에 종교적 프로그램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한 반면에 58.2%는 그런 적이 없다고 답하고 있었다. 이에 따르면 종립학교에서 교직원 연수 프로그램으로 종교적 프로그램을 포함하는 경우가 적지 않음을 짐작할 수 있다.

<표 145 > 학교유형별 연수 중 종교적 프로그램 경험 유무_교원

학교 유형	교직원 연수중 종교적 프로그램을 경험한 적이 있다			전체
	예	아니오	모름	
국공립	0	45	0	45
학교 유형 중 %	0.0%	100.0%	0.0%	100.0%
비종교계 사학	0	39	1	40
학교 유형 중 %	0.0%	97.5%	2.5%	100.0%
종교계 사학	40	57	1	98
학교 유형 중 %	40.8%	58.2%	1.0%	100.0%
전체	40	141	2	183
학교 유형 중 %	21.9%	77.0%	1.1%	100.0%

$$\chi^2=45.7 \quad df=4 \quad p=.000$$

불교계 종립학교 교사 중 73.5%는 연수중에 종교적 프로그램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했으며, 그렇지 않다는 응답자는 26.5%였다. 개신교계 종립학교 교사 중에서는 30.6%가 그렇다고 답했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는 67.3%였다. 천주교계 종립학교 교사는 모두 연수중에 종교적 프로그램을 경험한 적이 없다고 답하였다. 따라서 불교계 종립학교가 교직원 연수 프로그램에 종교적 프로그램을 포함시키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46 > 학교의 종교이념별 연수 중 종교적 프로그램 경험 분포_교원

학교의 종교 이념	교직원 연수중 종교적 프로그램을 경험한 적이 있다			전체
	예	아니오	모름	
불교	25	9	0	34
학교의 종교 이념 중 %	73.5%	26.5%	0.0%	100.0%
전체 %	13.7%	4.9%	0.0%	18.6%
개신교	15	33	1	49
학교의 종교 이념 중 %	30.6%	67.3%	2.0%	100.0%
전체 %	8.2%	18.0%	0.5%	26.8%
천주교	0	10	0	10
학교의 종교 이념 중 %	0.0%	100.0%	0.0%	100.0%
전체 %	0.0%	5.5%	0.0%	5.5%
통일교	0	5	0	5
학교의 종교 이념 중 %	0.0%	100.0%	0.0%	100.0%
전체 %	0.0%	2.7%	0.0%	2.7%
없음	0	84	1	85
학교의 종교 이념 중 %	0.0%	98.8%	1.2%	100.0%
전체 %	0.0%	45.9%	0.5%	46.4%
전체	40	141	2	183
학교의 종교 이념 중 %	21.9%	77.0%	1.1%	100.0%
전체 %	21.9%	77.0%	1.1%	100.0%

$$\chi^2=84.2 \quad df=8 \quad p=.000$$

(5) 학교 내 종교활동 참여 요구

학교 내 종교활동 참여를 요구받은 적이 있냐는 질문에 그렇다는 응답은 19.1%, 그렇지 않다는 응답자는 80.9%였다.

국공립학교 교사 중에서 학교 내 종교활동 참여를 요구받았다고 답한 응답자는 1명도 없었고, 비종립학교 교사 중에서는 1명만 그런 적이 있다고 답하였다. 한편 종립학교 교사 중에서 34.7%는 학교 내 종교활동 참여를 요구받았다고 한 반면에 65.3%는 그런 적이 없다고 답하고 있었다. 따라서 종립학교가 교직원들에게 학교 내 종교활동 참여를 요구하는 가끔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47 > 학교유형별 학교 내 종교활동 참여 요구 유무_교원

학교 유형	학교에서 학내 종교활동 참여를 요구받는 적이 있다		전체
	예	아니오	
국공립	0	45	45
학교 유형 중 %	0.0%	100.0%	100.0%
비종교계 사학	1	39	40
학교 유형 중 %	2.5%	97.5%	100.0%
종교계 사학	34	64	98
학교 유형 중 %	34.7%	65.3%	100.0%
전체	35	148	183
학교 유형 중 %	19.1%	80.9%	100.0%

$$\chi^2=33.1 \quad df=2 \quad p=.000$$

불교계 종립학교 교사 중 38.2%는 학교 내 종교활동 참여 요구를 받았다고 답하고 있으며, 그렇지 않다는 응답자는 61.8%였다. 개신교계 종립학교 교사 중에서는 40.8%가 그렇다고 답했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59.2%였다. 천주교계 종립학교 교사 중에서는 10.0%만이 학교 내 종교활동 참여 요구를 받았고, 90.0%는 그런 적이 없다고 답하였다. 따라서 학교 내 종교활동 참여를 요구하는 경우는 개신교-불교-천주교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148 > 학교의 종교이념별 학교 내 종교활동 참여 요구 분포_교원

학교의 종교 이념	학교에서 학내 종교활동 참여를 요구받는 적이 있다		전체
	예	아니오	
불교	빈도 13 학교의 종교 이념 중 % 38.2% 전체 % 7.1%	21 61.8% 11.5%	34 100.0% 18.6%
개신교	빈도 20 학교의 종교 이념 중 % 40.8% 전체 % 10.9%	29 59.2% 15.8%	49 100.0% 26.8%
천주교	빈도 1 학교의 종교 이념 중 % 10.0% 전체 % 0.5%	9 90.0% 4.9%	10 100.0% 5.5%
통일교	빈도 0 학교의 종교 이념 중 % 0.0% 전체 % 0.0%	5 100.0% 2.7%	5 100.0% 2.7%
없음	빈도 1 학교의 종교 이념 중 % 1.2% 전체 % 0.5%	84 98.8% 45.9%	85 100.0% 46.4%
전체	빈도 35 학교의 종교 이념 중 % 19.1% 전체 % 19.1%	148 80.9% 80.9%	183 100.0% 100.0%

$$\chi^2=42.4 \quad df=4 \quad p=.000$$

(6) 일과 시간과 종교 활동 참여

일과 시간 외에 학교에서 요구하는 종교 활동에 참여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그렇다는 응답은 8.7%, 그렇지 않다는 응답자는 90.7%였다.

국공립학교와 비종립학교 교사 중에서 일과 시간 외에 학교에서 요구하는 종교 활동에 참여해야 한다는 응답자는 1명도 없었고, 종립학교 교사 중 16.3%만이 그렇다고 답한 반면에 82.7%는 그렇지 않다고 답하고 있었다. 따라서 일과 시간 외에 종교 활동에 참여하도록 하는 경우는 일부 종립학교를 제외하고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49 > 학교유형별 일과시간 외 종교활동 참여 요구 유무_교원

학교 유형		일과 시간 외에 학교에서 요구하는 종교활동에 참여해야 한다			전체
		예	아니오	모름	
국공립	빈도	0	45	0	45
	학교 유형 중 %	0.0%	100.0%	0.0%	100.0%
비종교계 사학	빈도	0	40	0	40
	학교 유형 중 %	0.0%	100.0%	0.0%	100.0%
종교계 사학	빈도	16	81	1	98
	학교 유형 중 %	16.3%	82.7%	1.0%	100.0%
전체	빈도	16	166	1	183
	학교 유형 중 %	8.7%	90.7%	0.5%	100.0%

$$\chi^2=16.3 \quad df=4 \quad p=.003$$

불교계 종립학교 교사 중 23.5%가 일과 시간 외에 학교에서 요구하는 종교 활동에 참여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그렇지 않다는 응답자는 73.5%였다. 개신교계 종립학교 교사 중에서는 16.3%가 그렇다고 답했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는 83.7%였다. 천주교계 종립학교 교사는 모두 그렇지 않다고 답하였다. 따라서 불교계 종립학교 교사가 상대적으로 일과 시간 외 종교 활동에 참여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50 > 학교의 종교이념별 일과시간 외 종교활동 참여 요구 분포_교원

학교의 종교 이념		일과 시간 외에 학교에서 요구하는 종교활동에 참여해야 함			전체
		예	아니오	모름	
불교	빈도	8	25	1	34
	학교의 종교 이념 중 %	23.5%	73.5%	2.9%	100.0%
	전체 %	4.4%	13.7%	0.5%	18.6%
개신교	빈도	8	41	0	49
	학교의 종교 이념 중 %	16.3%	83.7%	0.0%	100.0%
	전체 %	4.4%	22.4%	0.0%	26.8%
천주교	빈도	0	10	0	10
	학교의 종교 이념 중 %	0.0%	100.0%	0.0%	100.0%
	전체 %	0.0%	5.5%	0.0%	5.5%
통일교	빈도	0	5	0	5
	학교의 종교 이념 중 %	0.0%	100.0%	0.0%	100.0%
	전체 %	0.0%	2.7%	0.0%	2.7%
없음	빈도	0	85	0	85
	학교의 종교 이념 중 %	0.0%	100.0%	0.0%	100.0%
	전체 %	0.0%	46.4%	0.0%	46.4%
전체	빈도	16	166	1	183
	학교의 종교 이념 중 %	8.7%	90.7%	0.5%	100.0%
	전체 %	8.7%	90.7%	0.5%	100.0%

$$\chi^2=27.2 \quad df=8 \quad p=.001$$

(7) 종교 활동과 근무평가

종교 활동이 근무평가에 영향을 미친 적이 있냐는 질문에 대해 2.2%만이 그렇다고 답했고, 94.0%는 그렇지 않다고 답하였다. 이 결과는 종교 활동이 근무평가에 영향을 주는 경우는 거의 없음을 의미한다.

<표 151 > 학교유형별 종교활동이 근무평가에 영향 유무_교원

학교 유형	종교활동이 근무평가에 영향을 미친 적이 있다			전체
	예	아니오	모름	
국공립	0	45	0	45
학교 유형 중 %	0.0%	100.0%	0.0%	100.0%
비종교계 사학	0	40	0	40
학교 유형 중 %	0.0%	100.0%	0.0%	100.0%
종교계 사학	4	87	7	98
학교 유형 중 %	4.1%	88.8%	7.1%	100.0%
전체	4	172	7	183
학교 유형 중 %	2.2%	94.0%	3.8%	100.0%

$$\chi^2=10.2 \quad df=4 \quad p=.038$$

종교 활동이 근무평가에 영향을 미쳤다고 답한 응답자 4명은 모두 중립학교 교사였으며, 이들은 각각 불교계 중립학교 교사 2명, 개신교계 중립학교 교사 2명이었다.

심층면접에서 승진과 교사의 종교활동이 암묵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이야기한 사례도 있었다. 또한 신입교사 채용조건, 교장, 교감의 자격요건으로 세례교인이 될 것을 요구하는 학교도 있었다.

<표 152 > 학교의 종교이념별 종교활동이 근무평가에 영향 분포_교원

학교의 종교 이념		종교활동이 근무평가에 영향을 미친 적이 있다			전체
		예	아니오	모름	
불교	빈도	2	29	3	34
	학교의 종교 이념 중 %	5.9%	85.3%	8.8%	100.0%
	전체 %	1.1%	15.8%	1.6%	18.6%
개신교	빈도	2	44	3	49
	학교의 종교 이념 중 %	4.1%	89.8%	6.1%	100.0%
	전체 %	1.1%	24.0%	1.6%	26.8%
천주교	빈도	0	9	1	10
	학교의 종교 이념 중 %	0.0%	90.0%	10.0%	100.0%
	전체 %	0.0%	4.9%	0.5%	5.5%
통일교	빈도	0	5	0	5
	학교의 종교 이념 중 %	0.0%	100.0%	0.0%	100.0%
	전체 %	0.0%	2.7%	0.0%	2.7%
없음	빈도	0	85	0	85
	학교의 종교 이념 중 %	0.0%	100.0%	0.0%	100.0%
	전체 %	0.0%	46.4%	0.0%	46.4%
전체	빈도	4	172	7	183
	학교의 종교 이념 중 %	2.2%	94.0%	3.8%	100.0%
	전체 %	2.2%	94.0%	3.8%	100.0%

$$\chi^2=13.2 \quad df=8 \quad p=.106$$

(8) 종교 활동 불참으로 인한 불이익

학교에서 요구하는 종교 활동에 불참해서 불이익을 받은 경험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한 응답자는 1.6%이고, 그렇지 않다는 응답자는 96.7%였다. 따라서 종교 활동 불참으로 인해 교사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학교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53 > 학교유형별 종교활동 불참으로 인한 불이익 유무_교원

학교 유형	학교에서 요구한 종교활동 불참으로 불이익을 받은 적이 있다			전체
	예	아니오	모름	
국공립	0	45	0	45
학교 유형 중 %	0.0%	100.0%	0.0%	100.0%
비종교계 사학	0	40	0	40
학교 유형 중 %	0.0%	100.0%	0.0%	100.0%
종교계 사학	3	92	3	98
학교 유형 중 %	3.1%	93.9%	3.1%	100.0%
전체	3	177	3	183
학교 유형 중 %	1.6%	96.7%	1.6%	100.0%

$\chi^2=5.4$ $df=4$ $p=.250$

한편, 종교 활동에 불참해서 불이익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 3명은 모두 불교계 종립학교 교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154 > 학교의 종교이념별 종교활동 불참으로 인한 불이익 분포_교원

학교의 종교 이념	학교에서 요구한 종교활동 불참으로 불이익을 받은 적이 있다			전체
	예	아니오	모름	
빈도	3	30	1	34
불교	8.8%	88.2%	2.9%	100.0%
전체 %	1.6%	16.4%	0.5%	18.6%
빈도	0	47	2	49
개신교	0.0%	95.9%	4.1%	100.0%
전체 %	0.0%	25.7%	1.1%	26.8%
빈도	0	10	0	10
천주교	0.0%	100.0%	0.0%	100.0%
전체 %	0.0%	5.5%	0.0%	5.5%
빈도	0	5	0	5
통일교	0.0%	100.0%	0.0%	100.0%
전체 %	0.0%	2.7%	0.0%	2.7%
빈도	0	85	0	85
없음	0.0%	100.0%	0.0%	100.0%
전체 %	0.0%	46.4%	0.0%	46.4%
빈도	3	177	3	183
전체	1.6%	96.7%	1.6%	100.0%
전체 %	1.6%	96.7%	1.6%	100.0%

$$\chi^2=17.3 \quad df=8 \quad p=.027$$

(9) 종교적 이유로 인한 기부 요구

종교적인 이유로 학교에서 기부를 요구받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그렇다고 답한 응답자는 4.4%이고, 그렇지 않다는 응답자는 95.1%였다.

<표 155 > 학교유형별 종교적 이유로 기부요구 유무_교원

학교 유형	종교적 이유로 학교로부터 기부 요구를 받은 적이 있다			전체
	예	아니오	모름	
국공립	0	45	0	45
학교 유형 중 %	0.0%	100.0%	0.0%	100.0%
비종교계 사학	0	40	0	40
학교 유형 중 %	0.0%	100.0%	0.0%	100.0%
종교계 사학	8	88	1	97
학교 유형 중 %	8.2%	90.7%	1.0%	100.0%
전체	8	173	1	182
학교 유형 중 %	4.4%	95.1%	0.5%	100.0%

$\chi^2=8.3$ $df=4$ $p=.081$

기부를 요구받은 적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8명으로 이들은 모두 종립학교 교사였으며, 불교계 종립학교 교사 3명, 개신교계 종립학교 교사 5명이었다.

<표 156 > 학교의 종교이념별 종교적 이유로 기부요구 분포_교원

학교의 종교 이념		종교적 이유로 학교로부터 기부 요구를 받은 적이 있다			전체
		예	아니오	모름	
불교	빈도	3	30	1	34
	학교의 종교 이념 중 %	8.8%	88.2%	2.9%	100.0%
	전체 %	1.6%	16.5%	0.5%	18.7%
개신교	빈도	5	43	0	48
	학교의 종교 이념 중 %	10.4%	89.6%	0.0%	100.0%
	전체 %	2.7%	23.6%	0.0%	26.4%
천주교	빈도	0	10	0	10
	학교의 종교 이념 중 %	0.0%	100.0%	0.0%	100.0%
	전체 %	0.0%	5.5%	0.0%	5.5%
통일교	빈도	0	5	0	5
	학교의 종교 이념 중 %	0.0%	100.0%	0.0%	100.0%
	전체 %	0.0%	2.7%	0.0%	2.7%
없음	빈도	0	85	0	85
	학교의 종교 이념 중 %	0.0%	100.0%	0.0%	100.0%
	전체 %	0.0%	46.7%	0.0%	46.7%
전체	빈도	8	173	1	182
	학교의 종교 이념 중 %	4.4%	95.1%	0.5%	100.0%
	전체 %	4.4%	95.1%	0.5%	100.0%

$$\chi^2=14.8 \quad df=8 \quad p=.063$$

(10) 다른 종교에 대한 폄하 발언

학교 재단과 다른 종교에 대한 폄하 발언을 들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한 응답자는 1.6%이고, 그렇지 않다는 응답자는 96.7%였다.

<표 157 > 학교유형별 다른 종교에 대한 폄하 발언 유무_교원

학교 유형	학교재단의 종교와 다른 종교에 대한 폄하발언을 들은 적이 있다			전체
	예	아니오	모름	
국공립	0	45	0	45
학교 유형 중 %	0.0%	100.0%	0.0%	100.0%
비종교계 사학	0	40	0	40
학교 유형 중 %	0.0%	100.0%	0.0%	100.0%
종교계 사학	3	92	3	98
학교 유형 중 %	3.1%	93.9%	3.1%	100.0%
전체	3	177	3	183
학교 유형 중 %	1.6%	96.7%	1.6%	100.0%

$\chi^2=5.4$ $df=4$ $p=.250$

평하 발언을 들은 적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3명으로 이들은 모두 종립학교 교사였으며, 불교계 종립학교 교사 2명, 개신교계 종립학교 교사 1명이었다.

<표 158 > 학교의 종교이념별 다른 종교에 대한 평하 발언 분포_교원

학교의 종교 이념	학교재단의 종교와 다른 종교에 대한 평하발언을 들은 적이 있다			전체
	예	아니오	모름	
불교	빈도 2	31	1	34
학교의 종교 이념 중 %	5.9%	91.2%	2.9%	100.0%
전체 %	1.1%	16.9%	0.5%	18.6%
개신교	빈도 1	46	2	49
학교의 종교 이념 중 %	2.0%	93.9%	4.1%	100.0%
전체 %	0.5%	25.1%	1.1%	26.8%
천주교	빈도 0	10	0	10
학교의 종교 이념 중 %	0.0%	100.0%	0.0%	100.0%
전체 %	0.0%	5.5%	0.0%	5.5%
통일교	빈도 0	5	0	5
학교의 종교 이념 중 %	0.0%	100.0%	0.0%	100.0%
전체 %	0.0%	2.7%	0.0%	2.7%
없음	빈도 0	85	0	85
학교의 종교 이념 중 %	0.0%	100.0%	0.0%	100.0%
전체 %	0.0%	46.4%	0.0%	46.4%
전체	빈도 3	177	3	183
학교의 종교 이념 중 %	1.6%	96.7%	1.6%	100.0%
전체 %	1.6%	96.7%	1.6%	100.0%

$\chi^2=9.5$ $df=8$ $p=.305$

(11) 상사의 권유로 인한 종교 활동

상사의 권유로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종교 활동에 참여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2.2%는 그렇다고 답하였고, 97.3%는 그렇지 않다고 답하였다.

<표 159 > 학교유형별 상사의 권유로 인한 종교활동 유무_교원

학교 유형	상사의 권유로 자기 의사와 무관하게 종교활동에 참여한 적이 있다			전체
	예	아니오	모름	
국공립	1	44	0	45
학교 유형 중 %	2.2%	97.8%	0.0%	100.0%
비종교계 사학	0	40	0	40
학교 유형 중 %	0.0%	100.0%	0.0%	100.0%
종교계 사학	3	94	1	98
학교 유형 중 %	3.1%	95.9%	1.0%	100.0%
전체	4	178	1	183
학교 유형 중 %	2.2%	97.3%	0.5%	100.0%

$$\chi^2=2.1 \quad df=4 \quad p=.711$$

상사의 권유로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종교 활동에 참여한 적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4명으로 1명은 국공립학교 교사이고, 3명은 종립학교 교사로 불교계 종립학교 교사 2명, 개신교계 종립학교 교사 1명이었다.

<표 160 > 학교의 종교이념별 상사의 권유로 인한 종교활동 분포_교원

학교의 종교 이념	상사의 권유로 자기 의사와 무관하게 종교활동에 참여한 적이 있다			전체
	예	아니오	모름	
불교	2	31	1	34
학교의 종교 이념 중 %	5.9%	91.2%	2.9%	100.0%
전체 %	1.1%	16.9%	0.5%	18.6%
개신교	1	48	0	49
학교의 종교 이념 중 %	2.0%	98.0%	0.0%	100.0%
전체 %	0.5%	26.2%	0.0%	26.8%
천주교	0	10	0	10
학교의 종교 이념 중 %	0.0%	100.0%	0.0%	100.0%
전체 %	0.0%	5.5%	0.0%	5.5%
통일교	0	5	0	5
학교의 종교 이념 중 %	0.0%	100.0%	0.0%	100.0%
전체 %	0.0%	2.7%	0.0%	2.7%
없음	1	84	0	85
학교의 종교 이념 중 %	1.2%	98.8%	0.0%	100.0%
전체 %	0.5%	45.9%	0.0%	46.4%
전체	4	178	1	183
학교의 종교 이념 중 %	2.2%	97.3%	0.5%	100.0%
전체 %	2.2%	97.3%	0.5%	100.0%

$$\chi^2=7.4 \quad df=8 \quad p=.494$$

(12) 자기 종교의 공개

상사와 종교가 달라서 자기의 종교를 밝히지 못한 경우가 있냐는 질문에 대해 그렇다고 답한 응답자는 1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61 > 학교유형별 자기종교의 공개 유무_교원

학교 유형		상사와 내종교가 달라서 종교를 밝히지 못한 경우가 있다		전체
		아니오	모름	
국공립	빈도	44	0	44
	학교 유형 중 %	100.0%	0.0%	100.0%
비종교계 사학	빈도	40	0	40
	학교 유형 중 %	100.0%	0.0%	100.0%
종교계 사학	빈도	95	3	98
	학교 유형 중 %	96.9%	3.1%	100.0%
전체	빈도	179	3	182
	학교 유형 중 %	98.4%	1.6%	100.0%

$$\chi^2=2.6 \quad df=2 \quad p=.271$$

(13) 근무시간 중 종교행사 주관

교직원 근무시간 중에 특정 종교행사를 주관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에 대해서 69.7%는 찬성 의견을 밝히고 있으며, 14.9%는 반대 의견을 제시하였다.

<표 162 > 학교유형별 근무시간 중 종교행사 주관 여부_교원

학교 유형	교직원은 근무 중 특정종교행사를 주관해서는 안 된다					전체
	매우 그렇다	대소 그렇다	보통이 다	다소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국공립	36	7	1	1	0	45
학교 유형 중 %	80.0%	15.6%	2.2%	2.2%	0.0%	100.0%
비종교계 사학	32	4	3	1	0	40
학교 유형 중 %	80.0%	10.0%	7.5%	2.5%	0.0%	100.0%
종교계 사학	24	19	23	17	7	90
학교 유형 중 %	26.7%	21.1%	25.6%	18.9%	7.8%	100.0%
전체	92	30	27	19	7	175
학교 유형 중 %	52.6%	17.1%	15.4%	10.9%	4.0%	100.0%

$$\chi^2=56.1 \quad df=8 \quad p=.000$$

국공립학교 교사들의 경우 95.6%는 찬성 의견을, 2.2%는 반대 의견을 보이고 있고, 비종립학교 교사들은 90.0%가 찬성 의견을, 2.5%는 반대 의견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종립학교 교사들의 경우는 찬성 의견이 47.8%, 반대 의견이 26.7%로 나타났다. 따라서 국공립학교 및 비종립학교 교사들이 근무시간 중에 특정 종교행사 주관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가 강하고, 종립학교 교사들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견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심층면접에서 종교행사 주관과는 관계가 없지만 비종립학교의 경우 일부 선생님들이 수업시간에 자신의 종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상당수 있다고 하였다.

불교계 종립학교 교사들의 경우는 찬성 의견이 63.6%, 반대 의견이 15.1%로 근무 시간 중에 특정 종교행사를 주관하는 것에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이에 비해 개신교계 종립학교 교사들의 경우는 찬성 33.3%, 반대 35.7%, 천주교계 종립학교 교사들은 찬성 50.0%, 반대 40.0%로 나타났다. 이것은 개신교계 종립학교 교사들이 근무시간 중에 종교행사를 주관하는 것에 대해 덜 부정적인 것을 의미한다.

<표 163 > 학교의 종교이념별 근무시간 중 종교행사 주관 여부 분포_교원

학교의 종교 이념	교직원은 근무 중 특정종교행사를 주관해서는 안 된다					전체
	매우 그렇다	대소 그렇다	보통이다	대소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불교	10	11	7	4	1	33
학교의 종교 이념 중 %	30.3%	33.3%	21.2%	12.1%	3.0%	100.0%
전체 %	5.7%	6.3%	4.0%	2.3%	0.6%	18.9%
개신교	10	4	13	9	6	42
학교의 종교 이념 중 %	23.8%	9.5%	31.0%	21.4%	14.3%	100.0%
전체 %	5.7%	2.3%	7.4%	5.1%	3.4%	24.0%
천주교	2	3	1	4	0	10
학교의 종교 이념 중 %	20.0%	30.0%	10.0%	40.0%	0.0%	100.0%
전체 %	1.1%	1.7%	0.6%	2.3%	0.0%	5.7%
통일교	2	1	2	0	0	5
학교의 종교 이념 중 %	40.0%	20.0%	40.0%	0.0%	0.0%	100.0%
전체 %	1.1%	0.6%	1.1%	0.0%	0.0%	2.9%
없음	68	11	4	2	0	85
학교의 종교 이념 중 %	80.0%	12.9%	4.7%	2.4%	0.0%	100.0%
전체 %	38.9%	6.3%	2.3%	1.1%	0.0%	48.6%
전체	92	30	27	19	7	175
학교의 종교 이념 중 %	52.6%	17.1%	15.4%	10.9%	4.0%	100.0%
전체 %	52.6%	17.1%	15.4%	10.9%	4.0%	100.0%

$$\chi^2=81.7 \quad df=16 \quad p=.000$$

(14) 국공립학교 내의 종교시설

국공립학교 안에 종교시설을 뒤서는 안 된다는 의견에 대해서 60.8%가 찬성 의견을 밝히고 있으며, 20.4%는 반대 의견을 제시하였다.

국공립학교 교사들의 경우 91.1%가 찬성 의견을 보이고, 반대 의견은 없었으며, 비종립학교 교사들은 82.5%가 찬성 의견을, 7.5%는 반대 의견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중립학교 교사들의 경우는 찬성 의견과 반대 의견이 각각 36.3%로 나타났다.

심층면접에서 중립학교의 경우 학생들과 달리 선생님들은 학교에 종교시설이 존재한다고 답하였다.

<표 164 > 학교유형별 국공립학교 내의 종교시설 설치 여부_교원

학교 유형	국공립학교 내에 종교시설을 두면 안 된다					전체
	매우 그렇다	대소 그렇다	보통이다	다소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국공립	35	6	4	0	0	45
학교 유형 중 %	77.8%	13.3%	8.9%	0.0%	0.0%	100.0%
비종교계 사학	27	6	4	3	0	40
학교 유형 중 %	67.5%	15.0%	10.0%	7.5%	0.0%	100.0%
종교계 사학	21	12	25	18	15	91
학교 유형 중 %	23.1%	13.2%	27.5%	19.8%	16.5%	100.0%
전체	83	24	33	21	15	176
학교 유형 중 %	47.2%	13.6%	18.8%	11.9%	8.5%	100.0%

$\chi^2=56.1$ $df=8$ $p=.000$

불교계 종립학교 교사 중 47.1%가 국공립학교 안에 종교시설을 뒤서는 안 된다고 답했으며, 그렇지 않다는 응답자는 32.3%였다. 개신교계 종립학교 교사 중에서는 찬성이 33.3%, 반대 의견이 38.1%로 나타나 반대 의견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천주교계 종립학교 교사는 10.0%가 찬성 의견을 보이고, 반대 의견을 가진 경우는 60.0%였다. 전반적으로 불교계 종립학교 교사는 국공립학교 안에 종교시설을 두는 것에 반대하는 입장이 다소 우세하고, 천주교계 종립학교 교사들이 국공립학교 안에 종교시설을 두는 것에 상대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이 강한 편이다.

< 표 165 > 학교의 종교이념별 국공립학교 내의 종교시설 설치 여부 분포_교원

학교의 종교 이념	국공립학교 내에 종교시설을 두면 안 된다					전체	
	매우 그렇다	대소 그렇다	보통이 다	다소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불교	빈도	12	4	7	8	3	34
	학교의 종교 이념 중 %	35.3%	11.8%	20.6%	23.5%	8.8%	100.0%
	전체 %	6.8%	2.3%	4.0%	4.5%	1.7%	19.3%
개신교	빈도	8	6	12	7	9	42
	학교의 종교 이념 중 %	19.0%	14.3%	28.6%	16.7%	21.4%	100.0%
	전체 %	4.5%	3.4%	6.8%	4.0%	5.1%	23.9%
천주교	빈도	0	1	3	3	3	10
	학교의 종교 이념 중 %	0.0%	10.0%	30.0%	30.0%	30.0%	100.0%
	전체 %	0.0%	0.6%	1.7%	1.7%	1.7%	5.7%
통일교	빈도	1	1	3	0	0	5
	학교의 종교 이념 중 %	20.0%	20.0%	60.0%	0.0%	0.0%	100.0%
	전체 %	0.6%	0.6%	1.7%	0.0%	0.0%	2.8%
없음	빈도	62	12	8	3	0	85
	학교의 종교 이념 중 %	72.9%	14.1%	9.4%	3.5%	0.0%	100.0%
	전체 %	35.2%	6.8%	4.5%	1.7%	0.0%	48.3%
전체	빈도	83	24	33	21	15	176
	학교의 종교 이념 중 %	47.2%	13.6%	18.8%	11.9%	8.5%	100.0%
	전체 %	47.2%	13.6%	18.8%	11.9%	8.5%	100.0%

$\chi^2=71.6$ $df=16$ $p=.000$

(15) 종교갈등 유발 행위에 대한 금지

종교집단 사이의 적대적 감정을 유발하는 행위는 국가가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찬성하는 응답자가 74.7%이고, 반대는 10.3%로 나타났다.

국공립학교 교사들의 경우 86.6%가 찬성 의견을, 6.7%는 반대 의견을 보이고 있고, 비종교계 사학 교사들은 87.5%가 찬성 의견을, 7.5%는 반대 의견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종교계 사학 교사들의 경우는 찬성 의견이 62.9%, 반대 의견이 13.4%로 나타났다. 종교계 사학 교사들이 국가의 개입에 대해 상대적으로 더 부정적인 것은 종교적 문제에 국가가 개입하는 것은 정교분리 원칙에 위배된다는 인식 때문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표 166 > 학교유형별 종교갈등 유발 행위에 대한 금지 여부_교원

학교 유형		종교간 적대감정을 유발하는 행위는 국가가 금지해야 한다					전체
		매우 그렇다	대소 그렇다	보통이다	다소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국공립	빈도	28	11	3	3	0	45
	학교 유형 중 %	62.2%	24.4%	6.7%	6.7%	0.0%	100.0%
비종교계 사학	빈도	28	7	2	2	1	40
	학교 유형 중 %	70.0%	17.5%	5.0%	5.0%	2.5%	100.0%
종교계 사학	빈도	37	19	21	6	6	89
	학교 유형 중 %	41.6%	21.3%	23.6%	6.7%	6.7%	100.0%
전체	빈도	93	37	26	11	7	174
	학교 유형 중 %	53.4%	21.3%	14.9%	6.3%	4.0%	100.0%

$$\chi^2=18.5 \quad df=8 \quad p=.018$$

불교계 종립학교 교사는 72.7%가 국가 개입에 찬성하고 있으며, 반대는 12.1%이다. 개신교계 종립학교 교사의 경우는 58.5%가 찬성하고, 14.7%가 반대하고 있으며, 천주교계 종립학교 교사는 50.0%가 찬성, 10.0%가 반대 의견을 보이고 있다. 불교계 종립학교 교사들이 상대적으로 기독교계 종립학교 교사들에 비해 종교갈등 유발 행위에 대한 국가 개입에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167 > 학교의 종교이념별 종교갈등 유발 행위에 대한 금지 여부 분포_교원

학교의 종교 이념		종교간 적대감정을 유발하는 행위는 국가가 금지해야 한다					전체
		매우 그렇다	대소 그렇다	보통이 다	다소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불교	빈도	18	6	5	3	1	33
	학교의 종교 이념 중 %	54.5%	18.2%	15.2%	9.1%	3.0%	100.0%
	전체 %	10.3%	3.4%	2.9%	1.7%	0.6%	19.0%
개신교	빈도	13	11	11	2	4	41
	학교의 종교 이념 중 %	31.7%	26.8%	26.8%	4.9%	9.8%	100.0%
	전체 %	7.5%	6.3%	6.3%	1.1%	2.3%	23.6%
천주교	빈도	4	1	4	0	1	10
	학교의 종교 이념 중 %	40.0%	10.0%	40.0%	0.0%	10.0%	100.0%
	전체 %	2.3%	0.6%	2.3%	0.0%	0.6%	5.7%
통일교	빈도	2	1	1	1	0	5
	학교의 종교 이념 중 %	40.0%	20.0%	20.0%	20.0%	0.0%	100.0%
	전체 %	1.1%	0.6%	0.6%	0.6%	0.0%	2.9%
없음	빈도	56	18	5	5	1	85
	학교의 종교 이념 중 %	65.9%	21.2%	5.9%	5.9%	1.2%	100.0%
	전체 %	32.2%	10.3%	2.9%	2.9%	0.6%	48.9%
전체	빈도	93	37	26	11	7	174
	학교의 종교 이념 중 %	53.4%	21.3%	14.9%	6.3%	4.0%	100.0%
	전체 %	53.4%	21.3%	14.9%	6.3%	4.0%	100.0%

$\chi^2=29.7$ $df=16$ $p=.020$

(16) 학교 내 종교교육

① 학교 내 종교교육의 문제점

학교에서 종교교육이나 의식을 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의견에 찬성하는 응답자는 32.2%, 반대하는 응답자는 44.3%, 유보적인 입장은 23.6%로 나타났다. 즉, 학교 내 종교교육이나 의식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인식이 다소 높게 형성되어 있는 것이다.

학교 유형별로 보면 국공립학교는 찬성 2.2%, 반대 84.4%이고, 비종립학교는 찬성 15.4%, 반대 64.1%로 찬성보다 반대 의견이 더 강한 편이다. 그러나 종립학교의 경우는 찬성 54.4%, 반대 15.6%로 오히려 종교교육이나 의식에 찬성하는 의견이 더 많다.

심층면접에서 선생님들은 특정 종교만이 아닌 모든 종교에 대하여 보편적인 범위 내에서의 종교교육이 행해져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한편 한 선생님은 현재의 학교 선택 구조가 종교를 기준으로 선택하는 것이 아닌데, 학교가 학생들에게 특정 종교교육을 하거나 종교행사에 학생들이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하였다.

<표 168 > 학교유형별 학교 내 종교교육의 문제 여부_교원

학교 유형		학교내 종교교육은 문제 없음					전체
		매우 찬성	다소 찬성	보통	다소 반대	매우 반대	
국공립	빈도	0	1	6	14	24	45
	학교 유형 중 %	0.0%	2.2%	13.3%	31.1%	53.3%	100.0%
비종교계 사학	빈도	3	3	8	9	16	39
	학교 유형 중 %	7.7%	7.7%	20.5%	23.1%	41.0%	100.0%
종교계 사학	빈도	28	21	27	5	9	90
	학교 유형 중 %	31.1%	23.3%	30.0%	5.6%	10.0%	100.0%
전체	빈도	31	25	41	28	49	174
	학교 유형 중 %	17.8%	14.4%	23.6%	16.1%	28.2%	100.0%

$\chi^2=70.4$ $df=8$ $p=.000$

불교계 종립학교 교사들의 경우 찬성 50.0%, 반대 17.7%이고, 개신교계 종립학교 교사들은 찬성 54.8%, 반대 16.6%이며, 천주교계 종립학교 교사들은 80.0%가 찬성하고, 반대 의견을 가진 경우는 없었다. 이 결과에 의하면, 천주교계 종립학교 교사들이 불교계 종립학교나 개신교계 종립학교 교사들에 비해 학교 내 종교교육이나 의식에 대해 더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69 > 학교의 종교이념별 학교 내 종교교육의 문제 여부 분포_교원

학교의 종교 이념	학교 내 종교교육은 문제 없음					전체
	매우 찬성	다소 찬성	보통	다소 반대	매우 반대	
불교	6	11	11	2	4	34
학교의 종교 이념 중 %	17.6%	32.4%	32.4%	5.9%	11.8%	100.0%
전체 %	3.4%	6.3%	6.3%	1.1%	2.3%	19.5%
개신교	18	5	12	3	4	42
학교의 종교 이념 중 %	42.9%	11.9%	28.6%	7.1%	9.5%	100.0%
전체 %	10.3%	2.9%	6.9%	1.7%	2.3%	24.1%
천주교	3	5	2	0	0	10
학교의 종교 이념 중 %	30.0%	50.0%	20.0%	0.0%	0.0%	100.0%
전체 %	1.7%	2.9%	1.1%	0.0%	0.0%	5.7%
통일교	1	0	2	0	1	4
학교의 종교 이념 중 %	25.0%	0.0%	50.0%	0.0%	25.0%	100.0%
전체 %	0.6%	0.0%	1.1%	0.0%	0.6%	2.3%
없음	3	4	14	23	40	84
학교의 종교 이념 중 %	3.6%	4.8%	16.7%	27.4%	47.6%	100.0%
전체 %	1.7%	2.3%	8.0%	13.2%	23.0%	48.3%
전체	31	25	41	28	49	174
학교의 종교 이념 중 %	17.8%	14.4%	23.6%	16.1%	28.2%	100.0%
전체 %	17.8%	14.4%	23.6%	16.1%	28.2%	100.0%

$\chi^2=88.2$ $df=16$ $p=.000$

② 종교교육에 대한 선택권

종교교육이나 의식 등의 참여에 대한 선택권을 주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67.2%가 찬성하고 있으며, 반대는 12.6%로 나타났다.

학교 유형별로 선택권 부여에 대한 의견을 살펴보면, 국공립학교 교사들은 찬성 64.5%, 반대 20.0%이고, 비종립학교 교사들은 찬성 66.7%, 반대 25.6%, 종립학교 교사들은 찬성 68.8%, 반대 3.3%로 나타난다. 이는 종립학교 교사들이 종교교육 참여의 선택권을 상대적으로 더 강하게 원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 표 170 > 학교유형별 종교교육에 대한 선택권 여부_교원

학교 유형	종교교육 참여시 선택권 제공					전체
	매우 찬성	다소 찬성	보통	다소 반대	매우 반대	
국공립	21	8	7	6	3	45
학교 유형 중 %	46.7%	17.8%	15.6%	13.3%	6.7%	100.0%
비종교계 사학	18	8	3	5	5	39
학교 유형 중 %	46.2%	20.5%	7.7%	12.8%	12.8%	100.0%
종교계 사학	31	31	25	3	0	90
학교 유형 중 %	34.4%	34.4%	27.8%	3.3%	0.0%	100.0%
전체	70	47	35	14	8	174
학교 유형 중 %	40.2%	27.0%	20.1%	8.0%	4.6%	100.0%

$\chi^2=27.0$ $df=8$ $p=.001$

불교계 종립학교 교사들의 경우 찬성이 67.7%이고 반대는 없었으며, 개신교계 종립학교 교사들은 찬성 66.7%, 반대 7.1%, 천주교계 종립학교 교사들은 80.0%가 찬성하고, 반대 의견을 가진 경우는 없었다. 대체로 종교교육 참여에 대한 선택권이 부여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공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심층면접에서 종립학교의 선생님들은 종교교육의 순기능적 측면이 있으나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선택권이 주어지지 않는 강제적 종교교육은 개선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 또한 종립학교가 학생들에게 종교교육에 대한 실질적인 선택권을 부여하지 않는 이유는 재단이 학생들의 선교의 대상으로 간주하여 선교의 목적에서 학교를 운영하기 때문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표 171 > 학교의 종교이념별 종교교육에 대한 선택권 여부 분포_교원

학교의 종교 이념	종교교육 참여시 선택권 제공					전체	
	매우 찬성	다소 찬성	보통	다소 반대	매우 반대		
불교	빈도	11	12	11	0	0	34
	학교의 종교 이념 중 %	32.4%	35.3%	32.4%	0.0%	0.0%	100.0%
	전체 %	6.3%	6.9%	6.3%	0.0%	0.0%	19.5%
개신교	빈도	13	15	11	3	0	42
	학교의 종교 이념 중 %	31.0%	35.7%	26.2%	7.1%	0.0%	100.0%
	전체 %	7.5%	8.6%	6.3%	1.7%	0.0%	24.1%
천주교	빈도	5	3	2	0	0	10
	학교의 종교 이념 중 %	50.0%	30.0%	20.0%	0.0%	0.0%	100.0%
	전체 %	2.9%	1.7%	1.1%	0.0%	0.0%	5.7%
통일교	빈도	2	1	1	0	0	4
	학교의 종교 이념 중 %	50.0%	25.0%	25.0%	0.0%	0.0%	100.0%
	전체 %	1.1%	0.6%	0.6%	0.0%	0.0%	2.3%
없음	빈도	39	16	10	11	8	84
	학교의 종교 이념 중 %	46.4%	19.0%	11.9%	13.1%	9.5%	100.0%
	전체 %	22.4%	9.2%	5.7%	6.3%	4.6%	48.3%
전체	빈도	70	47	35	14	8	174
	학교의 종교 이념 중 %	40.2%	27.0%	20.1%	8.0%	4.6%	100.0%
	전체 %	40.2%	27.0%	20.1%	8.0%	4.6%	100.0%

$\chi^2=27.9$ $df=16$ $p=.032$

③ 학교 내 종교교육의 금지

학교에서는 어떠한 종교교육이나 의식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36.8%가 찬성하고 있고, 반대 의견은 32.7%, 유보적 입장은 30.5%인 것으로 나타나, 학교 내 종교교육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이 긍정적 인식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공립학교 교사의 경우는 73.3%가 종교교육 금지에 찬성하고 있고, 반대 의견은 6.6%였다. 비종립학교 교사들은 53.9%가 찬성, 반대는 15.4%이고, 종립학교 교사의 경우 11.1%가 찬성, 반대는 53.4%였다. 종립학교 교사들이 종교교육 금지에 대해 반대 의견이 높음을 알 수 있다.

<표 172 > 학교유형별 학교 내 종교교육 금지 여부_교원

학교 유형		학교 내 종교교육 금지					전체
		매우 찬성	다소 찬성	보통	다소 반대	매우 반대	
국공립	빈도	24	9	9	2	1	45
	학교 유형 중 %	53.3%	20.0%	20.0%	4.4%	2.2%	100.0%
비종교계 사학	빈도	17	4	12	3	3	39
	학교 유형 중 %	43.6%	10.3%	30.8%	7.7%	7.7%	100.0%
종교계 사학	빈도	8	2	32	33	15	90
	학교 유형 중 %	8.9%	2.2%	35.6%	36.7%	16.7%	100.0%
전체	빈도	49	15	53	38	19	174
	학교 유형 중 %	28.2%	8.6%	30.5%	21.8%	10.9%	100.0%

$\chi^2=63.9$ $df=8$ $p=.000$

개신교계 종립학교 교사들의 경우는 11.9%가 종교교육 금지에 찬성하고 있고, 반대 의견은 57.2%로 나타났다. 천주교계 종립학교 교사의 경우는 찬성 의견은 없고 90.0%가 반대하고 있다. 불교계 종립학교 교사의 경우는 찬성 14.7%, 반대 44.1%였다. 이것은 종교교육 금지에 대해 천주교계 종립학교 교사들이 가장 부정적이고, 불교계 종립학교 교사들이 개신교계 종립학교 교사들보다 종교교육 금지에 대해 더 긍정적인 의미를 의미한다.

<표 173 > 학교의 종교이념별 학교 내 종교교육 금지 여부 분포_교원

학교의 종교 이념	학교 내 종교교육 금지					전체
	매우 찬성	다소 찬성	보통	다소 반대	매우 반대	
불교	4	1	14	13	2	34
학교의 종교 이념 중 %	11.8%	2.9%	41.2%	38.2%	5.9%	100.0%
전체 %	2.3%	0.6%	8.0%	7.5%	1.1%	19.5%
개신교	4	1	13	12	12	42
학교의 종교 이념 중 %	9.5%	2.4%	31.0%	28.6%	28.6%	100.0%
전체 %	2.3%	0.6%	7.5%	6.9%	6.9%	24.1%
천주교	0	0	1	8	1	10
학교의 종교 이념 중 %	0.0%	0.0%	10.0%	80.0%	10.0%	100.0%
전체 %	0.0%	0.0%	0.6%	4.6%	0.6%	5.7%
통일교	0	0	4	0	0	4
학교의 종교 이념 중 %	0.0%	0.0%	100.0%	0.0%	0.0%	100.0%
전체 %	0.0%	0.0%	2.3%	0.0%	0.0%	2.3%
없음	41	13	21	5	4	84
학교의 종교 이념 중 %	48.8%	15.5%	25.0%	6.0%	4.8%	100.0%
전체 %	23.6%	7.5%	12.1%	2.9%	2.3%	48.3%
전체	49	15	53	38	19	174
학교의 종교 이념 중 %	28.2%	8.6%	30.5%	21.8%	10.9%	100.0%
전체 %	28.2%	8.6%	30.5%	21.8%	10.9%	100.0%

$\chi^2=91.1$ $df=16$ $p=.000$

④ 모든 종교에 대한 교육

특정 종교만이 아니라 모든 종교를 함께 가르쳐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46.5%가 찬성하고, 반대는 25.8%로 나타났다.

학교 유형별로는 국공립학교의 경우 찬성 53.4%, 반대 20.0%이고, 비종립학교의 경우는 찬성 51.3%, 반대 33.3%, 종립학교의 경우는 찬성 41.1%, 반대 25.6%로 나타났다.

<표 174 > 학교유형별 모든 종교에 대한 교육 여부_교원

학교 유형		모든 종교를 함께 교육해야함					전체
		매우 찬성	다소 찬성	보통	다소 반대	매우 반대	
국공립	빈도	17	7	12	3	6	45
	학교 유형 중 %	37.8%	15.6%	26.7%	6.7%	13.3%	100.0%
비종교계 사학	빈도	16	4	6	6	7	39
	학교 유형 중 %	41.0%	10.3%	15.4%	15.4%	17.9%	100.0%
종교계 사학	빈도	18	19	30	14	9	90
	학교 유형 중 %	20.0%	21.1%	33.3%	15.6%	10.0%	100.0%
전체	빈도	51	30	48	23	22	174
	학교 유형 중 %	29.3%	17.2%	27.6%	13.2%	12.6%	100.0%

$$\chi^2=14.1 \quad df=8 \quad p=.079$$

설립 이념별로 살펴보면, 불교계 종립학교 교사의 경우는 찬성 52.9%, 반대 23.5% 이고, 개신교계 종립학교의 경우는 찬성 26.2%, 반대 33.3%, 천주교계 종립학교의 경우는 찬성 50.0%, 반대 10.0%로 나타났다. 대체로 불교계 종립학교 및 천주교계 종립학교 교사의 경우는 모든 종교에 대한 교육을 찬성하는 입장이 조금 우세하고, 개신교계 종립학교 교사는 반대 입장이 약간 크게 나타나고 있다.

<표 175 > 학교의 종교이념별 모든 종교에 대한 교육 여부 분포_교원

학교의 종교 이념	모든 종교를 함께 교육해야함					전체
	매우 찬성	다소 찬성	보통	다소 반대	매우 반대	
불교	8	10	8	5	3	34
학교의 종교 이념 중 %	23.5%	29.4%	23.5%	14.7%	8.8%	100.0%
전체 %	4.6%	5.7%	4.6%	2.9%	1.7%	19.5%
개신교	5	6	17	8	6	42
학교의 종교 이념 중 %	11.9%	14.3%	40.5%	19.0%	14.3%	100.0%
전체 %	2.9%	3.4%	9.8%	4.6%	3.4%	24.1%
천주교	2	3	4	1	0	10
학교의 종교 이념 중 %	20.0%	30.0%	40.0%	10.0%	0.0%	100.0%
전체 %	1.1%	1.7%	2.3%	0.6%	0.0%	5.7%
통일교	3	0	1	0	0	4
학교의 종교 이념 중 %	75.0%	0.0%	25.0%	0.0%	0.0%	100.0%
전체 %	1.7%	0.0%	0.6%	0.0%	0.0%	2.3%
없음	33	11	18	9	13	84
학교의 종교 이념 중 %	39.3%	13.1%	21.4%	10.7%	15.5%	100.0%
전체 %	19.0%	6.3%	10.3%	5.2%	7.5%	48.3%
전체	51	30	48	23	22	174
학교의 종교 이념 중 %	29.3%	17.2%	27.6%	13.2%	12.6%	100.0%
전체 %	29.3%	17.2%	27.6%	13.2%	12.6%	100.0%

$\chi^2=25.7$ $df=16$ $p=.058$

3) 소결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1) 종교적 사유에 의한 차별행위는 주로 종립학교에서 주로 나타나며, 개신교계의 학교가 불교나 천주교계의 학교보다 그 빈도가 높게 나타난다.

(2) 학생이 인식하는 종교의 자유는 종교선택의 자유가 두드러지며, 종립학교에 입학할 당시 종교적 교육에 대한 설명이나 고지가 대부분 이뤄지지 않았고 이뤄지더라도 그 내용을 잘 알 수 없는 추상적인 것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3) 입학식과 졸업식, 체육대회, 현장학습의 경우 종립학교는 대부분 학교의 공식방침으로 종교의식을 하고 있다. 조희나 종례 등의 경우는 학교의 공식적 방침보다는 교사의 재량에 의하여 종교의식이 이뤄지고 있다.

(4) 종교과목의 대체교과가 개설된 경우가 적으며, 개설되더라도 학교에서 수강을 하지 않기를 바라거나 다른 학교에 가서 수강하도록 하여 실질적으로 선택권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5) 대체로 일반적인 종교교육(종교학 교육)에 대해서는 학생과 교사 모두 찬성하는 비율이 높다.

(6) 종교교육의 선택권은 학생과 교사 모두 대체로 찬성하고 있다.

(7) 종교교육을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교사의 경우 불교, 개신교와 천주교 모두 반대의견이 높게 나타나나 천주교가 가장 높게 나타난다.

(8) 종립학교의 교사의 채용 등과 관련하여 종교적 조건을 채용조건으로 하는 경우는 불교와 개신교의 경우 나타나나 면접과정에서는 종교에 관한 질문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제5장 결론

1. 종교적 차별 폐지의 필요성

교육기본법 제6조 제2항에서는 헌법상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의 원칙에 근거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학교에서는 특정한 종교를 위한 종교교육을 실시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공립학교에서 특정종교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금지되지만, 사립학교에서의 종교교육은 선교활동의 차원에서 인정되는 것¹¹³⁾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해석은 종교단체에서 설립한 중등학교 또는 대학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강제적으로 종교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로 이해되고 있으며, 지금까지 종교단체 또는 종교인이 종교이념에 따라 설립·운영하는 사립학교에서 종교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정당한 것이며, 그 결과 종교교과 또는 과목의 미이수로 인한 불이익을 학생이 감수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이해되어 왔다. 숭실대학교에 입학한 학생이 채플과목을 이수하지 않아 졸업하지 못하여, 학위수여청구를 구한 소송에서 대법원이 사립대학의 대학의 자율성과 종교교육의 자유를 들어 청구를 기각한 사건¹¹⁴⁾은 이러한 이해의 전형을 보여준다. 그러나 종교교육을 목적으로 설립된 종립학교에서도 학생의 학교선택권이 보장되지 않은 채 종립학교에 배정된 학생의 의사에 반하여 종교교육을 강제적으로 실시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학교에서 학생은 강제적인 종교교육을 거부할 수 있으며, 종교교육을 거부한 학생에 대하여 제적 등 제재를 가하는 것은 비교육적이며 종교적 진리에도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위법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학생의 학교선택권과 학교의 학생선발권이 보장된다 하더라도 종립학교에서의 종교교육의 자유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고 생각한다. 학생의 의사에 반하는 고백적 행위를 요구하는 신앙교육 위주의 종교교육은 종교교육의 헌법적 한계를 넘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아가 종립학교 내에서 다른 종교를 가지거나 종교를 갖지 않은 학생 또는 종교는 같으나 다른 신학적 태도나 종교적 고민을 하는 학생에게 징계 또는 학교생활에서의 불이익한 대우를 하게 됨으로써 종교적 차별이 된다.

아직까지 학교 내에서는 그 학교가 종교계일 경우 학교의 설립이념에 따른 종교교육을 학생의 의사에 반해서도 실시할 수 있고, 종교의식도 자유롭게 거행할 수 있다

113)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4, 483-484면도 같은 취지.

114) 대법원 1998. 11. 10. 선고, 96다37268 판결(학위수여이행청구).

고 생각하고 이를 거부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교육의 차원에서 징계 또는 불이익을 부과할 수 있다는 생각이 퍼져 있다. 그러나 이는 앞에서 살펴봤듯이 헌법에서 보장하는 학교의 종교교육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이며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금지하는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학교 내에서 종교적 차별을 폐지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는다.

첫째, 헌법이 보장하는 학생의 종교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여야 할 의무를 지며, 이는 사인에 의한 침해로부터의 침해에 대한 보호까지를 포함하는 것이다. 중립학교에서의 차별행위와 종교의 자유 침해를 구제하는 것은 종교의 자유와 평등권을 보장하는 데 기여한다. 국교가 인정되는 독일에서도 아동종교교육법(Gesetz über die religiöse Kindererziehung) 제5조에서 어린이가 14세가 되면 종교적 신앙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며, 12세가 되면 지금까지 해오던 것이라도 그의 다른 종교적 신앙에 기초한 의사에 반하여 종교적 교육을 할 수 없다¹¹⁵⁾고 규정하고 있는 것도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12세면 중학교 1학년, 14세는 중학교 3학년 정도에 해당하는 나이이다. 그만큼 중학교 이상의 교육과정에서 종교적 신앙에 대한 선택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학생들의 자유로운 사고와 종교적 다양성을 통하여 학생들의 인격적 성장에 도움이 된다. 감수성이 예민한 중고등학교 시절에 자신의 의사에 반하는 종교교육을 받는 것은 인격적 성장에 바람직하지 않다. 받아들일 수 없는 진리를 강요하는 것은 거짓말을 강요하거나 가르치는 것밖에는 안 된다는 점에서, 진리적 신앙에 반하며 결코 교육적이지도 않다. 받아들이길 거부하는 교리를 주입할 수도 없으며, 교인으로 만들 수도 없고 오히려 더 적대적으로 만들기도 한다.

셋째, 종교의 자유와 다른 종교에 대한 존중과 관용을 가르치고 배움으로써 다종교 사회에서 조화로운 공존과 종교적 갈등의 해소에 기여한다. 영국에서 미션스쿨에서 다른 종교도 가르칠 것을 종교 간에 합의¹¹⁶⁾한 것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115) Gesetz über die religiöse Kindererziehung §5 Nach der Vollendung des vierzehnten Lebensjahrs steht dem Kind die Entscheidung darüber zu, zu welchem religiösen Bekenntnis es sich halten will. Hat das Kind das zwölfte Lebensjahr vollendet, so kann es nicht gegen seinen Willen in einem anderen Bekenntnis als bisher erzogen werden.

116) 중앙일보 2006. 2. 23.자 보도. <英 미션스쿨서 다른 종교도 가르친다> “영국에서 종교적 색채를 띠고 있는 학교들은 종교적 편견에 대처하기 위해 자신들이 믿고 있는 종교는 물론 타종교의 기본 교리도 교과과정에서 서로 가르치기로 22일 약속했다. 성공회, 힌두교, 시크교, 가톨릭교, 이슬람교, 유대교, 불교 등 종교계 지도자들은 이날 타종교 교육을 골자로 하는 합의문에 서명하고 이번 약속은 ‘타인에 대한 존중심을 배양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제까지 일부 종교재단이 운영하는 학교에서는 자신이 믿는 종교 이외의 종교도 가르쳤으나 법률적인 강제 규정없이 어디까지나 자율적으로 타 종교에 대한 이해교육을 실시해왔다. 종교 지도자들은 합의문

종교교육은 필요한 것이다. 일반적인 종교에 대한 이해와 고등종교의 큰 줄기를 이해하는 것도 필요하다. 더 나아가 특정한 종교의 체계적인 교리를 공부하고 삶에 대한 깊은 이해를 도모함은 매우 소중하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세속국가이며, 종교적 다원사회이다. 특정한 종교교육은 다른 믿음을 가진 사람을 배척하여서는 안 되며 종교적 관용의 자세를 갖추도록 방향을 설정하여야 한다. 종립학교에 대하여 종교과목을 필수로 하지 말고 다른 교과와 선택할 수 있게 한다 하여 헌법상 종립학교의 종교교육의 자유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대다수의 학생은 더 자발적으로 진지하게 종교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종교교육을 더욱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현재의 교육현실에서 학생의 종교의 자유와 조화롭게 교육을 할 수 있는 제도이며 나아가 종교교육을 더욱 잘 할 수 있게 한다고 생각한다.

2. 학교 내 종교적 차별 폐지를 위한 개선방안

1) 종교 차별 개념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

인권의 관점에서 종교 차별 개념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공직자의 언행에서 종교 편향적인 것은 물론 정책 집행에서까지 종교 차별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제기될 정도이다. 인권위원회는 종교 차별에 대한 진정 사건이 없다고 해도 각 영역에서 무엇이 종교 차별인지 알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다만 종교 차별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충분히 논의되지 않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엄격한 개념 정의를 내리기보다 종교 자유 관점에서 기존의 관행을 비판적으로 성찰하면서 점차적으로 종교 자유에 대한 인식을 넓히면서 종교 차별의 개념을 정립해나가야 할 것이다.

2) 학교 교육에서 종교 차별의 기준 마련

에서 학교들이 주요 5개 종교의 기본교리를 교육하도록 권장하겠다고 다짐하는 한편 각 과정의 중요 단계에서 가이드라인과 전국적인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합의문에는 또 "학생이 14세에 이를 때까지 기독교 및 영국 국내에서 활동중인 중요 5개 종교를 심도있게 배우도록 해야 한다"는 대목도 포함되어 있다. 영국에서 기독교 이외의 중요 5개 종교는 유대교, 이슬람교, 힌두교, 시크교, 불교 등을 일컫는다. 종교 지도자들은 이어 종교 교육은 학생들에게 정체성과 소속감을 일깨워주며 개인적으로는 물론 다양한 사회와 글로벌 경제 시대의 시민으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지적했다. 영국에는 국가의 통제력이 미치는 학교가 2만2천여개에 이르는데 이 가운데 7천여 개가 종교적 색채를 띠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http://news.joins.com/internatio/200602/23/20060223092154183_2400046004610.html, 2006. 3. 10. 검색)

한국 사회에서 종교의 자유에 대한 인식 정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특히 학교 교육에서 종교의 자유의 문제를 재검토하고 그 판단기준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공감과 동의 그리고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이때 종립학교의 경우 설립재단의 종교 교육의 자유와 학생의 종교 자유와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가 매우 중요한 관건이다. 다만, 종교인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에서는 자유로운 종교 교육이 당연히 보장되어야 한다.

(1) 학교 교육에서 종교 교육의 기준 마련

개인이 자신의 종교를 다른 이에게 선교하는 것과 종립학교법인이 학교제도를 통해 일반 학생에게 특정 종교를 교육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이다. 그것은 한국 사회에서 사립학교가 차지하는 위상이 다른 나라와 매우 다르다는 점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실제 설문조사에서 학생들은 종교와 무관하게 학교의 평판, 통학 거리, 대학 진학 등을 고려하여 학교를 선택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다만, 단순히 중등교육에서 추첨에 의한 배정 때문이 아니라 대학까지 포함하여 학력 자체가 개인에게 가지는 사회적 의미를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학교 교육에서 종교 교육을 하고자 한다면 종교 일반에 대한 교육이 되어야 할 것이다. 만약 특정 종교에 대한 교과목 이름을 가지고 교육을 하고자 한다면, 학생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을 보장하여야 할 것이다.

(2) 학교에서 종교 행사의 허용 기준

학교의 공식적 행사에서 종교 의식은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종립학교의 경우 60.6%가 종교 의식을 거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식적인 종교 의식 외에 사적 종교 활동은 당연히 허용되어야 한다. 이때 학교는 교사나 학생의 자유로운 사적인 종교 활동을 차별 없이 보장해야 한다.

(3) 종교 문제에 관한 상담실 운영

학교에서의 종교 문제를 상담할 수 있는 상담실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한국 사회에서 종교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종교 갈등이 증폭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원하는 학생 또는 교사에 대하여 학교에서의 종교 문제를 상담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이러한 상담실은 종교 문제에 한정하지 않고 학교에서의 인권 문제 전체를 포괄할 수도 있을 것이다. 다만 그 상담 사안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종교 문제에 관하여 별도의 상담실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4) 학생의 종교적 요구에 따라 학교배정에 고려

학교배정 참여시 학생의 종교에 따라 특정 종립학교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나아가 비단 종립학교가 아니더라도 사학비리가 있거나 교육풍토가 좋지 못하다고 생각되는 등 여러 사유로 학생이 배정을 거부할 학교를 지정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학생이 학교배정에 참여할 경우 종립학교는 특히 학생들의 선택의 자유를 신장시키기 위하여 학교에서 실시하는 종교교육의 내용과 방식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하여야 할 것이다.

(5) 입학 후 전학제도

학생이 학교를 선택할 때 아무리 종립학교에서 설명을 잘한다고 하여도 입학 후 겪는 교육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 경우는 입학 후 일정 기간 안에 학생에게 전학요구권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평준화제도 아래서 자칫 종립학교 학생모집에 문제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조심스러운 부분이다. 그러나 올바른 종교교육은 다른 신앙을 가진 사람도 포용할 수 있는 것이므로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6) 소결

평준화를 유지하면서 종교적 자유가 보장되게 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종립학교의 종교교육의 자유를 인정하되 종교교육과 다른 대체교과목을 필수적으로 복수 개설하도록 하여 학생들이 굳이 종교교육거부라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자신의 종교적 신앙을 침해당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 생각된다. 종교교과 대체 과목을 복수로 개설하고 종교의례에 참석치 않을 권리를 보장하여야 할 것이다.

3) 학생에게 학교선택권이 인정될 경우(평준화 폐지)의 문제와 해결방안

평준화를 폐지할 경우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선택권이 보장되어 종립학교를 선택하거나 거부하는 것이 매우 자유롭게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 학생과 학교의 관계는 계약관계로도 평가할 수 있는 것이어서 학교는 학생에게 입학 시 서약한 대로 종교교육을 받으라고 요구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어, 학생의 지원과 학교에 의한 선발제도 아래서는 학교가 종교교육을 강제로 실시할 수 있다는 주장¹¹⁷⁾도 있다.

117) 손봉호, “사립학교와 종교의 자유,” 제18회 국회인권포럼 정기심포지움 주제발표문, 2004. 8. 31. 참조. 이러한 입장은 종립학교의 기본적인 태도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첫째, 입학 시에 입학요강이나 학교의 설명만으로 학교에서 실시하는 종교교육의 실상을 제대로 알았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 현실의 모습이라는 점, 둘째, 학생이 입학 당시 종교교육을 받기로 하였다고 하여도 신앙은 변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그 종교를 믿는다고 하더라도 회의를 가질 수 있는 것이므로 모든 순간 변함없이 종교교육을 받아야만 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셋째, 종립학교가 종교단체는 아니며 교육기관의 성격이 일차적이므로 종교단체 안에서와 같은 또는 더 강한 종교적 규율을 요구할 수는 없다는 점, 넷째, 종교의 문제는 인간 실존의 근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굴복을 요구하는 것은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 다섯째, 종교교육을 거부하는 학생이라도 학교의 질서를 어지럽히지 않는 한은 종교적 관용을 보여주는 것이야말로 참된 종교교육이라는 점에서 단순히 종교교육만을 거부한 것만을 이유로 제재를 가하거나 나아가 학생에게 전학을 요구할 수도 없다고 본다.

(1) 종립학교의 설명의무

종립학교는 학생선발권을 가지더라도 종교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학교의 종교교육의 원칙과 구체적인 내용을 입학 전 학생에게 알림으로써 학생들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종교교육에 동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단순히 종교적 이념에 설립되었고 그 이념에 따라 교육한다는 원칙적 선언만으로는 학생의 입학이 종교교육에 동의한 것으로 보기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2) 종교의례 강요 금지

학생이 종교교육에 동의하여 입학하였다 해도 앞에서 말한 이유로 언제나 변함없이 종교교육을 받아야 하고 거부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적어도 학생의 의사에 반하여 종교의례에 참석하도록 강요할 수 없으며 이를 이유로 어떠한 제재(전학 요구도 포함)를 가할 수도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종교교육 선택권 보장과 대체교과목 개설

아무리 종립학교라 해도 종교과목은 다른 대체선택가능한 과목과 복수로 개설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복수과목을 개설하여 학생의 선택의 폭을 넓혀주는 것은 학교의 종교교육을 보다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기초가 된다고 할 수 있다. 다만 특정 종교를 중심으로 신앙이나 의례의 이행 목적이 아니라 문화적 차원에서의 이해를 도모하기 위한 약한 정도의 종교체험을 하도록 한다면 선택교과를 개설하지 않았다 해도 위

현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4) 소결

평준화제도가 시행되거나 평준화제도가 폐지되더라도 종교의례를 강요하는 것은 인정되어서는 안 되며, 이를 거부하는 학생을 위한 대체교과가 반드시 개설되어야 한다. 대체교과 개설을 형식적으로 하거나 실질적으로 종교교과목 선택을 강요하는 것은 금지되어야 한다. 대체교과가 개설되었을 경우 대체교과목 수업을 방해하거나 폐강을 유도하여서는 안 된다. 또한 종교교과목에 비하여 과도한 공부의 부담을 줘서는 안 된다.

4) 차별금지법의 제정

학교 내의 종교적 차별에 대한 개별적 접근보다는 사회 전반에 걸쳐 일반적인 차별 금지법의 제정이 필요하다. 그동안 남녀차별을 금지하는 단행법이나 개별 법률조항이 마련되어 왔으나 이제는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걸쳐 성별·종교·사회적 신분 등에 의한 차별을 금지하는 구체적인 내용의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어야 할 시점이다. 이 법률안은 2005년에 국회에 제출되었다가 폐기된 예가 있다.

5) 마치며

지금까지 종립학교를 포함한 중·고등학교에서 이뤄지는 종교적 차별의 실태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개선방안에 대해 살펴보았다. 짧은 날 종립학교에서 인간과 세계의 문제를 진지하게 고민할 수 있는 종교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축복이다. 하지만 그것이 학생의 신념에 반하여 신앙을 강요하는 구실로 여겨져서는 안 된다. 어떠한 진리도 강요될 수 없는 것이다. 받아들일 수 없는 진리를 강요하는 것은 거짓말을 강요하거나 가르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종립학교 하면 그 종교의식 참여와 교리교육을 연상하지만, 학생의 의사에 반하는 종교교육은 더 이상 합헌적이라고 볼 수 없다.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면서 종교적 차별행위가 된다. 교육기관에서의 종교교육강제 정도가 종교단체 안에서보다 강할 수도 없다. 지금까지 종립학교에서는 특정종교의 선교목적의 교육을 강제할 수 있다는 고정관념이 존재하여 왔다. 그러나 어떠한 종교도 사람의 신념에 반하여 종교고백이나 의례를 강요할 수는 없으며, 이는 입학하면서

학교교육방침에 순응하기로 서약했다 하여도 마찬가지이다. 종교인의 양성은 학교가 아니라 종교단체의 몫이다. 종교교육의 방식을 바꾸는 것은 종립학교로서는 매우 내키지 않는 일이겠지만, 종래의 종립학교의 종교교육방식은 학생의 기본적 인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재정비되어야 한다. 이러한 변화가 종립학교의 종교교육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대다수의 학생은 더 자발적으로 진지하게 종교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종교교육을 더욱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신앙고백적 종교교육은 종교의 자유 침해와 차별의 문제를 가지므로 종교교육은 종교학 교육이나 영성교육 또는 성찰적 종교교육으로 방향을 수정하여야 할 것이다. 종교 일반에 대한 이해나 개인의 내면을 살피우는 종교적 체험이나 성찰은 오히려 필요하다. 이는 이미 교육과정에 반영된 것이기도 하다. 교육과정의 취지에 따라 학생이 특정 종교의 신앙을 갖게 하려는 교육을 지양하여야 한다. 이 조사에서도 드러나듯이 다수의 종립학교에서 실시하는 것과 같이 학생의 의사에 반한 종교교육방식은 더 이상 인정되어서는 안 된다. 기본적으로 특정종교의 신앙 또는 의례를 그 내용으로 하는 교과를 학생의 의사에 반하여 필수적으로 이수하라고 요구할 수는 없으며 다른 대체가능한 교과목이 반드시 복수로 개설되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강위조, 일본 통치하 한국의 종교와 정치, 대한기독교서회, 1977.
- 계희열, “헌법상 종교의 자유,” 헌법논총 제8집, 헌법재판소, 1997.
- 고병철, 한국중등학교의 종교교과교육론, 박문사, 2012.
-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11.
- 김승환 외 1인(백제법무법인), 양심·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법령과 관행의 개선에 관한 연구, 국가인권위원회, 2004. 8.
- 김유환, “초·중등학교 종교교육의 문제점과 해결방향,” 공법학연구 제9권 제1호, 한국비교공법학회, 2008. 2, 305-322.
- 김진 외 1인, 차별판단지침에 대한 외국사례 조사(연령·종교·전과), 국가인권위원회, 2006.
- 김철수, 학설·판례 헌법학(상), 박영사, 2008.
- 김철수, 헌법학신론(제20진정신판), 박영사, 2010.
- 김형배, 노동법(신판), 박영사, 2004.
- 류성민, “한·미·일 삼국의 종교정책과 종교교육 비교,” 강돈구 외, 종교교육 비교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문화와종교연구소, 2009.
- 류성민 외 1인, 외국(영, 미)의 종교교육제도 개선사례 연구, 문화체육관광부, 2011. 12.
- 문화관광부, 종교관련법 조사 및 입법방향 연구, 2004.
- 문화체육관광부, 공직자종교차별 예방업무 편람, 문화체육관광부, 2008.
- 민경배, 한국기독교회사, 대한기독교출판사, 1982.
- 박홍우, 미국헌법, 사법연수원, 2005.
- 성낙인, 헌법학(제11판), 법문사, 2011.
- 손봉호, “사립학교와 종교의 자유,” 제18회 국회인권포럼 정기심포지움 주제발표문, 2004. 8. 31.
- 손희권, “종교계 사립대학에서 교수 신규 채용 조건으로서 특정 종교 요구의 헌법적합성 검토”, 교육행정학연구 제24권 제4호, 2006.
- 송기춘, “미군정기 및 대한민국 건국 초기의 종교 관련 제도의 정립과 관련한 헌법적 논의,” 법과 사회 제24권, 2003. 6.
- 송기춘, “우리 헌법상 종교의 개념: 미국연방대법원의 판례를 참고하여,” 헌법학연구 제5권 제2호, 1999.10.
- 송기춘, “중립학교에서의 종교교육과 학생의 종교의 자유: 평준화지역의 중등학교를 중심으로,” 공법연구 제33집 제1호, 한국공법학회, 2004. 11.

- 송기춘, “종교 관련 제도의 헌법적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 헌법학연구 제12권 제5호, 한국헌법학회, 2006. 12.
- 송기춘, “종교계 대학교의 교원 임용과 종교적 사유에 의한 차별,” 민주법학 제41호, 민주주의법학연구회, 2009. 11, 219-254.
- 송기춘, “고용관계에서의 종교적 차별의 금지: 사인간의 관계에서의 종교의 자유 보장에 관한 미국 실지조사연구,” 헌법학연구 제16권 제1호, 한국헌법학회, 2010. 3.
- 송기춘, “직원의 종교적 요구에 따른 사용자의 업무상 배려의무: 미 연방 인권법 규정의 해석을 중심으로,” 세계헌법연구 제16권 제3호, 2010. 8.
- 송기춘, “‘국가조찬기도회’의 헌법적 문제,” 헌법학연구 제18권 제1호, 한국헌법학회, 2012. 3.
- 송기춘, “사립대학에서의 학생의 인권보장을 위한 헌법적 논의,” 금량 김철수 교수 팔순기념논문집 간행위원회 편, 헌법과 기본권의 현황과 과제, 2012.
- 오경환, 종교사회학, 서광사, 1982.
- 윤이흠·조홍윤 등, 한국인의 종교, 문덕사, 1994.
- 이기우, “고등학교 평준화제도에 대한 헌법적 검토와 입법정책적 제언,” 최대권/정인섭 편, 고교평준화, 사람생각, 2002.
- 이영진, “종교의 자유의 한계와 정교분리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법학박사 학위논문, 1998.
- 이희승 편저, 국어대사전, 민중서림, 1994.
- 임지봉, “미국 헌법상의 정교분리원칙,” 미국헌법연구 제18권 제2호, 2007. 9, 301-332.
- 정상우/ 박종원/ 송기춘/ 신옥주/ 조소영, 공직자의 종교편향 방지를 위한 법제도·정책 기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08.
- 정종섭 외 2인(서울대 산학협력단), 국내외 종교차별 사례연구, 문화체육관광부, 2009. 12.
- 최대권, 헌법학: 법사회학적 접근, 박영사, 1989.
- 최대권, 헌법학강의, 박영사, 1998.
- 최종고, 국가와 종교, 현대사상사, 1983.
- 최종고, “한국에 있어서의 국가와 종교,” 계간경향 사상과 정책 제1권 제3호, 1984. 6.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통계청, 2005.
- 한상희, “종교에 의한 교수임용상의 차별문제,” 종교재단 학교의 교직원 신규채용관행, 어떻게 볼 것인가(국가인권위원회 주최 토론회 자료집), 2006. 7. 12.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대한교육법학회 주최, *중등사학의 자율성과 공공성: 독일, 벨기에, 한국, 중국, 일본의 국제비교*, 한양대학교, 2012. 10. 9.
허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2006.

Brown, D. M. 편, *The Ultimate Concern*, 이계준 역, 궁극적 관심, 대한기독교서회, 1971.

Belton, Robert/ Avery, Dianne/ Ontiveros, Maria L./ Corrada, Roberto L., *Employment Discrimination Law*, 7th ed.; Thomson West, The Labor Law Group, 2004.

Eliade, Mircea, *Cosmos and History*, 정진홍 역, 우주와 역사, 현대사상사, 1979.

Otto, Rudolf, *Das Heilige: über das Irrationale in der Idee des göttlichen und sein Verhältnis zum Rationalen*, 윤성범 역, 종교입문, 을유문화사, 1991.

Tillich, Paul, *Systematic Theology Vol. I(Reason and Revelation, Being and God)*, Chicago University Press, 1951.

부 록

<부록 1> 중고등학교 학생용 설문지

2012 국가인권위원회 종교에 의한 차별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용역 설문지(중·고등학생용)

안녕하십니까?

이 설문조사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종교에 의한 차별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의 일환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학교에서 종교적인 의식이나 교육 등으로 인하여 불편했던 적은 없는지, 만약에 불편한 점이 있었다면 그것이 어떤 경우이고 또 어느 정도인지를 조사하는 것입니다. 조사결과에 따라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연구하려 합니다.

이 조사는 누가 어떤 답을 했는지 밝히지 않고 이루어지며, 조사결과는 질문에 대한 답이 몇 %라는 수치로만 공개됩니다. 당연히 학교 안에서 조사결과의 비밀도 유지됩니다.

평소 느끼고 생각하였던 바대로 솔직하게 응답해 주시면 이 연구에 귀중한 참고자료가 될 것이며 우리나라의 종교적 차별을 시정하는 데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바쁜 시간을 내어 설문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시행기관 : 종교자유정책연구원(비영리 민간단체)
- 연구책임자 : 송기춘(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시행일자 : 2012. 11. 5. ~ 11. 30
- 문의처 : 종교자유정책연구원(02-2278-1141)
- 대 상 : 중·고등학생
- 홈페이지 : www.kirf.or.kr

※ 해당하는 칸에 로 표시하거나 직접 써주십시오.

1. 귀하는 어떠한 형태의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까? (**종교계 사립학교**란 불교, 기독교, 원불교 등 특정 종교의 이념에 기초하여 설립된 학교를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설립이념인 종교의 의식을 거행하고 종교교육을 실시합니다. 설립이념이 종교가 아니면 **비종교계 사립학교**이지만 이 경우에도 이사장이나 학교장 또는 교사의 종교에 따라 종교의식을 허가나 종교교육을 하기도 합니다.)

- ① 국·공립학교 ② 비종교계 사립학교 ③ 종교계 사립학교 ④ 잘 모르겠다

1-1. (종교계 사립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만 답해 주십시오.)

귀하가 다니는 학교의 종교이념은 무엇입니까?

- ① 불교 ② 개신교 ③ 천주교 ④ 유교 ⑤ 원불교 ⑥ 대순진리회
⑦ 천도교 ⑧ 대종교 ⑨ 기타 ()

2. 귀하가 다니는 학교는 어떤 지역에 있습니까?

- ① 평준화지역 ② 비평준화지역

3. 귀하는 현재 다니고 있는 학교에 강제로 배정된 것이 아니라 귀하가 선택한 것입니까?

- ① 그렇다 ② 아니다 ③ 잘 모르겠다

3-1. (종교계 사립 고등학교 학생만 답해 주십시오.)

귀하가 고등학교에 진학할 때 귀하가 이 학교를 선택한 이유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2 가지 이상 선택 가능합니다.)

- ① 학교의 종교적 분위기가 좋고 종교교육을 받고 싶어서
② 부모의 종교와 같아서
③ 나의 종교와 같아서
④ 대학에 진학하는 데 유리해서
⑤ 학교에 대한 사회적 평판이 좋아서
⑥ 집에서 가까워서
⑦ 선택할 수 있는 학교가 달리 없어서
⑧ 기타()

4. 귀하가 다니는 학교 안에 법당이나 예배당 등 종교 시설이 있습니까?

- ① 있다 ② 없다 ③ 모르겠다

5. 귀하가 다니는 학교 안에 종교적 상징물(불상, 예수상, 십자가, 종교인 동상 등)이 있습니까?

- ① 있다 ② 없다 ③ 모르겠다

5-1. (5번 문항에 “① 있다”고 답한 학생만 응답해 주십시오.)

귀하가 다니는 학교 안에는 불교, 기독교(개신교와 천주교 포함), 유교, 원불교, 대순진리회, 천도교, 대종교 등 가운데 두 가지 이상 종교에 관련되는 종교적 상징물이 함께 있습니까?(예를 들어, 부처님상과 예수상이 함께 학교 안에 있거나, 기독교를 상징하는 십자가와 불교를 나타내는 근자가 함께 있다거나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① 있다 ② 없다 ③ 모르겠다

6. 귀하가 다니는 학교에서 불교, 기독교(개신교와 천주교 포함), 유교, 원불교, 대순진리회, 천도교, 대종교 등 종교 가운데 두 가지 이상의 종교에 대해 대등한 비중으로 배운 적이 있습니까?

- ① 있다 ② 없다 ③ 모르겠다

7. 귀하가 다니는 학교의 교직원(교장, 교사, 직원 등)이 학생들이 참석한 공식적인 자리(수업, 행사 등)에서 다른 종교나 종교인에 대해 근거가 없이 나쁘게 말하거나 편견을 나타낸 적이 있습니까?

- ① 있다 ② 없다 ③ 모르겠다

8. 귀하가 현재 다니고 있는 학교의 입학식, 졸업식 등 학교의 공식행사나 수업 등 교육과정에서 종교의식(예. 법회, 예배, 기도 등)을 거행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있다면 얼마나 자주 합니까?

다음 행사 가운데 종교의식을 얼마나 자주 거행하는지에 대해 답해 주십시오.

언제나: 행사를 할 때 항상 종교의식(법회, 예배, 기도 등)을 거행한다.
대부분: 행사를 할 때 항상 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경우 종교의식을 거행한다.
가끔: 행사를 할 때 대부분 종교의식을 하지 않지만 하는 경우도 가끔 있다.
없다: 행사를 할 때 종교의식을 하지 않는다.)

번호	학교 행사	언제나	대부분	가끔	없다
1	입학식, 졸업식				
2	학급 조회				
3	종례				
4	종교 교과 수업				
5	(종교 교과 이외의) 수업				
6	체육대회 또는 축제				
7	현장학습				
8	명상 또는 경건회				
그 밖에 사례가 있으면 기록해 주십시오.					
9					
10					
11					

귀하의 종교가 학교의 설립이념인 종교와 다르다는 것을 학교 또는 교사에게 알리면 각종 종교행사에 참여하지 않아도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습니까?

- ① 그렇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모르겠다

12. 귀하가 다니는 학교에서 진행되는 종교의식이나 수업 등에 참여하지 않았거나 불성실하게 임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습니까?

- ① 있다 ② 없다 ③ 모르겠다

12-1. (12번 문항에 “있다”고 답한 학생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교의식 불참 또는 불성실한 태도를 이유로 불이익을 입을 경우 어떠한 불이익을 받습니까? (모두 골라 주시기 바랍니다.)

- ① 학교의 공식적인 징계
② 학급 또는 담당교사가 정한 벌금 또는 봉사
③ 체벌
④ 교실 뒤에 서 있기 등 간접적 체벌
⑤ 공식적 종교행사 이외의 다른 종교행사 의무적 참석확인
⑥ 장학금이나 혜택 대상에서 제외
⑦ 기타()

13. 귀하의 학교에서 진행되는 공식적인 종교행사에 학생이 참석하는지 또는 성실하게 임하는지를 교직원이 검사합니까?

- ① 그렇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모르겠다

14. 귀하가 다니는 학교의 교사(종교 교과 및 비종교 교과 교사 모두 포함)가 성경이나 불경 등 종교경전의 구절을 외우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 ① 있다 ② 없다 ③ 모르겠다

15. 종교기념일이나 종교행사를 할 때 돈이나 물품을 내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 ① 있다 ② 없다 ③ 모르겠다

15-1. (15번 문항에 “있다”고 답한 학생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교기념일이나 종교행사를 할 때 돈이나 물품을 걷은 경우 그것을 누가 관리합니까?

- ① 학교
② 종교교과 담당 교사 또는 책임교사
③ 학생회
④ 종교 담당 학생회 간부
⑤ 학급

⑥ 모르겠다

15-2. (17번 문항에 “있다”고 답한 학생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교의식이나 종교행사 때 걷은 돈이나 물품의 사용 결과를 알려주니까?

① 그렇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모르겠다

16. 귀하가 다니는 학교에 종교교과가 개설되어 있습니까?

① 그렇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모르겠다

16-1. (종교교과가 개설되어 있는 학교의 학생만 답해 주십시오.)

종교 교과목의 수강은 자신의 선택에 따라 수강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① 그렇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모르겠다

16-2. (종교교과가 개설되어 있으나 이 교과목 대신에 다른 교과목을 선택할 수 있는 학교의 학생만 답해 주십시오.)

귀하의 학교에서 종교교과목 대신에 선택할 수 있는 교과목은 몇 과목이나 됩니까?

① 1과목 ② 2과목 ③ 3과목 ④ 4과목 이상

16-3. (종교교과가 개설되어 있으나 이 교과목 대신에 다른 교과목을 선택할 수 있는 학교의 학생만 답해 주십시오.)

귀하의 학교에서 종교 교과목 이외의 대체과목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까?

① 그렇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모르겠다

16-4. 종교교과목의 대체과목을 수강하는 자유롭지 않다면 어떠한 이유 때문입니까? (2 가지 이상 선택 가능합니다.)

① 종교 교과목의 수업에 비하여 수업출석이나 성실한 태도 등을 더 엄격하게 요구한다

② 과제물이 더 많다

③ 학교에서 대체과목의 수강을 제한하여 폐강을 유도한다

④ 기타()

16-5. 종교교과목의 대체과목의 개설에 관하여 학생들의 의견을 듣습니까?

① 그렇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모르겠다

17. (종교계 사립 고등학교 학생만 답해 주십시오.)

귀하가 고등학교에 지원할 때 학교측에서 재학중 종교교육을 실시한다는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까?

- ① 있다 ② 없다 ③ 잘 모르겠다

17-1. (17번 문항 ①에 답한 종교계 사립 고등학교 학생만 답해 주십시오.)

귀하가 고등학교에 지원할 때 학교측에서 재학중 종교교육을 실시한다는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까?

- ① 상세하게 설명하였다
 ② 종교교육을 한다고만 포괄적으로 설명하였다
 ③ 설립이념이 특정 종교라고만 설명하였다
 ④ 설립이념이 특정 종교라고 설명한 적이 없다
 ⑤ 잘 모르겠다

18. 귀하가 고등학교에 지원할 때 또는 입학한 후 학교로부터 학교의 종교교육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선서·서약을 요구한 적이 있습니까?

- ① 있다 ② 없다 ③ 잘 모르겠다

19. 귀하가 다니는 학교는 입학 전 또는 입학 직후에 설명한 대로 종교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 ① 그렇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모르겠다

19-1. (19번 문항에 “그렇지 않다”고 답한 분들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학 전 설명한 종교교육의 내용과 다른 것은 무엇입니까? (2 가지 이상 선택할 수 있습니다.)

- ① 입학 전 설명을 전혀 하지 않았는데 종교교육과 종교의식을 진행한다
 ② 학교에서 종교교육을 한다고 설명했지만 예상했던 종교교육의 범위를 넘어선다
 ③ 종교교육의 내용으로 설명한 것 이외에도 종교교육이나 의식이 실시된다
 ④ 종교교육이 강제적으로 실시된다
 ⑤ 다른 종교를 가진 학생에 대해 고려하지 않는다
 ⑥ 기타()

20. 귀하의 학교에서 학생회 임원 등의 자격을 특정 종교를 가지거나 특정 종교에 속한 단체에 일정 기간 이상 출석한 사람으로 제한하고 있습니까?

- ① 그렇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모르겠다

21. 귀하의 학교에서 동아리 활동에 대한 시설, 예산 등의 지원에서 종교를 이유로 다르게 대우한 적이 있습니까?

- ① 그렇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모르겠다

22. 귀하의 학교에서 학생자치활동(학생회 또는 동아리 등)에서 특정 종교 활동에 대해서만 혜택을 제공한 적은 없습니까?

- ① 있다 ② 없다 ③ 잘 모르겠다

23. 귀하의 학교에서 학생자치활동(학생회 또는 동아리 등)에서 특정 종교 활동을 금지하거나 그러한 활동에 대해 불이익을 주는 경우는 없습니까?

- ① 있다 ② 없다 ③ 모르겠다

24. 귀하의 학교에서 학생의 종교에 따라 기숙사 입실 또는 장학금 배정 등에서 특정 종교를 믿는 학생을 우대하거나 차별한 적은 없습니까?

- ① 있다 ② 없다 ③ 모르겠다

25. 귀하의 학교에서 위에서 언급한 것 이외에 종교로 인한 차별이라 할 수 있는 사례가 있으면 아래에 적어 주십시오.

26. (위 질문에 종교로 인한 차별이 있다고 답을 한 학생만 답해 주십시오.)

귀하의 학교에서 종교로 인하여 차별을 받은 경우 어떠한 불이익 또는 제재(징계 등)를 받았는지 아래에 적어 주십시오.

27. 귀하는 귀하의 학교에서 실시하는 종교의식이나 행사, 또는 종교교육에 대한 다음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각 항목마다 선택)

번호	항목	①매우 찬성	②다소 찬성	③보통 이다	④다소 반대	⑤매우 반대
1	학교에서 종교교육이나 의식 등을 하는 것은 문제 없다.					
2	학교에서 종교교육이나 의식 등에 참여할지 말지 선택권을 주어야 한다.					
3	학교에서는 어떠한 종교 교육이나 의식도 하지 말아야 한다.					
4	학교에서는 특정 종교만이 아니라 모든 종교를 함께 가르쳐야 한다.					

<부록 2> 중고등학교 교원용 설문지

**2012 국가인권위원회
종교에 의한 차별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용역 설문지(교직원)**

안녕하십니까?

이 설문조사는 학교 내 종교에 의한 차별 실태 및 개선방안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연구용역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는 익명으로 처리되며 그 결과는 통계적으로 분석되어 수치로만 공개됩니다.

평소 느끼고 생각하였던 바대로 솔직하게 응답해 주시면 귀중한 참고자료가 될 것입니다.

- 시행기관 : 종교자유정책연구원(비영리 민간단체)
- 연구책임자 : 송기춘(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시행일자 : 2012. 11. 5. ~ 11. 30
- 문의처 : 종교자유정책연구원(02-2278-1141)
- 대 상 : 중·고등학교 교직원
- 홈페이지 : www.kirf.or.kr

※ 해당하는 칸에 √로 표시하거나 직접 써주십시오.

1. 귀하는 자신이 현재 재직하고 있는 학교에서 아래 보기와 같은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까?

번호	보기	예	아니 오	모르 겠음
1-1	채용 당시 특정 종교의 교인 또는 활동에 관한 조건이 있었다.			
1-2	채용 당시 면접 과정에서 종교와 관련된 질문을 받은 적이 있다.			
1-3	교직원 연수를 종교 관련 시설에서 받은 적이 있다.			
1-4	교직원 연수 중 종교적 프로그램을 경험한 적이 있다.			
1-5	학교에서 학내 종교 활동 참여를 요구받은 적이 있다.			
1-6	일과 시간 외에 학교에서 요구하는 종교 활동에 참여해야 한다.			
1-7	종교 활동이 근무평가에 영향을 미친 경험이 있다.			
1-8	학교에서 요구하는 종교 활동에 불참하여 불이익을 받은 경험이 있다.			
1-9	종교적 이유로 학교로부터 돈이나 물품의 기부를 요구받은 적이 있다.			
1-10	학교 재단의 종교와 다른 종교에 대한 폄하 발언을 들은 적이 있다.			
1-11	상사가 종교 활동을 권유하여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종교 활동에 참여한 적이 있다.			
1-12	상사의 종교와 나의 종교가 달라 종교를 밝히지 못한 경우가 있다.			

2. 귀하는 아래 각각의 보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번호	보기	① 매우 그렇다	② 다소 그렇다	③ 보통 이다	④ 다소 그렇지 않다	⑤ 매우 그렇지 않다
2-1	교직원은 근무시간 중 특정종교행사를 주관해서는 안 된다.					
2-2	국·공립학교 안에 종교시설을 뒤서는 안 된다.					
2-3	종교집단 사이의 적대적 감정을 유발하는 행위는 국가가 금지해야 한다.					

3. 귀하는 학교에서 실시하는 **종교의식이나 행사 또는 종교교육**에 대한 다음과 같은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각 항목마다 선택)

번호	항목	①매우 찬성	②다소 찬성	③보통 이다	④다소 반대	⑤매우 반대
3-1	학교에서 종교교육이나 의식 등을 하는 것은 문제없다.					
3-2	학교에서 종교교육이나 의식 등에 참여할지 말지 선택권을 주어야 한다.					
3-3	학교에서는 어떠한 종교 교육이나 의식도 하지 말아야 한다.					
3-4	학교에서는 특정 종교만이 아니라 모든 종교를 함께 가르쳐야 한다.					

4. 본 조사와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아래에 써주십시오.

※ 아래는 통계를 위한 일반사항입니다. 해당되는 1개의 난에 정확히 표시해 주십시오.

5. 귀하의 성별은?

① 남

② 여

6. 귀하의 연령은?

- ① 20대 ② 30대 ③ 40대 ④ 50대 ⑤ 60대 이상

7. 귀하는 교원으로 임용된 지 몇 년이나 되었습니까?

- ① 5년 이하 ② 10년 이하 ③ 15년 이하 ④ 20년 이하 ⑤ 25년 이하 ⑥ 26년 초과

8. 귀하의 근무학교는 다음 중 어디에 속합니까?

- ① 중학교 ② 고등학교

9. 귀하가 근무하는 학교는 어떠한 형태의 학교입니까?

- ① 국공립학교 ② 비종립학교 ③ 종립학교 ④ 기타 ()

10. 귀하가 근무하는 학교재단의 종교는?

- ① 불교 ② 개신교 ③ 천주교 ④ 유교 ⑤ 원불교 ⑥ 대순진리회
⑦ 천도교 ⑧ 대종교 ⑨ 기타 () ⑩ 해당 없음

11. 귀하의 종교는?

- ① 불교 ② 개신교 ③ 천주교 ④ 유교 ⑤ 원불교 ⑥ 대순진리회
⑦ 천도교 ⑧ 대종교 ⑨ 기타 () ⑩ 해당 없음

-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록 3> 중고등학교 학생용 심층면접 질문지

심층면접 질문(중, 고등학교)

본 심층면접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12년 인권상황실태조사로 '종교에 의한 차별 실태와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보조자료로 활용하고자 실시하는 것이니 성의껏 답변 부탁드립니다.

책임연구원 : 송기춘(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연구기관 : 종교자유정책연구원

• 성별: 남 / 여 • 학교: • 학년: • 종교:

1. 우리나라 헌법 상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나요?
 - 1-1. 본인이 생각하는 종교의 자유란 무엇인가요?
2. 본인이 다니는 학교는 종교재단이 설립한 학교인가요?
 - 2-1. 종교재단은 아니지만 특정 종교에 기반을 둔 건학이념을 가지고 있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에 근거한 교육이념을 가지고 있나요?
3. 입학하기 이전에 본인이 다니는 학교 재단은 종교재단이었나요?
 - 3-1. 종교재단이 아니었다면 특정 종교에 기반을 둔 건학이념을 가지고 있었나요?
 - 3-2. 종교에 기반을 둔 건학이념을 가지고 있었다면 특정 종교의 교리에 근거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사실도 알고 있었나요?
4. 본인이 다니는 학교에는 종교 활동이 있나요?
 - 4-1. 종교 활동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나요?
 - 4-2. 이러한 종교 활동의 참여여부에 대한 선택권이 있나요?
 - 4-3. 이러한 종교 활동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있나요?
5. 학교에 종교시설이 있나요? 종교시설이 있다면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6. 학교에서 진행되는 공식 행사(입학식, 졸업식, 전교생 조회시간 등)가 특정 종교 의식에 따라 진행되거나 특정 종교 의식이 포함되어 있나요? 포함되어 있다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6-1. 본인은 학교에서 진행되는 종교 활동이나 종교 의식에 참석하고 싶지 않지만 이로 인해 사실상의 불이익 또는 차별을 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참석한 적이 있나요?

7. 종교 활동 동아리 설립이 자유롭나요?

8. 공식행사나 수업 시간에 교장선생님이나 교사가 특정 종교를 믿으라고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에 대한 이야기를 한 사실이 있나요? 있다면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9. 학교에서 진행되는 종교 교육으로 인해 혼란을 느낀 적이 있나요?

10. 종교 활동 참여 여부가 성적이나 포상 등에 영향을 주나요?

10-1. 반장이나 학생회장이 되기 위해서는 학교가 요구하는 종교를 믿어야 하나요?

11. 다니는 학교에 종교과목이 있나요?

12. 다니는 학교에 종교과목 대신 다른 과목을 선택할 수 있나요?

13. 다니는 학교의 선생님이 다른 종교를 나쁘게 말한 적이 있나요?

14. 교장 선생님이나 교사가 방과 후 또는 휴일에 종교 활동을 권유한 적이 있나요?

15. 학교 측 이나 교사의 종교 활동 발언이 자신의 종교적 자유를 침해했다고 느낀 적이 있나요?

16. 학교에서의 종교 활동이 자신에게 도움이 된 점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17. 학교에서의 종교 활동이 자신에게 불쾌했거나 불편했던 점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 이상의 질문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중한 자료로 쓰겠습니다.

- 5-1. 이러한 종교 활동은 학교의 공식적인 활동에 해당하나요?
- 5-2. 이러한 종교 활동은 누구의 요청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교사나 학생들에게 종교 활동의 참여에 대한 선택권이 있나요?
- 5-3. 이러한 종교 활동이 학교 교육과 관련해서 필요한지 여부에 대한 본인의 생각은 어떤가요?
- 5-4. 본인은 이러한 종교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나요?
- 5-5. 이러한 종교 활동 참여와 관련하여 거부감을 갖고 있거나 불편함을 호소하는 교사나 학생들이 있나요? 있다면 그들이 거부감 또는 불편함을 느끼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 5-6. 본인의 지도 아래 학생이 이러한 종교 활동의 참여로 인해 거부감을 갖고 있거나 불편함을 호소하는 경우 본인은 학생들에게 어떻게 지도하고 있나요?
6. 학교에 종교 시설이 있나요? 있다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7. 학교에서 진행하는 공식 행사가 특정 종교의 의식에 따라 진행되거나 특정 종교 의식이 포함되어 있나요? 있다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 7-1. 본인은 학교에서 진행하는 종교 활동이나 종교 의식에 참석하고 싶지 않지만 이로 인해 사실 상의 불이익 또는 차별을 당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참석한 적 있나요?
- 7-2. 학교에서 진행하는 종교 활동이나 종교 의식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 학교장이나 재단에서 불참자들에게 불이익 또는 차별을 하고 있나요? 있다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8. 학교장이나 설립 재단의 종교 성향이 학교 운영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나요? 있다면 어떠한 형태로 영향을 미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 8-1. 학교를 설립한 재단의 이사장 개인 또는 이사회의 종교 성향이 학교 운영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나요? 있다면 어떤 형태로 영향을 미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9. 학생들에게 본인의 종교나 설립 재단의 종교를 권유한 적 있나요?
- 9-1. 이러한 종교 권유는 본인이 자발적으로 한 것인가요? 아니면 학교장이나 재단의 요청에 따른 것인가요?

10. 교사가 학생들에게 특정 종교에 대해 선교 활동을 하는 경우가 있나요?

10-1. 교사 개인의 선교 활동에 대한 본인의 생각은 어떠한가요?

11. 학교장(교감 선생님, 부장 선생님 포함)이 교직원들에게 자신이 다니는 종교 시설(교회, 절, 성당 등)에 함께 나가자고 권유하거나, 학교장(교감 선생님, 부장 선생님 포함)의 주도 하에 교직원들이 참여하여 학교에서 종교 의식을 거행하는 경우가 있나요?

11-1. 본인은 이러한 모임에 참석하고 싶지 않지만, 참석하지 않을 경우 이로 인해 사실상의 불이익 또는 차별을 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참석한 적이 있나요?

12. 학교 내에 특정 종교와 관련된 교직원의 사적 모임이 존재하나요?

12-1. 학교 내 교직원 사적 종교 모임 참여가 이익을 주거나 차별을 초래한다고 느꼈나요?

12-2. 학교 내 교직원 사적 종교 모임의 참여가 학교 내에서 갈등을 조장한다고 느낀 적이 있나요?

13. 종교 교육이 학교 교육에서 필요한지 아니면 불필요한지에 대해 본인의 의견은 어떠한가요?

14. 종교 교육이 학생의 인성 발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 하시나요?

15. 본인이 재직 중인 학교에서는 종교 과목이 개설되어 있나요?

15-1. 종교 과목을 수강하길 원하지 않는 학생들을 위해 종교 과목 이외 다른 과목이 개설되어 있나요? 개설되어 있다면 어떤 과목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15-2. 학생들이 다른 과목을 선택함으로써 인해 성적이나 학교생활과 관련해서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있나요?

15-3. 학교에서 학생이 종교 과목이나 종교 활동 등에 대해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6. 종교적 이유로 학생 또는 학생과 갈등이나 다툼을 경험한 적이 있나요?

※ 이상의 질문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중한 자료로 쓰겠습니다.

<부록 5> 전문가 조사용 설문지

종교적 차별 실태조사를 위한 전문가 의견조사

안녕하십니까?

이 설문조사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실시하는 중·고등학교에서의 “종교적 차별의 실태조사
와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적 연구로서 이 분야의 전문가들이 특정 종교의 이념에 기
초하여 설립된 종교계 사립 중·고등학교에서의 종교교육에 대해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계신
지를 조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많이 바쁘시리라 생각되지만 잠깐의 시간을 내셔서 조사에 필요한 질문에 응답하여 주시
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조사 결과는 각 항목에 대한 응답물로 수치화되어 공개되며, 개별적으로 답한 내용과
인적사항 등은 비밀을 지키겠습니다. 평소 생각하신 바대로 응답하여 주시면 연구에 귀중
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설문지를 작성하셔서 연구책임자인 송기춘 교수(이메일 kcsong@jbnu.ac.kr)에게 보내주
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구책임자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송기춘 드림.

* 이 설문조사에서 종교계 학교란 불교, 개신교, 천주교, 원불교 등 특정 종교의 이념에 기초
하여 설립된 학교를 말하며, 일반적으로 설립이념인 종교의 의식을 거행하고 종교교육을 실시
합니다.

* 이 설문조사에서 ‘종교교육’이란 종교적 교리 등에 대한 이해와 함께 종교적 고백을 추구하
는 신앙교육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 이 설문은 전문가들이 종교계 학교에서의 종교교육의 여러 유형이 종교적 차별인지 여부에
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조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질문에 대한 응답은 “현행 헌법과 법
률”을 고려하여 답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해당하는 항목에 √로 표시하거나 직접 써주십시오.

1. 선생님께서는 종교계 학교에서 당해 학교 설립의 기초가 되는 특정 종교의 교리와 신앙을
종교교과 수업시간에 교육하는 것(종교교육)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언제나 할 수 있다

② 학생과 부모의 학교선택권이 있으면 할 수 있고, 없으면 할 수 없다

- ③ 학생에게 입학 이전에 종교교육을 실시한다는 것을 알렸을 때는 할 수 있다
- ④ 할 수 없다
- ⑤ 잘 모르겠다
- ⑥ 기타(_____)

2. 선생님께서는 종교계 학교의 입학식, 졸업식 또는 학교의 주요한 행사(체육대회, 현장학습 등)에서 당해 학교 설립의 기초가 되는 특정 종교의 의식(예배, 미사 또는 법회 등)을 거행하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언제나 할 수 있다
- ② 학생과 부모의 학교선택권이 있으면 할 수 있고, 없으면 할 수 없다
- ③ 학생에게 입학 이전에 종교교육을 실시한다는 것을 알렸을 때는 할 수 있다
- ④ 할 수 없다
- ⑤ 잘 모르겠다
- ⑥ 기타(_____)

3. 선생님께서는 종교계 학교에서 조회 또는 종례나 비종교 교과 수업시간에 당해 학교 설립의 기초가 되는 특정 종교의 의식을 거행하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언제나 할 수 있다
- ② 학생과 부모의 학교선택권이 있으면 할 수 있고, 없으면 할 수 없다
- ③ 학생에게 입학 이전에 종교교육을 실시한다는 것을 알렸을 때는 할 수 있다
- ④ 할 수 없다
- ⑤ 잘 모르겠다
- ⑥ 기타(_____)

4. 선생님께서는 현재의 중등교육과정의 종교교과에서 어느 정도의 종교에 관한 교육이 가능하다고 알고 계십니까?

- ① 일반적 종교 이해에 관한 교육만 가능하다
- ② 일반적 종교 이해와 주요 종교의 교리 등에 관한 지식의 교육이 가능하다
- ③ 일반적 종교 이해, 주요 종교의 교리 등 지식과 당해 학교의 설립이념인 종교의 교리와 신앙에 관한 교육이 가능하다
- ④ 당해 학교의 설립이념인 종교의 교리와 신앙에 관한 교육만 하는 것도 가능하다
- ⑤ 잘 모르겠다

⑥ 기타(_____)

5. (1번문항에서 ② 학생과 부모의 학교선택권이 있다면 종교교육이 가능하다고 답하신 분들만 해당됩니다.)

다음의 경우 종교교육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형	가능하다	안 된다	잘 모르겠다	기타
평준화지역의 중·고등학교 진학에서 선지원 후추첨에 의하여 배정된 경우				
비평준화지역에서 중·고등학교에 지원하여 입학한 경우				
대학교의 경우				

6. (1번문항에서 ③ 학생에게 당해 학교에서 설립이념인 종교에 따라 종교교육을 실시한다는 것을 알렸을 때 종교교육이 가능하다고 답한 분들만 해당됩니다.)

다음의 경우 종교교육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형	가능하다	안 된다	잘 모르겠다	기타
학교입학설명자료에서 졸업요건으로 종교교과 이수가 필수라는 점을 명시하는 것 이외에 다른 설명을 하지 않은 경우				
특정 종교의 이념에 따라 설립되었고 이에 따른 교육을 한다는 포괄적 설명을 한 경우				
학교의 교육과 생활에서 이뤄지는 종교교육의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한 경우(종교교과, 입학식, 졸업식 등에서의 종교의식 등)				
학교가 입학 전에 설명한 내용과 다른 내용이나 방식으로 종교교육을 하는 경우				

7. 선생님께서는 종교계 학교에 재학중인 중·고등학교 학생이 자신의 종교가 학교의 설립이념인 종교와 다르다는 등의 이유로 종교교육을 받지 않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 ① 종교교육을 거부할 수 없다
- ② 학생과 부모의 학교선택권이 있다면 종교교육을 거부할 수 없다
- ③ 학생이 당해 학교가 종교교육을 실시한다는 것을 알고 입학하였다면 종교교육을 거부할 수 없다
- ④ 종교교육을 받지 않을 수 있다

8.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의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관한 정의에 따르면 ‘종교를 이유로 교육시설에서의 교육·훈련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종교적 차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종교계 학교의 학생이 학교의 종교교육이나 의식을 거부하거나 따르지 않아 아래와 같은 유형의 괴로움을 겪거나 불이익 또는 징계를 받을 경우 이것이 종교적 차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형	차별이다	아니다	잘 모르겠다	기타
자신과 다른 종교 또는 종교의식 등의 대한 거부감 등으로 인한 괴로움				
종교교과 미이수로 인한 졸업 또는 진급 거부				
학칙에 따른 징계				
교사와의 상담				
교사의 훈계				
종교교육 거부 학생에 대한 전학요구				
종교교과 대체교과목의 미개설				
종교교과 대체과목 이수에 과제물이나 공부 부담을 더 많이 함				
종교교과 대체과목을 듣기 위해 다른 학교로 이동하여야 함				
종교관련 활동이나 경연대회 수상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함				

9. 선생님께서는 종교계 학교에서 교직원을 채용할 때 특정 종교인일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할 수 없다

- ② 종교교과 또는 종교 관련 사무를 담당하는 교직원의 경우에만 가능하다
- ③ 모든 교직원의 경우 가능하다
- ④ 잘 모르겠다
- ⑤ 기타(_____)

※ 아래는 통계를 위한 일반사항입니다. 해당되는 **난**에 정확히 표시해 주십시오.

10. 선생님께서 주된 연구분야로 삼고 계신 것은 무엇입니까?(여러 개 선택 가능합니다.)

- ① 헌법
- ② 행정법
- ③ 교육법
- ④ 헌법, 행정법, 교육법 이외의 법학 분야
- ⑤ 종교학
- ⑥ 교육학
- ⑦ 기타(_____)

11. 선생님께서 재직중인 직장은 특정 종교와 관련된 곳(종교계 학교 또는 특정 종교의 재정지원의 비중이 큰 기관 등)입니까?

- ① 그렇다
- ② 그렇지 않다
- ③ 잘 모르겠다
- ④ 기타(_____)

12. 선생님께서는 종교계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서 공부하신 적이 있습니까?

- ① 그렇다
- ② 그렇지 않다
- ③ 잘 모르겠다
- ④ 기타(_____)

13. 선생님의 성별은?

- ① 남
- ② 여

14. 선생님의 종교는 무엇입니까?

- ① 불교 ② 개신교 ③ 천주교 ④ 유교 ⑤ 원불교
⑥ 대순진리회 ⑦ 천도교 ⑧ 대종교 ⑨ 기타 () ⑩ 없음

-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중한 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